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829-01



미래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 정책 수립지원 -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Support on International IP Policy Analysis on legal system related to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RCEP, CPTPP parties)

2021. 12



2021년도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Support on International IP Policy
Analysis on legal system related to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RCEP, CPTPP parties)

2021.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 지원”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연 구 기 간 :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 연 구 책 임 자 : 전정화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 참 여 연 구 원 : 김아름 (미래전략연구실 전임연구원)
김아린 (보호신지식연구실 전임연구원)

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가입(RCEP) 또는 가입을 검토 중(CPTPP)인 협정의 대상국에서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에 관한 법제도 동향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특히 RCEP의 발효(2022. 2. 1.)를 기하여 ASEAN 국가들 내에서 지식재산 관련 법제의 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CPTPP 협정 대상국의 경우 국내에 기본적된 자료가 부족하여 기초자료의 확보가 중요한 상황임
- RCEP 및 CPTPP 협정 대상국은 중복 가입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총 18개국에 대하여 지식재산 법제 및 유관 법제에서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만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요약은 다음과 같음
- 국가별 분석은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명 한글순으로 배치하였으며, 법령요약, 주요내용, 법령비교표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령비교표의 경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과 관련성이 높은 조문만을 발췌한 사항이며, 1개의 조문 내에서도 관련성이 높은 부분만을 발췌하여 번역하였음에 유의가 필요함
- 법제 일반에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행정처분, 형벌 등) 해당 조문의 번호만을 기재하고 법령의 전문을 분석하지 아니하였음
- 법령비교표의 경우, 한글 번역 부분에 오역이나 의역,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

▶ RCEP, CPTPP 협정대상국의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관련 요약

순번	국가	IP법령 현황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관련 분석대상법령	비고
1	뉴질랜드 (RCEP/CP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2013) • 상표법(2002) • 디자인법(1953) • 저작권법(1994) • 식물신물질관리법(1987) • 배치설계법(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2020) • 형법(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응하는 법률이 없음 • 형법에 영업비밀 관련 일부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라오스 (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법 • 기술이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법(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는 지식재산법 내에서 상표, 영업비밀을 모두 규정

순번	국가	IP법령 현황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관련 분석대상법령	비고
3	말레이시아 (RCEP/CP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 상표법 • 산업디자인법 • 저작권법(2020) • 지리적 표시법 • 집적회로설계법 • 경쟁법(2020) • 상품표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2019) • 상품표시법(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경쟁법(Competition Act)이 제정되었으나, IP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내용 부재 • 상품표시법은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상표 관련 부정경쟁(허위표기) 금지 등을 규정
4	멕시코 (CP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보호법 • 저작권법 • 식물품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보호법(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는 산업재산보호법 내에서 상표(부정경쟁), 영업비밀(산업비밀)을 모두 규정
5	미얀마 (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 상표법 • 산업디자인법 • 저작권법 • 경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법(2015) • 상표법(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법 제9조(불공정 경쟁)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불공정경쟁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기업인의 영업비밀(영업비밀) 보호 의무 명시
6	베트남 (RCEP/CP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법 • 보험사업법 및 지식재산법개정(2019) • 경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법(2019) • 경쟁법(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법 내 IP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관련 내용 부재(단, 업무상 기밀정보를 보호 대상에 포함)
7	브루나이 (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 상표법 • 산업디자인법 • 저작권법 • 식물품종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찾을 수 있음 • 브루나이 법체계 내에 영업비밀을 다루지 않음
8	싱가포르 (RCEP/CP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 상표법 • 등록디자인법 • 지식재산(국경집행)법 • 지식재산(분쟁해결)법 • 저작권법 • 지리적 표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2021) • 지리적 표시법(2014) • 지식재산(분쟁해결)법(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분쟁해결)법에서 적용대상인 지식재산권에 영업비밀(trade secrets) 포함
9	인도네시아 (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 산업디자인법 • 저작권법 • 영업비밀법 • 반도체집적회로설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2016) • 영업비밀법(2000) 	
10	일본 (RCEP/CP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법 • 저작권법 • 부정경쟁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2020) • 부정경쟁방지법(2019) 	
11	중국 (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전리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반부정당경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정당경쟁법(2019) 	
12	칠레 (CP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법 • 산업재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영업비밀 범위 확대에 관한 내용 포함)

Summary

요약

순번	국가	IP법령 현황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관련 분석대상법령	비고
13	캄보디아 (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법 •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법률 개정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공중보건 강제실시법 • 지리적 표시법 • 표장, 상호 및 불공정경쟁법 • 영업비밀법(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장, 상호 및 불공정경쟁법 (2002) • 영업비밀법(초안/미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밀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Law on Undisclosed Data Submitted to Obtain Marketing Approval of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and Trade Secrets)
14	캐나다 (CP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 상표법 • 산업디자인법 • 저작권법 • 반도체집적회로법 • 식육육종가권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2021) • 형법(2021) 	
15	태국 (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영업비밀법 • 지리적 표시보호법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법 • 태국전통의료정보보호 및 증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2016) • 영업비밀법(2015) 	
16	페루 (CP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제도에 관한 안데스공동체결정486에 대한 보완조항을 승인하는 입법령 • 국가브랜드제도에 관한 안데스공동체결정 • 저작권법 • 실연자법 • 식물품종권침해제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제도에 관한 안데스공동체결정486에 대한 보완조항을 승인하는 입법령(2018) 	
17	필리핀 (R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법 • 경쟁법 • 기술이전법 • 식물품종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법(2015) • 경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법에 영업비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관련 조항 보유
18	호주 (RCEP/CP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법 • 저작권법 • 식육육종가권리법 •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 • 거래관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법(2021) • 거래관행법(1974) 	

미래전략 -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1장	뉴질랜드	1
제2장	라오스	9
제3장	말레이시아	23
제4장	멕시코	39
제5장	미얀마	57
제6장	베트남	73
제7장	브루나이	93
제8장	싱가포르	103
제9장	인도네시아	115
제10장	일본	129

Contents

제11장	중국	153
제12장	칠레	165
제13장	캄보디아	173
제14장	캐나다	181
제15장	태국	195
제16장	페루	211
제17장	필리핀	227
제18장	호주	237

부록 / 245

참고문헌 / 248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1 장

뉴질랜드

법령요약

- 뉴질랜드 상표법(TradeMark Act 2002)(2020. 11. 11. 개정 ver)

- 상표법 내에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을 규정

뉴질랜드 상표법	대상조항
제1장 예비규정(Preliminary)	제1조~제8조
제2장 상표등록가능성(Registrability of trade marks)	제9조~제30조
제3장 상표 등의 등록절차 (Process for obtaining registration of trade mark and other matters)	제31조~제87조
제4장 법적 절차(Legal Proceedings)	제88조~제174조
제5장 행정규정 및 기타(Administrative provisions and miscellaneous)	제175조~제209조

- 뉴질랜드 개정형법(Crimes Amendment Act 2003)

- 제15조 내(구(舊)형법 제230조)에서 영업비밀 관련 사항을 규정

- 개정형법 제15조는 뉴질랜드 구(舊)형법(Crimes Act 1961) 제10장(재산권 침해 범죄)을 대체하는 조항임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항

- 상표법에서 우리나라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의 일부를 규정, 저명상표의 희석행위, 타인의 성과침해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으며, 상표의 악의적 출원이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등록을 거절

-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형사조치 및 일반적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영업비밀 관련 사항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

- 영업비밀을 직접 침해한 자 외에도 2차 침해의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

법령비교표

● 뉴질랜드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

뉴질랜드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2020. 11. 11. 개정)	번역
<p>17. Absolute grounds for not registering trade mark: general (1) The Commissioner must not register as a trade mark or part of a trade mark any matter— (a) the use of which would be likely to deceive or cause confusion; or (생략) (2) The Commissioner must not register a trade mark if the application is made in bad faith.</p>	<p>제17조 상표등록의 절대적 거절사유 : 일반 ①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상표 또는 상표의 일부로 등록해서는 아니된다. (a) 기만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상표 ② 특허청장은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이를 등록해서는 아니된다.</p>
<p>25. Registrability of identical or similar trade mark (1) The Commissioner must not register a trade mark (trade mark A) in respect of any goods or services if— (a) it is identical to a trade mark (trade mark B) belonging to a different owner and that is registered, or has priority under section 34 or section 36,— (i) in respect of the same goods or services; or (ii) in respect of goods or services that are similar to those goods and services, and its use is likely to deceive or confuse; or (b) it is similar to a trade mark (trade mark C) that belongs to a different owner and that is registered, or has priority under section 34 or section 36, in respect of the same goods or services or goods or services that are similar to those goods or services, and its use is likely to deceive or confuse; or (c) it is, or an essential element of it is, identical or similar to, or a translation of, a trade mark that is well known in New Zealand (trade mark D), whether through advertising or otherwise, in respect of those goods or services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or any other goods or services if the use of trade mark A would be taken as indicating a connection in the course of trade between those other goods or services and the owner of trade mark D, and would be likely to prejudice the interests of the owner. (2) Section 26 overrides subsection (1). Compare: 1953 No 66 s 17(1), (2) Section 25(1)(a): replaced, on 15 December 2005, by section 5(1) of the Trade Marks Amendment Act 2005 (2005 No 116). Section 25(1)(b): amended, on 15 December 2005, by section 5(2) of the Trade Marks Amendment Act 2005 (2005 No 116).</p>	<p>제25조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등록가능성 ①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상표A)를 등록해서는 아니된다. (a)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상표(상표B)와 동일한 것으로서 등록된 것이거나, 또는 제34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다음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경우 (i)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ii) 해당 상품 및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로서 그 사용이 기만 또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b)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상표(상표C)와 동일한 것으로서 등록된 것이거나, 또는 제34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우선권을 갖는 경우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 또는 해당 상품 및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로서 그 사용이 기만 또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c) 광고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뉴질랜드에서 잘 알려진 상표(상표D) 또는 그 번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또는 상표의 핵심요소)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만일 상표A의 사용이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유자와 상표D의 소유자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것이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제26조는 본조 제1항에 우선한다. 비교: 1953 No 66 s 17(1), (2) 제25조제1항(a)호: 2005년 12월 15일에 상표 개정법 2005(2005 No 116)의 제5조제1항으로 대체된다. 제25조제1항(b)호: 2005년 12월 15일에 상표 개정법 2005(2005 No 116) 제5조제2항에 의해 개정된다.</p>
<p>28. Registrability of trade mark that contains flag, State emblems, etc, of convention country The Commissioner must not,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concerned, register a trade mark that contains a representation of— (a) the flag of a convention country unless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the use of the flag in the manner proposed is permitted without that authorisation; or</p>	<p>제28조 국제협약 체결국가의 국기, 휘장 등이 포함된 상표의 등록 특허청은 관련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없이 다음을 나타내는 상표를 등록해서는 아니된다. (a) 국제협약 체결 국가의 국기</p>

뉴질랜드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2020. 11. 11. 개정)	번역
<p>(b) the armorial bearings or any other State emblem of a convention country that is protected und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TRIPS Agreement; or</p> <p>(c) an official sign or hallmark—</p> <p>(i) adopted by a convention country; and</p> <p>(ii) that indicates control and warranty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of the same, or similar, kind as those goods or services in relation to which the trade mark is to be registered; and</p> <p>(iii) that is protected und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TRIPS Agreement.</p>	<p>(b) 파리협약 또는 TRIPS 협정에 따른 보호되는 국가의 문장 또는 기타 국가상징</p> <p>(c) 다음의 공식 기호 또는 특징</p> <p>(i) 협약 국가에서 채택된 것</p> <p>(ii) 상표가 등록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통제, 보증을 나타내는 표시</p> <p>(iii) 파리협약 또는 TRIPS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것</p>
<p>29. Registrability of trade mark that contains armorial bearings, etc, of certain international organisations</p> <p>(1) The Commissioner must not,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concerned, register a trade mark that contains a representation of the armorial bearing, flag, or other emblem, or the abbreviation or name, of an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 of which 1 or more convention countries are members if the armorial bearing, flag, or other emblem, or the abbreviation or name, of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concerned is protected und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TRIPS Agreement.</p> <p>(2) Despite subsection (1), the Commissioner may register a trade mark if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the use of the armorial bearing, flag, or other emblem, or the abbreviation or name, of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concerned in the manner proposed—</p> <p>(a) is not likely to suggest to the public that a connection exists between the organisation and the trade mark; or</p> <p>(b) is not likely to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existence of a connection between the user and the organisation.</p>	<p>제29조 특정 국제기구의 문장 등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p> <p>(1) 특허청은 관련 1개 이상의 협약을 체결한 정부간 또는 국제기구의 승인없이 해당 문장, 깃발 또는 기타 휘장의 표현이나 약어, 이름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깃발 또는 기타 휘장, 약어 또는 이름이 파리협약 또는 TRIPS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 역시 포함된다.</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관련 국제기구의 문장, 깃발 또는 기타 휘장, 약어 또는 이름의 사용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되는 경우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p> <p>(a) 해당 조직과 상표사이의 연관성이 있음을 대중이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p> <p>(b) 상표사용자와 해당 조직간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반 대중을 오인시킬 가능성이 없는 경우</p>
<p>30. When emblems, etc, are protected under Paris Convention or TRIPS Agreement</p> <p>(1)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28 and 29, the State emblems (other than the national flag) of, or the official signs or hallmarks adopted by, a convention country, or the emblems, abbreviations, or names, of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as the case may be, are protected und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TRIPS Agreement only if, or to the extent that,—</p> <p>(a) the country or the organisation concerned has notified New Zeal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ter (3) of the Paris Convention, or under that Article as applied by the TRIPS Agreement, that it desires to protect the State emblem, official sign, or hallmark, or the emblem, abbreviation, or name, as the case may be; and</p> <p>(b) the notification remains in force; and</p> <p>(c) New Zealand has not objected to 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ter (4) of the Paris Convention, or under that Article as applied by the TRIPS Agreement, or any such objection has been withdrawn.</p> <p>Compare: Trade Marks Act 1998 s 58 (Singapore)</p>	<p>제30조 엠블럼 등이 파리협약 또는 TRIPS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p> <p>(1) 제28조 및 제29조의 목적을 위해 협약국의 국가상징(국기제외), 협약 국가에서 채택한 공식기호 또는 특징, 국제기구의 상징, 약어 또는 이름은 다음의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파리협약 또는 TRIPS 협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p> <p>(a) TRIPS 협정 제6조 또는 파리협약 제3조에 따라 해당 국가 등이 뉴질랜드에 통지한 경우</p> <p>(b) 해당 통지가 유효한 경우</p> <p>(c) 뉴질랜드가 파리협약 제6조 제4항 또는 TRIPS 협정에 따라 해당 조항에 반대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반대가 철회된 경우</p>
<p>89. Infringement where identical or similar sign used in course of trade</p>	<p>제89조 거래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 침해</p>

뉴질랜드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2020. 11. 11. 개정)	번역
<p>(1) A person infringes a registered trade mark if the person does not have the right to use the registered trade mark and uses in the course of trade a sign— (d)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registered trade mark in relation to any goods or services that are not similar to the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where the trade mark is well known in New Zealand and the use of the sign takes unfair advantage of, or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the repute of the mark.</p>	<p>①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거래과정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p> <p>(d) 상표가 뉴질랜드에서 잘 알려진 경우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용표시를 통해 고유한 특성이나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p>
<p>90 Infringement where non-compliance with certain contractual requirements (1) A registered trade mark is infringed if— (a) a purchaser or owner of goods and the owner or licensee of the registered trade mark have entered into a written contract that requires the purchaser or owner of the goods not to do, in relation to the goods, any of the acts listed in subsection (2); and (생략) (2) The act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re— (a) the application of the trade mark on the goods after their condition, getup, or packaging has been altered in any manner specified in the contract: (b) if the trade mark is on the goods,— (i) the alteration, part removal, or part obliteration of the trade mark: (ii) the application of any other trade mark to the goods: (iii) the addition to the goods of any written material that is likely to damage the reputation of the trade mark:</p>	<p>제90조 특정계약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침해</p> <p>① 다음의 경우는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a) 구매자 또는 상품 소유자, 등록상표의 권리자 또는 사용권자가 상품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나열된 행위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p> <p>② 제1항에 언급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상품의 상태, 포장 또는 외관이 계약에 명시된 방식으로 변경된 후의 상품에 대한 상표의 적용 (b) 상표가 상품에 있는 경우 (i) 상표의 변경, 부분제거 또는 부분 말소 (ii) 상품에 대한 기타 상표의 적용 (iii) 상표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추가</p>
<p>94 No infringement for comparative advertising of registered trade mark A registered trade mark is not infringed by the use of the registered trade mark for the purposes of comparative advertising, but any such use otherwise than in accordance with honest practices in industrial or commercial matters must be treated as infringing the registered trade mark if the use, without due cause, takes unfair advantage of, or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the repute of the trade mark.</p>	<p>제94조 비교광고와 침해</p> <p>비교광고의 목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나, 산업 또는 상업적 문제에서 정직한 관행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의 고유한 특성이나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p>
<p>106 Types of relief available for infringement of registered trade mark (1) If an application is made to the court for relief, the relief that the court may grant includes— (a) an injunction on any terms that the court thinks fit: (b) either damages or an account of profits. (2) If an application is made to the court for relief, the court may grant such additional damages as the justice of the case requires,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and, in particular, to— (a) the flagrancy of the infringement; and (b) any benefit accruing to the defendant by reason of the infringement.</p>	<p>제106조 등록상표 침해에 대한 구제의 종류</p> <p>①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부여할 수 있는 구제방식은 다음과 같다. (a) 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대한 금지명령 (b) 손해 또는 이익의 배상 ②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모든 상황, 특히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침해의 심각성과 (b) 침해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하는 모든 이익</p>
<p>121 Offence to falsely apply registered trade mark to goods or services</p>	<p>제121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상표를 허위로 적용하는 행위</p>

제1장

뉴질랜드

뉴질랜드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2020. 11. 11. 개정)	번역
<p>(1) Every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falsely applies a registered trade mark to goods or services.</p> <p>(4)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d section 124, a sign is applied to goods or services if the sign—</p> <p>(c) is used in a manner likely to lead a person to believe that it refers to, describes, or designates the goods or services.</p>	<p>① 모든 사람은 등록상표를 상품 또는 서비스에 거짓으로 적용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p> <p>④ 이 조 및 제124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된다.</p> <p>(c)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상품이나 서비스를 언급, 설명 또는 지칭한다고 믿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p>
<p>125 Penalties for offences</p> <p>Every person who is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p> <p>(a) section 120 or section 121 or section 122 or section 123 is liable on conviction to—</p> <p>(i) a fine not exceeding \$10,000 for each of the goods or services to which the offence relates, but not exceeding \$150,000 in respect of the same transaction; or</p> <p>(ii)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5 years; or</p>	<p>제125조 위반에 대한 처벌</p> <p>다음과 같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p> <p>(a)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및 제123조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p> <p>(i) 범죄와 관련된 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10,000이하의 벌금,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150,000 이하의 벌금 또는</p> <p>(ii) 5년 이하의 징역</p>
<p>134C Functions of enforcement officer</p> <p>An enforcement officer must, to the extent that is reasonably practicable, promote compliance with this Act by carrying out the following functions:</p> <p>(a) gathering information relating to offences under this Act:</p> <p>(b) investigating offences under this Act:</p> <p>(생략)</p>	<p>제134C조 집행관의 기능</p> <p>집행관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여 이 법의 준수를 촉진해야 한다.</p> <p>(a) 이 법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p> <p>(b) 이 법에 따른 범죄 조사</p> <p>(생략)</p>
<p>134D Enforcement officer's power of entry and examination without warrant</p> <p>(본문생략)</p>	<p>제134D조 집행관의 영장없는 출입 및 조사권</p> <p>(본문생략)</p>
<p>134E What enforcement officer and person assisting may do when exercising power of entry and examination without warrant</p> <p>(본문생략)</p>	<p>제134E조 영장없는 출입 및 조사권을 행사할 때 집행관 및 보조인의 권한</p> <p>(본문생략)</p>
<p>134F Enforcement officer or constable may apply for search warrant</p> <p>(본문생략)</p>	<p>제134F조 집행관 또는 경찰관의 수색영장 신청</p> <p>(본문생략)</p>
<p>134G Application for search warrant</p> <p>(본문생략)</p>	<p>제134G조 수색영장 신청</p> <p>(본문생략)</p>
<p>134H Mode of application for search warrant</p> <p>(본문생략)</p>	<p>제134H 수색영장 신청방식</p> <p>(본문생략)</p>
<p>134I Transmission of search warrant Retention of documents</p> <p>(본문생략)</p>	<p>제134I조 수색영장의 형식과 내용</p> <p>(본문생략)</p>
<p>134J Form and content of search warrant</p> <p>(본문생략)</p>	<p>제134J조 수색영장 송부</p> <p>(본문생략)</p>
<p>134K Retention of documents</p> <p>(본문생략)</p>	<p>제134K 문서보관</p> <p>(본문생략)</p>
<p>134L When search warrant is executed</p> <p>(본문생략)</p>	<p>제134L조 수색영장이 집행되는 경우</p> <p>(본문생략)</p>
<p>134M Powers of entry and search under warrant when warrant is executed</p> <p>(본문생략)</p>	<p>제134M조 영장에 따른 출입 및 수색권한</p> <p>(본문생략)</p>
<p>134N Powers of persons called to assist</p> <p>(본문생략)</p>	<p>제134N조 보조인의 권한</p> <p>(본문생략)</p>

뉴질랜드 상표법(Trade Marks Act 2002)(2020. 11. 11. 개정)	번역
134O application of sections 134P to 134S (본문생략)	제134O조 제134P조~134S조의 적용 (본문생략)
134P Powers and duties of person exercising power of entry and search or power of entry and examination (본문생략)	제134P조 출입 및 수색권을 행사하는 자의 권한 및 의무 (본문생략)
134Q Inventory of things seized (본문생략)	제134Q조 압수품 목록 (본문생략)
134X Enforcement officer may apply for production order (본문생략)	제134X조 집행관의 제출명령의 신청 (본문생략)
134Y Judge may order documents to be produced (본문생략)	제134Y조 판사의 제출명령의 신청 (본문생략)

● 뉴질랜드 개정형법(Crimes Amendment Act 2003)

뉴질랜드 개정형법(Crimes Amendment Act 2003)	번역
<p>Crimes against rights of property 15 Repeal of Part 10 The principal Act is amended by repealing Part 10, and substituting the following Part: 230 Taking, obtaining, or copying trade secrets (1)Every one is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5 years who, with intent to obtain any pecuniary advantage or to cause loss to any other person,—</p> <p>(a)dishonestly and without claim of right, takes, obtains, or copies any document or any model or other depiction of any thing or process containing or embodying any trade secret, knowing that it contains or embodies a trade secret; or</p> <p>(b) dishonestly and without claim of right, takes or obtains any copy of any document or any model or other depiction of any thing or process containing or embodying any trade secret, knowing that it contains or embodies a trade secret.</p> <p>(2)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rade secret means any information that—</p> <p>(a)is, or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industrially or commercially; and</p> <p>(b)is not generally available in industrial or commercial use; and</p> <p>(c)has economic value or potential economic value to the possessor of the information; and</p> <p>(d)is the subject of all reasonable efforts to preserve its secrecy.</p>	<p>재산권 침해 범죄 제15조 Part10의 폐지 법은 Part10을 폐지하고 다음 파트로 대체하여 개정한다.</p> <p>“제230조 영업비밀의 수집, 획득 및 목제 (1)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p> <p>(a) 영업비밀을 포함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권한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포함하거나 구체화하는 문서, 모델 또는 절차를 이전, 입수 또는 복제하는 행위,</p> <p>(b) 영업비밀을 포함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권한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된 영업비밀을 포함하거나 구체화하는 문서 모델 또는 절차를 이전, 입수 또는 복사하는 행위,</p> <p>(2) 본 장의 목적상, 영업비밀은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p> <p>(a) 산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경우</p> <p>(b) 일반적으로 산업적 또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p> <p>(c) 정보 보유자에게 직접적 또는 잠재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p> <p>(d)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한 것일 경우</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2 장

라오스

법령요약

● 라오스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2017. 11. 15. ver)

- 지식재산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식물신품종, 저작권, 영업비밀, 불공정행위(Unfair Competition)를 모두 규정하고 있음

라오스 지식재산법	내용	
제1장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제1조~제7조)목적, 정의, 기본원리, 범위, 국제협력 등	
제2장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제8조~제11조) 지식재산 프레임워크, 산업재산권, 식물신품종,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3장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제1절 산업재산권 요구사항 (Industrial Property Requirements)	(제12조~제20조)
	제2절 등록할 수 없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Ineligible for Registration)	(제21조~제25조)
	제3절 산업재산권의 보호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26조~제45조)
	제4절 산업재산권의 권리자 (Industrial Property Rights Owner)	(제46조~제47조)
	제5절 산업재산권 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48조~제55조)
	제6절 산업재산권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Industrial Property Owner)	(제56조~제63조)
	제7절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제한(Limitation of Rights on Industrial Property)	(제64조~제67조)
제4장 식물신품종	(제68조~제91조)	
제5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copyright and Related Right)	(제92조~제120조)	
제6장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Vio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Unfair Competition)	제1절 지식재산권 침해(Vio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제121조~제123조)
	제2절 불공정행위(Unfair Competition)	(제124조~제126조)
제7장 분쟁해결, 사법절차 및 조치 (Dispute Resolution, Court Proceedings and Application of Measures)	제1절 분쟁해결의 형태(Forms of Dispute Resolution)	(제127조~제134조)
	제2절 법원절차 및 조치 적용(Court Proceedings and Application of Measures)	(제135조~제148조)
제8장 관리 및 검사(Management and Inspection)	제1절 관리(Management)	(제149조~제154조)
	제2절 검사(Inspection)	(제155조~제159조)
제9장 혜택 및 제재 (Award Policies)	(제160조~제168조)	
제10장 최종규정(Final Provisions)		

주요내용

● 영업비밀

- 라오스 지식재산법은 산업재산의 범위¹⁾에 영업비밀을 포함(제9조)하고, 영업비밀에 대하여 산업재산으로서 등록인증을 받을 수는 없으나 지식재산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됨을 명시(제12조)
- (영업비밀) 통상적으로 해당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업적 가치를 지닌 공식, 생산 공정 또는 모든 정보로서 공개될 수 없는 비밀정보를 의미(제20조)
-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정보를 정직한 상업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 타인에 의해 취득, 또는 사용되는 것으로서(제61조제1항) 단, ① 리버스 엔지니어링, 실험실 테스트 또는 분석, 또는 유사한 수단을 통해 정보를 발견하는 경우와 ② 기밀 유지 또는 신뢰의 의무 없이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되며(동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21조(산업재산권 침해)에서 규정한 산업재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또한 제외됨²⁾

● 부정경쟁 관련 사항

- 지식재산법은 제6장(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제2절에서 별도로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나, 개별 조항 내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거나 또는 불공정 경쟁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음
- 특히 제6장 제2절의 경우 제124조(부정경쟁행위), 제125조(상표 위조), 제126조(저작권 침해)를 두고 있는 점에서, 지식재산법상 상표 위조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경쟁행위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부정경쟁행위) 산업 또는 상업 문제에 있어서 정직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 행위
- (법률에 명시된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법 제124조는 ① 재화의 출처나 생산자, 제조자 또는 상인의 신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직간접적인 사용, ② 경쟁자의 설립, 상품, 산업 또는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의 모든 행위, ③ 경쟁자의 설립, 상품, 산업 또는 상업 활동의 신용을 훼손하는 성질의 허위 주장, ④ 그러한 사용이 상품의 성질, 제조 공정, 특성, 목적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또는 주장의 사용의 4가지 행위를 금지되는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60조(지리적 표시 등록 소유자의 권리) 및 제62조(검사 또는 기타 데이터의 보호)의 경우에 각 조항 후단에 해당 조항 내에 서술된 부정경쟁행위를 명시

1)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상호, 반도체 배치설계,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2) 법에서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법 제23조(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표장) 및 제25조(등록할 수 없는 지리적 표시)에서 대중, 소비자 등을 오도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거나 경쟁자의 상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그 등록을 금지
- (침해의 처벌) 지식재산법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형사적 구제를 모두 두고 있으며, 침해의 정도에 따라 경고, 행정벌 등을 통한 제재를 규정
 - (민사적 구제조치) 피해자는 침해 발생의 방지를 위한 잠정조치(제144조), 일방적 잠정조치(제146조) 및 집행을 위한 구제조치(제140조)를 인민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관련조항: 제140조, 제141조, 제162조, 제166조). 이때,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기에 충분한 금액에 달하여야 함(제141조)
 - (형사적 구제조치) 제6부의 규정³⁾에 대한 고의적 위반은 형사범죄에 해당하므로(제148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지식재산권 침해(불공정 경쟁행위 포함)의 경우 또한 형사조치의 대상이 됨(제167조)
 - (기타) 고의 없이 최초로 행한 침해 행위로서 50만 킵 미만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육 또는 경고조치의 대상이 되며(제162조),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고의 없이 지식재산법을 위반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도 그것이 처음인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액의 1%, 고의로 2차 이상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제165조)

3) 산업재산권 침해(제121조), 식물신품종권 침해(제122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제123조), 불공정 경쟁행위(제124조), 상표 위조(제125조), 저작권 침해(제126조).

법령비교표

● 라오스 지식재산권법

라오스 지식재산법(2017)	번역
<p>Article 9. Industrial Property Industrial property is composed of:</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atents; 2. petty patents; 3. industrial designs; 4. trademarks; 5. trade names; 6. layout-design of integrated circuits; 7. geographical indications; 8. trade secrets. 	<p>제9조 산업재산권 산업재산은 다음으로 구성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 2. 실용신안 3. 산업디자인 4. 상표 5. 상호 6. 반도체 배치설계 7. 지리적 표시 8. 영업비밀
<p>Article 12. Industrial Property Eligible for Registration Certificate Industrial Property eligible for registration certificates are as follow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atent; 2. petty patent; 3. industrial design; 4. trade mark; 5. integrated circuit layout-design; 6. geographical indication. <p>Trade names and trade secrets are not required to be registered but shall be protected under this law.</p>	<p>제12조 등록증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산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허 2. 실용신안 3. 산업디자인 4. 상표 5. 반도체 배치설계 6. 지리적 표시 <p>상호 및 영업비밀은 등록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나,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p>
<p>Article 20. Trade Secrets A trade secret is a secret information which cannot be disclosed regarding to formula, production process or any information which has commercial value in the sense that it is not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p>	<p>제20조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통상적으로 해당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업적 가치를 지닌 공식, 생산 공정 또는 모든 정보로서 공개될 수 없는 비밀정보를 말한다.</p>
<p>Article 23. Marks Ineligible for Trademark Registration Marks ineligible for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be as follow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the mark that is of such a nature as to deceive or mislead the public or trade circles in which the mark is used or is of a fake or fraudulent nature; 4. the mark that consists of or comprises sign that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origin, nature,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characteristics, the suitability for their purpose, or the quantity, of the goods or services; 5. the mark that consists of or contains, without authorization from the relevant governmental entity, armorial bearings, flags, or other national emblems, and official signs, hallmarks, abbreviations or full names of towns, municipalities, provinces or capital of the Lao PDR or foreign countries; 6. the mark that consists of or contains, without authorization from the relevant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 emblem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p>제23조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표장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표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그 상표가 사용되는 대중 또는 거래집단을 속이거나 오도하는 성질의 표장, 또는 위조 또는 사기의 성질을 지닌 표장; 4.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성질, 제조 공정, 특성, 목적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는 표시를 구성하거나 그러한 표지로 구성되는 표장 5.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없이 라오스의 도시, 지방자치단체, 지방 또는 수도의 이름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문장, 깃발, 공식 기호, 특징, 약어로 구성되는 표장 6. 관련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승인없이 국제기구의 상징, 국제협약에 의해 생성된 상징, 공식인장 또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상징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표장

라오스 지식재산법(2017)	번역
<p>symbols creat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official seals or symbols of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p> <p>12. the above-mentioned mark that would lead to a likelihood of confusion as to the source of the goods or services or falsely suggest an association with the registered mark or well-known mark or trade name, as appropriate;</p> <p>13. the mark that consists of or bears a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identifies a place other than the true origin of the products;</p> <p>14. the mark that consists of or bears a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although literally true as to the territory, region or locality in which the goods originate, falsely represents to the public that the goods originate in another territory;</p> <p>16. the mark is of such a nature as to create confusion with the establishment, the goods, or the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ies, of a competitor;</p> <p>17. the mark is of such a nature that its use in the course of trade would discredit production place of goods, or the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ies, of a competitor;</p>	<p>12.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등록된 상표 또는 잘알려진 상표 또는 상호와의 연관성을 허위로 암시하는 표장</p> <p>13.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거나 구성된 표장</p> <p>14. 상품이 원산지인 영토, 지역 또는 지방에 관해서 문자 그대로 사실이지만 대중에게 상품이 다른 영토에서 유래한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표장</p> <p>16. 경쟁자의 설립, 상품 또는 산업 또는 상업 활동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성질을 갖는 표장</p> <p>17. 교역 과정에서의 그 사용이 경쟁자의 상품 생산지, 또는 산업 또는 상업 활동의 신용을 떨어뜨릴 정도의 성질을 지닌 표장</p>
<p>Article 25. Geographical Indications Ineligible for Registration</p> <p>Geographical indications ineligible for registration shall be as follows:</p> <p>1. geographical indications which are likely to mislead or confuse consumers as to the true source origin of goods;</p> <p>5. geographical indications which are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protected trademarks where use of the indications will lead to misunderstanding or confusion as to the origin of the said goods;</p>	<p>제25조 등록할 수 없는 지리적 표시 등록할 수 없는 지리적 표시는 다음과 같다:</p> <p>1.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p> <p>5. 보호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로서 그 표시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이 야기되는 경우</p>
<p>Article 55. Term of Protection of Trade Secrets</p> <p>Trade secrets are protected for an unlimited period or until their secrecy is lost.</p>	<p>제55조.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영업비밀은 무기한 또는 비밀성이 상실될 때까지 보호된다.</p>
<p>Article 58. Rights of the Trademark Owner</p> <p>A trademark owner has the following rights:</p> <p>(1. 2조 생략)</p> <p>3. to protect their rights under the law and regulations against infringements by others such as to institute court action, [and] right to compensation from damages caused by others.</p> <p>(생략)</p> <p>The rights described abov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well known marks and to trade names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y are registered.</p>	<p>제58조 상표권자의 권리 상표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p> <p>(1. 2조 생략)</p> <p>3. 타인의 침해로부터 법령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ex. 법원에 대한 소제기 등) [및] 타인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p> <p>위에 설명된 권리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잘 알려진 상표 및 상호에 준용된다.</p>
<p>Article 60 (revised). Rights of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Owner</p> <p>The owner of the registration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p> <p>1. to prevent others from apply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to goods or includ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a trademark, and to prevent the sale, advertising, importation, or export of goods bearing such indication or includ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such trademark;</p>	<p>제60조 지리적 표시 등록 소유자의 권리</p> <p>지리적 표시 등록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p> <p>1. 다른 사람이 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적용하거나 상표에 지리적 표시를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표시가 있거나 해당 상표에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품의 판매, 광고,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하는 것</p>

라오스 지식재산법(2017)	번역
<p>2. to object to the use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in item 1 above where related to wines or spirits, even in translation or accompanied by expressions such as "kind", "type", "style", "imitation" or the like;</p> <p>3. to protect a geographical indication against a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although literally true as to the territory, region or locality in which the goods originate, falsely represents to the public that the goods originate in another territory;</p> <p>4. to protect their rights under the law and regulations against infringements by others such as to institute court action, [and] right to compensation from damages caused by others.</p> <p>Only producers who carry out business undertakings within the geographical region specified f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may use the 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to which the geographical indication relates.</p> <p>Any act which is an infringement as described in item 1 or 2 of this Article shall be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including the use of any means in the designation or presentation of a good that indicates or suggests that the good originates in a geographical area other than its true place of origin and in a manner that misleads the public as to the geographical origin of the good.</p> <p>The rights provided in item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be applicable to an indication of goods that is confusingly similar to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or that are homonymous with it.</p>	<p>2. "종류", "유형", "스타일", "모조품" 등과 같은 표현을 수반하거나 번역된 경우, 와인 또는 증류주와 관련된 제1항의 지리적 표시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p> <p>3. 상품이 유래한 영토, 지역 또는 지방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사실이지만 대중에 대하여 상품이 다른 영토에서 유래한다고 허위로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응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p> <p>4.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법원 소송 제기 등 타인의 침해로부터의 권리 보호와 타인에 의한 손해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p> <p>지리적 표시에 대해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자만이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상품에 또는 이와 관련하여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p> <p>본 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는, 상품이 실제 원산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그리고 상품의 지리적 출처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지정 또는 표시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하여,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p> <p>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권리는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거나 동음이의어인 상품의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p>
<p>Article 61. Rights of Proprietor of Trade Secret The proprietor of a trade secret has the following rights:</p> <p>1. to prevent trade secret information lawfully in his control from being disclosed to, acquired by, or used by others without their consent in a manner contrary to honest commercial practices, except:</p> <p>1.1. discovery of the information by reverse engineering, laboratory testing or analysis, or similar means;</p> <p>1.2. acquiring the information without an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or trust.</p> <p>2. to protect their rights under the law and regulations against infringements by others such as to institute court action, [and] right to compensation from damages caused by others;</p> <p>3. to prevent individual, legal entity or organization from misappropriating the trade secret;</p> <p>4. to disclose, withdraw or utilize trade secret or transfer to other person for disclosure, withdrawal or utilization of trade secret, by defining contents and requirements of keeping secret;</p> <p>5. to control any person who is lawfully in control of the trade secret from employment or a contract or other agreement, where such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shall remain in effect so long as the information remains secret even where the employment, contract or other agreement terminates sooner;</p> <p>No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trade secret.</p>	<p>제61조. 영업비밀 소유자의 권리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p> <p>1. 합법적으로 그의 통제 하에 있는 영업비밀정보가 정직한 상업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 타인에 의해 취득, 또는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p> <p>1.1. 리버스 엔지니어링, 실험실 테스트 또는 분석, 또는 유사한 수단을 통한 정보를 발견하는 경우</p> <p>1.2. 기밀 유지 또는 신뢰의 의무 없이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p> <p>2.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법원 소송 제기 등 타인의 침해로부터의 권리 보호와 타인에 의한 손해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p> <p>3.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p> <p>4. 비밀유지의 내용 및 요건을 정하여 영업비밀을 공개, 철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공개, 철회 또는 이용하도록 하는 것</p> <p>5. 고용,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이 곧 만료된다 하더라도,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한 그 비밀유지의무가 효력을 갖는 고용,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서, 해당 영업비밀을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자를 통제하는 것</p> <p>영업비밀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p>

라오스 지식재산법(2017)	번역
<p>Article 62. Protection of Test or Other Data Where marketing approval of pharmaceutical or of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that utilize a new chemical entity is conditioned on the submission of undisclosed test or other data, the origination of which involves a considerable effort, such data shall be protected against unfair commercial use and against disclosur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that originated such data, provided however that such data may be disclosed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tect the public. No person other than the person that submitted the data may, without the latter's permission, rely on such data in support of an application for product approval during a period of five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Lao PDR granted approval to market the product to the person that produced the data. Any act in viola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The owner of data describ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right to take measures to enforce rights under this Article and shall have the right, subject to any exceptions provided in this law, to institute court action against an individual, legal entity or organization who performs such acts of unfair competition or who performs acts that make it likely that such acts of unfair competition will occur.</p>	<p>제62조. 검사 또는 기타 데이터의 보호 새로운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농화학 제품의 판매 승인이 비공개 테스트 또는, 그 출처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기타 데이터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만든 자의 동의 없이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 및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단, 그러한 데이터는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수 있다. 데이터를 제출한 자 이외의 그 어떤 자도, 라오스 정부가 데이터를 생산한 자의 제품 판매를 승인한 날 이후로부터 5년 동안, 데이터를 생성한 자의 허가 없이, 제품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에 의존할 수 없다.</p> <p>본 조를 위반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행위로 한다. 본 조에 설명된 데이터의 소유자는 본 조에 따른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와, 본 법률에 규정된 예외에 따라, 불공정 경쟁행위를 하거나 불공정 경쟁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p>
<p>Article 121. Violation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Violations of industrial property are any acts as provided in Article 56 to 62 of this law without authorization from industrial property owner. The acts set forth in paragraph 1 above shall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industrial property where: 1. the claimed right is invalid because the conditions for protection have not been satisfied; 2. the term of protection has expired or the right is no longer in effect; 3. where authorization of the owner is required, the owner has granted such authorization or, for patents or petty patents, authorization has been granted pursuant to an order under Article 63 of this law; 4. the use on board vessels of other countries of devices forming the subject of a patent in the body of the vessel, in the machinery, tackle, gear and other accessories, when such vessels temporarily or accidentally enter the waters of the Lao PDR, provided that such devices are used in this country exclusively for the needs of the vessel; 5. the use of devices forming the subject of the patent in the construction or operation of aircraft or land vehicles of other countries, or of accessories of such aircraft or land vehicles, when those aircraft or land vehicles temporarily or accidentally enter the Lao PDR; 6. exceptions or limitations set forth in this law.</p>	<p>제121조 산업재산권 침해 산업재산권의 침해란 산업재산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행해진 이 법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규정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전단에 규정된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산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된 권리가 무효인 경우 2.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권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3.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승인을 허여했거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과 관련해, 이 법의 제63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승인이 허여된 경우 4. 타국의 선박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라오스 수역에 진입한 경우에, 선박의 본체, 기계, 태클, 기어 및 기타 부속품에서 특허의 대상을 구성하는 장치가 부착된 타국의 선박을 사용한 경우로서 단, 해당 장치가 그 선박의 필요를 위해서만 이 국가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5. 타국 항공기 또는 육상차량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라오스 영역에 진입한 경우에, 그러한 타국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의 건설 또는 운용에 있어서 특허 대상을 구성하는 장치의 사용, 또는 그러한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의 부속품의 사용 6. 이 법에 명시된 예외 또는 제한 사항
<p>Article 124. Unfair Competition Any act of competition contrary to honest practices in industrial or commercial matters constitute an act of unfair competition.</p>	<p>제124조. 부정경쟁행위 산업 또는 상업 문제에 있어서 정직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p>

라오스 지식재산법(2017)	번역
<p>The following acts shall constitute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shall be prohibited:</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rect or indirect use of a false indication of the source of a good or the identity of the producer, manufacturer, or merchant; 2. all acts of such a nature as to create confusion by any mean whatever with the establishment, the goods, or the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ies, of a competitor; 3. false allegations of such a nature as to discredit the establishment, the goods, or the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ies, of a competitor; 4. use of indications or allegations where such use is liable to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nature,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characteristics, the suitability for their purpose, or the quantity, of the goods. 	<p>다음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금지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화의 출처나 생산자, 제조회사 또는 상인의 신원을 허위로 표시하는 직간접적인 사용 2. 경쟁자의 설립, 상품, 산업 또는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의 모든 행위 3. 경쟁자의 설립, 상품, 산업 또는 상업 활동의 신용을 훼손하는 성질의 허위 주장 4. 그러한 사용이 상품의 성질, 제조 공정, 특성, 목적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또는 주장의 사용
<p>Article 125. Trademark Counterfeiting Counterfeit trademark goods shall mean any goods including packaging, bearing without authorization a trademark which is identical to the trademark validly registered in respect of such goods, or which cannot be distinguished in its essential aspects from such a trademark, and which thereby infringes the rights of the owner of the trademark in question under this law. It shall be a violation of this law to create, sell, offer for sale, advertise or otherwise market, or to import or export counterfeit trademark goods.</p>	<p>제125조 상표 위조 위조상품이란, 그러한 상품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상표와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이 법에 따라 해당 상표의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가 승인 없이 부착된, 포장을 포함한 모든 상품을 의미한다.</p> <p>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판매 제안, 광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마케팅하거나, 또는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한다.</p>
<p>Article 127. Forms of Dispute Resolutio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may be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form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Reconciliation; 2. Mediation; 3. Administrative remedies; 4. Remedy through Economic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5. Judicial actions to People's Courts; 6.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제127조 분쟁해결의 방식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은 다음의 형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해 2. 조정 3. 행정적 구제 4. 경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제 5. 인민법원에 대한 소송 6. 국제분쟁해결
<p>Article 133. Judicial Actions to People's Court The parties may file an action to the People's Court to decide o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p>	<p>제133조 인민법원에 대한 소송 당사자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결정을 인민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p>
<p>Chapter 2 Court Proceedings and Application of Measures</p>	<p>제7장 제2절 법원절차 및 조치의 적용</p>
<p>Article 135. Court Proceeding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s A plaintiff suffering from a violation of its intellectual property has the right to file a judicial action to the People's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Civil Procedures and other relevant laws.</p>	<p>제135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원 절차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원고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사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p>
<p>Article 136. Plaintiff A plaintiff in the meaning of Article 135 of this law may be intellectual property owner, federations or associations representing interested industrialists, producers, or merchants, and the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or any other person who suffers damages from any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p>	<p>제136조. 원고 이 법 제135조에서 말하는 원고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손해를 입은 지식재산권 소유자, 이해관계자, 생산자 또는 상인을 대표하는 연맹 또는 협회에 해당할 수 있다.</p>

라오스 지식재산법(2017)	번역
<p>Article 137. Jurisdiction of People’s Court for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The People’s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ll viol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s provided for in the Law on Civil Procedures and the Law on Criminal Procedures as the case may be.</p>	<p>제137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민법원의 관할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모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다.</p>
<p>Article 138. Special Evidence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ceedings (생략) Where a party has presented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ufficient to support its claims and has specified evidence relevant to substantiation of its claims which lies in the control of the opposing party, the People’s Court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at this evidence be produced by the opposing party, subject in appropriate cases to conditions which ensure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Where such party to a proceeding voluntarily and without good reason refuses access to, or otherwise does not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r significantly impedes a procedure relating to an enforcement action, the People’s Court may proceed to make preliminary and final determinations, affirmative or negative,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presented to it, including the complaint or the allegation presented by the party adversely affected by the denial of access to information, subject to providing the parties an opportunity to be heard on the allegations or evidence. Any individual, legal entity or organization who asserts that an act of infringement or unfair competition is excused as provided in paragraph 2 of Article 121 of this law shall have the burden of proving such facts. This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cts of infringement of plant variety rights,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or other violations set forth in this law.</p>	<p>제138조 지적재산권 소송에 관한 특별증거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 당사자가 통제하는 주장의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명시한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를 상대방이 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호를 보장하는 조건에 따라 적절한 경우 본인 또는 소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접근을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집행 조치와 관련된 절차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예비 및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보의 접근 거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제기한 불만 또는 주장을 포함하여 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며 당사자에게 주장 또는 증거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 제121조 제2항에 규정된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법인, 조직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식물품종권,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위반행위에 준용한다.</p>
<p>Article 139. Invalidity and Cancellation or Elimination Where a patent, petty patent, industrial design registration, trademark registration, integrated circuit layout-design registration, or plant variety protection certificate is held invalid by the People’s Cour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cancel or eliminate such intellectual property accordingly. In the case of patents or petty patents, such holding shall specify the patent or petty patent claims to which the holding applies.</p>	<p>제139조. 무효와 취소 또는 말소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등록, 상표등록, 반도체배치설계등록, 식물품종보호증명서가 인민법원에서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 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적재산권을 취소 또는 말소한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경우, 그 판결은 판결이 적용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명시해야 한다.</p>
<p>Article 140. Remedies for Civil Enforcement In the court proceedings, the plaintiff may request the People’s Court to: 1. Order the infringer to desist from an infringement; 2. Order the suspension of Customs procedures; 3. Order the seizure of goods to prevent the entry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 of imported goods that involve the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mmediately after customs clearance of such goods;</p>	<p>제140조. 민사적 집행을 위한 구제조치 법원 절차에서 원고는 인민법원에 다음을 청구할 수 있다: 1. 침해자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명령 2. 세관 절차의 중단 명령 3. 통관 후 즉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상품의 상업경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상품 압수 명령</p>

라오스 지식재산법(2017)	번역
<p>4. Order a declaratory judgment of infringement;</p> <p>5. Order the infringer to pay damages adequate to compensate;</p> <p>6. Order the infringer to pay the right holder expenses, which may include appropriate attorney's fees;</p> <p>7. Order that goods that have been found to be infringing, be destroyed or otherwise disposed of in such a manner that such goods will not enter channels of commerce;</p> <p>8. Order that materials and implements the predominant use of which has been in the creation of the infringing goods be disposed of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in such a manner as to minimize the risks of further infringements.</p> <p>In considering requests under items 7 and 8 above, the People's Court shall take into account for proportionality between the seriousness of the infringement and the remedies ordered as well as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In regard to counterfeit trademark goods, the simple removal of the trademark unlawfully affixed shall not be sufficient to permit the release of the goods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p>	<p>4. 침해에 대한 선언적 판결 명령</p> <p>5. 침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명령</p> <p>6. 침해자에 대해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권리보유자의 비용 지급 명령</p> <p>7. 침해로 판명된 상품에 대해 해당 상품이 상업경로 진입하지 않도록 파기 또는 처분 명령</p> <p>8. 침해 상품의 제작에 주로 사용되었던 재료 및 도구에 대해 추가적 침해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업경로 외부에서 처분하도록 명령</p> <p>위의 제7항과 제8항에 따른 청구를 고려할 때, 인민법원은 제3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침해의 심각성 및 명령된 구제조치 사이의 비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위조 상표 상품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상품을 상업경로로 출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다.</p>
<p>Article 141. Damage Awards</p> <p>The People's Court shall set damage awards in an amount sufficient to compensate the party making the claim for its losses and to deprive the infringer or other violator of any profit from its unlawful act. The People's Court may order recovery of profits and/or payment of damages even where the infringer did not knowingly, or with reasonable grounds to know, engage in infringing activity.</p>	<p>제141조. 손해배상금</p> <p>인민법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침해자 또는 기타 위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활동에 참여한 경우에 그 이익의 회복 및/또는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p>
<p>Article 142. Right of Information</p> <p>Unless it would be out of proportion to the seriousness of the infringement, the plaintiff may request the Court to order a violator to inform the party bringing the action of the identity of third persons involv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infringing goods or services and of their channels of distribution.</p>	<p>제142조 정보에 대한 권리</p> <p>침해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상품 또는 소비자의 생산, 배포에 관련된 사항, 유통 채널 등을 알리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Article 144. Provisional Measures</p> <p>An individual, legal entity or organization may file a complaint requesting the People's Court to order prompt and effective provisional measures to:</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revent an infringement of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rom occurring; 2. prevent the entry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 of goods, including imported goods immediately after customs clearance; 3. preserve relevant evidence in regard to the alleged infringement. 	<p>제144조. 잠정조치</p> <p>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의 방지 2. 통관 직후 즉시 수입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상업경로 진입 방지 3. 침해 주장과 관련된 관련 증거의 보존
<p>Article 145.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for Provisional Measures</p> <p>An application for provisional measures shall be required to:</p>	<p>제145조. 잠정조치 적용요건</p> <p>잠정조치의 신청은 다음을 요건으로 한다:</p>

라오스 지식재산법(2017)	번역
<p>1. provide any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in order to satisfy the Court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applicant is the right holder and that the applicant's right is being infringed or that such infringement is imminent;</p> <p>2. provide a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o prevent abuse;</p> <p>3. supply other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goods concerned by the authority that will execute the provisional measures.</p>	<p>1. 신청인이 권리보유자이고,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했음에 대해 법원에 충분한 확신을 갖도록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의 제공</p> <p>2. 피고를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담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의 제공</p> <p>3. 잠정조치를 집행할 당국이 해당 상품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기타 정보의 제공</p>
<p>Article 146. Provisional Measures Inaudita Altera Parte An applicant may file a claim requesting the People's Court to adopt provisional measures inaudita altera parte where appropriate, in particular where any delay is likely to cause irreparable harm to the right holder, or where there is a demonstrable risk of evidence being destroyed. Where provisional measures have been adopted inaudita altera parte, the parties affected shall be given notice, without delay after the execution of the measures at the latest. A review, including a right to be heard, shall take place upon request of the defendant with a view to deciding,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e notification of the measures, whether the provisional measures should be modified, revoked or confirmed.</p>	<p>제146조. 일방적 잠정조치 신청인은, 특히 지연으로 인해 권리자에게 돌아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증거가 인멸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적절한 일방적 잠정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방적 잠정조치가 채택된 경우, 늦어도 조치를 시행한 후에 지체 없이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견청취권을 포함한 검토는 조치를 통지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잠정조치의 수정, 취소 또는 확정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p>
<p>Article 147. Review of Provisional Measures Provisional measures taken on the basis of Articles 144 and 145 of this law shall, upon request by the defendant, be revoked or otherwise cease to have effect, if proceedings leading to a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are not initiat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to be determined by the People's Court ordering the measures but, not to exceed 20 working days or 31 calendar days, whichever is the longer. Where the provisional measures are revoked or where they lapse due to any act or omission by the applicant, or where it is subsequently found that there has been no infringement or threat of infringement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eople's Court shall have the authority to order the applicant, upon request of the defendant, to provide the defendan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any injury caused by these measures.</p>	<p>제147조. 잠정조치의 검토 이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근거하여 취한 잠정조치는,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시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인민법원의 조치 명령에 따라 취소되거나 효력이 중지되며, 단 이는 20영업일 또는 31일 중 더 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인의 착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소멸된 경우,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p>
<p>Article 148. Criminal Offens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criminal offenses of intellectual property are intentional violations of Articles 121, 122, 123, 124, 125 and/or 126 of this law.</p>	<p>제148조. 지식재산에 대한 형사범죄 이 법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및/또는 제126조의 고의적 위반은 지식재산에 대한 형사범죄를 구성한다.</p>
<p>Article 150 (revised). Rights and Duties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rights and duties in accordance with its responsibilities as follows: (생략) 8. to resolve requests, administrative dispute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	<p>제150조 과학기술부의 권리와 의무 지식재산의 관리에 있어 과학기술부는 그 책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생략) 8. 지식재산권에 관한 요청, 행정분쟁 해결</p>

라오스 지식재산법(2017)	번역
<p>Article 154 (revised). Prohibitions on Government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Government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are prohibited from:</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lacking of responsibility and neglecting one's duties; 2. carrying out duties unfairly or showing partiality towards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organization; 3. disclosing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without authorization from the owner; 4. abusing one's position, duties, power for personal, family or relative interests; 5. having other behavior violating laws. 	<p>제154조 지식재산권 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금지사항 지식재산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다음행위가 금지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책임회피 또는 직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편파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 3. 소유자의 허가 없이 지식재산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4. 직위, 직무, 권력을 개인, 가족 또는 상대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행위 5.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p>Article 162. Measures against Violators Individuals, legal entities or organizations that violate this law shall be subject to education or warning, disciplinary action, fines, civil compensation, and/or criminal punishment as the case may be.</p>	<p>제162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법을 위반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경우에 따라, 교육 또는 경고, 징계, 벌금, 민사상 손해배상 및/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p>
<p>Article 163. Education or warning Measures Individuals, legal entities or organizations that violate this law for the first time which is an unintentional violation and resulted in damages of less than 500,000 Kip shall be educated or warned.</p>	<p>제163조 교육 또는 경고조치 본 법을 고의 없이 처음으로 위반하여 500,000킵(Kip) 미만의 피해를 입힌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은 교육 또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p>
<p>Article 164. Disciplinary Measures Government officers who violate this law especially its prohibitions which are not criminal offences shall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Government Officers.</p>	<p>제164조. 징계조치 이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 특히 형사범죄가 아닌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조치를 받는다.</p>
<p>Article 165). Fines Individuals, legal entities or organizations which intentionally violate the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or who unintentionally violate the law which is not criminal offences shall be fined 1% of the damages value occurred. Individuals, legal entities or organizations that intentionally violates for a second time or repeatedly shall be fined 5% of the damages value occurred for each violation.</p>	<p>제165조. 벌금 지식재산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또는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고의 없이 해당 법률을 위반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발생한 손해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로 2차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각 위반행위마다 발생한 손해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p>
<p>Article 166. Civil Measures Individuals, legal entities or organizations that violate this law and causes damages to any other person shall be liable for such damages.</p>	<p>제166조. 민사조치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p>
<p>Article 167. Criminal Measures Individuals or legal entities that viola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counterfeit, deceive, fraud unfair competition that result in serious damages, produce, sales of counterfeit goods or trademark counterfeiting or infringement of copyrights or related rights and regulations on industrial property protection and new plant variety shall be punished as the case may be.</p>	<p>제167조. 형사조치 지식재산권, 특히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위조, 기만, 사기적 불공정 경쟁행위, 위조 상품 또는 상표의 생산, 판매, 또는 저작권 또는 인접권의 침해와 산업재산보호 및 식물신품종에 관한 규정을 침해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경우에 따라 처벌된다.</p>
<p>Article 168. Additional Measures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s set forth in Articles 167 of this law, the violator may be subject to additional measures, in particular, suspension, withdrawal of business licenses, seizure of infringing goods, properties and equipment involving in the offence according to the final decision by the competent court.</p>	<p>제168조 추가적 조치 이 법 제167조에 규정된 처벌 외에도 위반자는, 특히 관할법원의 최종결정에 따라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침해 상품, 재산 및 장비 압류와 같은, 추가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3 장

말레이시아

법령요약

● 말레이시아 상표법(Trade Marks Act 2019)

- (전면개정) 2019. 12. 9. / (시행) 2019. 12. 27.

말레이시아 상표법		내용
제1부 서문 (Part I Preliminary)		(제1조~제9조) 명칭, 정의(상표, 유명상표, 선행상표 등) 등
제2부 행정 (Part II Administration)		(제10조~제13조) 등록기관, 등록기관 등의 보호
제3부 상표 등록부 (Part III The Register of Trademarks)		(제14조~제15조) 상표등록부, 등록부 점검
제4부 상표 등록 (Registration of Trademarks)	제1장 서문 (Introductory)	(제16조) 등록상표
	제2장 상표등록출원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rademarks)	(제17조~제22조) 상표등록출원, 서류출원, 출원일 등
	제3장 등록거절사유 (Grounds for Refusal of Registration)	(제23조~제25조) 상표등록의 절대적 및 상대적 거절사유, 정당한 병행적 사용
	제4장 우선권 (Priority)	(제26조~제28조) 조약출원 등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
	제5장 심사 (Examination)	(제29조~제31조) 출원심사, 자발적 권리불요구, 요건 또는 제한, 승인의 공개
	제6장 상표등록출원의 철회, 한정 또는 보정 (Withdrawal, Restriction or Amendment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rademark)	(제32조~제33조) 상표등록출원의 철회 또는 제한, 보정 등
	제7장 이의신청 (Opposition)	(제34조~제35조)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절차
	제8장 등록 (Registration)	(제36조) 등록
제5부 분할 및 병합 (Division and Merger)		(제37조~제38조) 분할출원, 병합출원
제6부 상표등록의 유지 및 갱신 (Duration and Renewal of Registered Trademarks)		(제39조~제41조) 등록유지 및 갱신, 말소 등
제7부 변경, 정정, 취소, 취소 및 무효 (Alteration, Correction, Cancellation, Revocation and Invalidity)		(제42조~제47조) 등록상표의 변경, 취소, 등록부 정정, 불사용 상표 취소 등
제8부 등록상표의 효력 (Effects of Registered Trademarks)	제1장 등록상표소유자의 권리 (Rights of Registered Proprietor of Trademark)	(제48조~제53조) 등록상표소유자의 권리, 타 등록 유사상표에 따른 권리의 제한 등
	제2장 상표침해 (Infringement of Trademarks)	(제54조~제61조) 등록상표 침해행위, 비침해행위, 침해에 대한 조치 등
제9부 재산의 대상으로서 상표 (Trademarks of Object of Property)		(제62조~제67조) 재산으로서의 등록상표의 본질, 등록상표 공동소유권, 양도 등
제10부 라이선싱 (Licensing)		(제68조~제71조) 등록상표 라이선싱, 독점 사용권자의 권리 등

말레이시아 상표법		내용
제11부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 (Collective Marks and Certification Marks)		(제72조~제73조) 단체표장, 증명표장
제12부 국제문제 (International Matters)	제1장 마드리드 협정 (Madrid Protocol)	(제74조~제75조) 해석, 마드리드 협정 관련 규정
	제2장 조약 및 국제적 합의	(제76조~제80조) 유명상표의 보호, 파리조약에 따른 조약국의 국가적 상징 보호 등
제13부 국경조치 (Border Measures)		(제81조~제94조) 침해물품 수입의 제한, 보안, 압수물품의 보관, 검사, 통지 등
제14부 상표대리 (Trademark Agents)		(제95조~제98조) 상표대리의 승인, 등록, 상표대리 등록부 등
제15부 벌칙 (Offence)		(제99조~제108조) 상표 위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의 허위 적용, 위법한 물건의 생산 또는 소유, 허위로 적용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
제16부 조사 및 집행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제1장 조사 및 청구 (Investigation and Complaints)	(제109조~제112조) 관리자, 부관리자 또는 보조관리자의 권한 등
	제2장 정보수집권한 (Information Gathering Powers)	(제113조~제118조)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보조관리자의 권한, 보조관리자의 서류 보관, 기밀성, 면책특권, 허위의 또는 오인가능한 정보, 증거 또는 서류의 제공, 기록의 파괴, 은폐, 훼손 및 변조
	제3장 체포, 검색, 압수 등 (Powers of Arrest, Search, Seizure etc.)	(제119조~제139조) 체포권한, 출입, 물품의 검사 및 압수 등의 권한, 재판 관할권 등
제17부 소송절차, 비용 및 증거 (Legal Proceedings in Court, Cost and Evidence)		(제140조~제147조) 등록기관에 대한 법정 신청, 소송절차 비용 등
제18부 기타 및 일반 (Miscellaneous and General)		(제148조~제163조) 지식재산관보, 전자제출, 문서의 전자적 발급 등
제19부 폐지, 유보, 경과규정 (Repeal, Savings and Transitional Provisions)	제1장 폐지 및 유보 (Repeal and Savings)	(제164조) 폐지 및 유보
	제2장 상표경과규정 (Transitional Provisions for Trademarks)	(제165조~제183조) 경과규정

● 말레이시아 상품표시법(Trade Descriptions Act 2011)

- (전면개정) 2011. 8. 18. / (시행) 2011. 11. 1.

- 말레이시아 상품표시법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 허위의 거래표시, 허위 또는 오인을 유도하는 진술, 행위 및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허위표시가 있는 상거래에 대한 형사상 구제 규정을 포함

※ 상품표시법은 지식재산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일부 명시적 규정에 대하여만 검토를 진행함

주요내용

- 말레이시아는 별도의 부정경쟁 또는 영업비밀 관련 법령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상표법상 등록거절 사유 및 유명상표의 보호와 관련해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성격이 반영된 조항을 일부 두고 있으며, 상표법 및 상품표시법을 통해 우리의 영업비밀과 유사 개념인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의 보호에 대해 규정
 - 단, 기밀정보와 관련해 두 법률⁴⁾ 모두 ‘조사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정보수집권한을 규정함에 있어서의 기밀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업비밀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 필요
 - 상표법 및 상품표시법 규정은 전반적으로 동일하나, 상표법에서 ① 기밀정보의 범위에 ‘상표법에 따라 기밀로 간주되는 모든 정보’를 추가하여 포함하고, ② 기밀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
- 말레이시아 상표법(Trade Marks Act 2019)
 - (등록거절사유) 상표의 사용이 대중을 기만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해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성격을 지닌 상표의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도덕에 반하는 경우 그 등록을 거절하도록 함(제23조)
 - (유명상표) 유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조항(제76조)은 유명상표에 따른 금지명령청구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것이 ‘악의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하며(동조 제5항 및 제6항) 이는 악의적으로 유명상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그 고의에 따른 제재 및 처벌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됨
 - (유명상표의 악의적 사용의 처벌) 유명상표의 악의적 사용은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며(제76조제2항),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일반규정에 따라 그 유명상표가 위조(제99조) 또는 허위적용(제100조)되었거나, 그 사본을 만들기 위한 물품을 제작 또는 보유하거나(제101조), 허위적용된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제102조)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됨
 - (기밀정보) ① 어떤 사람에게 속한 무역, 사업 또는 산업 정보로서 ②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③ 타인이 이를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알지 못하는 것 ④ 상표법에 따라 기밀로 간주되는 모든 정보
 - (기밀정보 침해행위) 상표법 규정에 따라 획득한 특정 기업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기밀정보 또는 문서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기밀정보 침해의 처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0만 링깃 이하의 벌금
 - (기밀정보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① 정보 또는 문서를 획득한 사람의 동의 하에 기밀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② 제공된 정보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4) 「말레이시아 상표법」 제16부(조사 및 집행) 제2장(정보수집권한) / 「상품표시법」 제7부(조사 및 집행) 제2장(정보수집권한)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③ 정보가 이미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④ 관리자, 부관리자 또는 보조관리자의 기능 또는 권한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⑤ 상표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공개되고, 그러한 공개가 절차 개시 전에 행해진 관리자, 부관리자 또는 보조관리자의 지시에 반하지 않는 경우, ⑥ 상표법에 따른 위법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 말레이시아 상품표시법(Trade Descriptions Act 2011)

- (기밀정보) ① 어떤 사람에게 속한 무역, 사업 또는 산업 정보로서 ②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③ 타인이 이를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알지 못하는 것
- (기밀정보 침해행위) 상표법 규정에 따라 획득한 특정 기업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기밀정보 또는 문서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기밀정보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① 정보 또는 문서를 획득한 사람의 동의 하에 기밀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② 제공된 정보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③ 정보가 이미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④ 관리자, 부관리자 또는 보조관리자의 기능 또는 권한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⑤ 상표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공개되고, 그러한 공개가 절차 개시 전에 행해진 관리자, 부관리자 또는 보조관리자의 지시에 반하지 않는 경우, ⑥ 상표법에 따른 위법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 영업비밀⁵⁾

- (정의) 라이선스가 부여되거나 판매될 수 있는 기밀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으로 연구, 엔지니어링 데이터, 엔지니어링 도면, 프로세스 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의 기술정보, 마케팅 전략, 생산 데이터 또는 상업활동과 관련된 상업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용어의 정의) 영업비밀은 '기밀정보'라는 용어와 상호교환이 가능하며, 말레이시아 내에서 별도의 등록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영업비밀이 악용될 경우 해당 침해자에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호요건) ① 기밀정보일 것, 영업비밀은 제한적인 사람에게만 알려져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되며 공개된 도메인에 존재하여서도 아니됨, ② 해당 정보다 영업비밀로 간주된다는 점을 관련한 모든 당사자에게 분명히 하여야 함
- (보호기간) 영업비밀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정해진 기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영업비밀의 자격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한 보호됨
- (형사책임) 영업비밀 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의 구제 외에도 '재산'인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모든 법의 처벌규정에 영업비밀을 대입하여 해석할 수 있음)⁶⁾

5) <https://www.qualityoracle.com/trade-secret-protection-in-malaysia/> (2021. 7. 26. 최종방문)

6)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trade-secrets-2021/malaysia> (2021. 7. 26. 최종방문)

제3장

말레이시아

대상조항	위반행위	처벌규정
형법 제378조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부정직하게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서 동산을 가져갈 의도가 있는 사람이 해당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 이동시키는 행위를 '절도'라고 한다. "동산"이라는 용어는 토지와 땅에 붙어있거나, 땅에 붙어 있는 모든 것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리적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영업비밀에의 적용 : 영업비밀 소유자의 동의없이 영업비밀을 가져가 의도가 있는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형법 제403조	재산을 부정직하게 남용하거나 자신을 위한 용도로 전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처분하게 하는 자 >> 영업비밀에의 적용 : 개인이 재산을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용하거나 자신의 용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분하게 하는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997년 컴퓨터범죄법 제3조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보호할 의도로 컴퓨터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 때 해당 컴퓨터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하는 경우	50,000MYR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병과할 수 있음)
1997년 컴퓨터범죄법 제3조	사람이 번호, 코드, 암호 또는 컴퓨터에 대한 기타 접근 수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25,000MYR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병과할 수 있음)
2016년 회사법 제218조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은 총회의 동의없이 다음을 수행할 수 없다. -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는 행위 -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라는 직책으로 인해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는 행위 -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회사의 모든 기회를 사용하는 행위 -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3,000,000MYR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조사, Discovery) 법원은 Discovery 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때 자신 또는 다른 당사자의 사건을 지지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서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음,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에 대한 Discovery 실행을 위하여 사전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⁷⁾
- (소송 중 비밀 유지) 법원은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기밀유지 명령 또는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음⁸⁾

7)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trade-secrets-2021/malaysia> (2021. 7. 26. 최종방문)

8)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trade-secrets-2021/malaysia> (2021. 7. 26. 최종방문)

법령비교표

● 말레이시아 상표법(Trade Marks Act 2019)

말레이시아 상표법(2019)	번역
<p>23. Absolute grounds for refusal of registration (5) In addition to the grounds in subsections (1), (3) and (4), the Registrar shall refuse to register a trademark based on any of the following absolute grounds for refusal of registration: (a) if the use of the trademark is likely to deceive or cause confusion to the public or contrary to any written law; (b) if it is of such a nature as to deceive or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nature, quality or geographical origin of the goods or services; (c) the trademarks are contrary to public interest or to morality;</p>	<p>제23조 절대적 등록거절사유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사유에 더하여,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절대적인 등록거절사유에 따라 상표등록을 거절해야 한다. (a) 상표의 사용이 대중을 기만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성문법에 반하는 경우 (b)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해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성격의 경우 (c) 상표가 공공의 이익 또는 도덕에 반하는 경우</p>
<p>24. Relative grounds for refusal of registration (2) The Registrar shall refuse to register a trademark if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a) where the trademark is identical with an earlier trademark and is to be registered for goods or services similar to the earlier trademark; or (b) where the trademark is similar to an earlier trademark and is to be registered for goods or service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earlier trademark. (3) The Registrar shall refuse to register a trademark if— (a) it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 well-known trademark which is not registered in Malaysia and it is to be registered for the identical goods or services of the proprietor of the well-known trademark; or (b) it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 well-known trademark which is registered in Malaysia and it is to be registered for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identical or not similar to those in respect of which the well-known trademark is registered and— (i) the use of the trademark in relation to those goods or services would indicate a connection between those goods or services and the proprietor of the well-known trademark; (ii)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because of such use; and (iii) the interests of the proprietor of the well-known trademark are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use.</p>	<p>제24조 상대적 등록거절사유 (2) 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대중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표의 등록을 거절해야 한다. (a) 상표가 이전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이전의 상표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되는 경우 ; (b) 상표가 이전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이전의 상표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되는 경우 ; (3)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a) 말레이시아에 등록되지 않은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하며, 저명상표 소유자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하려는 경우 (b)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하며, 저명상표가 등록된 것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이 때 (i)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의 사용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저명상표의 권리자와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ii) 그러한 사용으로 인해 대중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iii) 잘 알려진 상표 소유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으로 인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56. (1) The registered proprietor shall have the right to institute Court proceedings against any person who has infringed or is infringing the registered trademark. (2) The registered proprietor shall have the same right of action on subsection (1) against any person who has performed acts which will make it likely that an infringement will occur.</p>	<p>제56조 (1)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를 침해했거나 침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상표권자는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항에 따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말레이시아 상표법(2019)	번역
<p>(3) In an action for an infringement, the Court may grant relief including the following :</p> <p>(a) an injunction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Court thinks fit which includes to prevent goods that involve the infringement from entering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 ;</p> <p>(b) damages ;</p> <p>(c) an account of profits ; or</p> <p>(d) in any case to which subsection (7) applies, the award of such additional damage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by the Court.</p> <p>(4) Notwithstanding paragraph (3)(a), upon the application of the plaintiff for an interim injunction, when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infringement involves the use of a counterfeit trade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the Court may order -</p> <p>(a) the seizure or taking into custody of suspected infringing goods, materials or articles relevant to the infringement; and</p> <p>(b) the supply of documentary evidence relevant to the infringement.</p> <p>(5) When the Court awards any damages under paragraph (3)(b), the Court may also make an order under paragraph (3)(c) for an account of profits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 that have not been taken into account in computing the damages.</p> <p>(6) Except as provided for in subsection (5), the relief referred to in paragraphs (3)(b) and (c) are mutually exclusive.</p> <p>(7) In any action for infringement of a registered trademark where the infringement involves the use of a counterfeit trade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at his election, to -</p> <p>(a) damages and an account of profits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 that have not been taken into account in computing the damages ;</p> <p>(b) an account of profits ; or</p> <p>(c) additional damage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p> <p>(8) Pursuant to paragraph (7)(c), the Court shall have regard to -</p> <p>(a) the flagrancy or the infringement of the registered trademark ;</p> <p>(b) any benefit shown to have accrued to the defendant by reason of the infringement ;</p> <p>(c) the need to punish the defendant for such act of infringement; and</p> <p>(d) all other relevant matters.</p> <p>(9) Notwithstanding the claim for priority made under section 26, 27 or 28,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entitle the registered proprietor to recover any relief under subsection (3) for infringements or any happening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for protection of the trademark is made and become registered in Malaysia.</p>	<p>(3)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 구제를 승인할 수 있다.</p> <p>(a) 침해와 관련된 상품이 상업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하여, 법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금지 명령에</p> <p>(b) 손해;</p> <p>(c) 이익 계정 또는</p> <p>(d) (7)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손해 배상의 결정.</p> <p>(4) 단락 (3)(a)에도 불구하고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침해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위조 상표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명령할 수 있다.</p> <p>(a)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자료 또는 침해와 관련된 물품의 압류 또는 보관</p> <p>(b) 침해와 관련된 문서 증거의 제공.</p> <p>(5) 법원이 (3)(b)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침해로 인한 이익 중 고려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3)(c)항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p> <p>(6)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항(b) 및 (c)항에 언급된 구제는 상호배타적이며,</p> <p>(7) 침해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위조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등록 상표의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p> <p>(a) 손해를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은 손해 및 침해로 인한 이익 계산</p> <p>(b) 이익으로 간주되는 것의 계산</p> <p>(c)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손해.</p> <p>(8) 단락 (7)(c)에 따라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p> <p>(a) 등록 상표의 표절 또는 침해;</p> <p>(b) 침해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이익</p> <p>(c) 그러한 침해 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 그리고</p> <p>(d) 기타 모든 관련 사항.</p> <p>(9) 제26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조의 어떤 조항도 등록된 소유자가 상표출원이 이루어지고 등록되는 날까지 (3)항에 따른 구제를 회복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p>
<p>76. Protection of well-known trademarks</p> <p>(2) Subject to subsections (5) and (6), the proprietor of a</p>	<p>제76조 유명상표의 보호</p> <p>(2)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유명상표의 소유자는 말레이시아에서</p>

말레이시아 상표법(2019)	번역
<p>well-known trademark shall be entitled to restrain by injunction the use in Malaysia, in the course of trade and without the proprietor's consent, of any trademark which, or an essential part of which,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proprietor's trademark—</p> <p>(a) in relation to identical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where the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p> <p>(b) in relation to any goods or services, where the use of the trademark would indicate a connection between those goods or services and the proprietor, and is likely to damage the interests of the proprietor.</p> <p>(5) The proprietor of a well-known trademark shall not be entitled to the right referred to in subsection (2) if the use of the trademark began before the proprietor's trademark became well-known in Malaysia unless the trademark has been used in bad faith.</p> <p>(6) The proprietor of a well-known trademark shall cease to be entitled to the right referred to in subsection (2) if the proprietor of the well-known trademark has acquiesced for a continuous period of five years in the use of the trademark in Malaysia, being aware of that use, unless the trademark has been used in bad faith.</p> <p>(7) In deciding whether the trademark, has been used in bad faith, it shall be relevant to the Court to consider whether the person who used the trademark had, at the time he began to use the trademark, knowledge of, or reason to know of, the proprietor's well-known trademark.</p>	<p>그의 상표 또는 상표의 필수적 부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거래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금지명령으로 제한할 권리가 있다.</p> <p>(a)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사용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p> <p>(b)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의 사용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소유자 간의 연결을 나타내고, 소유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5) 유명상표의 소유자는, 상표가 악의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한, 그 상표의 사용이 소유자의 상표가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해지기 이전부터 있었다면, 제2항에 언급된 권리를 가질 수 없다.</p> <p>(6) 유명상표의 소유자가 말레이시아에서 해당 상표가 사용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5년 동안 계속 묵인해온 경우, 상표가 악의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한, 유명상표의 소유자는 제2항에 언급된 권리를 가질 수 없다.</p> <p>(7) 상표가 악의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상표를 사용한 자가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할 당시에 소유자의 유명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p>
<p>78. National emblems, etc., of Convention countries under Article 6ter of Paris Convention</p> <p>(1) A trade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the flag of a Convention country shall not be register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country, unless it appears to the Registrar that the use of the flag in the manner proposed is permitted without such authorization.</p> <p>(2) A trade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the armorial bearings or any other state emblem of a Convention country which is protected und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TRIPS Agreement shall not be register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country.</p> <p>(3) A trade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an official sign or hallmark adopted by a Convention country and indicating control and warranty shall not, where the sign or hallmark is protected und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TRIPS Agreement, be registered of the same, or a similar kind, as those in relation to which it indicates control and warranty,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concerned.</p> <p>(이하 생략)</p>	<p>제78조 파리협약 제6조 제3호에 따른 협약국의 국장 등</p> <p>(1) 협약국의 국기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상표는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없이 등록될 수 없다.</p> <p>(2) 파리협약 또는 TRIPS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의 문장 또는 기타 국가상징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는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없이 등록될 수 없다.</p> <p>(3) 협약 국가에서 채택하고 보증받는 공식 기호 또는 특징으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상표는 파리협약 또는 TRIPS 협정에 따라 해당 기호 또는 특징이 보호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없이 등록될 수 없다.</p>
<p>79. Emblems, etc., of certain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under Article 6ter of Paris Convention</p> <p>(1) A trade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any armorial bearing, flag, emblem, abbreviation or name of</p>	<p>제79조 파리협약 제6조 제3호에 따른 특정 국제정부간기구의 휘장 등</p> <p>(1) 하나 이상의 협약국가의 회원국이며 파리협약 또는 TRIPS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국제정부간 기구의 문장, 깃발, 엠블럼, 약어</p>

말레이시아 상표법(2019)	번역
<p>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which one or more Convention countries are members and which is protected und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TRIPS Agreement shall not be registered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concerned, unless it appears to the Registrar that the use of the armorial bearing, flag, emblem, abbreviation or name in the manner proposed— (이하 생략)</p>	<p>또는 이름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는 관련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없이 등록될 수 없다.</p>
<p>99. Counterfeiting a trademark (1) Any person who counterfeits a registered trademark by</p> <p>(a) making a sign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 registered trademark with the intent to deceive; or (b) falsifying a genuine registered trademark, whether by alteration, addition, effacement, partial removal or otherwi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gistered proprietor of the trademark commits an offence and shall, on conviction, be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one million ringgit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or to both.</p> <p>(2) In a prosecution under this section, the burden of proving the consent of the registered proprietor of the trademark shall be upon the accused person.</p>	<p>제99조 상표의 위조 (1) 다음의 방법으로 등록상표를 위조한 자는 상표의 등록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죄 판결 시 100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다. (a) 기만할 목적으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만드는 행위, 또는 (b) 변경, 추가, 삭제, 부분 제거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정품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행위</p> <p>(2) 이 조항에 따른 기소에서 상표의 등록된 소유자의 동의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p>
<p>100. Falsely applying a registered trademark to goods or services (1)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d section 102, a person falsely applies a registered trademark to goods or services when – (a) he applies the trademark or a sign likely to be mistaken for that trademark to the goods or servic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gistered proprietor; and (b)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to goods, the goods are not the genuine goods of the registered proprietor or licensee of the trademark. (4) Any person who falsely (a) applies a registered trademark to goods under subsection (1) commits an offence and shall, on conviction, be liable (i) if the person is a body corporate, to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thousand ringgit for each of the goods bearing the falsely applied registered trademark, and for a second or subsequent offence, to a fine not exceeding thirty thousand ringgit for each of the goods bearing the falsely applied registered trademark; or (ii) if the person is not a body corporate, to a fine not exceeding ten thousand ringgit for each of the goods bearing the falsely applied registered trademark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years or to both, and for a second or subsequent offence, to a fine not exceeding twenty thousand ringgit for each of the goods bearing the falsely applied registered trademark,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or</p>	<p>제100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의 허위 적용 (1) 본 조 및 제102조의 목적상,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의 허위 적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a) 등록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 또는 그 상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지를 적용하는 행위, 그리고 (b) 상품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그 상품이 등록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의 정품이 아닌 것</p> <p>(4) 누구든지 다음의 허위 행위를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책임이 있다. (a) 제1항에 따른 상품에 등록상표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며, 유죄판결 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i) 행위자가 법인인 경우, 허위로 적용된 등록상표가 부착된 각 상품에 대해 1만 5천 링깃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재범 또는 누범에 대하여는 허위로 적용된 등록상표가 부착된 각 상품에 대해 3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ii) 행위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허위로 적용된 등록상표가 부착된 각 상품에 대해 1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모두, 그리고 재범 또는 누범에 대하여는 허위로 적용된 등록상표가 부착된 각 상품에 대해 2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말레이시아 상표법(2019)	번역
<p>to both; or (b) applies a registered trademark to services under subsection (1) commits an offence and shall, on conviction, be liable (i) if the person is a body corporate, to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thousand ringgit; or (ii) if the person is not a body corporate, to a fine not exceeding seventy thousand ringgit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years or to both.</p>	<p>(b)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에 등록상표를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며, 유죄판결 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i) 행위자가 법인인 경우, 10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ii) 행위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7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101 . Making or possessing of article for committing offence Any person who (a) makes an article specifically designed or adapted for making copies of a registered trademark or a sign likely to be mistaken for that trademark; or (b) has in hi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an article as in paragraph (a), knowing or having reason to believe that it has been, or is to be, used for, or in the course of, committing an offence against sections 99 and 100, commits an offence and shall, on conviction, be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one million ringgit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or to both.</p>	<p>제101조 법률 위반 목적의 물건의 제작 또는 보유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제99조 및 제100조에 대해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예정이거나, 위반하기 위해 사용되었거나, 위반하는 중임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며, 유죄판결 시 100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a) 등록상표 또는 해당 상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시의 사본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설계 또는 개조된 물건을 제작하는 행위 (b) (a)와 같이 물건을 보유, 보관 또는 통제하는 행위</p>
<p>102. Importing or selling, etc., goods with falsely applied trademark (1) Any person who, (a) imports into Malaysia for the purpose of trade or manufacture; (b) sells or offers or exposes for sale; or (c) has in hi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for the purpose of trade or manufacture, any goods to which a registered trademark is falsely applied under section 100, unless he proves that having taken all reasonable precautions against committing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he had,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alleged offence, no reason to suspect the genuineness of the trademark and on demand made by the Assistant Controller as defined in section 109, he gave all the information in his knowledge with respect to the persons from whom he obtained the goods, commits an offence and shall, on conviction, be liable (i) if the person is a body corporate, to a fine not exceeding fifteen thousand ringgit for each of the goods with the falsely applied registered trademark, and for a second or subsequent offence, to a fine not exceeding thirty thousand ringgit for each of the goods with the falsely applied registered trademark; or (ii) if the person is not a body corporate, to a fine not exceeding ten thousand ringgit for each of the goods with the falsely applied registered trademark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years or to</p>	<p>제102조 상표가 허위로 적용된 물품 등의 수입 또는 판매 (1) 누구든지 제100조에 따라 등록상표가 허위로 적용된 상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자는 (a) 무역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로 수입하는 것 (b) 판매 또는 제공 또는 판매를 위해 노출하는 것 (c) 무역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 그가 이 조항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모든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했다는 것과, 그가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행위 당시에 그 상표의 진위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제109조에 정의된 보조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누구로부터 상품을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며, 유죄판결 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i) 행위자가 법인인 경우, 허위로 적용된 등록상표가 부착된 각 상품에 대해 1만 5천 링깃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재범 또는 누범에 대하여는 허위로 적용된 등록상표가 부착된 각 상품에 대해 3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ii) 행위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허위로 적용된 등록상표가 부착된 각 상품에 대해 1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그리고 재범 또는 누범에 대하여는 허위로 적용된 등록상표가 부착된 각 상품에 대해 2만 링깃 이하의 벌금</p>

말레이시아 상표법(2019)	번역
<p>both, and for a second or subsequent offence, to a fine not exceeding twenty thousand ringgit for each of the goods with the falsely applied registered trademark,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or to both.</p> <p>(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c), a person having in his possession three or more of the goods to which a registered trademark is falsely applied is deemed to have in possession the goods for the purpose of trade or manufacture.</p>	<p>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2) 제1항(c)의 목적상, 등록상표가 허위로 적용된 상품을 3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는 무역 또는 제조의 목적으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
<p>115. confidentiality</p> <p>(1) Any person who discloses or makes use of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r document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enterprise or the affairs of an individual obtained by virtue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commits an offence and shall, on conviction, be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five hundred thousand ringgit.</p> <p>(2) Nothing in subsection (1) shall operate to prevent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re—</p> <p>(a) the disclosure is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person from whom the information or document was obtained;</p> <p>(b) the disclosure is made in circumstances where the information provided is framed in such a manner that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could not be ascertained;</p> <p>(c) the information is already in the public domain;</p> <p>(d) the disclosure is made to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r powers of the controller, Deputy controller or Assistant controller;</p> <p>(e) the disclosure is reasonably made during any proceedings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such disclosure is not made against any direction by the controller, Deputy controller or Assistant controller before whom those proceedings are taking place; or</p> <p>(f) the disclosure i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of an offence under this Act.</p> <p>(3)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trade, business or industrial information that belongs to any person, that has economic value and is not generally available to or known by others or any information which is regarded as confidential under this Act.</p>	<p>제115조 기밀성</p> <p>(1)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획득한 특정 기업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기밀 정보 또는 문서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위법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50만 링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1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 공개를 막지 않는다.</p> <p>(a) 정보 또는 문서를 획득한 사람의 동의 하에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p> <p>(b) 제공된 정보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p> <p>(c) 정보가 이미 공공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p> <p>(d) 관리자, 부관리자 또는 보조관리자의 기능 또는 권한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p> <p>(e)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공개되고, 그러한 공개가 절차 개시 전에 행해진 관리자, 부관리자 또는 보조관리자의 지시에 반하지 않는 경우</p> <p>(f) 이 법에 따른 위법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p> <p>(3) 이 조항의 목적 상 “기밀 정보”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 무역, 사업 또는 산업 정보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타인이 이를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이 법에 따라 기밀로 간주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p>
<p>120. Power to enter premises, inspect and seize goods, etc.</p> <p>(1) Any Assistant Controller may, at all reasonable hours, exercise the following powers:</p> <p>(a) he may,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whether any offence under this Act has been committed, inspect any goods, documents, material, articles or things and enter any premises other than premises used only for dwelling;</p> <p>(b) if he has reasonable cause to believe that an offence under this Act has been committed, he may seize and detain any goods, documents, material, articles or things for the purpose of ascertaining, by testing or otherwise, whether the offence has been committed;</p> <p>(c) he may seize and detain any goods, documents,</p>	<p>제120조 침해지에 진입, 물품의 검열, 압수할 수 있는 권한 등</p> <p>(1) 집행보조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p> <p>(a) 이 법에 따른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 문서, 재료, 물건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주거용 또는 그 이외의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p> <p>(b) 이 법에 따른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믿음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테스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상품, 문서, 자료, 물품의 압수 및 몰수하는 행위</p> <p>(c) 이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모든 절차에서 증거로 요구될 수 있</p>

말레이시아 상표법(2019)	번역
<p>material, articles or things which he has reason to believe may be required as evidence in any proceedings for an offence under this Act; and</p> <p>(d) he may,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his powers under this subsection, seize goods, documents, material, articles or things, but only if and to the extent that it is reasonably necessary in order to secur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of any order made under this Act are duly observed, require any person having authority to do so to break open any container or open any vending machine and, if that person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 he may do so himself.</p> <p>(이하 생략)</p>	<p>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모든 상품, 문서, 자료, 물품 또는 물건의 압수 및 몰수</p> <p>(d) 이 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물품, 문서, 자료,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및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p>
<p>121. Magistrate may issue search warrant (본문생략)</p>	<p>제121조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본문생략)</p>
<p>122. Search may be made without warrant (본문생략)</p>	<p>제122조 영장없는 수색 (본문생략)</p>
<p>123. Access to recorded information or computerized data, etc. (본문생략)</p>	<p>제123조 기록정보 또는 전자자료 등에 대한 접근 (본문생략)</p>
<p>138. Offences committed by body corporate</p> <p>(1) If a body corporate commits an offence under this Act, any person who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was a director,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operating officer, manager, secretary or other similar officer of the body corporate or was purporting to act in any such capacity or was in any manner or to any extent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any of the affairs of the body corporate or was assisting in such management -</p> <p>(a) may be charged severally or jointly in the same proceedings with the body corporate; and</p> <p>(b) if the body corporate is found guilty of the offence, shall be deemed to be guilty of that offence unless, having regard to the nature of his functions in that capacity and to all circumstances, he proves-</p> <p>(i) that the offence was committed without his knowledge, consent or connivance; and</p> <p>(ii) that he had taken all reasonable precautions and exercised due diligence to prevent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p> <p>(2) If any person would be liable under this Act to any punishment or penalty for his act, omission, neglect or default, he shall be liable to the same punishment or penalty for every such act, omission, neglect of any employee or agent of his, or of the employee of the agent, if the act, omission, neglect or default was committed -</p> <p>(a) by that person's employee in the course of his employment;</p> <p>(b) by the agent when acting on behalf of that person; or</p> <p>(c) by the employee of the agent in the course of his employment by the agent or otherwise on behalf of the agent acting on behalf of that person.</p>	<p>제138조 법인의 범죄행위</p> <p>(1) 이 법에 따라 법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를 저지를 당시 법인의 이사, 최고 경영자, 최고 운영 책임자,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이었거나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범위에서든 법인의 업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그러한 관리를 지원하고 있었던 자는</p> <p>(a) 법인과 동일한 절차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고</p> <p>(b) 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명된 경우, 해당 권한에서 직무의 성격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p> <p>(i) 범죄가 그의 인지, 동의 또는 묵인 없이 저질러졌다는 것</p> <p>(ii) 그가 범죄의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p> <p>(2)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자신의 행위, 누락, 무시 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그러한 행위, 누락, 무시 또는 불이행이 다음과 같은 자에 의해 행해졌을 때 그의 직원 또는 대리인의 모든 행위, 누락, 무시 또는 불이행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책임이 있다.</p> <p>(a) 그가 고용 중인 직원</p> <p>(b) 그를 대리하는 대리인</p> <p>(c) 대리인에 의한 고용 과정에서 대리인의 고용인에 의해 또는 본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대리인을 대신하는 대리인</p>

● 말레이시아 상품표시법(Trade Descriptions Act 2011)

말레이시아 상품표시법	번역
<p>35. confidentiality (1) Any person who discloses or makes use of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r document with respect to a particular enterprise or the affairs of an individual obtained by virtue of any provision of this Act commits an offence. (2) Nothing in subsection (1) shall operate to prevent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where— (a) the disclosure is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person from whom the information or document was obtained; (b) the disclosure is made in circumstances where the information provided is framed in such a manner that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could not be ascertained; (c) the information is already in the public domain; (d) the disclosure is made to facilitate th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r powers of the controller, Deputy controller or Assistant controller; (e) the disclosure is reasonably made during any proceedings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such disclosure is not made against any direction by the controller, Deputy controller or Assistant controller before whom those proceedings are taking place; or (f) the disclosure i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of an offence under this Act. (3)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trade, business or industrial information that belongs to any person, that has economic value and is not generally available to or known by others.</p>	<p>제35조 기밀성 (1)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획득한 특정 기업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기밀 정보 또는 문서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위법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2) 제1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 공개를 막지 않는다. (a) 정보 또는 문서를 획득한 사람의 동의 하에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b) 제공된 정보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c) 정보가 이미 공공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d) 관리자, 부관리자 또는 보조관리자의 기능 또는 권한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e)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공개되고, 그러한 공개가 절차 개시 전에 행해진 관리자, 부관리자 또는 보조관리자의 지시에 반하지 않는 경우 (f) 이 법에 따른 위법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3) 이 조항의 목적 상 "기밀 정보"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 무역, 사업 또는 산업 정보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타인이 이를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p>
<p>59. General penalty Any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under this Act for which no penalty is expressly provided shall, on conviction, be liable— (a) if such person is a body corporate, to a fine not exceeding twenty-five thousand ringgit, and for a second or subsequent offence, to a fine not exceeding fifty thousand ringgit; or (b) if such person is not a body corporate, to a fine not exceeding ten thousand ringgit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one year or to both, and for a second or subsequent offence, to a fine not exceeding twenty thousand ringgit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years or to both.</p>	<p>제59조 일반적 처벌 이 법에 따라 처벌이 명시되지 않은 위법행위를 한 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a) 그 자가 법인인 경우, 2만 5천 링깃 이하의 벌금, 2차적 또는 후속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5만 링깃 이하의 벌금 (b) 그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1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2차적 또는 후속적 위반에 대하여 2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4 장

멕시코

법령요약

●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를 위한 연방법(약칭 ‘산업재산보호법;’)(LEY FEDERAL DE PROTECCIÓN A LA PROPIEDAD INDUSTRIAL)(2020. 7. 1. 시행법률)**

- 멕시코는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지식재산을 각 유형별 개별법이 아닌 단일법제 내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 산업비밀, 상표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출처: 김찬중, [기고] 멕시코의 지적재산권 개요, KOTRA 해외시장 뉴스-외부전문가 기고, 2021. 5. 2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8653>>

-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 제3장에서 산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장	주요내용	
제1장 일반처분	제1절 예비조항	(제1조~제11조) 목적, 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관련기관, 이사회 등
	제2절 일반규칙	(제12조~제25조) 등록, 문서의 효력, 수수료, 관보의 공지, 기간,
	제3절 대표자 및 권리의 등록	(제26조~제35조) 신청인, 등록신청서 등
제2장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및 반도체집적회로	제1절 예비조항	(제36조~제44조)
	제2절 특허	(제45조~제57조)
	제3절 실용신안	(제58조~제64조)
	제4절 산업디자인	(제65조~제82조)
	제5절 반도체 집적회로	(제83조~제90조)

장	주요내용	
	제6절 특허처리	(제91조~제120조)
	제7절 권리의 포기, 수정 및 제한	(제121조~제125조)
	제8절 보완인증서	(제126조~제136조)
	제9절 라이선스 및 권리양도	(제137조~제153조)
	제10절 특허등록의 무효 및 만료	(제154조~제162조)
제3장 산업비밀 ⁹⁾	제163조 (이 장의 목적), 제164조 (남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5조 (산업비밀보유자의 권리), 제166조(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자의 의무), 제167조(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자), 제168조(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169조(산업비밀과 관련된 사법 또는 행정절차)	
제4장 상표, 상호	제1절 상표	(제170조~제178조)
	제2절 단체표장, 인증상표	(제179조~제189조)
	제3절 유명상표	(제190조~제199조)
	제4절 상업통지(상호)	(제200조~제205조)
	제5절 상품명	(제206조~제213조)
	제6절 상표등록	(제214조~제238조)
	제7절 라이선스 및 권리양도	(제239조~제257조)
	제8절 무효, 등록만료 및 취소	(제258조~제263조)
제5장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 표시	제1절 공통조항	(제264조~제272조)
	제2절 보호선언의 처리	(제273조~제297조)
	제3절 사용허가	(제298조~제309조)
	제4절 선언 및 사용권한의 효과 중지	(제310조~제314조)
	제5절 원산지명칭 및 해외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인정	(제315조~제327조)
제6장 행정절차	제1절 일반처분	(제328조~제353조)
	제2절 감독	(제354조~제366조)
	제3절 통지	(제367조~제371조)
	제4절 조정	(제372조~제385조)
제7장 위반, 행정제재 및 처벌	제1절 위반 및 행정제재	(제386조~제401조)
	제2절 형사처벌	(제402조~제406조)
	제3절 관할	(제407조~제410조)
임시조항		

9) 각 조문은 제목이 명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으나,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제목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법조문의 취지에 상응하는 제목을 기재함

주요내용¹⁰⁾

● 부정경쟁

- 멕시코는 2018년 8월 산업재산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상표와 관련한 다수의 조항을 정비 : 유명인의 실명과 가명, 유명인과 관련있는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 거절, 개인의 이미지나 특정 목소리 본인의 동의 없는 서명 또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음을 규정, 또한 적법한 소유자의 동의없이 등록된 경우 해당 상표는 무효화될 수 있으며, 악의에 의해 취득된 상표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¹¹⁾
- 산업재산보호법에서 '부정경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표와 관련한 사항에서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항들을 상표등록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일반적인 행정조치(민사조치, 손해배상,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영업비밀

- 멕시코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산업비밀'(secretos industriales, industrial secrets)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이하 설명은 '영업비밀'로 기재)
- (개념) i) 개인 또는 단체가 기밀로 유지하며, 소유자가 특정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경쟁적 또는 경제적 이점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또는 상업적 응용의 모든 정보로서, ii)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목적, 제품의 생산방법, 제품을 배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또는 수단과 관련되어야 함, iii) 또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이러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해당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수단, 조치 및 보호장치를 채택하여야 함(ex. 접근제한, 암호화, 암호와 유사한 절차), iv) 영업비밀은 유형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야 함(ex. 문서, 전자 또는 자기매체, 마이크로필름, 기타 유사한 자료)
- (영업비밀로 간주될 수 있는 정보) 기술 및 전문정보, 기술적 지식 또는 노하우, 조리법, 방식, 사업방법 등
- (영업비밀로 보지 않는 것) i) 접근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정보, ii) 법률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공개된 자료(단 면허, 허가, 승인, 등록 또는 정부기관의 기타 승인을 얻기 위해 개인이 영업비밀임을 밝히고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함), iii) 공개된 도메인에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은 양도 및 이전될 수 있음

●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책임

- (고용계약상의 책임) i) 사업주는 직원과의 고용계약 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영업비밀유지계약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고용 계속 중 직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사업주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즉 사

10) <https://en.uhthoff.com.mx/articles/trade-secret-protection/> 참조(2021. 7. 8. 최종방문)

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멕시코 특허청, 비전형 상표 보호를 위한 개정 지식재산권법 시행 발표, 「지식재산동향」 2018-3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7955>

업주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ii) 고용 종료 후 영업비밀유지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기밀을 유지하는 대가로 직원에게 재정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계약 위반 시, 해당 지원에 대하여 보상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iii) 단, 직원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는 것(ex. 취업절대금지)은 멕시코 헌법 및 독점금지법에 의하여 무효이며 시행할 수 없음* iv) 영업비밀 관련 계약에 대한 분쟁은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짐

* (멕시코 정치헌법 제5조) 결정된 직업, 산업 또는 사업활동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포기하게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멕시코 정치헌법 제28조/연방독점금지법) 사업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은 잠재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무효로 간주한다.

- (기밀유지계약을 통한 책임) i) 공공정책적으로 제한적 계약을 권장하지는 않으나, 기밀유지계약(비공계계약)의 실행을 통하여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허용함 ii) 영업비밀 보유자는 계약에 명시된 관계를 지배하는 자(甲)이며, 양 당사자(영업비밀보유자,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에 구속됨, iii)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영업비밀이 적절하게 비밀로 표시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이 중요함(이를 통하여 어떠한 정보가 기밀 또는 영업비밀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확정할 수 있음)
- (제3자 책임) 영업비밀, 기밀정보는 수신자(기밀유지당사자) 외에 수신자의 직원 또는 하청업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수신자는 직원 및 하청업체 등과 유사한 비공개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는 i) 산업재산보호법, ii) 민법, iii) 연방형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음
- 산업재산보호법에 따라 위반 당사자는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손해배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함
- 산업재산보호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ps 6,729~pS 972,900(약 400~40,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처할 수 있음
 - * (i) 자신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ii) 자신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보유자(또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허가없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사용하거나 공개하기 위해 남용하는 행위 iii) 영업비밀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다음 중 하나인 때 : a) 영업비밀보유자(또는 권한이 부여된 자)의 동의없이 자신의 직업, 지위, 업무, 사업관계를 통해 누군가에게 알려진 경우, b)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얻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때
-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별도의 세관조치는 규정된 바 없음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은 주 또는 지방법원임

법령비교표

●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2020)	번역
Artículo 2.- Esta Ley tiene por objeto: II.- Regular los secretos industriales;	제2조 이법의 목적 ② 산업비밀 규제
Artículo 22.- El registro de los derechos de propiedad industrial será público, a excepción de las solicitudes que tengan carácter confidencial, y contendrá los expedientes relacionados con los derechos que protege esta Ley.	제22조 산업재산권 등기부는 기밀 요청을 제외하고는 공개되며,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와 관련된 파일이 포함된다.
Artículo 163.- Para efectos de este Título, se entenderá por: I.- Secreto industrial, a toda información de aplicación industrial o comercial que guarde la persona que ejerce su control legal con carácter confidencial, que signifique la obtención o el mantenimiento de una ventaja competitiva o económica frente a terceros en la realización de actividades económicas y respecto de la cual haya adoptado los medios o sistemas suficientes para preservar su confidencialidad y el acceso restringido a la misma. La información de un secreto industrial podrá constar en documentos, medios electrónicos o magnéticos, discos ópticos, microfilmes, películas o en cualquier otro medio conocido o por conocerse. No se considerará secreto industrial aquella información que sea del dominio público; la que resulte generalmente conocida o de fácil acceso para personas dentro de los círculos en que normalmente se utiliza dicha información, o la que deba ser divulgada por disposición legal o por orden judicial. No se considerará que entra al dominio público o que es divulgada por disposición legal, aquella información que sea proporcionada a cualquier autoridad por una persona que ejerza el control legal sobre el secreto industrial, cuando la proporcione para el efecto de obtener licencias, permisos, autorizaciones, registros, o cualesquiera otros actos de autoridad, y II.- Apropiación indebida, a la adquisición, uso o divulgación de un secreto industrial de manera contraria a los buenos usos y costumbres en la industria, comercio y servicios que impliquen competencia desleal, incluyendo la adquisición, uso, o divulgación de un secreto industrial por un tercero que sabía, o tuviere motivos razonables para saber, que el secreto industrial fue adquirido de manera contraria a dichos usos y costumbres	제163조 이 조의 목적 ① 산업비밀이란 법적 통제를 행사하는 사람이 기밀로 유지하는 산업 또는 상업적 응용에 관한 모든 정보로,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하여 경쟁적 또는 경제적 이점을 얻거나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수단을 채택한 정보 또는 기밀성을 유지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산업비밀정보는, 문서, 전자 또는 자기매체, 광디스크, 마이크로필름, 또는 기타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매체에 구현될 수 있다. 공개된 영역에 있는 정보는 산업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공개된 영역에 있는 정보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또는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허, 허가, 승인, 기록 또는 기타의 권한을 획득할 목적으로 산업비밀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된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법률에 의해 공개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② 오용(Misappropriation)이란 산업비밀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산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산업, 상업 및 모범관행, 관습에 반하는 방식으로 산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또는 산업비밀이 상기 용도 및 관습에 반하는 방식으로 취득되었음을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Artículo 164.- No se considerará apropiación indebida: I.- El descubrimiento o la creación independientes de la información que se reclame como un secreto industrial; II.- La observación, el estudio, el desmontaje o el ensayo de un producto u objeto que se haya puesto a disposición del público o que esté lícitamente en posesión de quien obtiene la información, siempre y	제164조 오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① 산업비밀로 주장되는 정보를 독립적으로 발견하거나 생성한 경우 ②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한, 일반에게 공개되었거나 정보를 획득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제품 또는 물품에 대한 관찰, 연구, 분석 또는 테스트하는 산업의 경우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2020)	번역
<p>cuando no esté sujeto a ninguna obligación de confidencialidad sobre el secreto industrial, o</p> <p>III.- La adquisición de la información de otra persona de manera legítima sin obligación de confidencialidad o sin conocimiento de que la información era un secreto industrial.</p>	<p>③ 비밀유지의무 없이 또는 해당 정보가 산업비밀이라는 사실을 모른채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p>
<p>Artículo 165.- La persona que ejerza el control legal del secreto industrial podrá transmitirlo o autorizar su uso a un tercero. El usuario autorizado tendrá la obligación de no divulgar el secreto industrial por ningún medio. En los convenios por los que se transmitan conocimientos técnicos, asistencia técnica, provisión de ingeniería básica o de detalle, se podrán establecer cláusulas de confidencialidad para proteger los secretos industriales que incluyan, las cuales deberán precisar los aspectos que comprenden como confidenciales.</p>	<p>제165조 산업비밀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 산업비밀에 대한 사용을 허가받은 자(허가된 사용자)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산업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p> <p>기술지식, 기술지원, 기초 또는 심화 엔지니어링 제공 등을 전달하는 계약에서 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때 비밀로 이해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Artículo 166.- Toda aquella persona que, con motivo de su trabajo, empleo, cargo, puesto, desempeño de su profesión o relación de negocios, tenga acceso a un secreto industrial del cual se le haya prevenido sobre su confidencialidad, deberá abstenerse de divulgarlo, sin consentimiento de la persona que ejerza su control legal, o de su usuario autorizado.</p>	<p>제166조 누구든지 업무, 고용, 직위, 지위, 직업 또는 비즈니스 관계의 수행으로 인하여 비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하더라도, 법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승인된 사용자의 동의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p>
<p>Artículo 167.- La persona física o moral que contrate a un trabajador que esté laborando o haya laborado o a un profesionista, asesor o consultor que preste o haya prestado sus servicios para otra persona, con el fin de obtener secretos industriales de ésta, se considerará responsable en los términos de esta Ley.</p>	<p>제167조 (산업비밀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노동자를 고용한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한 전문가, 고문 또는 컨설턴트는 이 법률의 조건에 따라 (오용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된다.</p>
<p>Artículo 168.- La información requerida para determinar la seguridad y eficacia de productos farmoquímicos o agroquímicos que utilicen nuevos componentes quedará protegida en los términos de la legislación aplicable o, en su caso, de los Tratados Internacionales.</p>	<p>제168조 새로운 구성요소를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농약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해당 법률 또는 해당되는 국제협약의 조건에 따라 보호된다.</p>
<p>Artículo 169.- En cualquier procedimiento judicial o administrativo relacionado con un secreto industrial o en donde se requiera que alguno de los interesados divulgue un secreto industrial, la autoridad que conozca deberá adoptar las medidas necesarias, a petición de parte o de oficio, para impedir su divulgación no autorizada a terceros ajenos a la controversia y garantizar su confidencialidad. Ningún interesado podrá divulgar o usar el secreto industrial.</p> <p>Quedan incluidos en el supuesto anterior, además de las partes, sus representantes o autorizados para oír y recibir notificaciones; los funcionarios judiciales o administrativos; los testigos, peritos o cualquier otra persona que intervenga en un proceso judicial o administrativo, relacionado con un secreto industrial, o que tenga acceso a documentos que formen parte de dicho proceso.</p>	<p>제169조 산업비밀과 관련된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 이해당사자 중 한 사람이 산업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당국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산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해당 절차와 무관한 제3자에게 산업비밀이 무단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p> <p>이해관계자는 산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p> <p>이해관계자란 당사자, 대리인 외에 사법 또는 행정공무원, 증인, 전문가 또는 기타 사법, 행정절차에 개입하거나 해당 절차에 필요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밖의 사람을 의미한다.</p>
<p>Artículo 173.- No serán registrables como marca:</p> <p>VII.- Los signos que sin autorización reproduzcan o imiten escudos, banderas o emblemas de cualquier país, estado,</p>	<p>제173조 다음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p> <p>7. 승인없이 모든 국가, 주,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치 부문의 문장, 깃발, 상징을 복제하거나 모방한다는 표시, 교단, 약</p>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2020)	번역
<p>municipio o divisiones políticas equivalentes; las denominaciones, siglas, símbolos, emblemas, nombres de programas o proyectos o cualquier otro signo de instrumentos internacionales, organizaciones, gubernamentales, no gubernamentales, ya sean nacionales, extranjeras o internacionales, o cualquier otra organización reconocida oficialmente; así como la designación verbal de los mismos;</p> <p>X.- Los signos idénticos o semejantes en grado de confusión a las zonas geográficas, propias o comunes; los mapas, las denominaciones de poblaciones, o los gentilicios, nombres o adjetivos, cuando éstos indiquen la procedencia de los productos o servicios y puedan originar confusión o error en cuanto a su procedencia. Quedan incluidos en este supuesto aquellos signos que se acompañen de expresiones tales como "género", "tipo", "manera", "imitación", "producido en", "con fabricación en" u otros similares que creen confusión en el consumidor o impliquen competencia desleal;</p> <p>XI.- Los signos idénticos o semejantes en grado de confusión a las denominaciones de origen, indicaciones geográficas, o a las denominaciones o signos de lugares que se caractericen por la fabricación, producción o comercialización de determinados productos o servicios, cuando los productos o servicios solicitados sean idénticos o similares a éstos o a los protegidos por las denominaciones de origen o indicaciones geográficas.</p> <p>XIII.- Los nombres, apellidos, apelativos o seudónimos de personas que hayan adquirido tal prestigio, reconocimiento o fama que al usarse puedan crear un riesgo de asociación, inducir al error, confusión o engaño al público consumidor, salvo que se trate de dicha persona o exista consentimiento expreso de la misma o de quien tenga el derecho correspondiente. Tampoco será registrable la imagen, la voz identificable, el retrato o la firma de una persona sin su consentimiento expreso, o de quien tenga el derecho correspondiente;</p> <p>XVI.- Los signos iguales o semejantes en grado de confusión a una marca que el Instituto estime o haya declarado notoriamente conocida en México, en términos del Capítulo III de este Título, para ser aplicadas a cualquier producto o servicio, cuando la marca cuyo registro se solicita pudiese:</p> <p>a) Crear confusión o un riesgo de asociación con el titular de la marca notoriamente conocida;</p> <p>b) Constituir un aprovechamiento no autorizado por el titular de la marca notoriamente conocida;</p> <p>c) Causar el desprestigio de la marca notoriamente conocida, o</p> <p>d) Diluir el carácter distintivo de la marca notoriamente conocida.</p> <p>Este impedimento no será aplicable cuando el solicitante del registro sea titular de la marca notoriamente conocida;</p> <p>XVII.- Los signos idénticos o semejantes en grado de confusión a una marca que el Instituto estime o haya declarado famosa en términos del Capítulo III de este</p>	<p>어, 기호, 엠블럼,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이름 또는 국제문서, 조직, 정부, 비정부, 국내외 또는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조직의 기타 기호</p> <p>10. 소유 또는 공통의 지리적 영역에 대한 혼동의 정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 지도, 인종 또는 이름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고 출처에 대해 혼동이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이는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성별, 유형, 취급, 생산처, 제조처, 모조품 등의 유사한 표현을 수반하여 소비자 또는 이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p> <p>11. 원산지 명칭, 지리적 표시 또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 생산 혹은 마케팅을 특징으로 하는 장소의 명칭 또는 표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유사하거나, 특정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동일·유사한 경우</p> <p>13.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은 사람들의 이름, 성, 별명 또는 가명, 개인의 이미지, 식별가능한 음성, 초상 또는 서명은 해당 권리를 가진 사람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등록될 수 없다.</p> <p>16. 제3장(유명상표)에 따라 멕시코에서 잘 알려져 있다고 간주하거나 선언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된다고 한 다음과 같은 상표</p> <p>a) 유명상표의 소유자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연관될 위험이 있는 경우</p> <p>b) 유명상표 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p> <p>c) 유명상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p> <p>d) 유명상표의 고유한 특성을 희석하는 경우</p> <p>이러한 등록거절사유는 신청자가 유명상표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17. 제3장(유명상표)에 따라 멕시코에서 잘 알려져 있다고 간주하거나 선언한 브랜드와 혼동되는 정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가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p>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2020)	번역
<p>Título, para ser aplicadas a cualquier producto o servicio. Este impedimento no será aplicable cuando el solicitante del registro sea titular de la marca famosa; XXII.- Los signos solicitados de mala fe. Se entenderá por mala fe, entre otros casos, el haber solicitado el registro de un signo con el propósito de obtener un beneficio o ventaja indebida en perjuicio de su legítimo titular.</p>	<p>이러한 등록거절사유는 신청자가 유명상표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2. 악의로 요청한 표시, 악의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이해된다.</p>
<p>Capítulo III De las Marcas Notoriamente Conocidas y Famosas</p>	<p>제3절 유명상표</p>
<p>Artículo 190.- Para efectos de esta Ley, se entenderá que una marca es notoriamente conocida en México cuando un sector determinado del público o de los círculos comerciales del país, conoce la marca como consecuencia de las actividades comerciales desarrolladas en México o en el extranjero por una persona que emplea esa marca en relación con sus productos o servicios o bien, como consecuencia de la promoción o publicidad de la misma. Se entenderá que una marca es famosa en México cuando sea conocida por la mayoría del público consumidor, o bien, cuando ésta tenga una difusión o reconocimiento en el comercio global. A efecto de demostrar la notoriedad o fama de la marca, podrán emplearse todos los medios probatorios permitidos por esta Ley.</p>	<p>제190조 이 법의 목적상 멕시코의 대중 또는 산업계의 특정 부분이 멕시코에서 수행된 상업활동의 결과로 상표를 알고 있는 경우, 그 상표는 멕시코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프로모션이나 광고의 결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해외의 대부분의 소비자 또는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 또는 인지도가 있을 때 해당 상표가 멕시코에서 유명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유명상표의 명성이나 그 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p>
<p>Artículo 191.- (전단생략) Los impedimentos previstos en el artículo 173, fracciones XVI y XVII, para la protección de marcas notoriamente conocidas o famosas, se aplicarán con independencia de que éstas se encuentren registradas o declaradas.</p>	<p>제191조 (전단생략) 유명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제173조의 16호 및 17호에 규정된 부등록사유는 유명상표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p>
<p>Artículo 193.- El Instituto presumirá, salvo prueba en contrario, que las condiciones que originaron la declaratoria o sus actualizaciones, subsisten por un período de cinco años a partir de la fecha de su expedición; en consecuencia, durante dicho período deberá aplicar según corresponda, el impedimento previsto en el artículo 173, fracción XVI o el previsto en la fracción XVII, de manera expedita. (후단생략)</p>	<p>제193조 특허청은 달리 반론이 없는 한 (유명상표의) 선언 또는 등록의 원인이 된 조건이 발행된 날로부터 5년 동안 그 유명상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당 기간동안 동법 제173조 16호 및 17호에 규정된 부등록사유는 신속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후단생략)</p>
<p>Artículo 315.- El Instituto reconocerá a las denominaciones de origen o indicaciones geográficas protegidas en el extranjero, en términos de los Tratados Internacionales y conforme a lo previsto en el presente Capítulo.</p>	<p>제315조 특허청은 국제조약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해외에서 보호되는 원산지 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인정한다.</p>
<p>Artículo 343.- En el incidente al que se refiere el artículo 397 de esta Ley, considerando los elementos aportados por las partes, el Instituto podrá condenar al infractor al pago de los daños y perjuicios causados al titular afectado. Para tal efecto, la resolución deberá señalar expresamente: I.- La existencia de la relación de causalidad entre la conducta infractora y la lesión producida al titular afectado, y II.- La determinación del daño o perjuicio ocasionado.</p>	<p>제343조 동법 제397조에 언급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요소를 고려하여 특허청은 침해자로 하여금 영향을 받은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결의안은 다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와 영향을 받은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2. 발생한 손해의 결정</p>
<p>Artículo 344.- En los procedimientos relativos a la presunta violación de alguno de los derechos que protege esta Ley, el Instituto podrá adoptar las siguientes medidas:</p>	<p>제344조 이 법이 보호하는 권리의 침해혐의와 관련된 절차에서 특허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2020)	번역
<p>Artículo 345.- Para determinar la práctica de las medidas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anterior, el Instituto deberá realizar un análisis ponderado de la apariencia del buen derecho y la no contravención de disposiciones de orden público y que no se afecte al interés general; además tomará en consideración la gravedad de la infracción y la naturaleza de la medida solicitada, para lo cual requerirá al solicitante que:</p> <p>I.- Acredite ser el titular del derecho y cualquiera de los siguientes supuestos:</p> <p>a) La existencia de una violación a su derecho;</p> <p>b) Que la violación a su derecho sea inminente;</p> <p>c) La existencia de la posibilidad de sufrir una afectación irreparable, o</p> <p>d) La existencia de temor fundado de que las pruebas se destruyan, oculten, pierdan o alteren. El acreditamiento de la titularidad del derecho no será exigible cuando se trate de infracciones administrativas que no impliquen la violación a un derecho de propiedad industrial;</p> <p>II.- Otorgue fianza o billete de depósito suficiente para responder por la afectación que se pudiera causar a la persona en contra de quien se haya solicitado la medida. Para determinar el importe de la fianza o billete de depósito el Instituto tomará en consideración los elementos que aporte el solicitante, así como los que se desprendan de las actuaciones en el expediente. El Instituto podrá requerir al solicitante la ampliación de la fianza, cuando de la práctica de las medidas se desprenda que la otorgada inicialmente resulta insuficiente para responder de la afectación que se pudiera causar a la persona en contra de quien se haya solicitado la medida. Este requisito no será exigible cuando la imposición de medidas provisionales se adopte de oficio por parte del Instituto, y</p> <p>III.- Proporcione la información necesaria para la identificación de los bienes, servicios o establecimientos físicos o plataformas digitales con los cuales o en donde se comete la violación a los derechos que protege esta Ley.</p>	<p>제345조 전조에 언급된 조치의 실행을 결정하기 위해 특허청은 선량한 법의 출현과 공공질서 조항의 비위반, 일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의 심각성과 요청된 조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p> <p>1. 권리여부 및 다음 중 하나에 대한 증명</p> <p>a) 권리 침해의 존재</p> <p>b) 권리 침해가 임박한 경우</p> <p>c)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p> <p>d) 증거가 파괴, 은폐, 분실 또는 변경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의 존재. 단, 산업재산권 침해를 의미하지 않는 행정 위반의 경우 권리 소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p> <p>2. 조치가 요청된 사람에게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을 부여한다. 보증금 또는 보증증권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특허청은 신청자가 제공한 요소와 파일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허청은 조치의 실행에 따라 초기에 부여된 금액이 조치가 요청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증금을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 사항은 임시 조치의 부과가 특허청에 의해 직권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다.</p> <p>3.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서비스, 물리적 시설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Artículo 352.- En cualquier medida provisional que se practique, deberá cuidarse que ésta no sirva como medio para violar secretos industriales o para realizar actos que constituyan competencia desleal.</p>	<p>제352조 잠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산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불공정경쟁을 구성하는 행위를 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Artículo 353.- El solicitante solo podrá utilizar la documentación relativa a la práctica de una medida provisional para iniciar el juicio correspondiente o para exhibirla en los autos de los procesos en trámite, con prohibición de usarla, divulgarla o comunicarla a terceros.</p>	<p>제353조 신청인은 잠정조치 실행과 관련된 문서를 사용, 공개 또는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재판을 시작하거나 진행중일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Artículo 354.- Para comprobar el cumplimiento de lo dispuesto en esta Ley y demás disposiciones derivadas de ella, el Instituto realizará la inspección y vigilancia, conforme a los siguientes procedimientos:</p> <p>I.- Requerimiento de informes y datos, y</p> <p>II.- Visitas de inspección.</p>	<p>제354조 이 법의 규정과 이 법에서 파생된 기타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한다.</p> <p>1. 정보 및 데이터의 요구</p> <p>2. 방문조사</p>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2020)	번역
<p>Artículo 386.- Son infracciones administrativas:</p> <p>I.- Realizar actos contrarios a los buenos usos y costumbres en la industria, comercio y servicios que impliquen competencia desleal y que se relacionen con la materia que esta Ley regula;</p> <p>II.- Efectuar, en el ejercicio de actividades industriales o mercantiles, actos que causen o induzcan al público a confusión, error o engaño, por hacer creer o suponer infundadamente:</p> <p>a) La existencia de una relación o asociación entre un establecimiento y el de un tercero;</p> <p>b) Que se fabriquen productos bajo especificaciones, licencias o autorización de un tercero;</p> <p>c) Que se prestan servicios o se venden productos bajo autorización, licencias o especificaciones de un tercero, o</p> <p>d) Que el producto de que se trate proviene de un territorio, región o localidad distinta al verdadero lugar de origen, de modo que induzca al público a error en cuanto al origen geográfico del producto;</p> <p>III.- Intentar o lograr el propósito de desprestigiar los productos, los servicios, la actividad industrial o comercial o el establecimiento de otro. No estará comprendida en esta disposición, la comparación de productos o servicios que ampare la marca con el propósito de informar al público, siempre que dicha comparación no sea tendenciosa, falsa o exagerada en los términos de la Ley Federal de Protección al Consumidor;</p> <p>XIV.- Apropiarse de manera indebida de información que sea considerada como secreto industrial, sin consentimiento de la persona que ejerce su control legal o su usuario autorizado, para obtener una ventaja competitiva de mercado, o realizar actos contrarios a los buenos usos y costumbres en la industria, comercio y servicios que impliquen competencia desleal;</p> <p>XV.- Producir, ofrecer en venta, vender, importar, exportar o almacenar productos o servicios que utilicen un secreto comercial, cuando la persona que lleve a cabo dichas actividades supiera o tuviere motivos razonables para saber, que el secreto comercial se utilizó sin consentimiento de la persona que ejerce su control legal o su usuario autorizado y de manera contraria a los buenos usos y costumbres en la industria, comercio y servicios que impliquen competencia desleal;</p> <p>XVII.- Usar una marca parecida en grado de confusión a otra registrada, para amparar los mismos o similares productos o servicios que los protegidos por la registrada;</p> <p>XVIII.- Usar, sin consentimiento de su titular, una marca registrada o semejante en grado de confusión como elemento de un nombre comercial o de una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o de un nombre de dominio o viceversa, siempre que dichos nombres, denominaciones o razones sociales estén relacionados con establecimientos que operen con los productos o servicios protegidos por la marca;</p> <p>XIX.- Usar como marcas las denominaciones, signos, símbolos, siglas o emblemas a las que se refieren las</p>	<p>제386조 행정상 위반은 다음과 같다.</p> <p>① 불공정경쟁을 암시하고 이 법이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산업, 상업 및 서비스 분야의 표준관행 및 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p> <p>② 산업 또는 상업활동을 수행할 때 일반 대중에게 혼란, 오류를 야기하거나 기만을 유발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p> <p>a) 시설과 제3자의 시설 사이에서 관계 등이 있다고 믿게하는 경우</p> <p>b) 제품이 제3자의 사양, 라이선스 또는 승인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믿게하는 경우</p> <p>c) 제3자의 승인, 라이선스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 또는 판매되었다고 믿게하는 경우</p> <p>d) 제품이 실제원산지 아닌 지역 등에서 유래하였다는 등, 지리적 원산지에 대하여 대중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p> <p>③ 제품, 서비스, 산업 또는 상업활동의 신용을 저하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활동의 설립에 대한 신용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시도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 단 연방소비자보호법의 조건에 따라 편향, 허위 또는 과장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중에게 알릴 목적으로 브랜드가 보호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비교하는 것은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p> <p>④ 산업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법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동의없이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거나 업계의 관행 및 관습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거래 및 서비스</p> <p>⑤ 산업비밀을 사용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청약, 판매, 수입, 수출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산업비밀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이것이 법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동의없이 업계의 관행 및 관습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거래 및 서비스</p> <p>⑦ 다른 등록상표와 혼동되는 정도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등록 상표로 보호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호하는 행위</p> <p>⑧ 권리자의 동의없이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상표명, 교단 또는 회사명, 도메인명 또는 그 반대의 요소로 혼동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행위</p> <p>⑨ 이 법 제173조 제7항, 제8항, 제9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및 제20항에 언급된 이름, 기호, 명</p>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2020)	번역
<p>fracciones VII, VIII, IX, XII, XIII, XIV, XV, XVI, XVII y XX del artículo 173 de esta Ley; así como aquéllas que sean contrarias al orden público o que contravengan cualquier disposición legal;</p> <p>XX.- Usar una marca previamente registrada o semejante en grado de confusión como nombre comercial, denominación o razón social o nombre de dominio o como partes de éstos, de una persona física o moral cuya actividad sea la producción, importación o comercialización de bienes o servicios iguales o similares a los que se aplica la marca registrada, sin el consentimiento, manifestado por escrito, del titular del registro de marca o de la persona que tenga facultades para ello;</p> <p>XXI.- Usar una marca registrada, sin el consentimiento de su titular o sin la licencia respectiva, en productos o servicios iguales o similares a los que la marca se aplique;</p> <p>XXII.- Ofrecer en venta o poner en circulación productos a los que se aplica una marca registrada y que dichos productos o su etiquetado hayan sido alterados;</p> <p>XXIII.- Ofrecer en venta o poner en circulación productos a los que se aplica una marca registrada, después de haber alterado, sustituido o suprimido parcial o totalmente ésta;</p> <p>XXIV.- Usar la combinación de signos distintivos, elementos operativos o de imagen, que permitan identificar productos o servicios iguales o similares en grado de confusión a otros protegidos por esta Ley y que por su uso causen o induzcan al público a creer o suponer una asociación inexistente con quien acredite el derecho;</p> <p>XXV.- Omitir proporcionar al franquiciatario la información, a que se refiere el artículo 245 de esta Ley, siempre y cuando haya transcurrido el plazo para ello y haya sido requerida;</p> <p>XXVI.- Usar un aviso comercial registrado o uno semejante en grado de confusión, sin el consentimiento de su titular o sin la licencia respectiva para anunciar bienes, servicios o establecimientos iguales o similares a los que se aplique el aviso;</p> <p>XXVII.- Usar un nombre comercial o uno semejante en grado de confusión, sin el consentimiento de su titular o sin la licencia respectiva, para amparar un establecimiento industrial, comercial o de servicios del mismo o similar giro, dentro de la zona geográfica de la clientela efectiva o en cualquier parte de la República,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el artículo 206 de esta Ley;</p> <p>XXVIII.- Usar un nombre comercial idéntico o uno semejante en grado de confusión a otro previamente utilizado por un tercero, para amparar un establecimiento industrial, comercial o de servicios del mismo o similar giro, dentro de la zona geográfica de la clientela efectiva o en cualquier parte de la República, conforme a lo establecido en el artículo 206 de esta Ley;</p> <p>XXIX.- Usar sin la autorización de uso correspondiente</p>	<p>칭, 이니셜 또는 상징을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p> <p>㉔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입 또는 상업활동을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상표명, 제호, 상호명 또는 도메인이름 및 이들의 일부로 이전에 등록되었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상표의 소유자 또는 상표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자의 서면 동의 없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p> <p>㉕ 등록상표를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또는 해당 라이선스 없이 상표가 적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p> <p>㉖ 등록상표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해당 제품 또는 그 표시가 변경된 제품의 판매를 제안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p> <p>㉗ 등록상표가 적용되는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교체 또는 삭제하여 판매를 제안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p> <p>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다른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거나 그 사용에 의해 대중이 상표권을 가진 자와의 연관성을 믿거나 유도하도록 하는 뚜렷한 표지 또는 이미지 요소의 조합을 사용하는 행위</p> <p>㉙ 기간의 종료나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동법 제245조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p> <p>㉚ 등록된 상업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또는 고지가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 또는 시설을 광고하기 위하여 해당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는 행위</p> <p>㉛ 동법 제206조에 따라 유효한 고객의 지리적 영역 또는 자국의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업 또는 서비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각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상표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p> <p>㉜ 동법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고객의 지리적 영역 또는 자국의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업 또는 서비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가 이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상호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p> <p>㉝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 또는 지리적 표시를 허가없이 사</p>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2020)	번역
<p>una denominación de origen o indicación geográfica protegida;</p> <p>XXX.- Usar una denominación o indicación idéntica o semejante en grado de confusión a una denominación de origen o indicación geográfica nacional protegida o extranjera reconocida por el Instituto, para amparar los mismos o similares productos. Queda incluido en este supuesto, el uso de la denominación o indicación en servicios;</p> <p>XXXI.- Usar la traducción o transliteración de una denominación de origen o indicación geográfica nacional protegida o extranjera reconocida por el Instituto, para amparar los mismos o similares productos. Queda incluido en este supuesto, el uso de la denominación o indicación en servicios;</p> <p>XXXII.- Producir, almacenar, transportar, distribuir o vender productos idénticos o semejantes a los que se encuentren protegidos por una denominación de origen o indicación geográfica nacional protegida o extranjera reconocida por el Instituto, utilizando cualquier tipo de indicación o elemento que cree confusión en el consumidor sobre su origen o calidad, tales como "género", "tipo", "manera", "imitación", "producido en", "con fabricación en" u otras similares, y</p> <p>XXXIII.- Las demás violaciones a las disposiciones de esta Ley que no constituyan delitos.</p> <p>La investigación de las infracciones administrativas se realizará por el Instituto de oficio o a petición de parte interesada.</p>	<p>용하는 행위</p> <p>㉑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한 보호받는 국내 또는 외국의 원산지 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와 혼동의 정도가 같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 이 경우 서비스의 명칭 또는 표시의 사용도 포함된다.</p> <p>㉒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한 보호받는 국내 또는 외국의 원산지 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의 번역 또는 음역을 사용하는 행위, 이 경우 서비스의 명칭 또는 표시의 사용도 포함된다.</p> <p>㉓ 위원회가 인정한 보호받는 국내 또는 외국의 원산지 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 보관, 유통, 판매하는 자가 원산지 또는 품질에 대하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유형의 표시 또는 요소를 사용하는 행위 (ex. ~ 장리의, ~ 타입의, ~매너의, 유형, 방식, 모방, 생산, 제조 등)</p> <p>㉔ 그 밖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이 법 조항의 기타 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위반에 대한 조사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행된다.</p>
<p>Artículo 388.- Las infracciones administrativas a esta Ley o demás disposiciones derivadas de ella, serán sancionadas con:</p> <p>I.- Multa hasta por el importe de doscientas cincuenta mil unidades de medida y actualización, vigente al momento en que se cometa la infracción, por cada conducta que se actualice;</p> <p>II.- Multa adicional hasta por el importe de mil unidades de medida y actualización, por cada día en que persista la infracción;</p> <p>III.- Clausura temporal hasta por noventa días, y</p> <p>IV.- Clausura definitiva.</p> <p>Las sanciones se aplicarán en función de la gravedad de la conducta u omisión en que hubiera incurrido el infractor, sin existir alguna prelación específica en cuanto a su imposición.</p>	<p>제388조 이 법 또는 이 법에서 파생된 기타 규정에 해당 행정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행위별 최대 250,000단위의 벌금 2.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1일당 1,000단위의 추가 벌금 3. 최대 90일 동안의 임시폐쇄 4. 최종폐쇄 <p>제재는 특별히 부과되는 우선순위 없이 행위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정도에 따라 적용된다.</p>
<p>Artículo 390.- En los casos de reincidencia se duplicarán las multas impuestas anteriormente, sin que su monto exceda del triple del máximo fijado en el artículo 388 de esta Ley, según el caso.</p> <p>Se entiende por reincidencia, para los efectos de esta Ley y demás disposiciones derivadas de ella, cada una de las subsecuentes infracciones a un mismo precepto, una vez que sea exigible la resolución emitida por el Instituto.</p>	<p>제390조 재범의 경우,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 2배로 부과되며, 단 이 법 제388조에 명시된 최대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p> <p>재범은 이 법 및 이 법에서 파생된 기타 조항의 목적에 따라 특허청에서 발표한 조치(resolución)가 시행될 수 있게 되면 동일한 계율(precepto)의 각 후속 위반으로 간주된다.</p>
<p>Artículo 391.- Las clausuras podrán imponerse en la resolución que resuelva la infracción, además de la multa</p>	<p>제391조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resolución)로서 과태료에 추가하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이 없이 영업정지(clausuras)를 부과</p>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2020)	번역
o sin que ésta se haya impuesto. Será procedente la clausura definitiva cuando el establecimiento haya sido clausurado temporalmente por dos veces y se reincida en la infracción, independientemente de que hubiere variado su domicilio.	할 수 있다. 주소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이 두 번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 영구 영업정지가 적절하다.
<p>Artículo 392.- Para la determinación de las sanciones deberá tomarse en cuenta:</p> <p>I.- El carácter intencional de la acción u omisión constitutiva de la infracción;</p> <p>II.- Las condiciones económicas del infractor, y</p> <p>III.- La gravedad que la infracción implique en relación con el comercio de productos o la prestación de servicios, así como el perjuicio ocasionado a los directamente afectados.</p> <p>Quando la acción u omisión constitutiva de infracción se haya realizado a sabiendas, se impondrá multa por el importe del doble de la multa impuesta a la conducta infractora.</p> <p>Se entenderá que la acción u omisión se realizó a sabiendas, cuando el infractor conocía la existencia de los derechos del titular.</p>	<p>제392조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의 의도적 성격; 2. 범죄자의 경제적 조건 3. 제품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침해가 의미하는 심각성 및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afectados) 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p>침해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가 고의로 수행된 경우,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p> <p>가해자가 권리자의 권리의 존재를 안 경우, 고의로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가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p>
Artículo 394.- La persona que obstaculice o impida, por sí o por interpósita persona, 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de ejecución que ordene el Instituto será acreedor a las sanciones previstas en las fracciones I o III del artículo 388 de esta Ley.	제394조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특허청이 명령한 행정적 집행 절차를 막거나 방해한 자는 이 법 제38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rtículo 395.- Las sanciones establecidas en esta Ley y demás disposiciones derivadas de ella, se impondrán además de la indemnización que corresponda por daños y perjuicios, o la reparación del daño material a los afectados.	제395조 이 법과 이법에서 파생된 기타 규정에서 명시된 제재는 해당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한 물질적 손해 배상에 추가하여 부과된다.
<p>Artículo 396.- La indemnización por la violación de alguno o algunos de los derechos de propiedad industrial regulados en esta Ley, en ningún caso podrá ser inferior al cuarenta por ciento del indicador de valor legítimo presentado por el titular afectado, en términos del artículo 397 de esta Ley. La indemnización podrá ser reclamada, a elección del titular afectado ante:</p> <p>I.- El Instituto una vez concluido 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respectivo, en los términos de esta Ley, o</p> <p>II.- Los Tribunales de forma directa, conforme a lo dispuesto en la legislación común, y sin necesidad de declaración administrativa previa, atendiendo a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409 de esta Ley.</p>	<p>제396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하나 이상의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법 제397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권리자가 제시한 적법한 가치지표의 4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산업재산권 침해의 영향을 받는 권리자는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이전에 다음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의 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절차가 종료되면 특허청에 대하여 또는 2. 이 법 제40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법에 의해서 사전 행정적 선언 필요없이 법원에 직접청구
<p>Artículo 397.- Una vez que el Instituto haya declarado una infracción administrativa y ésta sea exigible, en términos de la Ley Federal de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el titular afectado podrá presentar su reclamo por los daños y perjuicios ocasionados, así como la cuantificación correspondiente a éstos, de manera incidental, para lo cual deberá ofrecer las pruebas que estime pertinentes.</p> <p>Para determinar el monto de la indemnización se tomará en cuenta la fecha en que se haya acreditado la infracción al derecho y, a elección del titular afectado,</p>	<p>제397조 특허청이 행정 위반을 선언하고 집행 가능하면 행정 절차 연방법에 따라 영향을 받은 소유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와 그에 상응하는 피해금액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p> <p>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권리 침해가 입증된 날짜 및 영향을 받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 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p>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2020)	번역
<p>cualquier indicador de valor legítimo presentado por éste, incluyendo:</p> <p>I.- El valor de los productos o servicios infringidos calculados por el precio del mercado, o el precio sugerido para la venta al por menor;</p> <p>II.- Las utilidades que el titular hubiera dejado de percibir como consecuencia de la infracción;</p> <p>III.- Las utilidades que haya obtenido el infractor como consecuencia de la infracción, o</p> <p>IV.- El precio que el infractor hubiera debido pagar al titular del derecho por el otorgamiento de una licencia, teniendo en cuenta el valor comercial del derecho infringido y las licencias contractuales que ya se hubieran concedido. Las obligaciones de hacer o no hacer establecidas en la resolución sobre el fondo de la controversia, que no puedan cumplirse por el infractor y que se traduzcan en daños y perjuicios al titular afectado, también podrán ser cuantificadas para efectos de la indemnización correspondiente.</p>	<p>1. 시장 가격 또는 권장 소매 가격으로 계산된 침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p> <p>2. 권리자가 침해의 결과로 더 이상 받지 못한 이익;</p> <p>3. 범죄의 결과로 범죄자가 얻은 이익, 또는</p> <p>4. 침해된 권리와 이미 부여된 계약상 라이선스의 상업적 가치를 고려하여, 위반자가 라이선스 부여에 대해 권리 보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가격. 위반자가 이행할 수 없고 영향을 받은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분쟁의 본안에 관한 결의안에 명시된 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위해 정량화될 수 있다.</p>
<p>Artículo 398.- De la reclamación del titular afectado se dará vista al infractor para que, dentro del plazo de quince días hábiles siguientes a la notificación respectiva, manifieste lo que a su derecho convenga y presente las pruebas que considere convenientes.</p> <p>Una vez desahogadas las pruebas y tomando en cuenta las manifestaciones presentadas, el Instituto determinará los daños y perjuicios ocasionados, así como el monto de la indemnización que corresponda.</p> <p>En la tramitación del incidente al que se refiere el presente artículo, se aplicarán las mismas reglas de los procedimientos de declaración administrativa respecto del ofrecimiento, admisión y desahogo de pruebas, previstas en el artículo 333 de esta Ley.</p>	<p>제398조 영향을 받은 권리자의 청구에 대해 가해자는 자신이 적정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통지 후 15영업일 이내에 권리의 적절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p> <p>일단 증거가 공개되고 제시된 진술을 고려하게 되면, 특허청은 그로 인한 피해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p> <p>이 조항이 언급하는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법 제333조에 규정된 증거의 제공, 인정 및 공개에 관한 행정신고절차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p>
<p>Artículo 399.- La acción para reclamar los daños y perjuicios causados por las infracciones a esta Ley, prescribirá en dos años contados a partir de la fecha en que el Instituto haya declarado una infracción administrativa y ésta sea exigible.</p>	<p>제399조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청구 소송은 특허청이 행정상 위반을 선언하고 그것이 집행 가능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p>
<p>Artículo 400.- La ejecución de la resolución del incidente emitida por el Instituto podrá promoverse de conformidad con las disposiciones contenidas en el Código Federal de Procedimientos Civiles, ante los Tribunales Federales competentes.</p>	<p>제400조 특허청에서 발행한 조치(resolución)의 집행은 연방 민사 소송법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관할 연방법원에서 수행될 수 있다.</p>
<p>Artículo 402.- Son delitos:</p> <p>III.- Divulgar a un tercero un secreto industrial, que se conozca con motivo de su trabajo, puesto, cargo, desempeño de su profesión, relación de negocios o en virtud del otorgamiento de una licencia para su uso, sin consentimiento de la persona que ejerza su control legal o de su usuario autorizado, habiendo sido prevenido de su confidencialidad, con el propósito de obtener un beneficio económico para sí o para el tercero o con el fin de causar un perjuicio a la persona que guarde el secreto;</p>	<p>제402조 범죄</p> <p>③ 산업비밀을 업무, 직위, 직무, 직업의 수행, 사업관계,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의 부여를 받은 자가 자신이나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또는 산업비밀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가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p>

멕시코 산업재산보호법(2020)	번역
<p>IV.- Apoderarse de un secreto industrial sin derecho y sin consentimiento de la persona que ejerza su control legal o de su usuario autorizado, para usarlo o revelarlo a un tercero, con el propósito de obtener un beneficio económico para sí o para el tercero o con el fin de causar un perjuicio a quien ejerce su control legal o a su usuario autorizado;</p> <p>V.- Usar la información contenida en un secreto industrial, que conozca por virtud de su trabajo, cargo o puesto, ejercicio de su profesión o relación de negocios, sin contar con el consentimiento de quien ejerce su control legal o de su usuario autorizado, o que le haya sido revelado por un tercero, que éste no contaba para ello con el consentimiento de la persona que ejerce su control legal o su usuario autorizado, con el propósito de obtener un beneficio económico o con el fin de causar un perjuicio a quien ejerce el control legal del secreto industrial o su usuario autorizado;</p> <p>VI.- Apropiarse, adquirir, usar o divulgar indebidamente un secreto industrial a través de cualquier medio, sin consentimiento de quien ejerce su control legal o de su usuario autorizado; con el propósito de causarle perjuicio u obtener un beneficio económico para sí o para un tercero;</p> <p>Los delitos previstos en las fracciones I a VI de este artículo se perseguirán por querrela de parte ofendida. Los delitos contemplados en las fracciones VII y VIII se perseguirán de oficio o por denuncia.</p>	<p>④ 자신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 또는 산업비밀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산업비밀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동의없이 산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p> <p>⑤ 자신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 또는 산업비밀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산업비밀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동의없이 업무, 직위, 직무, 직업의 수행, 사업관계로 알게된 산업비밀에 포함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p> <p>⑥ 자신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 또는 산업비밀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법적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의 동의없이 어떤 수단을 통해 산업비밀을 도용, 획득,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공개하는 행위</p> <p>이 조의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범주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 조의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되는 범주는 직권 또는 고소에 의하여 성립한다.</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5 장

미얀마

법령요약

● 미얀마 상표법(Trademark Law, 2019 Pyidaungsu Hluttaw Law No. 3)(2019. 1. 30. 제정)

미얀마 상표법	내용
제1장 제목, 정의 (Chapter I Title, Commencement and Definition)	제1조~제2조
제2장 목적 (Chapter II Objectives)	제3조
제3장 중앙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무 (Chapter III Forma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its Functions and Duties)	제4조~제5조
제4장 기관의 설립, 임무 Chapter IV Formation of the Agency and Its Duties	제6조~제8조
제5장 부서의 임무, 기능 Chapter V Duties and Functions of the Department	제9조
제6장 등록관, 심사관의 임명, 직무, 기능 Chapter VI Appointment of Registrars and Examiners and Stipulation of their Duties and Functions	제10조~제13조
제7장 등록부적격 상표 Chapter VII Marks not Eligible for Registration	제13조~제14조
제8장 청구 Chapter VIII Application	제15조~제22조
제9장 심사, 이의신청 및 등록 Chapter IX Examination, Objection, and Registration	제23조~제30조
제10장 우선권 Chapter X Right of Priority	제31조~제33조
제11장 상표등록 및 갱신 Chapter XI Term of Mark Registration and Renewal	제34조~제36조
제12장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 Chapter XII Rights Relating to a Registered Mark	제37조~제41조
제13장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의 양도 Chapter XIII Transfer of Rights Relating to a Registered Mark	제42조~제44조
제14장 등록상표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 Chapter XIV Granting Licenses for Registered Marks	제45조~제49조
제15장 상표등록 및 말소의 무효선언 Chapter XV Announcing the Invalidation of Mark Registration and Cancellation	제50조~제52조
제16장 지리적 표시 Chapter XVI Geographical indication	제53조~제62조
제17장 상호 Chapter XVII Trade Name	제63조
제18장 국제등록 신청 Chapter XVIII Applying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제64조
제19장 항소 Chapter XIX Appeal	제65조~제66조
제20장 지식재산법원의 설치 Chapter XX Establish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s	제67조

미얀마 상표법	내용
제21장 세관에 의한 등록상표의 보호 Chapter XXI Protection of Registered Mark Rights by the Customs Department	제68조~제76조
제22장 등록상표의 권리침해에 대한 지식재산권 법원의 권한 Chapter XXII Author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s regarding Infringements upon the Rights of Registered Marks	제77조~제86조
제23조 위반 및 벌칙 Chapter XXIII Offences and Penalties	제87조~제92조
제24장 기타 Chapter XXIV Miscellaneous	제93조~제106조

● 미얀마 경쟁법(Competition Law, Pyidaungsu Hluttaw Law No. 9, 2015)(2015. 1. 24. 시행)

미얀마 경쟁법	내용
제1장 명칭, 시행일 및 정의 (Chapter I Title, Enforcement and Definition)	(제1조~제2조) 법률의 명칭 및 시행, 정의
제2장 목적 (Chapter II Objective)	(제3조) 목적
제3장 기본원칙 (Chapter III Basic Principles)	(제4조) 기본원칙
제4장 위원회의 설치 (Chapter IV Formation of the Commission)	(제5조~제7조) 위원회의 설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의 권리, 위원회의 직무독립성
제5장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Chapter V Powers and Duties of the Commission)	(제8조~제10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위원회 업무의 정부 보고 등
제6장 조사위원단의 설치 및 그 기능과 의무 (Chapter VI Format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Functions and Duties thereof)	(제11조~제12조) 조사위원단의 설치, 직무
제7장 경쟁 제한 행위 (Chapter VII Act of Restraint on Competition)	(제13조~제14조) 경쟁 제한 행위의 범위, 면제되는 경쟁 제한 합의
제8장 시장 경쟁 독점 (Chapter VIII Monopolization on Market in Competition)	(제15조~제16조) 금지되는 시장 독점 행위, 허가 대상 행위
제9장 불공정 경쟁 (Chapter IX Unfair Competition)	(제17조~제29조) 불공정 경쟁 행위의 범위, 금지되는 사업자의 행위(소비자 기망 행위, 비밀 공개 행위, 협박 및 강요, 허위정보의 유포, 방해 및 교란, 불공정 경쟁 목적의 광고, 차별, 가격인하, 시장지배력의 남용 등)
제10장 사업결합 (Chapter X Collaboration among Business)	(제30조~제33조) 사업결합의 범위, 금지되는 사업결합 행위, 시장 점유율에 따른 사업결합의 금지, 면제
제11장 행정처분 및 이의제기 (Chapter XI Taking Administrative Action and Appeal)	(제34조~제38조) 조사위원단의 처분, 이의제기, 위원회의 결정, 벌금의 징수 등
제12장 범죄 및 벌칙 (Chapter XII Offences and Penalties)	(제39조~제44조) 징역, 벌금 등
제13장 기타 (Chapter XIII Miscellaneous)	(제45조~제56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 위원의 지위, 법률에 따른 기소, 벌금 징수권의 임명, 이 법에 따른 범죄의 관할, 민사소송의 제기, 자진신고자의 사면, 감면조치, 소관부처의 책무, 위원회 등의 면제 등

주요내용

● 미얀마 상표법

- 미얀마 상표법은 유명상표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서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서 간접적으로 부정한 상표사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 (등록거절 사유) 국제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 국제기구의 국기·국장 등을 모방하는 행위(§13),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유명상표의 소유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제14조)
- (부정경쟁행위) 등록된 유명상표의 소유자 및 해당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있음을 나타내어 해당 유명상표 소유자의 이익에 해가되는 경우(제38조),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등록된 지리표 표시의 사용(제57조), 상호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대중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제63조)
- (구제)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민사, 형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잠정조치(제79조 등), 손해배상(제56조) 등을 규정
- (벌금) 미얀마에서 상표법의 경우 기소된 벌금에 대하여 벌금금액을 정할 때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당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특이한 조항이 존재함(제83조)
- 단 상표법은 부정경쟁행위를 특정한 것이 아니며 등록상표를 기준으로 등록거절, 구제, 민사·형사·행정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과는 차이가 존재함

● 미얀마 경쟁법의 경우 부경법보다는 독점금지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제9장(불공정 경쟁)에서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 및 사업 비밀 침해를 불공정 경쟁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17조는 불공정 경쟁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후의 개별조항은 제17조에 열거된 각각의 행위 유형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
- 제11장부터 제13장까지 경쟁법 내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벌칙 등 사항을 규정

● 영업비밀 관련 사항

- 불공정 경쟁 행위의 하나로서 ‘사업 비밀(business secrets)의 유출’을 규정(단, 사업 비밀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부재)
- (사업 비밀 침해 행위) 사업자에 대해 다른 사업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6개 유형)를 금지
 - ① 사업 비밀을 비롯하여 그러한 비밀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 및 수집시 사업 비밀의 법적 소유자가 보호하는 보안조치를 침해하는 행위
 - ② 해당 사업의 법적 소유자의 허가 없이 사업 비밀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③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를 속이거나 사업 비밀 및 그러한 비밀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수집·유출

시 그러한 자의 신뢰를 남용하는 행위

- ④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타인이 소유하는 사업의 비밀과 상품 유통 과정을 유출하는 행위
- ⑤ 국영단체가 행사하는 보안조치를 침해하여 경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⑥ 제5항의 정보를 사용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거나 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물품을 유통하는 행위

● 부정경쟁 관련 사항

- (불공정 경쟁의 정의) 사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사업이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 관행
- (불공정 경쟁 행위의 유형) 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제18조), ② 사업 비밀의 유출(제19조), ③ 사업자 간 강박 행위(제20조), ④ 다른 사업에 대한 명예 훼손(제21조), ⑤ 다른 사업 활동의 방해(제22조), ⑥ 불공정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촉 활동(제23조 및 제24조), ⑦ 사업자 간 차별(제25조), ⑧ 생산 비용 또는 시장의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 판매(제26조), ⑨ 다른 사업과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거나 종용하는 등 사업상 영향력 남용(제27조 및 제28조), ⑩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경쟁의 불공정 행위라 정하는 행위의 행사
- (지식재산 관련) 제18조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사업자에 대해 ① 법적으로 등록된 물품명, 사업 구호, 상표, 포장, 지리적 표시 및 그 밖의 요소에 대한 허위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하려는 의도에 따른 행위와 ② 제1항의 정보를 사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

● 경쟁법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등

- (행정처분) 위원회 및 조사위원단에 불공정 경쟁 행위 등 위반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 부여(제8조, 제12조, 제34조~제38조)
- (사업 비밀 유출 행위의 처벌)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 짜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제41조)
- (상표 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행위)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 짜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제42조)
- (기타) 경쟁법상 조항은 타법에 우선하고(제44조), 경쟁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제50조), 피해자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제51조)

법령비교표

● 미얀마 상표법(2019ver)

미얀마 상표법(2019)	번역
<p>13. Any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a mark constitutes absolute grounds for refusal and the aforementioned mark is not eligible for registration:</p> <p>(f) directly copying or imitating or misleading, without the approval of relevant authorities, all or part of a country's flag, ceremonial appearance, other marks and symbols, a legal mark indicating the management or guarantee by a State, or a mark of quality guarantee, or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eremonial appearance, flags, or other marks, names, including said organization's acronyms, full name, or any part;</p> <p>(g) use of marks and signs separately protected under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in which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is a Party.</p>	<p>제13조 다음의 특성을 어느 하나라도 가진 경우 절대적 거절사유로 그 표장은 등록대상이 아니다.</p> <p>(f)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이 없는 해당 국가의 국기, 의례용 외관, 기타 표시, 기호, 국가의 관리 또는 보증을 나타내는 법적 표시, 품질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복사하거나 모방, 오도하는 행위, 다자간 국제기구의 행사모습, 깃발, 기타표시, 약어 등</p> <p>(g) 미얀마 연방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에 따라 별도로 보호되는 마크 및 기호의 사용</p>
<p>14. If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o a mark, then it constitutes relative grounds for refusal and the mark is ineligible for registration.</p> <p>(e) if a mark registration application is made for a mark that misleads consumers by not only being identical or similar to a well-known mark but is also used in identical or similar goods or services;</p> <p>(f) if a mark registration application is made for a mark that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registered well-known mark but the goods or services are not identical or similar but may indicate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owner of the well-known mark and the goods or services that the mark in question is being used for and such use may be harmful to th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well-known mark.</p>	<p>제14조 상표의 다음 특성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이는 상대적 거절사유가 되며 해당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p> <p>(e) 유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할 뿐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어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장에 대하여 상표 등록출원한 경우</p> <p>(f) 등록된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 신청이 이루어졌지만,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유명상표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음을 나타내어 해당 유명상표의 소유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p>
<p>38. The right holder shall,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in sections 39 and 40,:</p> <p>(a) Enjoy the following as an exclusive right:</p> <p>(1) a right to prevent, in accordance with this law, the use by any other person, without his consent in the course of trade, of an identical or similar mark for identical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if such use misleads the public.</p> <p>(2) the right to pursue criminal action, civil action or both against those who infringe on the rights relating to a registered mark.</p> <p>(3)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a right to prevent the use of a mark identical or similar to a registered, well-known mark for different goods or services, without the consent of owner of the mark, in the course of trade:</p> <p>(aa) if it indicates that there is a connection with the owner of a registered well-known mark and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said mark is used;</p> <p>(bb) if it is harmful to the interests of such registered mark owner.</p> <p>(이하 생략)</p>	<p>제38조 상표권자는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p> <p>(a) 독점적으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p> <p>(1) 이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거래과정에서 동의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권리</p> <p>(2) 등록상표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p> <p>(3) 다음 조건에서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등록된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거래과정에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p> <p>(aa) 등록된 유명상표의 소유자 및 해당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p> <p>(bb) 그러한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이익에 해가되는 경우</p>

미얀마 상표법(2019)	번역
<p>57. (a) A 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 may be used in the course of trade only by producers who carry out their activities in the region described in the registration for the goods described in said registration. Such goods must meet the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s stipulated in the registration records.</p> <p>(b) For homonyms in geographical indications, protection shall be granted only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actice, between the name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is already registered and that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is registered later. Protection shall be rendered by considering the need to treat relevant producers fairly and to not mislead consumers.</p> <p>(c) The right holder of a 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 is entitled to prohibit the following:</p> <p>(1) use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in any manner by falsely describing that a product is from the region stated in said geographical indication even though it is from another place of origin in order to deceive the public;</p> <p>(2) any use of a 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creates unfair competition;</p> <p>(3) the use of a disputed geographical indication for goods that are not from the region indicated in said geographical indication for indicating the origins of goods, for use after translating said geographical indication, or for the use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together with the description of the type, group, form, imitation or similar descriptions.</p> <p>(d) Though the region, zone or territory of a good is accurately other geographical indications, which mislead the public by incorrectly stating that the goods are produced from another region, shall not be granted rights under subsections (a) and (c).</p>	<p>제57조 (a)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해당 등록에 설명된 상품에 대하여 설명된 지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생산자만이 무역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상품은 등록기록에 명시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충족하여야 한다.</p> <p>(b) 지리적 표시의 동음이의어의 경우, 이미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명칭과 나중에 등록되는 지리적 표시의 명칭 사이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된다. 해당 생산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c)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권리자는 다음을 금지할 수 있다.</p> <p>(1) 대중을 속일 목적으로 다른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지리적 표시에 기재된 지역의 제품임을 거짓으로 기술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p> <p>(2)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사용</p> <p>(3)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 상기 지리적 표시를 번역한 후, 상기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p> <p>(d) 상품의 지역, 구역 또는 영역이 정확히 다른 지리적 표시이지만 상품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잘못 기재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경우 (a)-(c)항에 따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p>
<p>62.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ction must be take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n taking ac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rights of a mark if the stipulations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in this Law are violated.</p>	<p>제62조 지리적 표시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 외에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63. (c) The trade name shall be protected if the use of an identical or similar mark as said trade name as another trade name or another mark, without any authorization, misleads the public.</p>	<p>제63조 (c) 승인없이 해당 상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다른 상호명 또는 다른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중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 해당 상호명은 보호된다.</p>
<p>77. (a) The right holder ma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in sections 79 and 80, apply for a miscellaneous suit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 for provisional measures orders through civil action for damages.</p> <p>(b) The right holder may apply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 for criminal action or civil action.</p>	<p>제77조 (a) 상표권자는 제79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과 잠정조치 명령 등 지식재산권법원에 기타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p> <p>(b) 상표권자는 지식재산권법원에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p>
<p>78.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p> <p>(a) must deem that a mark protected under this Law is violated if any person, besides the right holder of the mark, exercises any right under section 38 in Myanmar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p> <p>(b) must deem that the use, without consent, of an</p>	<p>제78조 지식재산권법원 :</p> <p>(a) 상표권자 외에 다른 사람이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미얀마에서 제 38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가 침해된 것으로 간주한다.</p> <p>(b) 동의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되</p>

미얀마 상표법(2019)	번역
<p>identical or similar to an unregistered well-known mark for identical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as misleading the public.</p>	<p>지 않은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용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경우도 침해로 간주한다.</p>
<p>79. (a) If an application is submitted according to subsection (a) of section 77,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 may issu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rovisional measure orders for civil remedies with regards to the infringement of mark rights: (1) a suitable order to prevent the entry of products which infringe upon mark rights, including imported goods where duties have been paid to the Customs Department, into Myanmar's commercial area; (2) a suitable order to maintain the original condition of evidence relating to alleged infringement upon mark rights; (3) a suitable order to amend, cancel or confirm the suspension order issued by the relevant Customs Department. (b)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 may request the following from the applicant in order to conduct provisional measures: (1) sufficient proof that the applicant is the right holder and any evidence that his right is being infringed upon or is likely to be infringed upon. (2) sufficient security to prohibit abuse of the provisional measure process. (c)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 may direct the applicant to provide any information to distinguish the alleged infringing goods in order to carry out the interim order under subsection (a).</p>	<p>제79조 (a) 제77조 제a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사구제를 위해 다음 잠정조치 명령 중 하나 이상을 발부할 수 있다. (1) 관세청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품을 포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미얀마 상업지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명령 (2) 상표권 침해 주장과 관련된 증거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명령 (3) 관련 세관에서 발행한 중단명령을 수정, 취소 또는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명령 (b) 지식재산권법원은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권리보유자라는 충분한 증거와 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 (2) 잠정조치 절차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보증 (c) 지식재산권법원은 신청자에게 (a)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장된 침해상품을 구별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80. (a)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 may make provisional measure orders in absentia under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1) any delay which can cause irreparable damage to the right holder; (2) actual threat that the evidence will be destroyed and lost. (이하 생략)</p>	<p>제80조 (a) 지식재산권법원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재중 임시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권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연 (2) 증거가 인멸, 소실 될 수 있는 실제 위험 (이하 생략)</p>
<p>81. (a) With regards to the infringement of mark right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 may issu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rders without prejudice to any civil-related laws and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n a suit under subsection (b) of section 77: (1) (생략) (2) (aa) an order for the infringer to pay a sufficient sum to the right holder to compensate for the damages suffered by the right holder due to the infringement of mark rights or, in appropriate cases, the amount of damages set beforehand by the right holder or the profits enjoyed by the infringer or both; (bb) an order to pay an appropriate amount for the right</p>	<p>제81조 (a)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법원은 (b)항에 따른 소송에서 민사관련 법률 및 민사소송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다음 명령 중 하나를 말할 수 있다. (1) (생략) (2) (aa)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전에 정해진 손해액 또는 권리자 및 침해자가 향유하는 이익 등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 (bb) 법원 수입료 및 변호사 수입료를 포함하여 권리자의 비용에</p>

미얀마 상표법(2019)	번역
holder's expenses, including court fees and attorney fees; (3) an order to destroy or remove the mark rights infringing goods from the trade routes market, without paying damages, in order not to harm the right holder; (4) an order to destroy or remove the equipment mainly used to produce the mark rights infringing goods from the commercial area.	대해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명령 (3)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않기 위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상표권 침해 상품을 시장에서 파기하거나 제거하라는 명령 (4) 상표권 침해 상품을 생산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장비를 상업지역에서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명령
83. (a)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 may,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existing laws, issue an order requiring the other Party to submit evidence while prot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appropriate cases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이하 생략)	제83조 지식재산권법원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조건에서 적절한 경우에 기밀정보를 보호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상대방 당사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하 생략)
84. Whe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rt sets the amount of a fine for an offence prosecuted under this Law, it may issue an order to pay all or a part of such fine to the grieved party as damages.	제84조 지식재산권법원이 이법에 따라 기소된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정할 때 해당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89. Whoever is convicted of using flags or symbols, which receive special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where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is a Party, as a mark for commercial purposes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three (3) years,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5,000,000) kyats, or both.	제89조 미얀마가 당사국인 국제협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발 또는 상징을 상업적 목적의 표장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Kyat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 미얀마 경쟁법

미얀마 경쟁법(Competition Law)	번역
Chapter I Title, Enforcement and Definition	제1장 명칭, 시행일 및 정의
2. The expressions contained in this Law shall have the meanings given hereunder: (a) State means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b) Government means the Union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c) Commission means the Myanmar Competition Commission formed under this Law. (d) Ministry means the ministry assigned duty by the Union Government. (e) Competition means business related competition carried out by businesses among the businessmen in the market through competitive business activities to get more number of customers who consume by purchasing their goods and services, market share and market dominance. (f) Competition Policy means policies laid down by the State to cause direct effect on production, services, trade, investment and businesses in order to emerge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nsumers from monopolization. (g) Act of Restraint on Competition means the act which reduces or hinders the competition among businesses in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국가란 미얀마연방공화국을 말한다. ② 정부란 미얀마연방공화국의 연방 정부를 말한다. ③ 위원회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미얀마경쟁위원회를 말한다. ④ 소관부처란 연방 정부로부터 직무를 지정받은 부처를 말한다. ⑤ 경쟁이란 사업자 사이에서 시장에서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업 관련 경쟁을 의미하며,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 시장 점유율 및 시장지배 확대를 위한 경쟁적 사업 활동과 같은 방법을 말한다. ⑥ 경쟁 정책이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독점으로부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 서비스, 거래, 투자 및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을 말한다. ⑦ 경쟁 제한 행위란 시장에서 사업간 경쟁을 감소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용어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시장 지배적 위치 및

미얀마 경쟁법(Competition Law)	번역
<p>the market. In this expression, agreements of restraint on competition, taking chance on the abuse of the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monopolization by any individual or group are also included.</p> <p>(h) Unfair Competition means competitive practices by businesses during the business process which cause or may cause damage to the interests of the State or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 businesses or of consumers.</p> <p>(i) Business means any business, such as manufactures, distributions, purchases, sells, imports, exports and exchanges the goods, or service.</p> <p>(j) Businessman means the person who carries out any business or service business. In this expression, an organization that operates business or service is also included.</p> <p>(k) Goods means materials that is traded or manufactured or consumed for the purpose of this Law. In this expression, debentures, stocks and shares are also included.</p> <p>(l) Service means business that is carried out by fee or remuneration or consider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Law. In this expression, businesses that are specified as service by the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are also included.</p> <p>(m) Market means an area where commercial dealings are conducted between persons desirous of selling and purchasing of goods and services.</p> <p>(n) Market-share means the percentage or ratio of the sales or services provided by the businessman out of the total sale volume of the market.</p> <p>(o) Price means the amount specified in the sale of goods or services.</p> <p>(p) Committee means other committees including the Investigation Committee formed by the Commission in order to carry out the functions and duties of the Commission.</p> <p>(q) Working group means the working group formed by the committee in order to carry out functions and duties relating to competition.</p>	<p>독점의 남용을 시도하는 경쟁 제한 합의 역시 포함한다.</p> <p>⑧ 불공정 경쟁이란 사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사업이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 관행을 말한다.</p> <p>⑨ 사업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 유통, 매수, 매도, 수입, 수출 및 교환과 같은 모든 사업을 말한다.</p> <p>⑩ 사업자란 사업 또는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용어는 사업 또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역시 포함한다.</p> <p>⑪ 물품이란 이 법의 목적에 맞게 거래·제조·소비하는 물건을 말한다. 이 용어는 채무증서, 주식 및 지분 역시 포함한다.</p> <p>⑫ 서비스란 이 법의 목적에 맞는 요금, 보수, 대가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용어는 정부가 서비스업으로 별도 지정하는 사업 역시 포함한다.</p> <p>⑬ 시장이란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자 간에 상업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p> <p>⑭ 시장 점유율이란 시장 전체 판매 규모에서 사업자의 판매 또는 제공 서비스가 차지하는 백분율 또는 비율을 말한다.</p> <p>⑮ 가격이란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서 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p> <p>⑯ 위원단이란 조사단과 같이 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그 밖의 조직을 말한다.</p> <p>⑰ 실무단이란 위원단이 경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p>
Chapter V Powers and Duties of the Commission	제5장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p>8. The powers and duties of the Commission are as follows:</p> <p>(a) cooperating and coordinating with international, regional organizations or bilateral countries on competition matters;</p> <p>(b) exempting from the compliance of this Law to businesses essential for the benefit of the State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f necessary;</p> <p>(c) forming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according to the necessity and specifying functions and duties thereof;</p> <p>(d) making decision on the matters submitted by the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p> <p>(e) specifying necessary forms, procedures and terms and conditions of application in order to obtain permission to cooperate businesses or to restrain competition;</p>	<p>제8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국제·지역 기구 또는 국가들과 경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력 및 조정</p> <p>② 필요한 경우 국익에 필수적인 사업과 중소기업에 이 법의 적용을 면제</p> <p>③ 필요한 경우 특정 직무를 수행할 위원단 및 실무단 설치</p> <p>④ 위원단 및 실무단이 제출하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p> <p>⑤ 협동 사업 또는 경쟁 제한의 허가 취득을 위한 신청 양식, 절차 및 조건 명시</p>

미얀마 경쟁법(Competition Law)	번역
<p>(f) specifying market share, supply, amount of capital, number of share and magnitude of owned property relating to business which can cause detriment to competition due to dominance, purchase, acquisition or merger among businesses of full or partial ownership of a business by another business;</p> <p>(g) specifying and determining market share, supply, amount of capital, number of share and magnitude of owned property relating to business which is assumed as monopolization by the Commission;</p> <p>(h) directing to a business or a group of businesses to reduce the specified magnitude of market share if the ownership of market share of such business or group of businesses exceeds or is assumed by the Commission to be exceeding, the stipulated magnitude that can cause detriment to competition in the market;</p> <p>(i) prohibiting by issuing notification of restriction on market share and sale promotion of any businessman who might monopolize assumed by the Commission;</p> <p>(j) assigning duty to investigate if the Commission suspects that there is a violation of any prohibitions contained in this Law or if a concrete complaint has received;</p> <p>(k) calling for necessary evidence and data related to competition from any businessman;</p> <p>(l) calling and inquiring persons concerned to make necessary inquires relating to competition;</p> <p>(m) inviting and discussing with professionals and experts in accord with the requirement to provide data, explanation, suggestions or opinions relating to competition;</p> <p>(n) seizing the necessary evidence and properties in accord with the stipulations as exhibits to inspect case by case, and passing permission order or refusing to return such evidence or property on bond or revoking the permission;</p> <p>(o) scrutinizing report on findings submitted by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directing to prosecute if necessary;</p> <p>(p) arranging to grant an accomplice a pardon with conditions if such accomplice testifies without any concealment before the Court that he has involved in committing the crime;</p> <p>(q) submitting advice to the Government through the Ministry in respect of matters relating to competition;</p> <p>(r) performing the duties relating to competition assigned by the Government from time to time.</p>	<p>⑥ 한 사업이 다른 사업의 전체 또는 부분 소유권을 지배, 매수, 취득 또는 합병하여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의 시장 점유율, 공급, 자본의 양, 주식의 수, 소유자산의 규모 명시</p> <p>⑦ 위원회가 독점으로 간주하는 사업의 시장 점유율, 공급, 자본의 양, 주식의 수, 소유자산의 규모 확정 및 명시</p> <p>⑧ 사업 또는 사업 단체 소유의 시장 점유율이 시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규모를 초과하거나 위원회가 그와 같이 초과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 단체에 시장 점유율 규모 축소 지시</p> <p>⑨ 위원회가 독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및 판촉 활동에 대한 제한을 고지하여 금지</p> <p>⑩ 이 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원회가 의심하는 때 또는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조사 의무 부과</p> <p>⑪ 사업자에게 경쟁과 관련된 필수 증빙 및 자료 제출 요구</p> <p>⑫ 경쟁과 관련된 필수 조사를 위한 관련자 호출 및 신문(訊問)</p> <p>⑬ 경쟁과 관련된 자료, 설명, 권고 또는 의견 제공에 필요한 전문가 초청 및 토론</p> <p>⑭ 필수 증거 및 자산을 법규에 따라 사건별 조사를 위한 증거로서 압류, 허가 명령의 전달, 압류 증거나 자산 반환의 거부, 또는 허가의 취소</p> <p>⑮ 조사단이 제출한 조사 보고서의 검토 및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 지시</p> <p>⑯ 공범자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법정에서 명백히 증언하는 때에는, 공범자의 조건부 사면 추진</p> <p>⑰ 경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해당 부처를 통해 정부에 권고안 제출</p> <p>⑱ 그 밖에 정부에서 별도 지정하는 경쟁과 관련된 업무 수행</p>
<p>Chapter VI Format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Functions and Duties thereof</p>	<p>제6장 조사단의 설치 및 그 직무</p>
<p>12. The functions and duties of Investigation Committee are as follows:</p> <p>(a) calling and examining for necessary evidence, document, financial evidence and concrete statement of reasons and calling and inquiring necessary witnesses for investigation matters;</p>	<p>제12조 조사단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필수 증빙, 문서, 재무 증빙 및 구체적 사유서를 요구하고 심사하며, 조사의 사항에 필요한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p>

미얀마 경쟁법(Competition Law)	번역
<p>(b) in performing the matters contained in subsection (a), submitting to the respective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through the Commission for enabling to take an action if it fails to comply without concrete reason;</p> <p>(c) entering, inspecting and searching, in accordance with Law, the building, land and workplace of any businessman or person being investigated or any other person who seems to be involved in connection with them;</p> <p>(d) submitting report on findings of investigation and for enabling to take necessary action under this Law to the Commission;</p> <p>(e) forming necessary working groups and specifying functions and duties thereof;</p> <p>(f) receiving and vetting reports on findings of investigation by working groups.</p>	<p>② 제1항에 포함된 사항을 수행할 때, 구체적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하여 관계 기관과 단체의 지시에 따라 행동</p> <p>③ 조사 대상인 사업자나 개인 또는 그 밖에 그와 관련이 있는 자의 건물, 토지 및 사업장을, 법률에 따라, 출입하고 조사하며 수색</p> <p>④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p> <p>⑤ 필요에 따라 실무단을 설치하고 그 직무를 지정</p> <p>⑥ 실무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접수 및 검토</p>
Chapter IX Unfair Competition	제9장 불공정 경쟁
<p>17. The acts for the purposes of unfair competition under this law include as follows:</p> <p>(a) misleading of consumers;</p> <p>(b) disclosing business secrets;</p> <p>(c) coercing of businessmen to each other;</p> <p>(d) defaming of the reputation of another business;</p> <p>(e) disturbing the operation of another business;</p> <p>(f) advertising and sale promotion for the purpose of unfair competition;</p> <p>(g) discriminating among businessmen;</p> <p>(h) selling goods at price lesser than production cost or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in the market;</p> <p>(i) abusing influence of his business, inducing or instigating of a party under contract with other businesses to breach the contract;</p> <p>(j) exercising unfair competitive act in competition stipulated by the Commission for the interests of consumers when necessary.</p>	<p>제17조 이 법의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p> <p>①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p> <p>② 사업 비밀의 유출</p> <p>③ 사업자 간 강박 행위</p> <p>④ 다른 사업에 대한 명예 훼손</p> <p>⑤ 다른 사업 활동의 방해</p> <p>⑥ 불공정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촉 활동</p> <p>⑦ 사업자 간 차별</p> <p>⑧ 생산 비용 또는 시장의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 판매</p> <p>⑨ 다른 사업과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거나 종용하는 등, 사업상 영향력 남용</p> <p>⑩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경쟁의 불공정 행위라 정하는 행위를 행사</p>
<p>18. No businessman shall carry out any of the following acts which mislead the consumers:</p> <p>(a) carrying out with intention to compete with the use of deceptive information which mislead the legally registered name of goods, business slogan, logo, packaging, geographical indication and other elements.</p> <p>(b) carrying out business such as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by using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subsection (a).</p>	<p>제18조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는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① 법적으로 등록된 물품명, 사업 구호, 상표, 포장, 지리적 표시 및 그 밖의 요소에 대한 허위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하려는 의도에 따른 행위</p> <p>② 제1항의 정보를 사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행위</p>
<p>19. No businessman shall, in respect of disclosing secrets of any other business, carry out any of the following acts:</p> <p>(a) infringing security measures protected by the lawful owners of business secrets in accessing and collecting of business secrets and information related to such secret;</p> <p>(b) using or revealing information of business secret without permission of lawful owner of such business;</p> <p>(c) deceiving a person with an obligation to maintain</p>	<p>제19조 사업자는, 다른 사업의 비밀 공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① 사업 비밀을 비롯하여 그러한 비밀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 및 수집 시 사업 비밀의 법적 소유자가 보호하는 보안조치를 침해하는 행위</p> <p>② 해당 사업의 법적 소유자의 허가 없이 사업 비밀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p> <p>③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자를 속이거나 사업 비밀 및 그러한 비</p>

미얀마 경쟁법(Competition Law)	번역
secrets or abusing the confidence of such person in accessing, collecting, collecting or revealing of business secrets and information related to such secrets; (d) leaking business secrets and procedures of products distribution owned by other persons who conduct systema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Law; (e) leaking economic information by infringing security measures exercised by the State-owned organization; (f) carrying out business activities or applying business licence or distributing goods by using information contained in sub-section(e).	밀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수집·수집·유출시 그러한 자의 신뢰를 남용하는 행위 ④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타인이 소유하는 사업의 비밀과 상품 유통 과정을 유출하는 행위 ⑤ 국영단체가 행사하는 보안조치를 침해하여 경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⑥ 제5항의 정보를 사용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거나 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물품을 유통하는 행위
Chapter XI Taking Administrative Action and Appeal	제11장 행정처분 및 이의제기
34. The Committee may take the following one action or more than one action upon a businessman who violates the orders, directives and procedures issued under this Law: (a) warning; (b) imposing specified fine; (c) coordinating with relevant Ministries to close the operation of business temporarily or permanently.	제34조 위원단은 이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 지시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① 경고 ② 규정 벌금 부과 ③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업 활동을 영구 또는 일시 폐쇄
35. Any person who dissatisfies the order or decision passed by the Committee may appeal to the Commission within 60 days from the receiving date of such order or decision.	제35조 위원단이 내리는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명령이나 결정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6. (a) The Commission may confirm, amend or cancel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when it is appealed under section 35. (b) The decision of the Commission under sub section (a) shall be final and conclusive.	제36조 ① 위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위원단의 결정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결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
37. In default of payment of fine specified under sub section (b) of section 34, it shall be collected as arrears of income tax.	제37조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의 체납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38. The administrative action passed under this Law shall not prohibit taking criminal action or civil action.	제38조 이법에 따라 내리는 행정처분은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제기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Chapter XII Offences and Penalties	제12장 범죄 및 벌칙
41. Any person who violates the prohibitions contained in section 15, section 19, section 22, section 26, section 27, section 31 or section 32 shall, on conviction,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o years or with fine not exceeding Kyat one hundred lakhs or with both.	제41조 누구든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또는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유죄로 선고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 짜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42. Any person who violates the prohibitions contained in section 18, section 20, section 21, section 25 or section 28 shall, on conviction,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one year or with fine not exceeding Kyat fifty lakhs or with both.	제42조 누구든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유죄로 선고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 짜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한다.
44. Notwithstanding contained in any existing law, the matters related to any provision contained in this law regarding competition shall be carried out by this Law.	제44조 기존 어느 법률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대하여 이법에서 규정하는 조항과 관련한 사항은 이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Chapter XIII Miscellaneous	제13장 기타

미얀마 경쟁법(Competition Law)	번역
49. If a person prosecuted is a business organization under this Law, the responsible person of such organization shall be prosecuted together with such business organization if he is unable to prove that the offence is committed without his knowledge or with due diligence to prevent the offence and such responsible person shall be deemed as jointly guilty for such offence if such organization is convicted.	제49조 피고인이 이법에 따른 사업 단체인 때에는, 해당 단체의 책임자가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범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자를 해당 사업 단체와 함께 기소하여야 하며 해당 단체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그 책임자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동의 죄가 있는 것으로 본다.
50. The offences contained in this Law are determined as the cognizable offences.	제50조 이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경찰관할 범죄범죄 ¹²⁾ 로 정한다
51. An aggrieved person may also sue any person being convicted in civil action for his loss under this law.	제51조 피해자는 유죄 선고를 받은 자를 상대로 이 법에 따라 자신의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 역시 제기할 수 있다

12) 원문의 "cognizable offences"에 대하여 미얀마 「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명시된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경찰관할 범죄"란 ... (중략) ... 경찰관이, 별표2 또는 현행 법률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f) "cognizable offence" means an offence for ... which a police officer may,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schedule or under any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arrest without warrant:)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6 장

베트남

법령요약

● 베트남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No. 50/2005/QH11)

- (제정) 2005. 11. 29. / (최종개정) 2019. 6. 14. / (시행) 2019. 11. 1. / (발효) 2019. 1. 14.¹³⁾

베트남 지식재산법		해당조문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제12조)	
제2부 저작권 및 인접권 (part two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장 저작권 및 인접권의 보호 요건 (chapter i conditions for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절 저작권의 보호 요건 (section 1 conditions for protection of copyright)	(제13조 ~제15조)
		제2절 인접권의 보호 요건 (section 2 conditions for protection of related rights)	(제16조 ~제17조)
	제2장 저작권 및 인접권의 보호 내용, 제한 및 기간 (chapter ii contents of, limitations on and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저작권의 보호 내용, 제한 및 기간 (section 1 contents of, limitations on and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제18조 ~제28조)
		제2절 인접권의 내용, 제한 및 기간 (section 2 contents of, limitations on, and term of protection of related rights)	(제29조 ~제35조)
	제3장 저작권 소유자 및 인접권 소유자 (chapter iii copyright holders, related right holders)		(제36조 ~제44조)
	제4장 저작권 및 인접권의 양도 (chapter iv transfer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절 저작권 및 인접권의 양도	(제45조 ~제46조)
		제2절 저작권 및 인접권 이용의 이전	(제47조 ~제48조)
	제5장 저작권 및 인접권의 등록 증명 (chapter v certificates of registered copyright or related rights)		(제49조~제55조)
제6장 저작권 및 인접권 분야의 대리, 자문 및 서비스 기관 (chapter vi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representation, consultancy and service organizations)		(제56조 ~제57조)	
제3부 산업재산권 (part three industrial property rights)	제7장 산업재산권의 보호 요건 (chapter vii conditions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제1절 발명의 보호 요건 (section 1 protection conditions for inventions)	(제58조 ~제62조)
		제2절 산업디자인의 보호 요건 (section 2. Protection conditions for industrial designs)	(제63조 ~제67조)
		제3절 배치설계의 보호 요건 (section 3 protection conditions for layout-designs)	(제68조 ~제71조)
		제4절 표장의 보호 요건 (section 4 protection conditions for marks)	(제72조 ~제75조)
		제5절 상호의 보호 요건 (section 5. Protection conditions for trade names)	(제76조 ~제78조)
		제6절 지리적 표시의 보호 요건 (section 6 protection conditions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제79조 ~제83조)

13)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2019년 6월 14일 통과된 「보험사업법 및 지식재산법의 일부개정법」(AMENDMENTS TO SOME ARTICLES OF LAW ON INSURANCE BUSINESS AND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No. 42/2019/QH14)에 의해 최종개정되었으며, 동 일부개정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을 규정(제3조제1항)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 2019년 1월 14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제3조제4항)고 하고 있다. 이는 동 일부개정법이 CPTPP 이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으로, CPTPP 발효일에 연동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베트남 지식재산법		해당조문	
	제7절 영업비밀의 보호 요건 (section 7 protection conditions for business secrets)	(제84조 ~제85조)	
제8장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표장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성립 (chapter viii establish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to inventions, industrial designs, layout-designs, 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제1절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표장 및 지리적 표시의 등록 (section 1 registration of inventions, industrial designs, layout-designs, 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제86조 ~제99조)	
	제2절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 (section 2. Industrial property registration applications)	(제100조 ~제107조)	
	제3절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 절차 및 보호권 허여 절차 (section 3 procedures for processing industrial property registration applications and granting protection titles)	(제108조 ~제119조)	
	제4절 국제출원 및 진행 (section 4 international applications and processing thereof)	(제120조)	
제9장 산업재산권의 소유권자, 범위 및 제한 (chapter ix owners and contents of, and limitations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제1절 산업재산권의 소유권자 및 범위 (section 1 owners and content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제121조 ~제131조)	
	제2절 산업재산권의 제한 (section 2 limitations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제132조 ~제137조)	
제10장 산업재산권의 이전 (chapter x transfer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제1절 산업재산권의 양도 (section 1 assign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제138조 ~제140조)	
	제2절 산업재산권 대상의 실시 (section 2 licensing of industrial property objects)	(제141조 ~제144조)	
	제3절 발명의 강제실시 (section 3 compulsory licensing of inventions)	(제145조 ~제147조)	
	제4절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등록 (section 4 registration of contracts for transfer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제148조 ~제150조)	
제11장 산업재산권 대리 (chapter xi industrial property representation)		(제151조 ~제156조)	
제12장 식물품종의 보호를 위한 요건 (chapter xii conditions for protection of rights to plant varieties)		(제157조 ~제163조)	
제4부 식물품종권 (part four rights to plant varieties)	제13장 식물품종권의 성립 (chapter xiii establishment of rights to plant varieties)	제1절 식물품종의 보호를 위한 요건 (section 1 establishment of rights to plant varieties)	(제164조 ~제173조)
		제2절 출원 및 보호를 위한 등록출원 처리절차 (section 2 protection registration applications and procedures for processing thereof)	(제174조 ~제184조)
제14장 식물품종권의 내용 및 제한 (chapter xiv contents of and limitations on rights to plant varieties)		제1절 식물품종권의 내용 (section 1 contents of rights to plant varieties)	(제185조 ~제189조)
		제2절 식물품종권의 제한 (section 2 limitations on rights to plant varieties)	(제190조 ~제191조)
제15장 식물품종권의 이전 (chapter xv transfer of rights to plant varieties)		(제192조 ~제197조)	

베트남 지식재산법		해당조문	
제5부 지식재산권의 보호 (part f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16장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 (chapter xvi general provisions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198조 ~제201조)	
	제17장 민사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처리 (chapter xvii handling of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civil remedies)	(제202조 ~제210조)	
	제18장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처리, 지식재산 관련 수출입 통제 (chapter xviii handling of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medies; control of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imports and/or exports)	제1절 행정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의 처리 (section 1 handling of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medies)	(제211조 ~제215조)
	제2절 지식재산 관련 수출입 통제 (section 2 control of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imports and/or exports)	(제216조 ~제219조)	
제6부 시행규정 (part six implementation provisions)		(제220조 ~제222조)	

● 베트남 경쟁법(Competition Law 2018, Law No. 23/2018/QH14)

- (전면개정) 2018. 6. 12. / (시행) 2019. 7. 1.

베트남 경쟁법	해당조문
제1장 일반규정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조~제8조)
제2장 관련 시장 및 시장 점유율 (chapter ii relevant market and market share)	(제9조~제10조)
제3장 반경쟁 계약 (chapter iii anti-competitive agreements)	(제11조~제23조)
제4장 지배적 지위 남용, 독점적 지위 남용 (chapter iv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abuse of a monopoly position)	(제24조~제29조)
제5장 경제력 집중 (chapter v economic concentration)	(제30조~제44조)
제6장 금지된 불공정 경쟁 관행 (chapter vi prohibited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제45조)
제7장 국가경쟁위원회 (chapter vii 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제46조~제53조)
제8장 경쟁 관련 법적 절차 (chapter viii competition legal proceedings)	(제54조~제109조)
제9장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chapter ix sanctions against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	(제110조~제115조)
제10장 시행 (chapter x implementation)	(제116조~제118조)

주요내용

● 관련 법제 개관

-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경쟁법」을 두고 있는데, 舊경쟁법(Competition Law 2004)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함께 다루고 있어 지식재산법과의 사이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6월 新경쟁법(Competition Law 2018)이 통과
- 新경쟁법은 지식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명시를 삭제하고, 부정경쟁 관련 규정에 있어서 경쟁법과 타법 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타법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
- 따라서 지식재산 관련 부정경쟁행위는 지식재산법에 따라 규율되며, 지식재산법에 전체적으로 분포하여 개별 조항에 관련 내용을 포함
- (영업비밀) 「지식재산법」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에 대해 제3부 제7장 제7절(영업비밀의 보호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제7절에서 영업비밀 관련 사항을 모두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제3부(산업재산권) 및 제5부(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걸쳐서 영업비밀 침해 유형, 구제 등 규정을 두고 있음

● 영업비밀 관련

- 지식재산법은 산업재산권의 대상으로 ‘영업비밀’을 규정하고(제3조), 산업재산권의 정의에 ‘영업비밀’과 ‘불공정 경쟁 방지의 목적’을 포함(제4조)
- (영업비밀) 재정적, 지적 투자 활동으로부터 획득된 정보로서 공개되지 않았고 또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제4조)
- (영업비밀 성립요건)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①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용이하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② 사업 과정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영업 비밀을 이용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③ 공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도록 소유자가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제84조)
-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의 사용에는 ① 물품 제조,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 거래에 영업비밀을 적용하는 것과 ② 판매, 판매를 위한 광고, 판매를 위한 보관, 영업비밀을 적용하여 제조되는 물품의 수입이 포함(제124조)
- (영업비밀 침해 유형) ① 영업비밀의 적법한 관리자에 의해 취해진 비밀유지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취함으로써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③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영업비밀에 접근, 취득 또는 공개하기 위해 비밀유지담당자를 속이거나, 유인, 매수, 강요, 유혹 또는 신뢰를 남용하는 행위, ④ 관계기관에서 적용한 비밀유지조치에 대해 영업비밀에 반하는 행동으로 물품의 거래 또는 유통 허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행위, ⑤ 제3자가 본 조의

a, b, c 및 d에 명시된 행위에 의하여 영업비밀 취득하였음을 알거나 알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⑥ 본 법의 제128조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제127조)

- (처벌) 영업비밀(지식재산권) 침해는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관련조항: 제211조, 212조, 제214조)
- (구제조치) 영업비밀(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기관 및 개인)는 민사적, 행정적 또는 형사적 구제에 대한 책임이 존재(관련조항: 제199조, 제202조, 제206조, 제214조)

● 부정경쟁행위 관련

- (부정경쟁행위방지권의 성립) 사업상 경쟁 형성에 따라 성립(제6조)
- (불공정 경쟁행위의 유형) ① 영업 주체 또는 영업 활동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공급처에 관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②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제조 방법, 특성, 품질, 양, 또는 기타 특성에 관하여, 또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조건에 관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③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에서 보호되고, 만일 사용자가 상표 소유권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고 그러한 사용이 상표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해당 상표 소유권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해당 상표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보호되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④ 도메인 이름을 소유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등록 또는 소유하거나, 각 상표, 상호 또는 지리적 표시의 평판과 인기를 이용해 편익을 얻거나 편견을 갖기 위하여 그 사용에 대한 권리 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상호 또는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혼동스럽게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제130조)
- (처벌) 불공정 경쟁행위를 한 자(기관 및 개인)는 경쟁법상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되며(관련조항: 제211조/경쟁법 제110조, 111조 및 제113조), 그러한 행위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범죄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형법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제212조).
- (구제조치) 불공정 경쟁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잠재적 피해자)는 관계당국에 민법상 배상을 또는 행정적 구제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제198조)

법령비교표

● 베트남 지식재산법

베트남 지식재산법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번역
<p>Article 3. Subject matte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 <p>1. Subject matters of copyright include literary, artistic and scientific works; subject matters of copyright-related rights include performances, phonograms, video recordings, broadcasts and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signals.</p> <p>2. Subject matter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clude inventions, industrial designs,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trade secrets, marks, trade name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p> <p>3. Subject matters of rights to plant varieties include reproductive and harvested materials.</p>	<p>제3조 지식재산권의 대상</p> <p>1. 저작권의 대상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들을 포함하고, 저작권접권은 공연, 음향 기록, 비디오 기록, 방송 프로그램, 암호화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성 신호를 포함한다.</p> <p>2. 산업재산권의 대상은 발명, 산업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p> <p>3.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의 대상은 번식물 및 수확물이 포함한다.</p>
<p>Article 4. Interpretation of terms</p> <p>In this Law, the terms below are construed as follows:</p> <p>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eans right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intellectual assets, including copyright and copyright-related rights,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rights to plant varieties.</p> <p>4. Industrial property rights means right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inventions, industrial designs,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trade secrets, mark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 secrets they have created or own, and the right to repression of unfair competition.</p> <p>23.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obtained from financial or intellectual investment activities, which has not yet been disclosed and can be used in business.</p>	<p>제4조 용어의 정의</p> <p>본 법에서, 이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한다.</p> <p>1.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에 대해 기관이나 개인이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p> <p>4. 산업재산권은 기관이나 개인이 창작한 또는 소유한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이며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이다.</p> <p>23. 영업비밀은 재정적, 지적 투자 활동으로부터 획득된 정보로서 공개되지 않았고 또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이다.</p>
<p>Article 6. Bases for the emergence and establish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 <p>3. Industrial property rights are established as follows:</p> <p>a/ Industrial property rights to an invention, industrial design, layout-design, 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sha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decision of the competent state agency on the grant of a protection title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procedures stipulated in this Law or th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der treaties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for a well-known mark, industrial property rights sha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use process, not subject to any registration procedures.</p> <p>b/ Industrial property rights to a trade name sha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lawful use thereof;</p> <p>c/ Industrial property rights to a trade secret sha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lawful acquirement and confidentiality thereof;</p> <p>d/ Rights to repression of unfair competition shall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competition in business.</p>	<p>제6조 지식재산권의 발생 및 성립의 기초</p> <p>3.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성립된다:</p> <p>a)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상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산업재산권은 본법에서 규정된 등록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국가기관이 보호 타이틀의 허여를 결정하였을 때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 하에서의 국제 등록의 승인 시에 발생하며, 유명상표 관련하여 그 산업재산권은 등록 절차와 무관하게 사용에 따라 성립된다.</p> <p>b) 상호에 관한 산업재산권은 상호의 법률적 사용에 따라 성립된다.</p> <p>c) 영업비밀에 관한 산업재산권은 영업비밀의 합법적 획득 및 비밀유지를 기초로 성립된다.</p> <p>d)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권리는 사업상 경쟁을 기초로 성립된다.</p>

베트남 지식재산법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번역
<p>Article 84. General conditions for business secrets eligible for protection</p> <p>A business secret shall be protected when it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eing neither common knowledge nor easily obtained; 2. Being capable, when being used in business activities, of rendering advantages to its holder over those who do not hold or use it; 3. Being kept secret by its owner with necessary measures so that it shall neither be disclosed nor easily accessible. 	<p>제84조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의 일반적인 요건</p> <p>영업비밀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고 용이하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사업 과정에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영업 비밀을 이용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 공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도록 소유자가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p>Article 85. Subject matters not protected as business secrets</p> <p>The following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not be protected as business secret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ersonal identification secrets; 2. State management secrets; 3.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secrets; 4.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irrelevant to business. 	<p>제85조 영업비밀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p> <p>다음의 비밀 정보는 영업 비밀로서 보호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적인 비밀 2. 국가 관리 비밀 3. 안보 및 국가 방위 비밀 4. 영업과 관련 없는 기타 비밀 정보.
<p>Article 121. Owners of industrial property object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wners of inventions, industrial designs or layout-designs mean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at are granted by the competent agency protection titles for respective industrial property objects. <p>Owners of marks mean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at are granted by the competent agency protection titles for such marks or have internationally registered marks a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gency or have well-known mark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Owners of trade names mean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at lawfully use such trade names in business activities. 3. Owners of business secrets mean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at have lawfully acquired such business secrets and keep them secret. A business secret acquired by an employee or a performer of an assigned task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hired job or assigned task shall be owned by the employer or the task assignor,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4. The owner of Vietnam's geographical indications is the State. <p>The State shall grant the right to use geographical indications to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at turn out products bearing such geographical indications in relevant localities and put such products on the market. The State shall directly exercise the right to manage geographical indications or grant that right to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all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granted with the right to use geographical indications.</p>	<p>제121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소유권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의 소유권자는 관할기관에 의해 관련 산업재산권 대상의 보호권을 수여받은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p>표장의 소유권자는 그 표장의 보호권을 관할기관에 의해 허여받거나 합법적인 대리인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등록된 표장 또는 널리 공지된 표장을 갖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상호의 소유권자는 영업 중에 그 상호를 법적으로 사용하는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3. 영업비밀의 소유권자는 합법적으로 영업비밀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기관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부여된 업무 또는 고용된 직무의 이행 동안 부여된 업무를 실행하는 종업원 또는 수행자에 의해 획득된 영업비밀은, 당사자들이 다르게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인 또는 업무 위탁자에 귀속된다. 4.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의 소유권자는 국가이다. <p>국가는 관련 지역의 지리적 표시를 보유되는 물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그 물품을 방출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국가는 지리적 표시를 관리할 권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권리가 허여된 모든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의 대표할 자격을 갖는 조직에게 그 권리를 허여해야 한다.</p>
<p>Article 124. Use of industrial property object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Use of a business secret means the performance of the following acts: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Applying the business secret to manufacture of products, provision of services or trade in goods; 	<p>제124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영업비밀의 사용은 다음 행위의 실시를 의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물품 제조,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 거래에 영업비밀을 적용하는 것

베트남 지식재산법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번역
<p>b/ Selling, advertising for sale, stocking for sale or importing products manufactur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business secret;</p>	<p>b) 판매, 판매를 위한 광고, 판매를 위한 보관, 영업비밀을 적용하여 제조되는 물품의 수입.</p>
<p>Article 125. Right to prevent others from using industrial property objects 3. Owners of business secrets shall not have the right to prevent others from performing the following acts: a/ Disclosing or using business secrets acquired without knowing or having the obligation to know that they have been unlawfully acquired by others; b/ Disclosing secret data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Clause 1, Article 128 of this Law; c/ Using secret data specified in Article 128 of this Law not for commercial purposes; d/ Disclosing or using business secrets obtained independently; e/ Disclosing or using business secrets obtained by analyzing or evaluating lawfully distributed products,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analyzers or evaluators and owners of such business secrets or sellers of such products.</p>	<p>제125조 산업재산권 대상의 이용을 금지하는 권리 3. 영업비밀의 소유권자는 타인이 다음의 행위의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a) 불법으로 타인에 의해 획득되었음을 알 의무 없이 또는 알지 못하고 획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행위 b) 본 법의 제1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 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 c) 비상업적 목적으로 본 법의 제128조에 따라 비밀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 d) 독립적으로 획득된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 e) 분석가 또는 평가자와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관련 상품의 판매자 사이에 별도로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 적법하게 배포된 물품을 분석하거나 또는 평가함으로써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p>
<p>Article 127. Acts of infringing upon the rights to business secrets 1. The following acts shall be regarded as infringements of the rights to business secrets: a/ Accessing or acquiring information pertaining to business secrets by taking acts against secret-keeping measures applied by lawful controllers of such business secrets; b/ Disclosing or using information pertaining to business secrets without permission of owners of such business secrets; c/ Breaching secret-keeping contracts or deceiving, inducing, buying off, forcing, seducing or abusing the trust of persons in charge of secret-keeping in order to access, acquire or disclose business secrets; d/ Accessing or acquiring information pertaining to business secrets of applicants for licenses for trading in or circulating products by taking acts against secret-keeping measures applied by competent agencies; e/ Using or disclosing business secrets, while knowing or having obligation to know that they have been acquired by others engaged in one of the acts specified at Points a, b, c and d of this Clause; f/ Failing to perform the secret-keeping obligation specified in Article 128 of this Law. 2. Lawful controllers of business secrets defin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include owners of business secrets, their lawful licensees and managers of business secrets.</p>	<p>제127조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다음의 행위는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영업비밀의 적법한 관리자에 의해 취해진 비밀유지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취함으로써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행위 b) 영업비밀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 c)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영업비밀에 접근, 취득 또는 공개하기 위해 비밀유지담당자를 속이거나, 유인, 매수, 강요, 유혹 또는 신뢰를 남용하는 행위 d) 관계기관에서 적용한 비밀유지조치에 대해 영업비밀에 반하는 행동으로 물품의 거래 또는 유통 허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하는 행위 e) 제3자가 본 조의 a, b, c 및 d에 명시된 행위에 의하여 영업비밀 취득하였음을 알거나 알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f) 본 법의 제128조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본 조의 제1항에서 언급된 영업비밀의 적법한 관리자는 영업비밀의 소유권자, 합법적인 사용권 실시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p>
<p>Article 129.-Acts of infringing upon the rights to marks, trade name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1. The following acts if being performed without the permission of mark owners, shall be regarded as</p>	<p>제129조 표장, 상호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p>

베트남 지식재산법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번역
<p>infringements of the rights to marks:</p> <p>a/ Using signs identical with protected marks for goods or services identical with goods or services on the lists registered together with such marks;</p> <p>b/ Using signs identical with protected marks for goods or services similar or related to those goods or services on the lists registered together with such marks, if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as to the origin of the goods or services;</p> <p>c/ Using signs similar to protected marks for goods or services identical with, similar to or related to goods or services on the lists registered together with such marks, if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as to the origin of the goods or services;</p> <p>d/ Using sign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well-known marks, or signs in the form of translations or transcriptions of well-known marks for any goods or services, including those unidentical with, dissimilar or unrelated to goods or services on the lists of those bearing well-known marks, if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as to the origin of the goods or services or misleading impression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s of such signs and well-known mark owners.</p> <p>2. (생략)</p> <p>3. The following acts shall be regarded as infringements of the rights to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p> <p>a/ Using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products which do not satisfy the criteria of peculiar characteristics and quality of products bearing geographical indications although such products originate from geographical areas bearing such geographical indications;</p> <p>b/ Using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products similar to products bearing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the purposes of taking advantage of their reputation and popularity;</p> <p>c/ Using any sign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products not originating from geographical areas bearing such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herefore misleading consumers as to that products originate from such geographical areas;</p>	<p>a) 등록된 표장 등과 동일한 표시를 함께 등록된 목록에 있는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는 행위</p> <p>b) 등록된 표장등과 동일한 표시를 함께 등록된 목록에 있는 것과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표시하는 경우, 그러한 사용으로 인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p> <p>c)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와 함께 등록된 목록에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보호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p> <p>d)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유사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에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 또는 유명상표의 번역, 전자 형태의 기호를 사용, 유명상표가 있는 상표의 목록 등에 대하여 출처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표시의 사용자와 유명상표 소유자 간의 관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2. (생략)</p> <p>3. 다음 행위는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p> <p>a) 지리적 표시가 있는 지리적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의 고유한 특성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보호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p> <p>b) 명성과 인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보호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p> <p>c)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해당 지리적 표시가 있는 지리적 영역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해당 지리적 영역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p>
<p>Article 130. Acts of unfair competition</p> <p>1. The following acts shall be regarded as acts of unfair competition:</p> <p>a/ Using commercial indications to cause confusion as to business entities, business activities or commercial origin of goods or services;</p> <p>b/ Using commercial indications to cause confusion as to the origin, production method, utilities, quality, quantity or other characteristics of goods or services; or as to the conditions for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p> <p>c/ Using marks protected in a country which is a contracting party to a treaty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lso a contracting party and under which representatives or agents of owners of such marks are prohibited from using such marks, if users are representatives or agents of the mark</p>	<p>제130조 불공정 경쟁 행위</p> <p>1. 다음의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 행위로 간주된다.</p> <p>a) 영업 주체 또는 영업 활동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공급처에 관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p> <p>b)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 제조 방법, 특성, 품질, 양, 또는 기타 특성에 관하여, 또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조건에 관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p> <p>c)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조약의 당사국인 국가에서 보호되고, 만일 사용자가 상표 소유권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고 그러한 사용이 상표 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해당 상표 소유권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해당 상표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보호되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p>

베트남 지식재산법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번역
<p>owners and such use is neither consented to by the mark owners nor justified;</p> <p>d/ Registering or possessing the right to use or using domain names identical with, or confusingly similar to, protected trade names or marks of others, or geographical indications without having the right to use, for the purpose of possessing domain names, benefiting from or prejudicing reputation and popularity of respective marks, trade names or geographical indications.</p> <p>2. Commercial indications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mean signs and information serving as guidelines to trading of goods or services, including marks, trade names, business symbols, business slogans, geographical indications, designs of packages and/or labels of goods.</p> <p>3. Acts of using commercial indications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include acts of affixing such commercial indications on goods, goods packages, means of service provision, business transaction documents or advertising means; selling, advertising for sale, stocking for sale and importing goods affixed with such commercial indications.</p>	<p>d) 도메인 이름을 소유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등록 또는 소유하거나, 각 상표, 상호 또는 지리적 표시의 평판과 인기를 이용해 편익을 얻거나 편견을 갖기 위하여 그 사용에 대한 권리 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상호 또는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혼동스럽게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p> <p>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상업적 표시는 상표, 상호, 영업 기호, 영업 슬로건, 지리적 표시, 포장 디자인 및/또는 상품 라벨을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위한 지침으로 역할하는 정보의 표시를 의미한다.</p> <p>3.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상업적 표시의 사용은 상품, 상품 포장, 서비스 제공 수단, 사업 거래 문서 또는 광고 수단, 판매를 위한 광고, 판매용 재고 및 해당 상업적 표시가 부착된 상품의 수입 행위를 포함한다.</p>
<p>Article 198. Right to self-protection</p> <p>1.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shall have the right to apply the following measures to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 <p>a/ Applying technological measures to prevent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 <p>b/ Requesting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at commit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erminate their infringing acts, make public apologies or rectifications and pay damages;</p> <p>c/ Requesting competent state agencies to handle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law;</p> <p>d/ Initiating lawsuits at courts or arbitration centers to protect their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p> <p>2.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suffer from damage caused by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discover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cause damage to consumers or society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competent state agencies to handle such act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law.</p> <p>3.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suffer from damage or are likely to suffer from damage caused by acts of unfair competition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competent state agencies to apply the civil remedies provided for in Article 202 of this Law and the administrative remedies provided for by competition law.</p>	<p>제198조 자기 보호권</p> <p>1.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p> <p>a)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취할 권리</p> <p>b)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관, 개인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단, 사과, 공개적 사과 및 손해 배상을 요청할 권리</p> <p>c)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관계당국에게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p> <p>d) 법적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중재자 또는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p> <p>2.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또는 고객 또는 사회에 대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발견한 개인 및 기관은 본 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들에 따라 침해 행위에 대해 처분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3. 손해를 입거나 불공정한 경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본 법의 제202조에 기재된 민법상 배상을 국가의 관계당국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행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p>
<p>Article 199. Remedies against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 <p>1.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commit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other</p>	<p>제199조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p> <p>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은 그러한 침해의 특성 및 정도에 따라 민사적, 행정적 또는 형사적 구제</p>

베트남 지식재산법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번역
<p>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eriousness of such infringements, be handled with civil, administrative or criminal remedies.</p> <p>2. In case of necessity, competent state agencies may apply provisional urgent measures, measures to control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imports and exports, or measures to prevent and secure the administrative sanctioning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law.</p>	<p>에 대한 책임이 있다.</p> <p>2. 적절한 경우, 관계당국은 잠정적 조치, 수입 및 수출 관련 지식재산권 관리조치 및 예방조치를 적용할 권리를 가지며,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p>
<p>Article 202. Civil remedies</p> <p>Courts shall apply the following civil remedies in handl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have committed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ompelling the termination of infringing acts; 2. Compelling the public apology and rectification; 3. Compelling the performance of civil obligations; 4. Compelling the payment of damages; 5. Compelling destruction, distribution or use for non-commercial purposes of goods, raw materials, materials and means used largely for the production or trad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infringing goods, provided that such destruction, distribution or use does not affect the exploitation of rights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p>제202조 민사적 구제</p> <p>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의 민사적 구제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식재산권 침해의 강제적 중단 2. 공개적 시정 및 사과의 강제 3. 민사적 채무 이행의 강제 4. 손해에 대한 강제 보상 5.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주로 사용된 제품, 소재 및 도구의 폐기, 비상업적 목적으로의 배포 또는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이때 그러한 배포 및 사용이 지식재산권 소유권자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p>Article 204. Principles of determination of damage caused by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amage caused by acts of infringing up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cl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Material damage, including property losses, decreases in income and profit, loss of business opportunities, reasonable expenses for prevention and remedying of such damage; b/ Spiritual damage, including damage to honor, dignity, prestige, reputation and other spiritual losses caused to authors of literary, artistic and scientific works; to performers; to authors of inventions, industrial designs, layout-designs; and breeders of plant varieties. 2. The extent of damage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ctual losses suffer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 due to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제204조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결정에 대한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다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산상의 손실, 수입 및 이익의 감소, 영업기회의 상실, 손실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을 포함하는 물리적 손해 b)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의 저작자, 실연자, 발명, 산업디자인, 배치설계 창안자 및 식물품종 육종가에 대한 명예, 위엄, 명성, 신망 및 기타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정신적 손해 2. 손해 정도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p>Article 205. Bases for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s for damage caused by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n case the plaintiff can prove that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caused material losses to him/her, he/she is entitled to request the Court to decide the compensation amount according to one of the following gro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total financial losses and the profits that the defendant has gained from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the plaintiff's reduction in profits has not been included in material losses; b) The transfer pri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transferred to the 	<p>제205조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산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본인에게 물리적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그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법원에 배상금액을 결정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원고의 이익 감소분이 물리적 손실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얻은 총 재무손실 및 이익 b) 침해범위 내에서 지식재산권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식재산권을 이전한 경우, 지식재산권의 이전가격

베트남 지식재산법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번역
<p>defendant by the plaintiff under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within the scope of the infringement;</p> <p>c) Other material losses calculat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lawsoft;</p> <p>d) In case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damages for material losse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specified in Points a, b and c of this Clause, the damag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urt based on the level of loss, in which case the damages shall not exceed VND5 million.</p> <p>2. Where the plaintiff can prove that an act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caused spiritual damage to him/her, he/she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decide on the compensation level ranging from VND 5 million to VND 50 million, depending on the damage extent.</p> <p>3. In addition to the damage compensation defined in Clauses 1 and 2 of this Article, industrial property right holders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compel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at have committed acts of infringing up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to pay reasonable costs of hiring attorneys.</p>	<p>c) Lawsoft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산정한 기타 물질적 손해</p> <p>d) 이 조항의 a, b 및 c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피해는 손해의 정도에 따라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이 경우 손해액은 500만 동(VND)을 초과할 수 없다.</p> <p>2. 원고가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그/그녀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그녀는 법원에 대하여 손해의 정도에 따라 500만동(VND)부터 5000만동(VND)까지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 <p>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손해 이외에, 산업재산권 소유권자는 또한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변호사 고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p>
<p>Article 206.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apply provisional urgent measures</p> <p>1. Upon or after the initiation of a lawsuit,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apply provisional measures in the following cases:</p> <p>a/ There exists a danger of irreparable damage to su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p> <p>b/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evidence related to the act of infringing up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are likely to be dispersed or destroyed unless they are protected in time.</p> <p>2. The court shall decide to apply provisional urgent measures at the request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holder defin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before listening to the party subject to such measures.</p>	<p>제206조 법원에 긴급잠정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권리</p> <p>1. 소송 시작 또는 그 후에,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다음의 경우에 잠정조치를 적용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p> <p>a)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b) 적절한 때에 보호되지 않는다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 및 관련 증거가 분산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법원은 잠정조치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본조 제1항에 기재된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잠정조치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Article 207. Provisional urgent measures</p> <p>1. The following provisional urgent measures shall be applied to goods suspected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to raw materials, materials or means of production or trading of such goods:</p> <p>a/ Seizure;</p> <p>b/ Distraint;</p> <p>c/ Sealing; ban from alteration of original state; ban from movement;</p> <p>d/ Ban from ownership transfer.</p> <p>2. Other provisional urgent measures shall be appli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Code.</p>	<p>제207조 긴급잠정조치</p> <p>1. 이하의 잠정조치는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 재료, 원료 또는 그러한 상품의 제조나 교역을 위한 수단에 대해 적용된다.</p> <p>a) 압수</p> <p>b) 압류</p> <p>c) 봉인, 상태 변경 금지, 이동 금지</p> <p>d) 소유권 이전 금지</p> <p>2. 기타 긴급잠정조치는 민사소송법의 조항에 따라 적용한다.</p>
<p>Article 211.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ringements subject to administrative sanction</p> <p>1.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p>	<p>제211조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p> <p>1. 다음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은 행정적 제재를 받는다.</p>

베트남 지식재산법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번역
<p>rights shall be administratively sanctioned:</p> <p>a/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causes damage to authors, owners, consumers or society;</p> <p>b/ Producing, importing, transporting or trading in intellectual property counterfeit goods defined in Article 213 of this Law or assigning others to do so;</p> <p>c/ Producing, importing, transporting, trading in or storing stamps, labels or other articles bearing a counterfeit mark or geographical indication or assigning others to do so.</p> <p>2.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shall be administratively sanctioned, sanctioning forms and levels, and sanctioning procedures.</p> <p>3.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commit acts of unfair competi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shall be administratively sanctioned under the competition law.</p>	<p>a) 저작자, 소유자, 소비자 또는 사회에 손해를 입히는 지식재산권 침해</p> <p>b) 본 법 제213조에 정의된 지식재산 위조상품의 제조, 수입, 운반 또는 교역이나, 또는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명하는 경우</p> <p>c) 위조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우표, 라벨 또는 기타 물품의 제조, 수입, 운반, 교역 또는 보관이나, 또는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명하는 경우</p> <p>2. 정부는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의 형태 및 정도, 제재 절차를 구체화하여야 한다.</p> <p>3.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은 경쟁법에 따라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p>
<p>Article 212. Acts of infringing up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which shall be criminally handled</p> <p>Individuals who commit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volving elements which constitute a crime shall be examined for penal liabili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criminal law.</p>	<p>제212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산권 침해 행위</p> <p>범죄를 구성하는 요소가 포함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개인은 형법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의 조사 대상이 된다.</p>
<p>Article 213.-Intellectual property counterfeit goods</p> <p>1. Intellectual property counterfeit goods referred to in this Law include goods bearing counterfeit marks and goods bearing counterfeit geographical indic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nterfeit mark goods) defin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and pirated goods defin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p> <p>2. Counterfeit mark goods are goods or their packages bearing marks or signs which are identical with or indistinguishable from marks or geographical indications currently protected for those very goods without permission of mark owners or organizations managing such geographical indications.</p> <p>3. Pirated goods are copies made without the permission of copyright holders or related right holders.</p>	<p>제213조 지식재산 위조 상품</p> <p>1. 본 법에 언급된 지식재산 위조 상품은 본 조의 제2항에 기재된 위조 상표 상품 또는 위조 지리적 표시 상품(이하, 위조 상표 상품이라 한다)과 본 조 제3항에 기재된 불법복제품을 의미한다.</p> <p>2. 위조 상표 상품은, 상표 소유자 또는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의 허가 없이, 현재 그 상품을 보호하고 있는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또는 표시가 부착된 상품 또는 그것의 포장을 말한다.</p> <p>3. 불법복제품은 저작권 보유자 또는 저작인접권 보유자의 허가 없이 제작된 사본을 말한다.</p>
<p>Article 214. Forms of administrative sanction and remedies</p> <p>1.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commit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fined in Clause 1, Article 211 of this Law shall be compelled to terminate their infringing acts and imposed one of the following principal sanctions:</p> <p>a/ Caution;</p> <p>b/ Fine.</p> <p>2.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eriousness of their infringeme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nfringing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are also subject to either of the following additional sanctions:</p> <p>a/ Confis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ounterfeit goods, raw materials, materials and means used mainly for the production or trading of these intellectual property counterfeit goods;</p>	<p>제214조 행정적 제재 및 구제 형식</p> <p>1. 본 법 제211조제1항에 기재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은 침해를 중단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요 제재 중 하나가 부과된다.</p> <p>a) 경고</p> <p>b) 벌금</p> <p>2. 침해의 성질 및 정도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기관 및 개인은 다음의 추가적 제재 중 하나의 대상이 된다.</p> <p>a) 이러한 지식재산 위조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지식재산권 위조 상품, 원자재, 재료 및 수단인 몰수</p>

베트남 지식재산법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번역
<p>b/ Suspension for a definite time of business activities in domains where infringements have been committed.</p> <p>3. In addition to the sanctions specified in Clauses 1 and 2 of this Artic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rs are also subject to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consequence remedies:</p> <p>a/ Compelled destruction or distribution or use for non-commercial purpos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unterfeit goods as well as raw materials, materials and means used mainly for the production or trading of these intellectual property counterfeit goods, provided that the destruction, distribution or use does not affect the exploitation of rights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s;</p> <p>b/ Compelled transportation out of Vietnamese territory of transit goods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compelled re-ex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counterfeit goods, as well as imported means, raw materials and materials used mainly for the production or trading of these intellectual property counterfeit goods, after infringing elements are removed from these goods.</p> <p>4.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the competence to administratively sanction infringements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ly with the law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p>	<p>b) 침해가 발생한 영역에서 일정 기간 사업활동의 정지</p> <p>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제재 외에도, 지식재산권 침해자는 다음의 결과적 구제조치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대상이 된다.</p> <p>a)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권리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파기, 배포 또는 사용의 경우, 이러한 지식재산 위조 상품의 생산이나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원자재, 재료, 수단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위조 상품의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강제 파기, 배포 또는 사용</p> <p>b) 이러한 상품에서 침해요소를 제거한 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식재산권 위조 상품을 강제로 베트남 영토 밖으로 운송하거나, 이러한 지식재산 위조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수입 수단, 원자재 및 재료를 재수출 하는 행위</p> <p>4. 행정적 제재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제재 권한은 행정적 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p>
<p>Article 215. Preventive measures to secure the administrative sanctioning</p> <p>1. In the following cas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competent agencies to apply preventive measures to secure the administrative sanctioning specifi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p> <p>a/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likely to cause serious damage to consumers or society;</p> <p>b/ Infringement material evidence is likely to be dispersed or infringing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show signs of shirking their liabilities;</p> <p>c/ To secure the enforcement of decisions on sanction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p> <p>2. Preventive measures to secure the administrative sanctioning applied according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acts of infringing up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p> <p>a/ Temporary custody of persons;</p> <p>b/ Temporary custody of infringing goods, material evidence and means;</p> <p>c/ Body search;</p> <p>d/ Search of means of transport and objects; search of places where infringing goods, material evidence and means are hidden;</p> <p>e/ Other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law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p>	<p>제215조 행정적 제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방조치</p> <p>1. 다음의 경우, 기관 및 개인은 본 조 제2항에 명시된 행정적 제재를 확보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적용할 것을 권한당국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p> <p>a)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소비자 또는 사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p> <p>b) 침해물품증거가 분산되거나 침해 행위를 한 개인 또는 기관이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징후를 보이는 경우</p> <p>c)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의 집행의 확보</p> <p>2. 행정절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적 제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방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p> <p>a) 개인에 대한 임시 구금;</p> <p>b) 침해 상품, 물품증거 및 수단의 임시 보관</p> <p>c) 신체 수색</p> <p>d) 운송수단 및 대상의 수색, 침해 상품, 물품증거 및 수단이 은폐된 장소의 수색</p> <p>e) 행정위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따른 기타 행정적 예방 조치</p>

● 베트남 경쟁법

베트남 경쟁법(Competition Law 2018)	번역
<p>Article 110. Rules and forms of sanctions against violations and remedial measures for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p> <p>1. Any entity committing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shall,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eriousness of their violations, be disciplined, incur penalties for administrative violations or face a criminal prosecution; in case of damage to the interests of the Stat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compensation must be pai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law.</p> <p>2. For each violation of competition law, the violator shall be subject to one of the following primary penalties:</p> <p>a) Warning;</p> <p>b) Fines.</p> <p>3. Depending on nature and severity of the violation, the violator may be subject to one of the following additional penalties:</p> <p>a) Revocation of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s or equivalent, deprivation of licenses and practicing certificates;</p> <p>b) Confiscation of the exhibits and means used for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p> <p>c) Confiscation of the profit earned from the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p> <p>4. Apart from penalties prescribed in Clauses 2 and 3 hereof, the violator may b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remedial measures:</p> <p>a) Restructure the enterprises having abused their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or abused their monopoly position;</p> <p>b) Remove illegal provisions from business contracts, agreements or transactions;</p> <p>c) Divide, split or sell a part or all paid-in capital, assets of the enterprise which is established after economic concentration;</p> <p>d) Subject to the control of competent authority related to purchase prices and sale prices of goods, services or other transaction conditions in contracts of the enterprise which is established after economic concentration;</p> <p>dd) Make public correction;</p> <p>e) Other necessary measures to overcome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 violation.</p> <p>5.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guidelines for penalties and remedial measures for each violation prescribed in competition law.</p>	<p>제110조.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칙 및 형식과 구제조치</p> <p>1.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은,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다. 국가의 이익과 기관 및 개인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훼손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p> <p>2. 각 경쟁법 위반에 대해, 위반자는 다음 중 하나의 주요 처벌의 대상이 된다.</p> <p>a) 경고</p> <p>b) 벌금</p> <p>3. 위반의 성격과 심각도에 따라 위반자는 다음 중 하나의 추가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p> <p>a) 기업등록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의 취소, 면허 및 실무자격 증의 박탈</p> <p>b) 경쟁법 위반에 사용된 전시품 및 수단의 몰수</p> <p>c) 경쟁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몰수</p> <p>4. 위반자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처벌 외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구제조치의 적용 대상이 된다.</p> <p>a)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의 구조 조정</p> <p>b) 사업계약, 합의 또는 거래에서 불법조항의 제거</p> <p>c) 경제적 집중 후에 설립된 기업의 납입자본 및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분할, 분배 또는 판매</p> <p>d) 경쟁력 집중 이후 설립된 기업의 계약에서 상품, 서비스 또는 기타 거래 조건의 구매 가격 및 판매 가격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통제의 대상</p> <p>dd) 공개적 시정</p> <p>e) 위반으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p> <p>5. 정부는 경쟁법에 기재된 각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시장조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p>
<p>Article 111. Fines imposed on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p> <p>1. The maximum fine for violations of regulations on anti-competitive agreements, abuse of the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abuse of the monopoly position shall be equal to 10% of the total turnover of violating enterprises on the relevant market in the fiscal year preceding the year of violation, but not less than the minimum fine imposed on violations prescribed by the</p>	<p>제111조 경쟁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p> <p>1. 반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의 위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최대 벌금은 위반년도 이전 회계연도의 관련 시장에서 위반기업의 총 매출액의 10%에 상당해야 하고, 형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최소 벌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p>

베트남 경쟁법(Competition Law 2018)	번역
<p>Penal Code.</p> <p>2. The maximum fine for violations of economic concentration regulations shall be 5% of the total turnover of violating enterprises on the relevant market in the fiscal year preceding the year of violation.</p> <p>3. The maximum fine for violations of regulations on unfair competition shall be VND 2 billion.</p> <p>4. The maximum fine for other violations of this Law shall be VND 200 million.</p> <p>5. The maximum fines prescribed in Clauses 1, 2, 3 and 4 of this Article shall apply to violations committed by organizations; a violation of regulations on competition law committed by an individual shall be subject to a half of fine that imposed on an organization committing the same violation.</p> <p>6.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guidelines for amounts of fines imposed on violations prescribed in this Law.</p>	<p>2. 경제력 집중에 관한 규정의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위반년도 이전 회계연도의 관련시장에서 위반기업의 총매출의 5%이다.</p> <p>3. 불공정 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의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20억 동(VND)이다.</p> <p>4. 이 법의 기타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2억 동(VND)이다.</p> <p>5.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최대 벌금은 기관이 범한 위반에 적용되며, 개인이 경쟁법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기관에 부과되는 벌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p> <p>6.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위반에 부과되는 벌금 금액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p>
<p>Article 113. Power and forms of sanctions against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p> <p>1. If a regulatory body performs an act prescribed in Clause 1 Article 8 of this Law, the 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shall request such regulatory body to terminate the act and adopt remedial measures. The aforesaid regulatory body shall terminate the act, adopt remedial measures and compensate for damage as per the law.</p> <p>2. In case of prohibited acts 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8 of this Law,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and the anti-competitive settlement council shall have power to:</p> <p>a) Give warnings;</p> <p>b) Impose fines as prescribed in Clause 4 Article 111 of this Law;</p> <p>c) Adopt measures prescribed in Points b, c Clause 3 and Points dd, e Clause 4 Article 110 of this Law;</p> <p>d)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to adopt measures prescribed in Point a Clause 3 Article 110 of this Law.</p> <p>3. In cases of violations of anti-competitive agreements, abuse of the dominant position on the market, abuse of the monopoly position, the anti-competitive settlement council shall have the power to:</p> <p>a) Give warnings;</p> <p>b) Impose fines as prescribed in Clause 1 Article 111 of this Law;</p> <p>c) Adopt measures prescribed in Points b, c Clause 3 and Points a, b, d, dd, e Clause 4 Article 110 of this Law;</p> <p>d)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to adopt measures prescribed in Point a Clause 3 and Point a Clause 4 Article 110 of this Law.</p> <p>4. In cases of violation of economic concentration regulations,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shall have power to:</p> <p>a) Give warnings;</p> <p>b) Impose fines as 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111 of this Law;</p>	<p>제113조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권한 및 형태</p> <p>1. 규제기관이 이 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경쟁위원회는 해당 규제기관에 그 행위를 종료하고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상기 규제기관은 법률에 따라 그 행위를 종료하고, 구제조치를 취하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p> <p>2. 이 법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의 경우, 국가경쟁위원회 위원장 및 반경쟁합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p> <p>a) 경고의 제공</p> <p>b) 이 법 제111조제4항에 규정된 벌금의 부과</p> <p>c) 이 법 제110조제3항의 b 및 c와 제4항 dd 및 e에 규정된 조치의 채택</p> <p>d) 관계당국에 대한 이 법 제110조제3항 a에 규정된 조치의 채택 요청</p> <p>3. 반경쟁 계약의 위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적 지위의 남용의 경우, 반경쟁합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p> <p>a) 경고의 제공</p> <p>b) 이 법 제111조제1항에 규정된 벌금의 부과</p> <p>c) 이 법 제110조제3항의 b 및 c와 제4항 a, b, d, dd 및 e에 규정된 조치의 채택</p> <p>d) 관계당국에 대한 이 법 제110조제3항 a 및 제4항 a에 규정된 조치의 채택 요청</p> <p>4. 경제력 집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p> <p>a) 경고의 제공</p> <p>b) 이 법 제111조제2항에 규정된 벌금의 부과</p>

베트남 경쟁법(Competition Law 2018)	번역
<p>c) Adopt measures prescribed in Points b, c Clause 3 and Points a, c, d, e Clause 4 Article 110 of this Law;</p> <p>d)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to adopt measures prescribed in Point a Clause 3 and Point a Clause 4 Article 110 of this Law.</p> <p>5. In case of violations of unfair competition and other violations prescribed herein other than the cases prescribed in Clauses 1, 2, 3 and 4 hereof, the President of 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shall have power to:</p> <p>a) Give warnings;</p> <p>b) Impose fines as prescribed in Clauses 3 and 4 Article 111 of this Law;</p> <p>c) Adopt measures prescribed in Points b, c Clause 3 and Points dd, e Clause 4 Article 110 of this Law;</p> <p>d)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to adopt measures prescribed in Point a Clause 3 Article 110 of this Law.</p> <p>6. Prohibited acts prescribed in Clause 7 Article 45 of this Law shall be settled as prescribed in relevant laws.</p>	<p>c) 이 법 제110조제3항의 b 및 c와 제4항 a, c, d 및 e에 규정된 조치의 채택</p> <p>d) 관계당국에 대한 이 법 제110조제3항 a 및 제4항 a에 규정된 조치의 채택 요청</p> <p>5.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 외의 불공정 경쟁행위 위반 및 기타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p> <p>a) 경고의 제공</p> <p>b) 이 법 제111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벌금의 부과</p> <p>c) 이 법 제110조제3항의 b 및 c와 제4항 dd 및 e에 규정된 조치의 채택</p> <p>d) 관계당국에 대한 이 법 제110조제3항 a에 규정된 조치의 채택 요청</p> <p>6. 이 법 제45조제7항에 규정된 금지행위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7 장

브루나이

법령요약

● 브루나이 상표법(LAWS OF BRUNEI, TradeMark, CAP 98, 2017. 12. 30. 일부 개정)

법률	주요 내용
	(제1조) 인용, 개시 및 적용
예비조항	(제2조~제3조) 해석, 상표등록청
제1장 상표의 등록	(제4조~제53조) 등록거절사유, 등록상표의 효력, 침해소송, 재산의 대상으로서 상표등록, 라이선스, 상표 등록출원, 우선순위, 등록절차,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과 갱신 및 변경, 취소 및 무효, 단체표장, 인증마크
제2장 유명상표의 보호	(제54조~제59조) 엠블럼,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행위
제3장 행정 및 기타 추가조항	(제60조~제81조) 등록청, 등록청의 권한과 의무, 법적절차 및 항소, 수수료 등, 상표대리기관
제4장 침해물품 수입에 관한절차	(제82조~제104조) 범죄, 모조품의 몰수
제5장 기타 및 일반조항	(제105조~제108조) 상표사용입증의 부담, 경과규정 등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

- 상표법에서 일반적인 등록거절, 침해행위로서 우리나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일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파리협약 제6조에서 규정한 유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부칙 1과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품질 등 오인유발행위(제13조),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제7조, 제55조), 악의적 상표등록 거절(제6조)을 규정
- 입증책임에 관한 조문이 있으나, 침해에 대한 입증이 아닌 용도에 대한 입증으로 성격이 상이함

● 영업비밀¹⁴⁾

- 브루나이 지식재산 법체계 내에서 영업비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브루나이 내에서 영업비밀을 직접 다룬 사례가 없어 정확한 정의규정이 없으며, 다만 영국의 판례가 브루나이 법원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따라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영국 판례법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 영업비밀은 브루나이 내에서 특정 법률로 규제되지 않으며, 이를 다루는 구체적인 사례도 없음. 단 영업비밀은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계약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기밀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밀조건을 올바르게 통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14) <https://www.southeastasia-iprhelpdesk.eu/en/country-factsheets/brunei-ip-factsheet> 참조 (2021. 7. 26 최종방문)

법령비교표

브루나이 상표법 (Law of Brunei CAP.98 Trademarks, 2017)	번역
<p>Absolute grounds for refusal of registration.</p> <p>6. (3)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if it is —</p> <p>(a) contrary to public policy or to accepted principles of morality; or</p> <p>(b) of such a nature as to deceive the public.</p> <p>(5)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in the cases specified or referred to in section 7.</p> <p>(6)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if or 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is made in bad faith</p>	<p>등록거절에 대한 절대적 근거</p> <p>제6조 ③ 다음과 같은 상표는 등록되지 아니한다.</p> <p>(a) 공공정책 또는 수용된 도덕원칙에 위배되는 행위</p> <p>(b) 대중을 속이는 성질</p> <p>⑤ 제7조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p> <p>⑥ 상표는 악의적으로 출원된 경우 또는 그 범위 내에서는 등록될 수 없다.</p>
<p>Specially protected emblems etc.</p> <p>7. (1) A trade 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p> <p>(a) a representation of the Emblem, Arms and Regalia of Brunei Darussalam, including the Royal Arms, State Crest, the Insignia of Royalty, armorial bearings and other insignia and emblems of Brunei Darussalam; or any device so closely resembling any of them as to be likely to be mistaken for them;</p> <p>(b) a representation of the Royal crowns, and His Majesty the Sultan and Yang Di-Pertuan's Standard or any other Royal flag, or any colourable imitation thereof;</p> <p>(c) a representation of His Majesty the Sultan and Yang Di-Pertuan or any member of the Royal family, or any colourable imitation thereof;</p> <p>(d) any word, letter or device likely to lead persons to believe that the applicant either has or recently has had Royal patronage or authorisation; or</p> <p>(e) any name or thing which is a specified name or specified emblem as defined in section 2 of the Emblems and Names (Prevention of Improper Use) Act (Chapter 94), or any colourable imitation thereof,</p> <p>shall not be registered, unless it appears to the Registrar that consent has been given by or on behalf of His Majesty the Sultan and Yang Di-Pertuan or, as the case may be, that member of the Royal family.</p> <p>(2) A trade 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a representation of the national flag of Brunei Darussalam shall not be registered if it appears to the Registrar that the use of that trade mark would be misleading or grossly offensive.</p> <p>(3)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in the cases specified in section 55 or 56.</p> <p>(4) Provision may be made by rules prohibiting in such cases as may be prescribed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p> <p>(a) arms which a person is authorised to use by virtue of a grant of arms by His Majesty the Sultan and Yang Di-Pertuan; or</p> <p>(b) insignia so closely resembling such arms as to be likely to be mistaken for them, unless it appears to the Registrar that consent has been given by or on behalf of that person. Where such a mark is registered,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s authorising its use in any way contrary to any law relating to arms.</p>	<p>특별히 보호되는 엠블럼</p> <p>제7조 ① 다음으로 구성되거나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 :</p> <p>(a)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왕실 문장, 국가 문장, 로열티 휘장, 인장 및 기타 휘장 및 표지를 포함한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휘장, 문장 및 레갈리아의 표현 또는 그 중 하나와 매우 유사하여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표지</p> <p>(b) 술탄과 양 디페르투안(Sultan and Yang Di-Pertuan)의 기 또는 기타 왕실 깃발의 표현, 또는 이에 대한 채색 가능한 모조품</p> <p>(c) 술탄과 양 디페르투안(Sultan and Yang Di-Pertuan) 또는 왕실의 모든 구성원의 표상 또는 그에 대한 채색 가능한 모조품</p> <p>(d) 신청자가 왕실의 후원이나 승인을 받았거나 최근에 받았다고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있는 모든 단어, 편지 또는 장치; 또는</p> <p>(e) 문장 및 이름의 부적절한 사용 방지법의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지정된 이름 또는 지정된 문장인 이름 또는 사물, 또는 이에 대한 채색 가능한 모조품,</p> <p>술탄과 양 디페르투안(Sultan and Yang Di-Pertuan) 국왕 또는 경우에 따라 왕실 구성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동의를 제공된 것으로 등록관에게 나타나지 않는 한 등록되지 않는다.</p> <p>② 브루나이 국기의 표현으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상표는 등록관에게 해당 상표의 사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심하게 모욕적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록되지 아니한다.</p> <p>③ 상표는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명시된 경우에 등록될 수 없다.</p> <p>④ 다음으로 구성되거나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 등록이 규정될 수 있는 경우에 금지 규칙에 의해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p> <p>(a) 술탄(Sultan)과 양 디페르투안(Yang Di-Pertuan) 국왕의 문장 수여에 따라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된 것 또는</p> <p>(b) 그 사람에 의해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동의를 제공된 것으로 등록관에게 나타나지 않는 한, 그러한 문장과 매우 유사하여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휘장. 그러한 상표가 등록된 경우 이 법의 어떤 내용도 문장과 관련된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p>

브루나이 상표법 (Law of Brunei CAP.98 Trademarks, 2017)	번역
<p>Infringement of registered trade mark.</p> <p>13. (1) A person infringes a registered trade mark if he uses in the course of trade a sign which is identical with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identical with those for which it is registered.</p> <p>(2) A person infringes a registered trade mark if he uses in the course of trade a sign where because —</p> <p>(a) the sign is identical with the trade mark and is used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or</p> <p>(b) the sign is similar to the trade mark and is used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there exists a likelihood of confusion on the part of the public, which includes the likelihood of association with the trade mark.</p> <p>(3) A person infringes a registered trade mark if he uses in the course of trade a sign which —</p> <p>(a)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trade mark; and</p> <p>(b) is used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similar to those for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where the trade mark has a reputation in Brunei Darussalam and the use of the sign without due cause takes unfair advantage of, or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repute of the trade mark.</p> <p>(4)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a person uses a sign if he —</p> <p>(a) affixes it to goods or the packaging thereof;</p> <p>(b) offers or exposes goods for sale, puts them on the market or stocks them for those purposes under the sign, or offers or supplies services under the sign;</p> <p>(c) imports or exports goods under the sign; or</p> <p>(d) uses the sign on business papers or in advertising.</p> <p>(5) A person who applies a registered trade mark to material intended to be used for labelling or packaging goods, as a business paper, or for advertising goods or services, shall be treated as a party to any use of the material which infringes the registered trade mark if when he applied the mark he knew or had reason to believe that the application of the mark was not duly authorised by the proprietor or a licensee.</p> <p>(6)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as preventing the use of a registered trade mark by any person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goods or services as those of the proprietor or a licensee:</p> <p>Provided that any such use otherwise than in accordance with honest practices in industrial or commercial matters shall be treated as infringing the registered trade mark if the use without due cause takes unfair advantage of, or is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repute of the trade mark.</p>	<p>등록상표의 침해</p> <p>제13조 ①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 상표를 침해한다.</p> <p>② 다음 각호와 같은 이유로 거래과정에서 표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등록상표를 침해한다.</p> <p>(a) 표지가 등록상표와 동일하며,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p> <p>(b) 표지가 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며, 상표와 연관될 가능성을 포함하여 공공 부분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3) 다음 각호와 같은 이유로 거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를 침해한다.</p> <p>(a)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p> <p>(b)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p> <p>해당 상표가 브루나이에서 평판을 가지고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의 고유한 특성 또는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p> <p>④ 이 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p> <p>(a)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한 경우</p> <p>(b) 판매를 위한 상품을 제안 또는 노출하거나, 시장에 출시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상품을 비축하거나, 비축해둔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p> <p>(c) 표지에 따라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p> <p>(d) 비즈니스 서류 또는 광고에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p> <p>⑤ 해당 표지가 소유주 또는 면허소지자에 의하여 정식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상품 라벨링 또는 포장, 사업용지, 광고용 상품에 등록상표를 부착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근거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마크를 부착할 때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당사자로 취급한다.</p> <p>⑥ 본 조의 그 어떤 것도 재화 또는 용역을 소유주 또는 면허소지자의 것으로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 등록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p> <p>산업 또는 상업적 문제에 있어 정직한 관행에 따르지 않는 사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는 것이 상표의 특징 또는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록된 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Infringement proceedings Action for infringement.</p> <p>16. (1) An infringement of a registered trade mark is actionable by the proprietor of the trade mark.</p> <p>(2) In an action for infringement, all such relief by way of damages, injunction, account or otherwise is available to him as is available in respect of the infringement of any other property right. Order for erasure etc. of offending sign.</p>	<p>침해소송 및 침해에 대한 조치</p> <p>제16조 ① 등록상표의 침해는 상표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②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지명령, 기타 방법에 의한 모든 구제는 다른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반 표지 등에 대한 제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p>

브루나이 상표법 (Law of Brunei CAP.98 Trademarks, 2017)	번역
<p>Order for delivery up of infringing goods etc. 18. (1) The proprietor of a registered trade mark may apply to the court for an order for the delivery up to him, or such other person as the court may direct, of any infringing goods, material or articles which a person has in hi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in the course of business. (2) An application shall not be made after the end of the period specified in section 20; and no order shall be made unless the court also makes, or it appears to the court that there are grounds for making, an order under section 21. (3) A person to whom any infringing goods, material or articles are delivered up in pursuance of an order under this section shall, if an order under section 21 is not made, retain them pending the making of an order, or the decision not to make an order, under that section.</p>	<p>침해물품의 인도명령 제18조 ①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상표에 관한 침해품, 자료 또는 물품의 인도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인도명령은 제20조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 제21조에 따라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명령은 내려지지 않는다. ③ 이 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침해품, 자료 또는 물품을 인도받은 자는 제21조에 따른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명령이 이루어 질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Grounds for invalidity of registration. 48. (4) In the case of bad faith in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the Registrar may apply to the court for a declaration of the invalidity of the registration.</p>	<p>등록무효사유 제48조 ④ 악의로 등록된 상표의 경우, 등록관은 법원에 등록무효 선언을 신청할 수 있다.</p>
<p>Effect of acquiescence 49. (1) Where the proprietor of an earlier trade mark or other earlier right has acquiesced for a continuous period of 5 years in the use of a registered trade mark in Brunei Darussalam, being aware of that use, there shall cease to be any entitlement on the basis of that earlier trade mark or other right . (a) (생략) (b) (생략) unless the registration of the later trade mark was applied for in bad faith.</p>	<p>묵인의 효과 제49조 ① 선행상표 또는 기타 선행권리의 소유자가 브루나이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계속해서 5년동안 묵인하고 그 사용을 인정한 경우, 이 후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선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된다. 단, 악의의 출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PART II Protection of Well-Known Trade Marks</p>	<p>제2장 유명상표의 보호</p>
<p>Protection of well-known trade marks. 54. (1) References in this Act to a trade mark which is entitled to protection under the Paris Convention as a well-known trade mark, including such a trade mark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e Paris Convention by virtue of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Agreement are to the trade mark of a person who — (a) is a citizen of, is domiciled, ordinarily resident or has a right of abode in, a Paris Convention country or a World Trade Organisation country; or (b) is domiciled in, or has a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establishment in, any such country, whether or not that person carries on business, or has any goodwill, in Brunei Darussalam. References to the proprietor of such a trade mark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2) Subject to section 49, the proprietor of a trade mark which is entitled to protection under the Paris Convention as a well-known trade mark is entitled to restrain by injunction the use in Brunei Darussalam of a trade mark</p>	<p>유명상표의 보호 제54조 ① 세계무역기구의 파리협약의 대상이 되는 상표를 포함하여, 파리협약에 따라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표에 대한 이법의 내용은 다음의 상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a) 파리협약 또는 WTO 협약국 국가의 국민이거나, 주소가 있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경우, 또는 (b) 브루나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산업 또는 상업시설이 있거나 주소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표의 소유자에 대한 언급은 그에 따라 해석된다. ② 제49조에 근거, 파리협약에 따라 유명상표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상표의 소유자는 브루나이에서 그 일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사용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p>

브루나이 상표법 (Law of Brunei CAP.98 Trademarks, 2017)	번역
<p>which, or the essential part of which, is identical or similar to his trade mark, in relation to identical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where the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p> <p>(3) Nothing in subsection (2) affects the continuation of any bona fide use of a trade mark begun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section.</p>	<p>③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이 조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된 상표의 선의의 사용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Emblems etc. National emblems etc. of Paris Convention and World Trade Organisation countries.</p> <p>55. (1) A trade 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the flag of a Paris Convention country or a World Trade Organisation country shall not be registered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country, unless it appears to the Registrar that use of the flag in the manner proposed is permitted without such authorisation.</p> <p>(2) A trade 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the armorial bearings or any other state emblem of a Paris Convention country or a World Trade Organisation country which is protected und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Agreement shall not be registered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country.</p> <p>(3) A trade 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an official sign or hallmark adopted by a Paris Convention country or a World Trade Organisation country and indicating control and warranty shall not, where the sign or hallmark is protected under the Paris Convention, be registered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of the same, or a similar kind, as those in relation to which it indicates control and warranty,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country.</p> <p>(4)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s to national flags and other state emblems, and official signs or hallmarks, apply equally to anything which from a heraldic point of view imitates any such flag or other emblem, or sign or hallmark.</p> <p>(5) Nothing in this section prevents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on the application of a citizen of a country who is authorised to make use of a state emblem, or official sign or hallmark, of that country, notwithstanding that it is similar to that of another country.</p> <p>(6) Where by virtue of this section the authoris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a Paris Convention country or a World Trade Organisation country is or would be required for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those authorities are entitled to restrain by injunction any use of the mark in Brunei Darussalam without their authorisation.</p>	<p>엠블럼 등 파리협약 및 WTO 협약국의 국장 등</p> <p>제55조 ① 파리협약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국가의 국기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없이 등록될 수 없다. 제안된 방식으로 국기를 사용하는 것이 등록자에게 허용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허가없이 등록될 수 없다.</p> <p>② 파리협약 또는 WTO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파리협약 국가 또는 WTO 국가의 문장 또는 기타 국가 상징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없이 등록될 수 없다</p> <p>③ 파리협약 국가 또는 WTO 협정에 따른 국가에서 채택하고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기호 또는 특징으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상표는 파리 협약에 따라 해당 기호 또는 특징이 보호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없이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될 수 없다.</p> <p>④ 국기 및 기타 국가 휘장, 공식 기호 또는 특징에 관한 이 조의 규정은 문장의 관점에서 이러한 깃발, 기타 휘장, 기호 또는 특징을 모방하는 모든 것에 동등하게 적용된다.</p> <p>⑤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국가의 국가상징이나 공식 기호, 특징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특정 국가의 시민의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p> <p>⑥ 이 조에 따라 파리협약 국가 또는 WTO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이 상표 등록을 위해 필요하거나 요구될 경우, 해당 당국은 금지 명령을 통해 상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Emblems etc. of certain international organisations.</p> <p>56. (1) This section applies to —</p> <p>(a) the armorial bearings, flags and other emblems; and</p> <p>(b) the abbreviations and names, of organisations of which the government or governments of one or more Paris Convention countries or World Trade Organisation</p>	<p>특정 국제기구의 엠블럼 등 제56조 ① 이 조는 다음에 적용됩니다.</p> <p>(a) 문장, 깃발 및 기타 상징</p> <p>(b) 하나 이상의 파리협약 국가 또는 WTO 협약국 정부, 또는 그 정부가 구성원인 조직의 약어 및 이름</p>

브루나이 상표법 (Law of Brunei CAP.98 Trademarks, 2017)	번역
<p>countries are members.</p> <p>(2) A trade 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any such emblem, abbreviation or name which is protected und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Agreement shall not be registered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organisation concerned, unless it appears to the Registrar that the use of the emblem, abbreviation or name in the manner proposed —</p> <p>(a) is not such as to suggest to the public that a connection exists between the organisation and the trade mark; or</p> <p>(b) is not likely to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existence of a connection between the user and the organisation.</p> <p>(3)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s to emblems of an organisation apply equally to anything which from a heraldic point of view imitates any such emblem.</p> <p>(4) Where by virtue of this section the authorisation of an organisation is or would be required for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that organisation is entitled to restrain by injunction any use of the mark in Brunei Darussalam which was not authorised by it.</p> <p>(5) Nothing in this section affects the rights of a person whose bona fide use of a trade mark began before the making of this Act.</p>	<p>② 파리협약 또는 WTO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약어 또는 이름, 그러한 상징으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상표는 관련 조직의 승인없이 등록될 수 없다.</p> <p>(a) 조직과 상표 사이에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암시하는 것</p> <p>(b) 사용자와 조직간의 연결성에 대하여 대중을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p> <p>③ 조직의 상징에 관한 이 조의 규정은 문장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상징을 모방하는 모든 것에 동등하게 적용된다.</p> <p>④ 이 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위해 조직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요구될 경우, 해당 조직은 브루나이 내에서의 승인되지 않은 상표사용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선의로 사용된 상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Unauthorised use of trade mark etc. in relation to goods.</p> <p>94. (1) A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with a view to gain for himself or another, or with intent to cause loss to another, an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oprietor —</p> <p>(a) applies to goods or their packaging a sign identical to, or likely to be mistaken for, a registered trade mark;</p> <p>(b) sells or lets for hire, offers or exposes for sale or hire or distributes goods which bear, or the packaging of which bears, such a sign; or</p> <p>(c) has in hi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in the course of a business any such goods with a view to the doing of anything, by himself or another, which would be an offence under paragraph (b).</p> <p>(2) A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with a view to gain for himself or another, or with intent to cause loss to another, an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oprietor —</p> <p>(a) applies a sign identical to, or likely to be mistaken for, a registered trade mark to material intended to be used —</p> <p>(i) for labelling or packaging goods;</p> <p>(ii) as a business paper in relation to goods; or</p> <p>(iii) for advertising goods;</p> <p>(b) uses in the course of a business material bearing such a sign for labelling or packaging goods, as a business paper in relation to goods, or for advertising goods; or</p> <p>(c) has in hi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in the course of a business any such material with a view to the doing of anything, by himself or another, which would be an offence under paragraph (b).</p> <p>(3) A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with a view to gain for himself or another, or with intent to cause loss to another, and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oprietor —</p> <p>(a) makes an article specifically designed or adapted for</p>	<p>상품과 관련하여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p> <p>제94조 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줄 의도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음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p> <p>(a)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시를 상품 또는 포장에 적용하는 것</p> <p>(b) 그러한 표시가 있는 상품을 판매 또는 대여, 판매를 제한 또는 노출, 그러한 표시가 있는 상품을 대여 또는 배포하는 행위</p> <p>(c) (b)항에 의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그러한 물건을 소유, 보관, 통제하는 경우</p> <p>②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줄 의도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p> <p>(a)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재료에 적용하는 경우</p> <p>(i) 상품에 라벨을 붙이거나 포장하기 위해</p> <p>(ii) 상품과 관련된 비즈니스 서류로</p> <p>(iii) 상품 판촉용</p> <p>(b) 상품에 대한 라벨링 또는 포장, 상품과 관련된 비즈니스 서류 또는 상품광고를 위해 그러한 표시가 있는 비즈니스 자료의 사용</p> <p>(c) 사업과정에서 (b)항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러한 자료를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경우</p> <p>③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줄 의도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p> <p>(a)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시의 사본을 만</p>

브루나이 상표법 (Law of Brunei CAP.98 Trademarks, 2017)	번역
<p>making copies of a sign identical to, or likely to be mistaken for, a registered trade mark; or (b) has such an article in his possession, custody or control in the course of a business, knowing or having reason to believe that it has been, or is to be, used to produce goods, or material for labelling or packaging goods, as a business paper in relation to goods, or for advertising goods. (4) A person does not commit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unless — (a) the goods are goods in respect of which the trade mark is registered; or (b) the trade mark has a reputation in Brunei Darussalam and the use of the sign takes or would take unfair advantage of, or is or would be detrimental to, the distinctive character or the repute of the trade mark. (5) It is a defence for a person charged with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to show that he believed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use of the sign in the manner in which it was used, or was to be used, was not an infringement of the registered trade mark. (6) Any person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s liable on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0 years, a fine or both.</p>	<p>틀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물품을 만드는 것</p> <p>(b) 그러한 물품이 사업 과정에서 소유, 보관 또는 통제되고 그것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p> <p>④ 다음의 사항은 이 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a) 상품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p> <p>(b) 상표가 브루나이에서 명성을 갖고 있고, 그 표시의 사용이 상표의 고유한 특성이나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p> <p>⑤ 이 조에 의하여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그것이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어야 했던 방식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등록상표의 침해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입증하여야 한다.</p> <p>⑥ 이 조에 의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Counterfeiting trade mark used by another. 98. (1) Any person who counterfeits any trade mark used by any other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on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5 years, a fine not exceeding \$100,000 or both. (2) A person shall be deemed to counterfeit a trade mark if he — (a)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oprietor of the trade mark, makes that trade mark or a mark so; (b) nearly resembling that trade mark as to be calculated to deceive; or (c) falsifies any genuine trade mark whether by alteration, addition, effacement or otherwise. (3) In any prosecution under this section, the burden of proving the consent of the proprietor shall lie on the defendant.</p>	<p>위조상표의 사용</p> <p>제98조 ① 다른 사람의 상표를 위조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를 위조한 것으로 간주한다.</p> <p>(a)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해당 상표 또는 유사한 것을 만드는 행위</p> <p>(b) 해당상표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p> <p>(c) 변경, 추가, 삭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품 상표를 위조하는 경우</p> <p>(3) 이 조에 다른 모든 기소에서 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침해자에게 있다.</p>
<p>Unauthorised use of Royal arms etc. 102. (5) Any person who imports, sells or exposes, or has in his possession for sale or for any purpose of business or manufacture any goods or thing to which a trade mark bearing any matter prohibited by subsections (1) or (2) has been applied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on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5 years, a fine not exceeding \$50,000 or both, and shall forfeit any goods to which the trade mark bearing that matter has been applied.</p>	<p>왕실 문장 등의 무단 사용</p> <p>제102조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금지된 사항이 포함된 상표가 있는 상품 또는 물건을 수입, 판매 또는 노출하거나 판매 또는 사업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당 문제가 있는 상표가 적용된 모든 상품을 몰수한다.</p>
<p>MISCELLANEOUS AND GENERAL PROVISIONS Burden of proving use of trade mark. 105. If in any civil proceedings under this Act a question arises as to what use has been made of a registered trade mark, it is for the proprietor to show the use that</p>	<p>기타 및 일반조항</p> <p>상표사용입증에 대한 부담</p> <p>제105조 본 법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등록상표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는 상표의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p>

브루나이 상표법 (Law of Brunei CAP.98 Trademarks, 2017)	번역
has been made of it.	
<p>FIRST SCHEDULE : COLLECTIVE MARKS Infringement: rights of authorised users. 11. Subsection (5) of section 13, subsection (2) of section 21, and sections 82 to 90 apply in relation to an authorised user of a registered collective mark as in relation to a licensee of a trade mark.</p>	<p>부칙 1 : 집합적 표시(단체표장) - 지리적 표시 포함 침해 : 권한있는 사용자의 권리 부칙 1 - 제11조 상표의 권리자는 등록된 단체표장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동법 제13조 제5항, 제21조 제2항 및 제82조부터 제90조까지를 적용한다.</p>
<p>SECOND SCHEDULE : CERTIFICATION MARKS Infringement: rights of authorised users. 13. Subsection (5) of section 13, subsection (2) of section 21, and sections 82 to 90 apply in relation to an authorised user of a registered certification mark as in relation to a licensee of a trade mark.</p>	<p>부칙 2 : 인증마크 - 지리적 표시 포함 침해 : 권한있는 사용자의 권리 부칙 2 - 제13조 상표의 권리자 관련, 등록된 인증마크의 인증된 사용자에게 대하여 동법 제13조 제5항, 제21조 제2항 및 제82조부터 제90조까지를 적용한다.</p>
<p>14. In infringement proceedings brought by the proprietor of a registered certification mark, any loss suffered or likely to be suffered by any authorised user shall be taken into account; and the court may give such directions as it thinks fit as to the extent to which the plaintiff is to hold the proceeds of any pecuniary remedy on behalf of such user.</p>	<p>부칙 2 - 제14조 등록된 인증마크의 소유자가 제기하는 위반절차에서 승인된 사용자가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손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가 그러한 사용자를 대신하여 금전적 구제를 어느 정도까지 보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8 장

싱가포르

법령요약

● 싱가포르 상표법(Trade Marks Act (CHAPTER 332), REVISED EDITION 2005)

- (전면개정) 2005. 7. 31. / (최종개정시행) 2021. 1. 2.

법률	내용
제1장 서론	(제1조~제3조) 명칭, 해석, 침해상품 등의 의미
제2장 상표 등록	(제4조~제25조) 서론, 상표등록출원, 등록거절사유, 우선권, 등록절차, 연속상표, 취소, 무효
제3장 등록상표 소유자의 권리 및 구제	(제26조~제35조) 등록상표 소유자의 권리, 침해절차
제4장 재산의 대상으로서의 등록상표	(제36조~제41조) 등록상표의 성질, 공동소유, 양도, 거래 등
제5장 라이선싱	(제42조~제45조) 라이선싱
제6장 처벌	(제46조~제53A조) 위조, 허위 등 침해행위, 집행
제7장 국제 문제	(제54조~제59조) 마드리드 협정 등 국제조약
제8장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제60조~제61조)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제9장 행정 및 기타 보충조항	(제62조~제80조) 등록기관, 등록부, 등록기관의 권한 및 의무, 양식, 수수료 등
제10장 국경당국의 보조	(제81조~제100조) 예비조항, 상품의 압류, 조사 등
제11장 기타 및 일반조항	(제101조~제109조) 기타 일반조항

● 싱가포르 지리적 표시법(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14, No. 19 of 2014)

- (최종개정시행) 2021. 1. 2.

- 지리적 표시법은 싱가포르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적용예외, 지리적 표시의 등록, 국경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

● 싱가포르 지식재산(분쟁해결)법(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ct 2019, No. 23 of 2019)

- (시행) 2019. 11. 21.

- 지식재산(분쟁해결)법은 중재법, 저작권법, 지리적 표시법, 특허법, 식물품종권, 등록디자인법, 국가법원법, 상표법 및 국제중제법에 대한 개정법으로서 “지식재산의 정의”를 비롯한 지식재산 분쟁 관련 조항의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함

주요내용

- 싱가포르의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별도의 법령을 두지 않고 판례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으며, 개별 지식재산권 법령 내에서 부정경쟁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두고 있음
 - 싱가포르 경쟁법이 존재하나, 이는 시장남용행위 등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어 우리의 독점금지법에 더 유사하며, 따라서 이하에는 포함하지 않음
- 싱가포르 상표법
 - 절대적 등록거절 사유로 공공정책 및 도덕성 위반, 대중에 대한 기반, 악의적 출원을 들고 있으며(제7조), 상대적 거절사유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행하는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키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등을 규정(제8조)
 - 유명상표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그 식별력을 희석시키거나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용금지청구권을 규정(제55조)
- 싱가포르 지리적 표시법
 - 파리협약상 불공정 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 이해당사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제4조제2항(b))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이 금지명령 또는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싱가포르 지식재산(분쟁해결)법
 - 싱가포르 중재법 개정조항(제2조) 및 국제중재법 개정조항(제8조)에서 지식재산의 범위에 영업비밀,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보호권 등을 규정
 - 단, 이는 지식재산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재 또는 국제중재의 경우에 지식재산 분쟁에 있어서 영업비밀 등을 포함해 다룰 수 있도록 의도한 것으로 사료
- 싱가포르 영업비밀 관련 사항
 - 싱가포르 내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은 없으며, 관습법(common law) 또는 신뢰법(law of confidence)으로 보호되며, 특히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의무로서 보호됨
 - (정의) 영업비밀에 대한 명문의 조항은 없으나, 관습법에서 “단순한 기밀정보보다 높은 수준의 기밀성을 갖는 기밀 정보의 형태로 간주”(참고 : Clearlab SG Pte Ltd v Ting Chong Chai [2014] SGHC 221 at [68])
 - (요건) 기밀정보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ks되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식별되어야 함(참고 : Nanofilm Technologies International Pte Ltd v

- Semivac International Pte Ltd 및 기타 [2018] SGHC 167)
-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가 기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참고 : Thomas Marshall (Exports) Ltd v Guinle [1979] Ch 227)
 - 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를 소유한 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
 - ② 정보의 소유자는 해당 정보가 비밀이고 공개된 도메인에 없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 ③ 해당 정보는 관련된 특정 산업 분야 등에서 사용 및 관행에 비추어볼 때 기밀로 간주됨
 - 고용관계에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경우의 고려 요소(참고 : Man Financial (S) Pte Ltd 대 Wong Bark Chuan David [2007] SGCA 53 at [83] Faccenda Chicken Ltd 대 Fowler [1987] Ch 117 at 137-138)
 - ① 고용의 성격
 - ② 정보의 성격
 - ③ 고용주가 직원에게 정보의 기밀성을 알렸는지 여부
 - ④ 직원이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관련 정보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조치) 정보가 기밀정보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거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소유자의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함.
 - ① 특정범주의 직원(ex. 경영진)만 영업비밀에 대한 물리적/또는 디지털 접근권한을 갖도록 통제하여 접근을 제한함
 - ② 기밀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밀로 표시함
 - ③ 기밀정보 또는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ex. 직원, 컨설턴트 및 공급업체)이 계약상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계약 또는 기밀유지계약을 사용
 - (영업비밀의 양도/라이선스) 영업비밀은 양도 또는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나(참조 : Clearlab SG Pte Ltd 대 Ting Chong Chai [2014] SGHC 221) 구체적인 특정 결과에 대하여 밝혀진 바는 없음
 - (영업비밀의 침해) 기밀정보 위반에 대하여 싱가포르 법원은 영업비밀의 무단 사용 또는 공개를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며(참고 : Obegi Melissa and Others v Vestwin Trading Pte Ltd and Another [2008] 2 SLR(R) 540),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음
 - ① 해당 정보가 필효나 수준의 기밀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② 해당 정보가 (계약 또는 법률의 간주조항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전달되었는지 여부, 또는 기밀정보가 소유자의 동의나 인지없이 접근 또는 획득되었는지 여부

- (입증책임의 전환)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되는 상황이 성립할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함. 영업비밀 침해라는 추정이 반증될 수 있는 예로는 침해자가 정보를 우연히 접하거나 기밀특성을 알지 못하거나, 공개에 강한 공익이 있다고 믿는 경우임(I-Admin(Singapore) Pte Ltd v Hong Ying Ting 외 [2020] SGCA 32), 또한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기밀정보 소유자가 기밀정보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피고인이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전가함(I-Admin(Singapore) Pte Ltd v Hong Ying Ting 외 [2020] SGCA 32)
- (조사 등)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법원에 수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침해(의심)자의 건물이나 재산을 수색하도록 할 수 있음
- (구제)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법원에 임시, 최종 금지명령, 손해배상 또는 이익배상,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의 인도 및 처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법령비교표

● 싱가포르 상표법

싱가포르 상표법	번역
<p>7. Absolute grounds for refusal of registration (4)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if it is — (a) contrary to public policy or to morality; or (b) of such a nature as to deceive the public (for instance as to the nature, quality or geographical origin of the goods or service). (6) A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if or to the extent that the application is made in bad faith.</p>	<p>제7조 절대적 등록거절사유 (4) 상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할 수 없다: (a) 공공정책이나 도덕성에 반하는 것, 또는 (b) 대중을 기만하는 성질의 것(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 (6) 상표가 악의적으로 출원된 경우 또는 그 범위 내에서 등록될 수 없다.</p>
<p>8. Relative grounds for refusal of registration (4) Subject to subsection (5), wher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is made on or after 1st July 2004, if the whole or an essential part of the trade mark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an earlier trade mark, the later trade mark shall not be registered if — (a) the earlier trade mark is well known in Singapore; and (b) use of the later trade mark in relation to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later trade mark is sought to be registered — (i) would indicate a connection between those goods or services and the proprietor of the earlier trade mark, and is likely to damage the interests of the proprietor of the earlier trade mark; or (ii) if the earlier trade mark is well known to the public at large in Singapore — (A) would cause dilution in an unfair manner of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earlier trade mark; or</p>	<p>제8조 상대적 등록거절사유 (4) 제5항에 따라, 2004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등록 출원에 있어서, 상표의 전체 또는 그 중요한 부분이 선행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a) 선행상표가 싱가포르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경우 (b) 후행상표가 등록 받고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 선행상표의 소유자와 그의 상품 또는 서비스간의 관계를 내보일 수 있고, 또한 선행상표의 소유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ii) 선행상표가 싱가포르의 대부분에서 대중에 잘 알려진 경우로서: (A) 부정한 방법으로 선행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키거나, 또는</p>

싱가포르 상표법	번역
<p>(B) would take unfair advantage of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earlier trade mark.</p> <p>(5) A trade mark shall not be refused registration by virtue of subsection (4) if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 was filed before the earlier trade mark became well known in Singapore, unless it is shown that the application was made in bad faith.</p>	<p>(B) 선행상표의 식별력을 부정하게 이용하려는 경우</p> <p>(5) 상표등록출원이 선행상표가 싱가포르에서 잘 알려지기 전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출원이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제4항에 따라 거절되지 않는다.</p>
<p>31. Action for infringement</p> <p>(1) An infringement of a registered trade mark is actionable by the proprietor of the trade mark.</p> <p>(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in an action for an infringement, the types of relief that the Court may grant include the following:</p> <p>(a) an injunction (subject to such terms, if any, as the Court thinks fit);</p> <p>(b) damages;</p> <p>(c) an account of profits;</p> <p>(d) in any case to which subsection (5) applies, statutory damages under subsection (5)(c).</p> <p>(3) When the Court awards any damages under subsection (2)(b), the Court may also make an order under subsection (2)(c) for an account of any profits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 that have not been taken into account in computing the damages.</p> <p>(4) Except as provided for in subsection (3), the types of relief referred to in paragraphs (b), (c) and (d) of subsection (2) are mutually exclusive.</p> <p>(5) In any action for infringement of a registered trade mark where the infringement involves the use of a counterfeit trade mark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the plaintiff shall be entitled, at his election, to —</p> <p>(a) damages and an account of any profits attributable to the infringement that have not been taken into account in computing the damages;</p> <p>(b) an account of profits; or</p> <p>(c) statutory damages —</p> <p>(i) not exceeding \$100,000 for each type of goods or service in relation to which the counterfeit trade mark has been used; and</p> <p>(ii)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 million, unless the plaintiff proves that his actual loss from such infringement exceeds \$1 million.</p> <p>(6) In awarding statutory damages under subsection (5)(c), the Court shall have regard to —</p> <p>(a) the flagrancy of the infringement of the registered trade mark;</p> <p>(b) any loss that the plaintiff has suffered or is likely to suffer by reason of the infringement;</p> <p>(c) any benefit shown to have accrued to the defendant by reason of the infringement;</p> <p>(d) the need to deter other similar instances of infringement; and</p> <p>(e) all other relevant matters.</p>	<p>제31조 침해에 대한 조치</p> <p>(1) 등록상표의 침해는 상표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2)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부여할 수 있는 구제유형은 다음과 같다.</p> <p>(a) 금지명령</p> <p>(b) 손해</p> <p>(c) 이익계산</p> <p>(d)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5항 c호에 따른 법적 손해</p> <p>(3) 법원이 제2항 제b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고려되지 않은 침해로 인한 이익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제2항 제c호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p> <p>(4)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의 b호 내지 c호, d호에 언급된 구제유형은 상호배타적이다.</p> <p>(5) 침해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위조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등록상표침해소송에서 원고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p> <p>(a) 손해를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은 손해 및 침해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설명</p> <p>(b) 이익의 계산</p> <p>(c) 법적 손해</p> <p>(i) 위조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 유형별로 \$100,000를 초과하지 않음</p> <p>(ii) 원고가 그러한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이 \$1,000,000를 초과한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는 한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p> <p>(6) 제5항 c호에 따른 법적 손해배상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을 고려한다.</p> <p>(a) 등록상표 침해의 심각성</p> <p>(b) 원고가 침해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손실</p> <p>(c) 침해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이익</p> <p>(d) 기타 유사한 침해 사례를 억제할 필요성</p> <p>(e) 기타 모든 관련 사항</p>
<p>47. Falsely applying a registered trade mark to goods or services</p> <p>(1) Any person who falsely applies a registered trade</p>	<p>제47조 등록상표를 허위로 물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행위</p> <p>(1) 등록상표를 물품이나 서비스에 거짓으로 적용하는 사람은 그가</p>

싱가포르 상표법	번역
<p>mark to goods or services shall, unless he proves that he acted innocently, be guilty of an offence and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10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5 years or to both.</p> <p>(2)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nd sections 49, 53 and 53A, a person falsely applies a registered trade mark to goods or services if —</p> <p>(a) without the consent of the proprietor of the registered trade mark, the person applies the trade mark or a sign likely to be mistaken for that trade mark to the goods or services; and</p> <p>(b) in the case of an application to goods, the goods are not the genuine goods of the proprietor or licensee of the registered trade mark.</p> <p>(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a trade mark shall be deemed to be applied to goods or services if it is used in —</p> <p>(a) any sign or advertisement; or</p> <p>(b) any invoice, wine list, catalogue, business letter, business paper, price list or other commercial document, including any such document in any medium, and the goods are delivered, or services provided, as the case may be, to a person in pursuance of a request or order made by reference to the trade mark as so used.</p>	<p>무고하게 행동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범죄에 해당하면 이 경우 \$1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p> <p>(2) 이 조 또는 제49조, 제53조 및 제53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상표를 거짓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p> <p>(a) 등록상표 소유자의 동의없이 그 사람이 상표 또는 해당 상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시를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경우</p> <p>(b) 해당 상품이 등록상표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3) 제2항의 목적상 상표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된 것으로 간주된다.</p> <p>(a) 모든 표시 또는 광고</p> <p>(b) 모든 인보이스, 와인목록, 카탈로그, 비즈니스 서류, 가격목록, 기타 상업문서(매체에 관계없이 그러한 문서를 포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상품이 인도되거나 서비스게 제공되는 경우 그렇게 사용된 상표를 참조하여 이루어진 요청 또는 명령에 따르는 경우</p> <p>(이하 생략)</p>
<p>55. Protection of well known trade marks</p> <p>(3) Subject to subsections (6) and (7), the proprietor of a well known trade mark shall be entitled to restrain by injunction the use in Singapore, in the course of trade and without the proprietor's consent, of any trade mark which, or an essential part of which,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proprietor's trade mark, in relation to any goods or services, where the use of the trade mark —</p> <p>(a) would indicate a connection between those goods or services and the proprietor, and is likely to damage the interests of the proprietor; or</p> <p>(b) if the proprietor's trade mark is well known to the public at large in Singapore —</p> <p>(i) would cause dilution in an unfair manner of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proprietor's trade mark; or</p> <p>(ii) would take unfair advantage of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proprietor's trade mark.</p> <p>(4) Subject to subsections (6) and (7), the proprietor of a well known trade mark shall be entitled to restrain by injunction the use in Singapore without the proprietor's consent of any business identifier which, or an essential part of which, i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proprietor's trade mark, where the use of the business identifier —</p> <p>(a) would indicate a connection between the business in respect of which it is used and the proprietor, and is likely to damage the interests of the proprietor; or</p> <p>(b) if the proprietor's trade mark is well known to the public at large in Singapore —</p> <p>(i) would cause dilution in an unfair manner of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proprietor's trade mark; or</p>	<p>55. 유명상표의 보호</p> <p>(3)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유명상표의 소유자는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유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필수적 부분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거래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그 상표의 사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싱가포르 내에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p> <p>(a)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소유자 간의 연결을 나타내고, 소유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p> <p>(b) 소유자의 상표가 싱가포르에서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진 경우로서:</p> <p>(i)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자 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키거나, 또는</p> <p>(ii) 소유자 상표의 식별력을 부정하게 이용하려는 경우</p> <p>(4)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유명상표의 소유자는 어떤 사업표지 또는 그 필수적 부분이 소유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그 사업표지의 사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싱가포르 내에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p> <p>(a) 그것이 사용되는 사업과 소유주 사이의 연결을 나타내고 소유주의 이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p> <p>(b) 소유자의 상표가 싱가포르에서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진 경우로서:</p> <p>(i)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자 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키거나, 또는</p>

싱가포르 상표법	번역
<p>(ii) would take unfair advantage of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the proprietor's trade mark.</p> <p>(6) The proprietor shall not be entitled to the right referred to in subsection (2), (3) or (4) if the use of the trade mark or business identifier, as the case may be, began before the proprietor's trade mark became well known in Singapore, unless the trade mark or business identifier has been used in bad faith.</p> <p>(7) The proprietor shall cease to be entitled to the right referred to in subsection (2), (3) or (4) if the proprietor has acquiesced for a continuous period of 5 years in the use of the trade mark or business identifier, as the case may be, in Singapore, being aware of that use, unless the trade mark or business identifier has been used in bad faith.</p> <p>(8) In deciding whether the trade mark or business identifier, as the case may be, has been used in bad faith, it shall be relevant to consider whether the person who used the trade mark or business identifier had, at the time he began to use the trade mark or business identifier, knowledge of, or reason to know of, the proprietor's trade mark.</p>	<p>(ii) 소유자 상표의 식별력을 부정하게 이용하려는 경우</p> <p>(6) 상표 또는 사업표지의 사용이 소유자의 상표가 잘 알려지기 이전에 시작된 경우, 그 상표 또는 사업표지가 악의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한, 소유자는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언급된 권리를 가질 수 없다.</p> <p>(7) 소유자가 상표 또는 사업표지의 사용에 대하여 5년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이를 묵인한 경우, 그 상표 또는 사업표지가 악의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한, 소유자는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언급된 권리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다.</p> <p>(8) 상표 또는 사업표지가 악의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상표 또는 사업표지를 사용한 자가 그 상표 또는 사업표지의 사용을 개시할 때에 소유자의 상표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p>
<p>56. National emblems, etc., of Convention countries: Article 6ter of Paris Convention, etc.</p> <p>(1) A trade 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the flag of a Convention country shall not be registered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country, unless it appears to the Registrar that use of the flag in the manner proposed is permitted without such authorisation.</p> <p>(2) A trade 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the armorial bearings or any other state emblem of a Convention country which is protected und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TRIPS Agreement shall not be registered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country.</p> <p>(이하 생략)</p>	<p>제56조 파리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른 협약국의 국장 등</p> <p>(1) 협약국의 국기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상표는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없이 등록될 수 없다.</p> <p>(2) 파리협약 또는 TRIPS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의 문장, 또는 기타 국가 상징으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상표는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없이 등록될 수 없다.</p> <p>(이하 생략)</p>
<p>57. Emblems, etc., of certai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rticle 6ter of Paris Convention, etc.</p> <p>(1) This section shall apply to —</p> <p>(a) the armorial bearings, flags or other emblems; and</p> <p>(b) the abbreviations and names,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of which one or more Convention countries are members.</p> <p>(2) A trade mark which consists of or contains any such emblem, abbreviation or name which is protected under the Paris Convention or the TRIPS Agreement shall not be registered without the authorisa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sation concerned, unless it appears to the Registrar that the use of the emblem, abbreviation or name in the manner proposed —</p> <p>(이하 생략)</p>	<p>제57조 파리협약 제6조 등에 따른 특정 국제기구의 휘장 등</p> <p>(1) 이 섹션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p> <p>(a) 문장, 깃발 또는 기타 상징,</p> <p>(b) 하나 이상의 협약국가의 회원인 국제정부간 기구의 약어 및 이름</p> <p>(2) 파리협약 또는 TRIPS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엠블럼, 약어 또는 이름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는 관련 국제기구의 승인 없이 등록될 수 없다.</p> <p>(이하 생략)</p>
<p>58. Notification under Article 6ter of Paris Convention, etc. (본문 내용 생략)</p>	<p>제58조 파리협약 제6조 등에 따른 고시 (본문 내용 생략)</p>

● 싱가포르 지리적표시법

싱가포르 지리적 표시법	번역
<p>4. Interested party may bring action for certain uses of geographical indication</p> <p>(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 interested party of goods identified by a geographical indication may bring an action against a person for carrying out an act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n relation to the geographical indication.</p> <p>(2) This section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acts:</p> <p>(a) the use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in relation to any goods which did not originate in the place indicated by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a manner which misleads the public as to the geographical origin of the goods;</p> <p>(b) any use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which constitute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0bis of the Paris Convention;</p>	<p>제4조 지리적 표시의 특정한 사용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조치</p> <p>(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로 식별된 상품의 이해 당사자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이 조가 적용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2) 이 조는 다음 행위에 적용된다:</p> <p>(a) 지리적 표시가 표시된 장소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p> <p>(b) 파리협약 제102조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 경쟁행위를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p>
<p>5. Remedies</p> <p>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if it is establish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urt that the defendant to an action brought under section 4 has carried out or is carrying out an act to which that section applies, the Court may grant to the plaintiff one or both of the following:</p> <p>(a) an injunction (subject to such terms, if any, as the Court thinks fit) to restrain the further carrying out of the act;</p> <p>(b) damages or an account of profits.</p>	<p>5. 구제</p> <p>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제4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행위를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법원이 충족할 정도로 입증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p> <p>(a) 해당 행위의 추가적 수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지명령(법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p> <p>(b) 손해 또는 수익</p>

● 싱가포르 지식재산(분쟁해결)법

싱가포르 지식재산(분쟁해결)법	번역
<p>2. New Part IXA</p> <p>The Arbitration Act (Cap. 10) is amended by inserting, immediately after section 52, the following Part:</p> <p>"PART IXA ARBITRATION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 <p>52A. Interpretation of this Part</p> <p>(1) In this Par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 "IPR" means —</p> <p>(a) a patent;</p> <p>(b) a trade mark;</p> <p>(c) a geographical indication;</p> <p>(d) a registered design;</p> <p>(e) a copyright;</p> <p>(f) a right in a protected layout-design of an integrated circuit;</p> <p>(g) a grant of protection in respect of a plant variety;</p> <p>(h) a right in confidential information, trade secret or know-how;</p> <p>(i) a right to protect goodwill by way of passing off or similar a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or</p> <p>(j)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whatever nature.</p>	<p>2. 신규 파트 IXA</p> <p>중재법(Cap. 10)은 제52조 바로 뒤에 다음 부분을 삽입하여 개정된다.</p> <p>"파트 IXA 지식재산권 관련 중재</p> <p>52A. 파트의 해석</p> <p>(1)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파트에서 "지식재산권" 또는 "IPR"은 다음을 의미한다:</p> <p>(a) 특허</p> <p>(b) 상표</p> <p>(c) 지리적 표시</p> <p>(d) 등록디자인</p> <p>(e) 저작권</p> <p>(f)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p> <p>(g) 식물 품종에 대한 보호 부여</p> <p>(h) 기밀정보,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에 대한 권리</p> <p>(i)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응한 사칭통용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통해 영업권을 보호할 권리, 또는</p> <p>(j) 기타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p>

싱가포르 지식재산(분쟁해결)법	번역
<p>8. New Part IIA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Cap. 143A) is amended by inserting, immediately after section 26, the following Part: “PART IIA ARBITRATIONS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6A. Interpretation of this Part (1) In this Par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r “IPR” means — (a) a patent; (b) a trade mark; (c) a geographical indication; (d) a registered design; (e) a copyright; (f) a right in a protected layout-design of an integrated-circuit; (g) a grant of protection in respect of a plant variety; (h) a right in confidential information, trade secret or know-how; (i) a right to protect goodwill by way of passing off or similar a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or (j)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whatever nature.</p>	<p>8. 신규 파트 IIA 국제중재법(Cap. 143A)은 제26조 바로 뒤에 다음 부분을 삽입하여 개정된다. “파트 IIA 지식재산권 관련 중재 26A. 파트의 해석 (1)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파트에서 “지식재산권” 또는 “IPR”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특허 (b) 상표 (c) 지리적 표시 (d) 등록디자인 (e) 저작권 (f)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g) 식물 품종에 대한 보호 부여 (h) 기밀정보,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에 대한 권리 (i)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응한 사칭통용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통해 영업권을 보호할 권리, 또는 (j) 기타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9 장

인도네시아

법령요약

● 인도네시아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2016)

- 2016. 11. 27. 제정 및 시행

법률	내용 및 조문구성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정의	
제2장 상표의 범위	(제2조~제3조) 상표의 보호범위	
제3장 상표 등록출원	제1절 출원 요건 및 절차	(제4조~제8조)
	제2절 우선권에 따른 상표 등록출원	(제9조~제10조)
	제3절 상표 등록 형식심사	(제11조~제12조)
	제4절 출원일	(제13조)
	제5절 공고	(제14조~제15조)
	제6절 거절 및 이의신청	(제16조~제17조)
	제7절 상표 등록출원 수정 및 취소	(제18조~제19조)
제4장 상표 등록	제1절 등록 불가 및 거절되는 상표	(제20조~제22조)
	제2절 상표 실질심사	(제23조~제26조)
	제3절 등록증 수정	(제27조)
	제4절 재심	(제28조~제32조)
	제5절 상표 재심위원회	(제33조~제34조)
	제6절 존속기간 및 등록상표의 갱신	(제35조~제40조)
제5장 권리 이전 및 사용 허가	제1절 권리의 이전	(제41조)
	제2절 사용 허가	(제42조~제45조)
제6장 단체표장	(제46조~제51조) 단체표장의 출원, 이전, 사용 허가	
제7장 국제상표 등록출원	(제52조) 국제상표 등록출원 절차	
제8장 지리적 표시	(제53조~) 지리적 표시 보호대상	
제9장 지리적 표시 등록	제1절 등록 불가 및 거절되는 지리적 표시	(제56조~제57조)
	제2절 지리적 표시의 실질심사	(제58조~제60조)
	제3절 지리적 표시의 존속기간 및 취소	(제61조~제62조)
	제4절 출처 표시	(제63조~제65조)
제10장 침해 및 소송	제1절 지리적 표시의 침해	(제66조)
	제2절 소송	(제67조~제69조)
제11장 지리적 표시의 육성 및 관리	제1절 육성	(제70조)
	제2절 관리	(제71조)
제12장 상표 등록 취소 및 무효	제1절 취소	(제72조~제75조)
	제2절 무효	(제76조~제79조)

법률	내용 및 조문구성	
제13장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문서의 네트워크 시스템 및 정보	(제80조~제81조)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문서의 네트워크 시스템 및 정보	
제14장 수수료	(제82조) 수수료,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	
제15장 분쟁 해결	제1절 상표 침해 소송	(제83조~제84조)
	제2절 상사법원에 대한 소송 절차	(제85조~제86조)
	제3절 대법원에 대한 항소	(제87조~제90조)
	제4절 결정 집행 절차	(제91조~제92조)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제93조)
제16장 임시 금지명령	(제94조~제98조) 가처분 청구 요건 및 절차	
제17장 조사	(제99조) 조사 권한	
제18장 형사 규정	(제100조~제103조) 징역형, 벌금형	
제19장 전환 조항	(제104조~제105조) 개정법의 적용	
제20장 종결 조항	(제106조) 법률의 시행	

● 인도네시아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0 YEAR 2000 REGARDING TRADE SECRET)

- 2000. 12. 20. 제정 및 시행

법률	내용 및 조문구성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영업비밀,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 장관, 사무총장, 라이선스의 정의	
제2장 영업비밀의 범위	(제2조~제3조)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제3장 영업비밀 소유자의 권리	(제4조) 영업비밀 소유자의 권리	
제4장 권리의 이전 및 라이선스	제1절 권리의 이전	(제4조)
	제2절 라이선스	(제6조~제9조)
제5장 수수료	(제10조) 권리의 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관련 수수료	
제6장 분쟁해결	(제11조~제12조) 손해배상, 대체적 분쟁해결	
제7장 영업비밀의 침해	(제13조~제15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및 예외	
제8장 조사	(제16조) 조사 권한	
제9장 형사처벌	(제17조) 징역, 벌금	
제10장 기타 조항	(제18조) 비공개 심리 청구	
제11장 종결 조항	(제19조) 시행일	

주요내용

● 영업비밀의 정의 및 성립요건

- (정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기술 및/또는 사업 분야에서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생산 방법, 처리 (준비)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정보를 의미
- (요건) 정보가 특정인에게만 알려져 있고(비공지성), 기밀성을 이용하여 상업활동 또는 사업 운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경제적 유용성), 정보의 소유주 또는 정보 관리 당사자에 의해 필요하고 적절한 노력을 통해 기밀성이 유지(비밀관리성)
- (침해행위) 영업비밀을 고의로 공개하거나 영업비밀의 기밀 유지에 관한 계약 또는 의무의 위반, 현행 법률을 반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

● 분쟁해결(민사절차)

- 영업비밀 소유자 또는 실시권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 가능

● 형사처벌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3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부정경쟁행위 등

- (유명상표) 유사 또는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됨
- (악의적 출원) 악의적인 상표 출원의 경우 등록 거절
- (원산지 표시) 원산지와 관련하여 대중을 오도하거나 기망하는 지리적 표시의 경우 등록 거절

법령비교표

● 인도네시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인도네시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2016)	번역
<p>Article 21 (1) An Application is refused if the Mark is substantively similar to or identical with: a. a prior registered Mark of other parties or prior Mark application in respect of similar goods and/or services; b. a well-known Mark of other parties for similar goods and/or services; c. a well-known Mark of other parties for different goods and/or services complying with certain requirements; or d. a 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 (2) An application is refused if the Mark: a. constitutes or is similar to name or initial of a well-known individual, photograph, or name of legal entity owned by other person, unless under a written consent from its proprietary; b. constitutes as duplication or is similar to name or initial, flag, symbol or State emblem, or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cy, unless under a written consent from the authorities; or c. constitutes as duplication or is similar to official signs or seal or stamp used by a country or Government agency, unless under a written consent from the authorities. (3) An Application is refused if it is submitted by an Applicant in bad faith. (4) Further provisions regarding the refused Mark Application as referred to in section (1) point a to point c are regulated by a Ministerial Regulation.</p>	<p>제21조 (1) 상표가 이하의 항목과 실질적으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출원은 거절된다. a.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서 다른 당사자의 선등록 상표 또는 선출원 상표 b.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서 다른 당사자의 유명상표 c.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서 다른 당사자의 유명상표 d. 등록된 지리적 표시 (2) 다음의 경우 상표 출원은 거절된다. a. 소유자의 서면동의가 없이, 타인이 소유한 유명한 개인, 사진, 법인의 이름 또는 이니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b. 당국의 서면동의 없이, 국가 이름 또는 이니셜, 국기, 상징 또는 국내 및 국제기관 모두와 유사하거나 중복으로 구성된 경우, 또는 c. 당국의 서면동의 없이, 국가 또는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공식 서명이나 인장 또는 도장과 유사하거나 중복으로 구성된 경우 (3) 출원인에 의해 악의로 출원된 건은 거절한다. (4) (1)항에 언급된 거절된 상표출원에 관한 추가 조항은 각료 규정 에 따라 규정한다.</p>
<p>Article 55 (1) Geographical Indications may also be registered under an international agreement. (2) Further provisions regarding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rom overseas as referred to in Article 54 are regulated in a Ministerial Regulation.</p>	<p>제55조 (1) 지리적 표시는 국제협정에 따라 등록될 수 있다. (2) 제54조에 언급된 외국의 지리적 표시 등록에 관한 추가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p>
<p>Article 56 (1) Applic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annot be registered if it: a. contradicts to State ideology, laws and regulations, morality, religion, decency, and public order; b. misleads or deceives the public concerning reputation, quality, characteristics, source of origin, manufacturing process, and/or its usage; and c. constitutes a name that has been used in plant variety and used for similar plant variety, unless any additional term to indicate factors of similar geographical indication. (2) Applic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s refused if: a. the Document Describing Geographical Indications is not verified; and/or b. it has substantial similarity with a 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p>	<p>제56조 (1) 다음의 경우, 지리적 표시는 등록되지 않는다. a. 국가 이념, 법률 및 규정, 도덕, 종료, 품위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b. 평판, 품질, 특성, 원산지, 제조 공정 및/또는 그 용도와 관련하여 대중을 오도하거나 기망하는 경우, 그리고 c. 유사한 지리적 표시의 요인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용어가 없고, 식물 품종에 사용되며 유사한 식물 품종에 사용된 명칭을 구성하는 경우 (2)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거절된다. a. 지리적 표시의 설명문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b. 기등록 지리적 표시와 상당히 유사한 경우</p>

인도네시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2016)	번역
<p>Article 66 Infringemen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omprises:</p> <p>a. the us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n goods and/or products that are not compliant with Document Describing Geographical Indications;</p> <p>b. the use of certain Geographical Indication logo,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n goods and/or products whether protected or not protected for the purposes of:</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ndicating that certain goods and/or products are equal in terms of quality to the protected goods and/or products as Geographical Indications; 2. generating profit from the usage; or 3. generating profit from the reputa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p>c. the us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that potentially mislead the public concerning geographical origins of the goods;</p> <p>d. the us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by non-Users of 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s;</p> <p>e. counterfeiting or abusing that may mislead in respect of the place of origin of goods and/or products or quality of the goods and/or products on it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rapping or packaging; 2. description on advertisement; 3. description in the document concerning the goods and/or products; or 4. misleading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origin of certain packaging. <p>f. other acts that are misleading general public regarding the truth of the origin of the goods and/or products.</p>	<p>제66조 다음의 행위는 지리적 표시의 침해이다.</p> <p>a. 지리적 표시를 기술하는 문서와 상이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p> <p>b.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및 제품에 특정 지리적 표시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상품 또는 제품이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는 상품 또는 제품과 품질면에서 동일함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 2. 이용에 따른 수익창출 3. 지리적 표시의 명성을 통한 이익 창출 <p>c. 상품의 지리적 출처와 관련하여 대중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p> <p>d.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권리자가 아닌 자의 사용</p> <p>e. 제품 또는 제품의 원산지, 품질과 관련하여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위조 또는 남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장 또는 외관 2. 광고에 대한 설명 3.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설명 <p>4. 특정 포장에서 원산지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p> <p>f. 기타 상품 또는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사실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에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p>
<p>Article 67 (1) The infringement as referred to in Article 66 may be filed a lawsuit.</p> <p>(2) The lawsuit as referred to in section (1) may be carried out by:</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any entitled producer to use Geographical Indications; and/or b. any entity representing the public in certain geographical area and granted the authority. 	<p>제67조 (1)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2) 제1조에 언급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 생산자 및/또는 b. 특정 지역에서 대중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모든 단체
<p>Article 69 (1) Owner of the Right on Geographical Indications may file a lawsuit against any unlawful user of Geographical Indications to claim for damages and terminate the use as well as destroy the label of Geographical Indications which is unlawfully used.</p> <p>(2) To prevent more losses on the party whose right is infringed, the judge may order the infringer to cease the manufacturing, reproduction, as well as order to destroy the label of Geographical Indications which is unlawfully used.</p>	<p>제69조 (1)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는 지리적 표시의 불법이용자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된 지리적 표시의 표지를 훼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용을 중지할 것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2) 법원은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더 많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제조, 복제를 중지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된 지리적 표시의 라벨을 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Article 83</p> <p>(1) The registered Mark owner and/or Mark Licensee may file the lawsuit against other parties who unlawfully use the Mark that is similar to or identical for similar kinds of goods and/or services in the form of:</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claim for damages; and/or b. ceasing all acts related to the use of Mark. 	<p>제83조</p> <p>(1) 등록된 상표권자 또는 상표 사용권자는 유사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상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손해배상 청구 및/또는 b. 상표사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의 중지

인도네시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2016)	번역
<p>(2) The lawsuit as referred to in section (1) may also be filed by the owner of well-known Mark based on court decision.</p> <p>(3) The lawsuit as referred to in section (1) is filed to the Commercial Court.</p>	<p>(2) 제1항의 소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명상표의 소유자도 제기할 수 있다.</p> <p>(3) 제1항의 소송은 상사법원에서 이루어진다.</p>
<p>Article 84</p> <p>(1) In the process of examination and to prevent greater damages, the Mark owner and/or Licensee as the plaintiff may request to the judge to cease all acts of production, circulation, and/or trades of goods and/or services of that Mark unlawfully.</p> <p>(2)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 is sued to submit the infringed goods, the judge may order the submission of the goods or the value of the goods to be executed after a court decision which is final and binding is released.</p>	<p>제84조</p> <p>(1) 재판과정 또는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인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는 법원에 해당 불법으로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생산, 유통 및/또는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2) 피고가 침해물품을 제출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법원 결정이 해제된 후 물품의 제출 또는 물품의 가액을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Article 94</p> <p>On the ground of sufficient preliminary evidence, registered Mark owner whose rights have been violated may request a judge from the Commercial Court to release an interlocutory injunction on:</p> <p>a. preventing allegedly imported infringing goods entering the trade route;</p> <p>b. storing evidence relevant to that Mark infringement;</p> <p>c. securing and preventing the loss of evidence by infringer; and/or</p> <p>d. ceasing the act of infringement to prevent greater damages</p>	<p>제94조</p> <p>충분한 예비증거를 근거로 권리가 침해된 상표권자는 상사법원에 대하여 다음에 대한 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p> <p>a. 수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침해품이 진입하는 것을 금지</p> <p>b. 해당 상표침해와 관련된 증거의 보관</p> <p>c. 침해자에 의한 증거의 확보 및 손실방지, 또는</p> <p>d.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해행위의 중지</p>
<p>Article 98 Provisions regarding the interlocutory injunc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94 to Article 97 apply mutatis mutandis on the Right on Geographical Indications.</p>	<p>제98조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중간금지명령에 관한 규정은 지리적 표시권에 관하여 준용한다.</p>
<p>Article 99</p> <p>(1) Aside from the investigator officers of State National Poli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pecific civil servant investigator within the ministry administering government affairs in the legal field are authorized as investigators as referred to in the Law on criminal procedures to conduct investigation in Mark criminal acts.</p> <p>(2) The investigators as referred to in section (1) have authority to:</p> <p>a. conduct examination on the accuracy of the report or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criminal acts in the field of Mark;</p> <p>b. conduct examination to any Person allegedly committing criminal acts in the field of Mark;</p> <p>c. request information and evidence from any Person in relation to criminal acts in the field of Mark;</p> <p>d. conduct examination on bookkeeping, records, and other documents in relation to criminal acts in the field of Mark;</p> <p>e. search and conduct examination in places allegedly having evidence, bookkeeping, records, and other documents in relation to the criminal acts in the field of Mark;</p> <p>f. confiscate infringing materials and goods as evidence in</p>	<p>제99조</p> <p>(1)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청 수사관 외에, 법률 분야의 정무를 관장하는 부처 내 특정 공무원은 상표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p> <p>(2) 제1항에 언급된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p> <p>a. 상표분야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조사의 수행</p> <p>b. 상표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 실시</p> <p>c. 상표분야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정보 및 증거의 요청</p> <p>d. 상표분야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부수적 기록 및 기타문서에 대한 조사 수행</p> <p>e. 상표분야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부수적 기록 등이 의심되는 장소에서의 수색 및 조사 수행</p> <p>f. 상표분야의 범죄행위 증거의 침해자료 및 물품의 압수</p>

인도네시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2016)	번역
<p>criminal acts in the field of Mark;</p> <p>g. request for expert state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duties to investigate the criminal acts in the field of Mark;</p> <p>h. request assistance from relevant institutions to arrest, detain, set a wanted list, and prevent the perpetrator of the criminal act in the field of Mark; and</p> <p>i. dismiss investigation if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for conviction of the criminal acts in the field of Mark. (이하 생략)</p>	<p>g. 상표분야의 범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의 진술 요청</p> <p>h. 상표분야에서 범죄행위의 가해자를 체포, 구금, 지명수배 및 방지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지원을 요청</p> <p>i. 상표 분야의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에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의 기각 (이하생략)</p>
<p>Article 101</p> <p>(1) Every person unlawfully uses any signs which are identical to Geographical Indications of other parties for similar goods and/or products or identical to registered goods and/or products,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up to 4 (four) years and/or up to Rp2.000.000.000,00 (two billion rupiahs).</p> <p>(2) Every Person unlawfully uses any sign which is substantially similar to Geographical Indications of another party for similar goods and/or products or identical with registered goods and/or products, shall be sentenced with imprisonment up to 4 (four) years and/or fines up to Rp2.000.000.000,00 (two billion rupiahs).</p>	<p>제101조</p> <p>(1) 누구든지 유사한 상품 및 제품에 대해 다른 당사자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p> <p>(2) 모든 사람은 유사한 상품 또는 제품, 등록된 상품 또는 제품과 동일한 다른 당사자의 지리적 표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2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p>

● 인도네시아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인도네시아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2000년 법률 제30호)	번역
<p>CHAPTER I GENERAL PROVISIONS</p> <p>Article 1</p> <p>In this Law:</p> <p>1. Trade Secret shall mean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or business that is not known by the public and has economic values as it is useful in business activities, and the confidentiality of which is maintained by its owner.</p> <p>2. Right to Trade Secret shall mean the right to trade secret that emerges based on this Law.</p> <p>3. Minister shall mean the minister who heads a governmental department of which the scope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ncludes guidance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secret.</p> <p>4. Directorate General shall mean the 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 department presided over by the Minister.</p> <p>5. License shall mean a permission which is granted by the Right Holder to Trade Secret to another party by means of an agreement based on the grant of right (not the transfer of right), to enjoy the economic benefit of a trade secret which is granted a protection for a given period of time and with certain requirements.</p>	<p>제1장 일반 조항</p> <p>제1조</p> <p>이 법률에서:</p> <p>1. 영업비밀이란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 및/또는 사업 분야의 정보로서 기업활동에 유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소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p> <p>2.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 이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p> <p>3. 장관은 그 직무 및 책임의 범위가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 분야의 지침을 포함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을 의미한다.</p> <p>4. 사무총장은 장관이 이끄는 부처 산하의 지식재산 총국을 의미한다.</p> <p>5. 라이선스는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보유자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요건과 함께 부여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의 부여(권리 이전이 아닌)에 기초한 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부여한 허가를 의미한다.</p>
<p>Article 2</p>	<p>제2조</p>

인도네시아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2000년 법률 제30호)	번역
<p>The scope of protection on Trade Secret shall include methods of production, methods of processing(preparation), methods of selling, or other information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or business that has economic values and is not known by the public in general.</p>	<p>영업비밀의 보호범위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는 기술 및/또는 사업 분야의 생산 방법, 처리(준비) 방법, 판매 방법, 또는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p>
<p>Article 3 (1) Trade Secret shall be given protection if the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has economic values and the secrecy of which is maintained with necessary efforts. (2) Information shall be secret (confidential) if such information is only known by a certain people or such information is not known by the public in general. (3) Inform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economic values if the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 can be used to run commercial activities or business or can improve the benefit economically. (4)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shall be deemed to be maintained if the owner or the parties that control the information have taken necessary and appropriate efforts.</p>	<p>제3조 (1) 영업비밀은 해당 정보가 기밀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필요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서 유지되는 경우, 보호 받는다. (2) 정보가 특정인에게만 알려져 있거나 일반 공공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는 비밀(기밀)이 된다. (3) 정보의 기밀성을 이용하여 상업활동 또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정보의 소유주 또는 정보를 관리하는 당사자가 필요하고 적절한 노력을 한 경우, 정보의 기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CHAPTER III RIGHTS OF OWNER OF TRADE SECRET</p>	<p>제3장 영업비밀 소유자의 권리</p>
<p>Article 4 The owner of Trade Secret shall have the rights: a. to personally use his trade secret; b. to grant a license to or to prohibit other parties to use his Trade Secret or to disclose the Trade Secret to any third party for commercial purposes.</p>	<p>제4조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a. 영업비밀의 개인적인 사용 b. 타인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금지</p>
<p>CHAPTER IV TRANSFER OF RIGHTS AND LICENSE</p>	<p>제4장 권리의 이전 및 라이선스</p>
<p>Part One Transfer of Rights</p>	<p>제1절 권리의 이전</p>
<p>Article 5 (1) The Right to Trade Secret may be transferred by: a. inheritance; b. donation; c. testament; d. written agreement; or e. other reasons recognized by the Law. (2) The transfer of Right to Trade Secre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furnished with the documents on the transfer. (3) All forms of transfer of Right to Trade Secre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recorded at the Directorate General with the payment of fee as regulated in this Law. (4) A transfer of Right to Trade Secret that is not recorded at the Directorate General shall have not any legal consequences on any third party. (5) The transfer of Right to Trade Secre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be announced in the Official Gazette of Trade Secret.</p>	<p>제5조 (1)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는 다음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 a. 상속 b. 기부 c. 유언 d. 서면 동의; 또는 e. 법에서 인정하는 기타 사유 (2) 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이전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3) 제1항에서 언급한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본 법률에 규정된 수수료 지급과 함께 사무총장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4) 사무총장에 기록되지 않은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제3자에게 어떠한 법률 효과도 초래하지 않는다. (5) 제3항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영업비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p>
<p>Part Two License</p>	<p>제2절 라이선스</p>
<p>Article 6 The Right Holder to Trade Secret shall be entitled to grant a license to a third party on the basis of a licensing agreement</p>	<p>제6조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보유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4조에 언급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라이</p>

인도네시아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2000년 법률 제30호)	번역
to conduct acts as referred to in Article 4, unless agreed otherwise.	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p>Article 7</p> <p>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6, the Right Holder to Trade Secret may still personally exploit or to grant a license to a third party to conduct acts as referred to in Article 4, unless agreed otherwise.</p>	<p>제7조</p> <p>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보유자는 제6조를 위반하지 않고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여전히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4조에 언급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p>
<p>Article 8</p> <p>(1) A licensing agreement shall be recorded at the Directorate General with the payment of fee as regulated in this Law.</p> <p>(2) A licensing agreement that is not recorded at the Directorate General shall not have any legal consequences on any third party.</p> <p>(3) The licensing agreemen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nnounced in the Official Gazette of Trade Secret.</p>	<p>제8조</p> <p>(1) 라이선스 계약은 본 법률에 규정된 수수료 지급과 함께 사무총장에 기록되어야 한다.</p> <p>(2) 사무총장에 기록되지 않은 라이선스 계약은 제3자에게 법률 효과를 미치지 아니한다.</p> <p>(3) 제1항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은 영업비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p>
<p>Article 9</p> <p>(1) A licensing agreement shall not contain any provisions that may directly or indirectly damage the Indonesian economy or any provisions that can create an unfair competition as regulated in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p> <p>(2) The Directorate General shall refuse any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censing agreement that contains the provision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p> <p>(3) Provisions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 of licensing agreement shall be further regulated by Presidential Decree.</p>	<p>제9조</p> <p>(1) 라이선스 계약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현행 법률 및 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p> <p>(2) 사무총장은 제1항의 규정을 포함하는 라이선스 계약의 기록에 대한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p> <p>(3) 라이선스 계약의 요건 및 절차는 추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CHAPTER V FEES	제5장 수수료
<p>Article 10</p> <p>(1) A fee, the amount of which shall be stipulated by Government Regulation, shall be paid for a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the transfer of Right to Trade Secret and a request for the recording of a licensing agreement.</p> <p>(2) Provisions regarding the requirements, time frame and procedure of payment of fe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regulated by Presidential Decree.</p> <p>(3) The Directorate General with the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Finance may manage by itself all fe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paragraph (2) based on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p>	<p>제10조</p> <p>(1) 수수료는 정부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의 이전에 대한 기록과 라이선스 계약의 기록의 요청에 대해 지급한다.</p> <p>(2)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요건, 기간, 절차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재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무총장은 현행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든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p>
CHAPTER VI SETTLEMENT OF DISPUTE	제6장 분쟁 해결
<p>Article 11</p> <p>(1) The Right Holder to Trade Secret or the licensee may bring a lawsuit against any person who deliberately and without rights commits acts as referred to in Article 4, in the form of:</p> <p>a. claim for damages; and</p> <p>b. the ceasing of all acts as referred to in Article 4.</p> <p>(2) The lawsui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p>	<p>제11조</p> <p>(1)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 소유자 또는 실시권자(licensee)는 고의적으로 권한이 없이 제4조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a. 손해배상청구; 그리고</p> <p>b. 제4조에 규정된 모든 행위의 중지</p> <p>(2) 제1조에 따른 소송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p>

인도네시아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2000년 법률 제30호)	번역
filed at the district court.	
<p>Article 12 In addition to the settlement of dispute as referred to in Article 11, the relevant parties may settle their dispute through an arbitrary or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p>	<p>제12조 제11조에 따른 분쟁 해결 외에도 당사자는 임시 또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p>
CHAPTER VII INFRINGEMENT ON TRADE SECRET	제7장 영업비밀의 침해
<p>Article 13 An infringement on Trade Secret takes place when a person deliberately discloses the Trade Secret or breaks the agreement, or the obligation, either written or not, to maint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relevant Trade Secret.</p>	<p>제13조 영업비밀의 침해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공개하거나 영업비밀의 기밀 유지에 관한 계약이나 서면 또는 그 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p>
<p>Article 14 A person shall be deemed to have committed an infringement on a Trade Secret of another party if he obtains or possesses the Trade Secret in a manner that is contrary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p>	<p>제14조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반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Article 15 The action as referred to Article 13 shall not be deemed an infringement on a Trade Secret if: a. the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or the use of the Trade Secret is based on the interest for the security and defense, health, or safety of the public; b. the reverse engineering of a product that is produced from the use of the Trade Secret of another person is solely conducted for the interest of making further development of relevant products.</p>	<p>제15조 제13조의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영업비밀의 공개 또는 사용이 공공의 보안과 국방,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이익에 기반한 경우 b.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역설계(reverse engineering)가 관련 제품의 추가 개발을 위한 이익만을 위해 수행되는 경우</p>
CHAPTER VIII INVESTIGATION	제8장 조사
<p>Article 16 (1) In addition to investigating officers at the State Poli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ivil Servants Investigators within the department of which the scope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nclud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all be granted special authority as investigators as referred to in Law no.8 of 1981 on Criminal Proceedings,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f criminal offences in the field of Trade Secret. (2) The Civil Servant Investigator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uthorized to: a. conduct examination on the truth of reports or information relating to criminal offences in the field of Trade Secret; b. conduct examination on any party suspected of committing criminal offences in the field of Trade Secret; c. collect information and evidence from any party in connection with incidents of criminal offences in the field of Trade Secret; d. conduct examination of books, records and other documents relating to criminal offences in the field of Trade Secret; e. inspect locations on which evidence, books, records, and other documents might be found; f. confiscate materials and goods resulting from</p>	<p>제16조 (1)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청 수사관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직무 및 책임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수사관은 1981년 제8호 형사소송절차법에 따라 영업비밀 분야의 형사범죄 수사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 권한을 부여받는다. (2) 제1항의 공무원 수사관은 다음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a. 영업비밀 분야의 형사범죄 관련 보고서 또는 정보의 진실성에 관한 조사 b. 영업비밀 분야의 형사범죄 혐의자에 대한 조사 c. 영업비밀 분야의 형사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정보 및 증거 수집 d. 영업비밀 분야의 형사범죄 관련 장부, 기록, 기타 서류에 대한 조사 e. 증거, 장부, 기록, 기타 서류가 발견될만한 장소에 대한 조사 f. 영업비밀 분야의 형사범죄 관련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침해 제</p>

인도네시아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2000년 법률 제30호)	번역
<p>infringements which can be used as evidence in the criminal trials in the field of Trade Secret;</p> <p>g. request expert assistance in the scope of carrying out the duties of investigation of criminal offences in the field of Trade Secret;</p> <p>(3) The Civil Servant Investigator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form the investigating officers at the State Poli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bout the initiating and the result of an investigation.</p> <p>(4) After completing an investigation, the Civil Servant Investigator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forward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to the Public Prosecutor through the investigating officers at the State Poli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view of the provision of Article 107 of Law no. 8 of 1981 on Criminal Proceedings.</p>	<p>품 및 재료의 압수</p> <p>g. 영업비밀 분야의 형사범죄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의 전문가 지원 요청</p> <p>(3) 제1항의 공무원 조사관은 조사 착수 및 결과에 대해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청 수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4) 조사가 종료된 후 제1항의 공무원 조사관은 1981년 제8호 형사소송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청 수사관을 통해 검찰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CHAPTER IX CRIMINAL PROVISIONS	제9장 형사처벌
<p>Article 17</p> <p>(1) Any person who deliberately and without rights uses the Trade Secret of another party, or conducts any acts as referred to in Article 13 or Article 14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of at most 2 (two) years and/or a fine of at most Rp300,000,000.00 (three hundred million rupiahs).</p> <p>(2) The criminal actio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constitute offense that warrants complaint.</p>	<p>제17조</p> <p>(1) 고의적으로 권리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3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2) 제1항의 범죄행위는 고소가 필요한 범죄에 해당한다.</p>
CHAPTER X OTHER PROVISIONS	제10장 기타 조항
<p>Article 18</p> <p>Upon a request from the parties either in criminal cases or in civil cases, a judge may order that the hearing be conducted in private.</p>	<p>제18조</p> <p>형사사건 또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재판관은 심리를 비공개로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10 장

일본

법령요약

● 일본 상표법(1959. 4. 13. 제정, 2019. 5. 17. 개정공포, 2020. 10. 1. 시행)

법률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목적, 정의 등
제2장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출원	(제3조~제13조의2) 상표등록의 요건, 단체상표, 선출원, 출원의 변경, 출원공개 등
제3장 심사	(제14조~제17조의2) 심사관에 의한 심사, 거절결정, 거절이유 통지, 상표등록결정 등
제4장 상표권	(제18조~제43조) 상표권, 상표권의 효력, 이전, 전용/통상 사용권, 권리침해, 등록료 등
제4장의2 등록이의신청	(제43조의2~제43조의15) 등록이의신청, 결정 등
제5장 심판	(제44조~제56조의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상표등록무효심판 등
제6장 재심 및 소송	(제57조~제63조) 재심의 청구, 효력의 제한 등
제7장 방호표장	(제64조~제68조) 방호표장의 등록요건, 권리존속기간, 침해로 보는 행위 등
제7장의2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다른 특례	(제68조의2~제68조의39) 국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제8장 보칙	(제68조의40~제77조의2) 상표등록증, 상표등록표시, 허위표시의 금지, 경과조치 등
제9장 벌칙	(제78조~제85조) 침해죄, 사기행위죄, 허위표시죄, 과태료 등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 (제정) 1993. 5. 19. 1993년 법률 제47호
- (시행) 2019. 7. 1. 2018년 법률 제33호

법률	내용
제1장 총칙 (總則)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제2장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差止請求, 損害賠償等)	금지청구권(제3조), 손해배상(제4조), 손해액의 추정 등(제5조), 기술상의 비밀을 취득한 자의 해당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의 추정(제5조의2), 구체적 양태의 명시 의무(제6조), 서류의 제출 등(제7조),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제8조),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제9조), 비밀유지명령(제10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11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의 통지 등(제12조), 당사자 신문 등의 공개정지(제13조), 신용회복의 조치(제14조), 소멸시효(제15조)
제3장 국제약속에 근거한 금지행위 (國際約束に基づく禁止行為)	외국 국기 등의 상업상 사용 금지(제16조), 국제기구표장의 상업적 사용금지(제17조),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이익의 공여 등 금지(제18조)
제4장 보칙 (雜則)	적용제외 등(제19조), 정령등예의 위임(제19조의2), 경과조치(제20조)
제5장 벌칙 (罰則)	벌칙(제21조~제22조)
제6장 형사소송절차의 특례 (刑事訴訟手続の特例)	영업비밀의 은닉결정 등(제23조), 기소장의 낭독방법의 특례(제24조), 심문 등의 제한(제25조),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 등(제26조), 심문 등에 관한 사항의 요청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명령(제27조), 증거서류의 낭독방법의 특례(제28조), 공판 전 정리

법률	내용
	절차 등에 있어서의 결정(제29조), 증거개시 시의 영업비밀의 은닉요청(제30조), 대법원 규칙에의 위임(제31조)
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沒收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	제3자의 재산 몰수절차 등(제32조), 몰수된 채권 등의 처분 등(제33조), 형사보상의 특례(제34조)
제8장 보전절차 (保全手続)	몰수보전명령(제35조), 추징보전명령(제36조)
제9장 몰수 및 추징 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공조절차 등 (沒收及び追徴の裁判の執行及び保全についての国際共助手続等)	공조의 실시(제37조), 추징으로 보는 몰수(제38조), 요청국에의 공조실시에 관한 재산 등의 양여(제39조), 조직적범죄처벌법에 의한 공조 등의 예(제40조)

주요내용

● 상표법

- 우리나라 상표법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국장 등의 등록금지 및 악의적 상표등록을 금지하는 조항을 보유
-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여 일반적인 행정조치(금지청구, 신용회복, 자료제출명령, 비밀유지명령) 등의 조항을 보유

● 영업비밀 관련 사항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민사적 구제조치(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의 형사처벌을 규정
- 국외 부정사용 목적의 양도에 대한 가중처벌(제21조제3항), 미수 처벌(제21조제4항), 국외범 처벌대상 확대(제21조제6항), 몰수·추징(제21조제10항~제12항) 등 강력한 형사적 제재조치 도입

● 데이터 보호 관련 사항

- ‘한정제공데이터’ 개념을 도입,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한정제공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등의 행위 신설(제2조제1항제11호~제16호), 한정제공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공개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 민사적 구제조치 규정(제19조제1항제8호)
-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해당 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조치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대상에 데이터(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를 추가하는 등 데이터 보호 규정 도입(제2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제2조제1항, 제19조제1항제9호)

법령비교표

● 일본 상표법(商標法)

일본 상표법(2019. 5. 17. 개정, 2020. 10. 1 시행)	번역
<p>第四条 (商標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商標) 二 パリ条約(千九百年十二月十四日にブラッセルで、千九百一十年六月二日にワシントンで、千九百二十五年十一月六日にヘーグで、千九百三十四年六月二日にロンドンで、千九百五十八年十月三十一日にリスボンで及び千九百六十七年七月十四日にストックホルムで改正された工業所有権の保護に関する千八百八十三年三月二十日のパリ条約をいう。以下同じ。)の同盟国、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又は商標法条約の締約国の国の紋章その他の記章(パリ条約の同盟国、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又は商標法条約の締約国の国旗を除く。)であつて、経済産業大臣が指定するものと同一又は類似の商標</p>	<p>제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2. 파리조약(1990년 12월 14일 브뤼셀, 1911년 6월 2일 워싱턴, 1925년 11월 6일 헤이그, 1934년 6월 2일 런던, 1958년 10월 31일 리스본 및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1883년 3월 20일 파리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이나 상표법조약 체결국의 국가 문장 기타 기장(파리조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가맹국이나 상표법조약 체결국의 국기를 제외한다)으로 경제산업장관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p>
<p>第三十六条 (差止請求権) 1.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は、自己の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を侵害する者又は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者に対し、そ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商標権者又は専用使用権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に際し、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の廃棄、侵害の行為に供した設備の除却その他の侵害の予防に必要な行為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36조 (금지청구권)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신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p>
<p>第三十九条 (特許法の準用) 特許法第三百条(過失の推定)、第四百条の二(具体的態様の明示義務)、第四百条の三第一項及び第二項(特許権者等の権利行使の制限)、第五百条(書類の提出等)、第五百条の二の十一から第五百条の六まで(損害計算のための鑑定、相当な損害額の認定、秘密保持命令、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及び訴訟記録の閲覧等の請求の通知等)並びに第六十条(信用回復の措置)の規定は、商標権又は専用使用権の侵害に準用する。</p>	<p>제39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03조(과실의 추정), 제104조의 2(구체적 태양의 명시 의무), 제104조의 3 제1항 및 제2항(특허권자 등의 권리 행사의 제한), 제105조(서류의 제출 등), 제10조의 212에서 제105조의 6까지(손해산정을 위한 감정,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비밀유지명령,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및 소송기록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및 제106조(신용회복조치)의 규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준용한다.</p>

●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第一章 総則</p>	<p>제1장 총칙</p>
<p>第一条 (目的) この法律は、事業者間の公正な競争及びこれに関する国際約束の的確な実施を確保するため、不正競争の防止及び不正競争に係る損害賠償に関する措置等を講じ、もって国民経済の健全な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p>	<p>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및 이에 관한 국제약속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경쟁의 방지 및 부정경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二条 (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不正競争」とは、次に掲げるものをいう。 一 他人の商品等表示(人の業務に係る氏名、商号、商標、標章、商品の容器若しくは包装その他の商品又は営業を表示す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として需要者の間に広く認識されているもの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p>	<p>제2조 (정의) ① 이 법률에서 '부정경쟁'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의 상품 등 표시(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성명, 상호, 상표, 포장, 상품의 용기 혹은 포장 기타 상품 또는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て、他人の商品又は営業と混同を生じさせる行為</p> <p>二 自己の商品等表示として他人の著名な商品等表示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のを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p> <p>三 他人の商品の形態（当該商品の機能を確保するために不可欠な形態を除く。）を模倣した商品を譲渡し、貸し渡し、譲渡若しくは貸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又は輸入する行為</p> <p>四 窃取、詐欺、強迫その他の不正の手段により営業秘密を取得する行為（以下「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という。）又は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により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秘密を保持しつつ特定の者に示すことを含む。次号から第九号まで、第十九条第一項第六号、第二十一条及び附則第四条第一号において同じ。）</p> <p>五 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営業秘密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p> <p>六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p> <p>七 営業秘密を保有する事業者（以下「営業秘密保有者」という。）からその営業秘密を示された場合におい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p> <p>八 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号に規定す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を開示する行為又は秘密を守る法律上の義務に違反してその営業秘密を開示する行為をいう。以下同じ。）であること若しくは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若しく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営業秘密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p> <p>九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あったこと若しくは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又は重大な過失により知らないでその取得した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p> <p>十 第四号から前号までに掲げる行為（技術上の秘密（営業秘密のうち、技術上の情報であ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不正使用行為」という。）により生じた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当該物を譲り受けた者（その譲り受けた時に当該物が不正使用行為により生じた物であることを知らず、かつ、知らないことにつき重大な過失がない者に限る。）が当該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を除く。）</p> <p>十一 窃取、詐欺、強迫その他の不正の手段により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する行為（以下「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という。）又は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により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p> <p>十二 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p> <p>十三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p>	<p>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p> <p>2.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서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와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p> <p>3. 타인의 상품의 형태(해당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형태를 제외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양도 또는 대어를 위하여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p> <p>4. 절취, 사기, 강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부정취득행위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한 자에게 나타내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5.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취득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p> <p>6. 그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취득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p> <p>7.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사업자(이하 '보유자'라 한다)로부터 그 영업비밀을 제시받은 경우에 부정한 경업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p> <p>8.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개시행위(전 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동 호에 규정하는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개시하는 행위 또는 비밀을 준수할 법률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그 영업비밀을 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것 혹은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개시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p> <p>9. 그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개시행위가 있었던 것 혹은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개시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p> <p>10. 제4호부터 전 호까지에서 제시하는 행위(기술상의 비밀(영업비밀 중, 기술상의 정보로 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한다. 이하 동 호에서 '부정사용행위'라고 한다)에 의해 발생한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해당 물건을 양도한 자(그 양도시에 해당 물건이 부정사용행위에 의해 발생한 물건임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에 한한다)가 해당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한 전시,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p> <p>11. 절취, 사기, 강박 기타의 부정한 수단으로 의하여 한정제공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이하 '한정제공 데이터 부정취득행위'라고 한다.) 또는 한정제공 데이터 부정취득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한정제공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혹은 개시하는 행위</p> <p>12. 그 한정제공 데이터에 대해서 한정제공 데이터 부정취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서 한정제공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취득한 한정제공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혹은 개시하는 행위</p> <p>13. 그 취득한 후에 그 한정제공 데이터에 대해서 한정제공 데이터 부정취득행위가 있었던 된 점을 알고서 그 취득한 한정제공 데이터</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データを開示する行為</p> <p>十四 限定提供データを保有する事業者（以下「限定提供データ保有者」という。）からその限定提供データを示された場合におい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する行為（その限定提供データの管理に係る任務に違反して行うものに限る。）又は開示する行為</p> <p>十五 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前号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同号に規定する目的でその限定提供データを開示する行為をいう。以下同じ。）であること若しく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p> <p>十六 その取得した後に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あったこと又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開示する行為</p> <p>十七 営業上用いられている技術的制限手段（他人が特定の者以外の者に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っ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に記録されたものに限る。以下この号、次号及び第八項において同じ。）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をさせないために用いているものを除く。）により制限されている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以下この号において「影像の視聴等」という。）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機能を有する装置（当該装置を組み込んだ機器及び当該装置の部品一式であって容易に組み立て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含む。）、当該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当該プログラムが他のプログラムと組み合わせられたものを含む。）若しくは指令符号（電子計算機に対する指令であって、当該指令のみによって一の結果を得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を記録した記録媒体若しくは記憶した機器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若しくは輸入し、若しくは当該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若しくは指令符号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当該装置又は当該プログラムが当該機能以外の機能を併せて有する場合にあっては、影像の視聴等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用途に供するために行うものに限る。）又は影像の視聴等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役務を提供する行為</p> <p>十八 他人が特定の者以外の者に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をさせないために営業上用いている技術的制限手段により制限されている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以下この号において「影像の視聴等」という。）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より可能とする機能を有する装置（当該装置を組み込んだ機器及び当該装置の部品一式であって容易に組み立て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含む。）、当該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当該プログラムが他のプログラムと組み合わせられたものを含む。）若しくは指令符号を記録した記録媒体若しくは記憶した機器を当該特定の者以外の者に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若しくは輸入し、若しくは当該機能を有するプログラム若しくは指令符号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当該装置又は当該プログラム</p>	<p>를 공개하는 행위</p> <p>14. 한정제공 데이터를 보유하는 사업자(이하 '한정제공 데이터 보유자'라고 한다.)로부터 그 한정제공 데이터를 제시받은 경우에,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한정제공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한정제공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그 한정제공 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위반하여 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공개하는 행위</p> <p>15. 그 한정제공 데이터에 대해서 한정제공 데이터 부정개시행위(전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동호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그 한정제공 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인 점 혹은 그 한정제공 데이터에 대해서 한정제공 데이터 부정개시행위가 개재된 점을 알고서 한정제공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취득한 한정제공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혹은 공개하는 행위</p> <p>16. 그 취득한 후에 그 한정제공 데이터에 대해서 한정제공 데이터 부정공개행위가 있었던 점 또는 그 한정제공 데이터에 대해서 한정제공 데이터 부정공개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서 그 취득한 한정제공 데이터를 공개하는 행위</p> <p>17. 영업상 이용되고 있는 기술적 제한 수단[타인이 특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영상 또는 소리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정보(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것에 한한다. 이하 동호, 다음 호 및 제8항에서 동일하다.)의 처리 또는 영상, 소리, 프로그램 그 외의 정보의 기록을 시키지 않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한한다]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영상 혹은 소리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 혹은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소리, 프로그램 그 외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에 의한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해당 장치를 조합한 기기를 포함한다), 해당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명령부호(전자 계산기에 대한 명령으로, 해당 명령에 따라서만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동일하다.)를 기록한 기록매체 혹은 기억한 기기를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혹은 수입하거나 또는 해당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 또는 명령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해당 프로그램이 해당 기능 이외의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 시청 등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에 제공하기로 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영상의 시청 등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것에 의하여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18. 타인이 특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영상이나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소리, 프로그램 그 외의 정보의 기록을 시키지 않기 위하여 영업상 이용하고 있는 기술적 제한 수단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영상 또는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정보의 처리 또는 영상, 소리, 프로그램 그 외의 정보의 기록(이하 이 호에서의 '영상의 시청 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해당 장치를 조합한 기기 및 해당 장치의 부품의 일부이며 쉽게 조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이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또는 해당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해당 장치 또는 해당 프로그램이 해당 기능 이외의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영상의 시청 등을 해당 기술</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が当該機能以外の機能を併せて有する場合にあっては、影像の視聴等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により可能とする用途に供するために行うものに限る。)又は影像の視聴等を当該技術的制限手段の効果を妨げることににより可能とする役務を提供する行為</p> <p>十九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他人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他人の特定商品等表示(人の業務に係る氏名、商号、商標、標章その他の商品又は役務を表示するものをいう。)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ドメイン名を使用する権利を取得し、若しくは保有し、又はそのドメイン名を使用する行為</p> <p>二十 商品若しくは役務若しくはその広告若しくは取引に用いる書類若しくは通信にその商品の原産地、品質、内容、製造方法、用途若しくは数量若しくはその役務の質、内容、用途若しくは数量について誤認させようとする表示をし、又はその表示を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その表示をして役務を提供する行為</p> <p>二十一 競争関係にある他人の営業上の信用を害する虚偽の事実を告知し、又は流布する行為</p> <p>二十二 パリ条約(商標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二百二十七号)第四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パリ条約をいう。)の同盟国、世界貿易機関の加盟国又は商標法条約の締約国において商標に関する権利(商標権に相当する権利に限る。以下この号において単に「権利」という。)を有する者の代理人若しくは代表者又はその行為の日前一年以内に代理人若しくは代表者であった者が、正当な理由がないのに、その権利を有する者の承諾を得ないでその権利に係る商標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標をその権利に係る商品若しくは役務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役務に使用し、又は当該商標を使用したその権利に係る商品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当該商標を使用してその権利に係る役務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役務を提供する行為</p> <p>2 この法律において「商標」とは、商標法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商標をいう。</p> <p>3 この法律において「標章」とは、商標法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標章をいう。</p> <p>4 この法律において「商品の形態」とは、需要者が通常の用法に従った使用に際して知覚によっ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る商品の外部及び内部の形状並びにその形状に結合した模様、色彩、光沢及び質感をいう。</p> <p>5 この法律において「模倣する」とは、他人の商品の形態に依拠して、これと実質的に同一の形態の商品を作り出すことをいう。</p> <p>6 この法律において「営業秘密」とは、秘密として管理されている生産方法、販売方法その他の事業活動に有用な技術上又は営業上の情報であって、公然と知られていないものをいう。</p> <p>7 この法律において「限定提供データ」とは、業として特定の者に提供する情報として電磁的方法(電子的方法、磁気的方法その他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法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じ。)により相当量蓄積され、及び管理されている技術上又は営業上の情報(秘密として管理されているものを除く。)をいう。</p> <p>8 この法律において「技術的制限手段」とは、電磁的方法により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を制限する手段であって、視聴等機器(影像若しくは音の視聴、プログラムの実行若しくは情報の処理又は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の記録のために用いられる機器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特定の反応をする信号を記録媒体に記録し、若しくは送信する方式又は視聴等機器が特定の変</p>	<p>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용도에 제공하기로 하는 것에 한한다.)</p> <p>19.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 상품 등 표시(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성명, 상호, 상표, 표장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와 동일 혹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 혹은 보유하거나 또는 그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p> <p>20.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 광고나 거래에 이용하는 서류 혹은 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나 수량 혹은 그 서비스의 질, 내용, 용도 혹은 수량에 대해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그 표시를 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그 표시를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21. 경쟁 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유폐하는 행위</p> <p>22. 파리조약(상표법(1959년 법률 제127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파리 조약을 말한다)의 동맹국,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 또는 상표법 조약의 체결국에 대해 상표에 관한 권리(상표권에 상당할 권리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단순히 '권리'라고 한다)를 가지는 자의 대리인 혹은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 혹은 대표자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와 관련된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그 권리와 관련된 상품 혹은 서비스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한 그 권리와 관련된 상품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그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와 동일 혹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② 이 법률에서 '상표'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를 말한다.</p> <p>③ 이 법률에서 '표장'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하는 표정을 말한다.</p> <p>④ 이 법률에서 '상품의 형태'라 함은 수요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른 사용 시에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상품의 외부·내부의 형상 및 그 형상과 결합한 모양, 색채, 광택 및 질감을 말한다.</p> <p>⑤ 이 법률에서 '모방한다'라 함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p> <p>⑥ 이 법률에서 '영업비밀'이라 함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p> <p>⑦ 이 법률에서 '한정제공 데이터'라 함은 업으로서 특정한 자에게 제공한 정보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상당량이 축적, 관리 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제외)를 말한다.</p> <p>⑧ 이 법률에서 '기술적 제한 수단'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기타 인간의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해 영상이나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의 기록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시청 등 기기(영상이나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의 기록을 위하여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특정한 반응을 하는 신호를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과 함께</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換を必要とするよう影像、音、プログラムその他の情報を変換して記録媒体に記録し、若しくは送信する方式によるものをいう。</p> <p>9 この法律において「プログラム」とは、電子計算機に対する指令であって、一の結果を得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組み合わされたものをいう。</p> <p>10 この法律において「ドメイン名」とは、インターネットにおいて、個々の電子計算機を識別するために割り当てられる番号、記号又は文字の組合せに対応する文字、番号、記号その他の符号又はこれらの結合をいう。</p> <p>11 この法律にいう「物」には、プログラムを含むものとする。</p>	<p>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 또는 시청 등 기기가 특정한 변환을 필요로 하도록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을 변환시켜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p> <p>⑨ 이 법률에서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을 말한다.</p> <p>⑩ 이 법률에서 '도메인 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에서 개개의 전자계산기를 식별하기 위하여 할당되는 번호, 기호 또는 문자의 조합에 대응하는 문자,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또는 이러한 결합을 말한다.</p> <p>⑪ 이 법률에서 말하는 '물건'에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p>
第二章 差止請求、損害賠償等	제2장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p>第三条 (差止請求權)</p> <p>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者は、そ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する者又は侵害するおそれがある者に対し、そ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p> <p>2 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者は、前項の規定による請求をするに際し、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侵害の行為により生じた物を含む。第五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廃棄、侵害の行為に供した設備の除却その他の侵害の停止又は予防に必要な行為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3조 (금지청구권)</p> <p>① 부정경쟁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방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부정경쟁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함에 있어서 침해 행위를 조정한 것(침해 행위에 의해 생긴 것을 포함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같다)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방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p>
<p>第四条 (損害賠償)</p> <p>故意又は過失により不正競争を行って他人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めに任ずる。ただし、第十五条の規定により同条に規定する権利が消滅した後にその営業秘密又は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する行為によって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p>	<p>제4조 (손해배상)</p> <p>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하여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동 조에 규정하는 권리가 소멸한 후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五条 (損害額の推定等)</p> <p>第二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又は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同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ものにあつては、技術上の秘密に関するものに限る。)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被侵害者」という。)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物を譲渡したときは、その譲渡した物の数量(以下この項において「譲渡数量」という。)に、被侵害者がその侵害の行為がなければ販売することができた物の単位数量当たりの利益の額を乗じて得た額を、被侵害者の当該物に係る販売その他の行為を行う能力に応じた額を超えない限度において、被侵害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譲渡数量の全部又は一部に相当する数量を被侵害者が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する事情があるときは、当該事情に相当する数量に応じた額を控除するものとする。</p> <p>2 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が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に対しその侵害により自己が受け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その侵害の行為により利益を受けているときは、その利益の額は、そ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が受けた損害の額と推定する。</p> <p>3 第二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九号まで、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第十九号又は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た者は、故意又は過失により自己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に対し、次の各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区分に応じて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に対し受けるべき金銭の額に相当する額の金銭を、自</p>	<p>제5조 (손해액의 추정 등)</p> <p>①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6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동 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열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술상의 비밀(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로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이하 이 항에서 '피침해자'라고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자기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자가 그 침해 행위를 조정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한 물건의 수량(이하 이 항에서 '양도 수량'이라 한다)에 피침해자가 그 침해 행위가 없으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얻은 액을, 피침해자의 해당 물건과 관련된 판매 기타 행위를 하는 능력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피침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양도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피침해자가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p> <p>② 부정경쟁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자기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로 인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해 이익을 얻고 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은 그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받은 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p> <p>③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또는 제16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자기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행위에 대해 받아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금전을, 자기가 받은 손해액으로</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己が受けた損害の額としてその賠償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p> <p>一 第二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当該侵害に係る商品等表示の使用</p> <p>二 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不正競争・当該侵害に係る商品の形態の使用</p> <p>三 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当該侵害に係る営業秘密の使用</p> <p>四 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当該侵害に係る限定提供データの使用</p> <p>五 第二条第一項第十九号に掲げる不正競争・当該侵害に係るドメイン名の使用</p> <p>六 第二条第一項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当該侵害に係る商標の使用</p> <p>4 前項の規定は、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超える損害の賠償の請求を妨げ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営業上の利益を侵害した者に故意又は重大な過失がなかったときは、裁判所は、損害の賠償の額を定めるについて、これを参酌することができる。</p>	<p>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1.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 :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품 등 표시의 사용</p> <p>2. 제2조 제1항 제3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 :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품 형태의 사용</p> <p>3. 제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열거하는 부정경쟁 : 해당 침해와 관련된 영업비밀의 사용</p> <p>4. 제2조 제1항 제13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 : 해당 침해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의 사용</p> <p>5. 제2조 제1항 제16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 :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표의 사용</p> <p>6. 제2조 제1항 제22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 : 해당 침해와 관련된 상표의 사용</p> <p>④ 전 항의 규정은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정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p>
<p>第五条の二 (技術上の秘密を取得した者の当該技術上の秘密を使用する行為等の推定)</p> <p>技術上の秘密 (生産方法その他政令で定める情報に係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について第二条第一項第四号、第五号又は第八号に規定する行為 (営業秘密を取得する行為に限る。) 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その行為をした者が当該技術上の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より生ずる物の生産その他技術上の秘密を使用したことが明らかな行為として政令で定める行為 (以下この条において「生産等」という。) をしたときは、その者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規定する行為 (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 として生産等をしたものと推定する。</p>	<p>제5조의2 (기술상의 비밀을 취득한 자의 해당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의 추정)</p> <p>기술상의 비밀(생산방법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정보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동 조에서는 같다)에 대해 제2조 제1항 제4호, 제5호 또는 제8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한한다)가 있었던 경우에, 그 행위를 한 자가 해당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물건의 생산 기타 기술상의 비밀을 사용한 것이 명확한 행위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이하 동 조에서 '생산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자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한한다)로서 생산 등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p>
<p>第六条 (具体的態様の明示義務)</p> <p>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不正競争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主張する者が侵害の行為を組成したもとして主張する物又は方法の具体的態様を否認するときは、相手方は、自己の行為の具体的態様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相手方において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p>	<p>제6조 (구체적 양태의 명시 의무)</p> <p>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부정경쟁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침해 행위를 조성한 것으로서 주장하는 물건 또는 방법의 구체적 양태를 부인할 때에는, 상대방은 자기의 행위의 구체적 양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七条 (書類の提出等)</p> <p>裁判所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当事者に対し、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は立証するため、又は当該侵害の行為による損害の計算をするため必要な書類の提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書類の所持者においてその提出を拒むことについて正当な理由が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p> <p>2 裁判所は、前項本文の申立てに係る書類が同項本文の書類に該当するかどうか又は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の判断を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書類の所持者にその提示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何人も、その提示された書類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p> <p>3 裁判所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第一項本文の申立てに係る書類が同項本文の書類に該当するかどうか又は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前項後段の書類を開示してその意見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 (当事者 (法人であ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代表者) 又は当事者の代理人 (訴訟代理人及び補佐人を除く。)、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をいう。以下同じ。)、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書類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7조 (서류의 제출 등)</p> <p>① 법원은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제기에 의해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 또는 해당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절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원은 전 항 본문의 신청과 관련된 서류가 같은 항 본문의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류의 소지자에게 그 제시를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어느 누구라도 그 제시된 서류의 개시를 요구할 수 없다.</p> <p>③ 법원은 전 항의 경우에 전 항 본문의 신청과 관련된 서류가 같은 항 본문의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같은 항 단서에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의 여부에 대하여 전 항 후단의 서류를 개시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등(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소송대리인 및 보좌인을 제외한다), 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해당 서류를 개시할 수 있다.</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4 裁判所は、第二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後段の書類を開示して専門的な知見に基づく説明を聴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の同意を得て、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九号)第一編第五章第二節第一款に規定する専門委員に対し、当該書類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p> <p>5 前各項の規定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ける当該侵害行為について立証するため必要な検証の目的の提示について準用する。</p>	<p>④ 재판소는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후단의 서류를 개시하여 전문적인 식견에 기초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호) 제1편 제5장 제2절 제1관에서 규정하는 전문위원에 대하여 당해 서류를 개시할 수 있다.</p> <p>⑤ 전 각 항의 규정은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의 해당 침해 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검증 목적의 제시에 대하여 준용한다.</p>
<p>第八条 (損害計算のための鑑定)</p> <p>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裁判所が当該侵害の行為による損害の計算をするため必要な事項について鑑定を命じたときは、当事者は、鑑定人に対し、当該鑑定をするため必要な事項について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8조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p> <p>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해당 침해 행위에 의한 손해계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는 감정인에 대해 해당 감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p>
<p>第九条 (相当な損害額の認定)</p> <p>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損害が生じたことが認められる場合において、損害額を立証するために必要な事実を立証することが当該事実の性質上極めて困難であるときは、裁判所は、口頭弁論の全趣旨及び証拠調べの結果に基づき、相当な損害額を認定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9조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p> <p>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액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구두 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p>第十条 (秘密保持命令)</p> <p>裁判所は、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いて、その当事者が保有する営業秘密について、次に掲げる事由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ことにつき疎明があった場合には、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決定で、当事者等、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営業秘密を当該訴訟の追行の目的以外の目的で使用し、又は当該営業秘密に係るこの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者以外の者に開示してはならない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申立ての時までに当事者等、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が第一号に規定する準備書面の閲読又は同号に規定する証拠の取調べ若しくは開示以外の方法により当該営業秘密を取得し、又は保有していた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p> <p>一 既に提出され若しくは提出されるべき準備書面に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が記載され、又は既に取り調べられ若しくは取り調べられるべき証拠(第七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開示された書類又は第十三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開示された書面を含む。)の内容に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が含まれること。</p> <p>二 前号の営業秘密が当該訴訟の追行の目的以外の目的で使用され、又は当該営業秘密が開示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当事者の事業活動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り、これを防止するため当該営業秘密の使用又は開示を制限する必要があること。</p> <p>2 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以下「秘密保持命令」という。)の申立て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で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一 秘密保持命令を受けるべき者</p> <p>二 秘密保持命令の対象となるべき営業秘密を特定するに足る事実</p> <p>三 前項各号に掲げる事由に該当する事実</p> <p>3 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場合には、その決定書を秘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4 秘密保持命令は、秘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に対する決定書の送達された時から、効力を生ずる。</p> <p>5 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を却下した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10조 (비밀유지명령)</p> <p>① 법원은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제기에 의해 결정으로,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동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제기 때까지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이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준비서면의 열람 또는 동 호에 규정하는 증거의 조사 혹은 개시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이미 제출되었거나 제출되어야 할 준비서면에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이미 조사했거나 조사해야 할 증거(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개시된 서류 또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개시된 서면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것</p> <p>2. 전 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해당 영업비밀이 개시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한 당사자의 사업 활동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개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p> <p>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제기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1. 비밀유지명령을 받아야 할 자</p> <p>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p> <p>3. 전 항 각 호에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p> <p>③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④ 비밀유지명령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이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⑤ 비밀유지명령의 제기를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p>
<p>第十一条 (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p>	<p>제11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をした者又は秘密保持命令を受けた者は、訴訟記録の存する裁判所（訴訟記録の存する裁判所がない場合にあつては、秘密保持命令を発した裁判所）に対し、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要件を欠くこと又はこれを欠くに至ったことを理由として、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2 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あつた場合には、その決定書をその申立てをした者及び相手方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3 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4 秘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は、確定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p> <p>5 裁判所は、秘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をした場合において、秘密保持命令の取消しの申立てをした者又は相手方以外に当該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訴訟において当該営業秘密に係る秘密保持命令を受けている者があつたときは、その者に対し、直ちに、秘密保持命令を取り消す裁判をし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① 비밀유지명령의 제기를 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소송기록이 없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대하여, 전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이 결여되었거나 결여된 것을 이유로 하여 비밀유지명령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비밀유지명령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③ 비밀유지명령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p> <p>⑤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비밀유지명령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이외에 해당 비밀유지명령이 내린 소송에서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된 비밀유지명령을 받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第十二条（訴訟記録の閲覧等の請求の通知等）</p> <p>秘密保持命令が発せられた訴訟（全ての秘密保持命令が取り消された訴訟を除く。）に係る訴訟記録につき、民事訴訟法第九十二条第一項の決定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事者から同項に規定する秘密記載部分の閲覧等の請求があり、かつ、その請求の手續を行った者が当該訴訟において秘密保持命令を受けていない者であるときは、裁判所書記官は、同項の申立てをした当事者（その請求をした者を除く。第三項において同じ。）に対し、その請求後直ちに、その請求があつた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2 前項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書記官は、同項の請求があつ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する日までの間（その請求の手續を行った者に対する秘密保持命令の申立てがその日までにされ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判が確定するまでの間）、その請求の手續を行った者に同項の秘密記載部分の閲覧等をさせてはならない。</p> <p>3 前二項の規定は、第一項の請求をした者に同項の秘密記載部分の閲覧等をさせることについて民事訴訟法第九十二条第一項の申立てをした当事者の全ての同意があつたときは、適用しない。</p>	<p>제12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의 통지 등)</p> <p>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소송 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호) 제92조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로부터 동 항에 규정하는 비밀기재부분 열람 등의 청구가 있고 또한 그 청구 절차를 한 자가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일 때에는, 법원 서기관은 동 항의 제기를 한 당사자(그 청구를 한 자를 제외한다. 제3항에서도 같다)에게 그 청구 후 즉시 그 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전 항의 경우에 법원 서기관은 동 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간(그 청구 절차를 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날까지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청구 절차를 한 자에게 동 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전 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를 한 자에게 동항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시키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의 모든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第十三条（当事者尋問等の公開停止）</p> <p>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に係る訴訟における当事者等が、その侵害の有無についての判断の基礎となる事項であつて当事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当事者本人若しくは法定代理人又は証人として尋問を受ける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は、裁判官の全員一致により、その当事者等が公開の法廷で当該事項について陳述をす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当事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ことから当該事項について十分な陳述をすることができず、かつ、当該陳述を欠くことにより他の証拠のみによっては当該事項を判断の基礎とすべき不正競争による営業上の利益の侵害の有無についての適正な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当該事項の尋問を公開しないで行うことができる。</p> <p>2 裁判所は、前項の決定をするに当たっては、あらかじめ、当事者等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p> <p>3 裁判所は、前項の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にその陳述すべき事項の要領を記載した書面の提示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何人も、その提示された書面の開示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い。</p> <p>4 裁判所は、前項後段の書面を開示してその意見を聴くことが必要</p>	<p>제13조 (당사자 신문 등의 공개정지)</p> <p>①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 당사자 등이 그 침해의 유무에 대해 판단의 기초로 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증인으로서 심문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판관 전원 일치에 의해 그 당사자 등이 공개 법정에서 해당사항에 대해 진술을 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한 당사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확하므로 해당사항에 대해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고 또한 해당 진술이 결여됨으로써 다른 증거에만 의해 해당사항을 판단의 기초로 해야 하는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의 유무에 대한 적절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전 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p> <p>③ 법원은 전 항의 경우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그 진술을 해야 할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그 제시된 서면의 개시를 청구할 수는 없다.</p> <p>④ 법원은 전 항 후단의 서면을 개시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事者等、訴訟代理人又は補佐人に対し、当該書面を開示することができる。</p> <p>5 裁判所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当該事項の尋問を公開しないで行うときは、公衆を退廷させる前に、その旨を理由とともに言い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当該事項の尋問が終了したときは、再び公衆を入廷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p>	<p>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등 소송대리인 또는 보좌인에 대해 해당 서면을 개시할 수 있다.</p> <p>⑤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사항의 심문을 공개하지 않고 실시한 때에는 공중을 퇴장시키기 전에 그 취지를 이유와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의 심문이 종료된 때에는 다시 공중을 입정시켜야 한다.</p>
<p>第十四条 (信用回復の措置)</p> <p>故意又は過失により不正競争を行って他人の営業上の信用を害した者に対しては、裁判所は、その営業上の信用を害された者の請求により、損害の賠償に代え、又は損害の賠償とともに、その者の営業上の信用を回復するのに必要な措置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p>	<p>제14조 (신용회복의 조치)</p> <p>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실시하여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해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영업상 신용을 손해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그 자의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第十五条 (消滅時効)</p> <p>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のうち、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対する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権利は、次に掲げる場合には、時効によって消滅する。</p> <p>一 その行為を行う者がその行為を継続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行為により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営業秘密保有者がその事実及びその行為を行う者を知った時から三年間行わないとき。</p> <p>二 その行為の開始の時から二十年を経過したとき。</p> <p>2 前項の規定は、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のうち、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する行為に対する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侵害の停止又は予防を請求する権利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前項第一号中「営業秘密保有者」とあるのは、「限定提供データ保有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p>	<p>제15조 (소멸시효)</p> <p>① 제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열거하는 부정경쟁 중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p> <p>1. 그 행위를 실시하는 자가 그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사실 및 그 행위를 실시하는 자를 안 때부터 3년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p> <p>2. 그 행위의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p> <p>② 전항의 규정은 제2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부정경쟁행위 중 한정제공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전항 제1호 중 '영업비밀보유자'는 '한정제공데이터 보유자'로 대체한다.</p>
<p>第三章 国際約束に基づく禁止行為</p>	<p>제3장 국제약속에 근거한 금지행위</p>
<p>第十六条 (外国の国旗等の営業上の使用禁止)</p> <p>何人も、外国の国旗若しくは国の紋章その他の記章であっ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以下「外国国旗等」という。)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の(以下「外国国旗等類似記章」という。)を商標として使用し、又は外国国旗等類似記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外国国旗等類似記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て役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その外国国旗等の使用の許可(許可に類する行政処分を含む。以下同じ。)を行う権限を有する外国の官庁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p> <p>2 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何人も、商品の原産地を誤認させるような方法で、同項の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外国の国の紋章(以下「外国紋章」という。)を使用し、又は外国紋章を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外国紋章を使用して役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その外国紋章の使用の許可を行う権限を有する外国の官庁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p> <p>3 何人も、外国の政府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の監督用若しくは証明用の印章若しくは記号であっ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以下「外国政府等記号」という。)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の(以下「外国政府等類似記号」という。)をその外国政府等記号が用いられている商品若しくは役務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役務の商標として使用し、又は外国政府等類似記号を当該商標として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外国政府等類似記号を当該商標として使用して役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p>	<p>제16조 (외국 국기 등의 상업상 사용 금지)</p> <p>① 누구든지 외국 국기 혹은 국가의 문장 기타 기장으로 경제산업성령에 정하는 것(이하 '외국 국기 등'이라 한다)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이하 '외국 국기 등 유사 기장'이라 한다)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외국 국기 등 유사 기장을 상표로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 국기 등 유사 기장을 상표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 국기 등의 사용 허가(허가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권한을 가지는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전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누구든지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동 항의 경제산업성령에 정하는 것(이하 '외국 문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또는 외국 문장을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 문장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 문장 사용의 허가 권한을 가지는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누구든지 외국의 정부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감독용 혹은 증명용의 인장 혹은 기호로 경제산업성령에 정하는 것(이하 '외국 정부 등 기호'라 한다)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이하 '외국 정부 등 유사 기호'라 한다)을 그 외국 정부 등 기호가 사용되어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의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외국 정부 등 유사 기호를 해당 상표로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외국 정부 등 유사 기호를 해당 상표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외국 정부 등 기</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し、その外国政府等記号の使用の許可を行う権限を有する外国の官庁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p>	<p>호의 사용의 허가 권한을 가지는 외국 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十七条 (国際機関の標章の商業上の使用禁止) 何人も、その国際機関 (政府間の国際機関及びこれに準ずるものとし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国際機関をい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 と関係があると誤認させるような方法で、国際機関を表示する標章であって経済産業省令で定めるもの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もの (以下「国際機関類似標章」という。) を商標として使用し、又は国際機関類似標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若しくは国際機関類似標章を商標として使用して役務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この国際機関の許可を受け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p>	<p>제17조 (국제기구표장의 상업적 사용금지) 누구든지 그 국제기관(정부 간 국제기관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이하 동 조에서 같다) 과 관계가 있다고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국제기관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하 '국제기관 유사표장'이라 한다)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또는 국제기관 유사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전시, 수출, 수입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또는 국제기관 유사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 된다. 다만, 그 국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十八条 (外国公務員等に対する不正の利益の供与等の禁止) 何人も、外国公務員等に対し、国際的な商取引に関して営業上の不正の利益を得るために、その外国公務員等に、その職務に関する行為をさせ若しくはさせないこと、又はその地位を利用して他の外国公務員等にその職務に関する行為をさせ若しくはさせないようにあつせんを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金銭その他の利益を供与し、又はその申込み若しくは約束をしてはならない。 一 前項において「外国公務員等」とは、次に掲げる者をいう。 一 外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団体の公務に従事する者 二 公共の利益に関する特定の事務を行うために外国の特別の法令により設立されたものの事務に従事する者 三 一又は二以上の外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団体により、発行済株式のうち議決権のある株式の総数若しくは出資の金額の総額の百分の五十を超える当該株式の数若しくは出資の金額を直接に所有され、又は役員(取締役、監査役、理事、監事及び清算人並びにこれら以外の者で事業の経営に従事しているものをいう。)の過半数を任命され若しくは指名されている事業者であつて、その事業の遂行に当たり、外国の政府又は地方公共団体から特に権益を付与されているものの事務に従事する者その他これに準ずる者として政令で定める者 四 国際機関 (政府又は政府間の国際機関によって構成される国際機関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 の公務に従事する者 五 外国の政府若しくは地方公共団体又は国際機関の権限に属する事務であつて、これらの機関から委任されたものに従事する者</p>	<p>제18조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이익의 공여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해 국제적인 상거래에 관한 영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외국 공무원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게 하지 않는 것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국 공무원 등에게 그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알선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금전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신청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 항에서 '외국 공무원 등'이란 다음에서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또는 지방공무원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특정 사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 특별법령에 의해 설립된 것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3.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외국 정부 또는 지방공무원단체에 의해 발행 주식 중 결의권이 있는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 금액의 총액의 백분의 오십을 넘는 해당 주식 수 또는 출자 금액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임원(중역, 감사역,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 및 이들 이외의 자로 사업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지명된 사업자이고, 그 사업 수행에 있어 외국 정부 또는 지방공무원단체로부터 특별히 권익을 받았지만 사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자 4. 국제기관(정부 또는 정부 간 국제기관에 의해 구성되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도 같다)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5. 외국 정부 또는 지방공무원단체 또는 국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이들 기관에서 위임받은 일에 종사하는 자</p>
<p>第四章 雑則</p>	<p>제4장 보칙</p>
<p>第十九条 (適用除外等) 第三条から第十五条まで、第二十一条 (第二項第七号に係る部分を除く。) 及び第二十二条の規定は、次の各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区分に応じて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一 第二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二十号及び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商品若しくは営業の普通名称 (ぶどうを原料又は材料とする物の原産地の名称であつて、普通名称となつたものを除く。) 若しくは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若しくは営業について慣用されている商品等表示 (以下「普通名称等」と総称する。) 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使用し、若しくは表示をし、又は普通名称等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使用し、若しくは表示を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 (同項第二十号及び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場合にあつては、普通名称等を普通に用いられる方法で表示をし、又は使用して役務を提供する行為を含む。)</p>	<p>제19조 (적용제외 등) ①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제2항 제7호에 관계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2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부정경쟁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0호 및 제22호에 속하는 부정경쟁 : 상품 또는 영업의 보통명칭(포도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는 물건의 원산지명칭으로 보통명칭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혹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영업에 대해 관용되고 있는 상품 등 표시(이하 '보통명칭 등'이라 총칭한다)를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표시를 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동 항 제20호 및 제22호에서 제시하는 부정경쟁의 경우는 보통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또는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二 第二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及び第二十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自己の氏名を不正の目的（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他人に損害を加える目的その他の不正の目的をいう。以下同じ。）でなく使用し、又は自己の氏名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同号に掲げる不正競争の場合にあっては、自己の氏名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て役務を提供する行為を含む。）</p> <p>三 第二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不正競争 他人の商品等表示が需要者の間に広く認識される前からその商品等表示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する者又はその商品等表示に係る業務を承継した者が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p> <p>四 第二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 他人の商品等表示が著名になる前からその商品等表示と同一若しく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する者又はその商品等表示に係る業務を承継した者が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又はその商品等表示を不正の目的でなく使用した商品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若しく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p> <p>五 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不正競争 次のいずれかに掲げる行為</p> <p>イ 日本国内において最初に販売された日から起算して三年を経過した商品について、その商品の形態を模倣した商品を譲渡し、貸し渡し、譲渡若しくは貸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又は輸入する行為</p> <p>ロ 他人の商品の形態を模倣した商品を譲り受けた者（その譲り受けた時にその商品が他人の商品の形態を模倣した商品であることを知らず、かつ、知らないことにつき重大な過失がない者に限る。）がその商品を譲渡し、貸し渡し、譲渡若しくは貸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又は輸入する行為</p> <p>六 第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 取引によって営業秘密を取得した者（その取得した時に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であること又はその営業秘密について営業秘密不正取得行為若しくは営業秘密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らず、かつ、知らないことにつき重大な過失がない者に限る。）がその取引によって取得した権原の範囲内において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する行為</p> <p>七 第二条第一項第十号に掲げる不正競争 第十五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同項に規定する権利が消滅した後にその営業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より生じた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p> <p>八 第二条第一項第十一号から第十六号までに掲げる不正競争 次のいずれかに掲げる行為</p> <p>イ 取引によって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した者（その取得した時に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であること又はその限定提供データについて限定提供データ不正取得行為若しくは限定提供データ不正開示行為が介在したことを知らない者に限る。）がその取引によって取得した権原の範囲内においてその限定提供データを開示する行為</p> <p>ロ その相当量蓄積されている情報が無償で公衆に利用可能となっている情報と同一の限定提供データを取得し、又はその取得した限定提供データを使用し、若しくは開示する行為</p> <p>九 第二条第一項第十七号及び第十八号に掲げる不正競争 技術的</p>	<p>2.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2호에 속하는 부정경쟁 : 자기의 성명 또는 부정한 목적(부정한 이익을 얻음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기타 부정한 목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하거나 인도를 위해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동 호에 속하는 부정경쟁의 경우에는 자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p> <p>3. 제2조 제1항 제1호에 속하는 부정경쟁 : 타인의 상품 등 표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상품 등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는 자 또는 그 상품 등 표시에 관한 업무를 승계한 자가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거나 또는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p> <p>4. 제2조 제1항 제2호에 속하는 부정경쟁 : 타인의 상품 등 표시가 저명하게 되기 전부터 그 상품 등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하는 자 또는 그 상품 등 표시에 관한 업무를 승계한 자가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거나 또는 그 상품 등 표시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하거나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p> <p>5. 제2조 제1항 제3호에 속하는 부정경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위</p> <p>가.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한 상품에 대해서 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해 전시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p> <p>나.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수한 자(그 양수한 때에 그 상품이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임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에 한한다)가 그 상품을 양도, 대여,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p> <p>6. 제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속하는 부정경쟁행위 : 거래를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그 취득했을 때에 그 영업비밀에 대해 영업비밀 부정개시 행위인 것 또는 그 영업비밀에 대해 영업비밀 부정개시 행위가 개재한 것을 모르고, 또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에 한한다.)가 그 거래를 통해 취득한 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p>7.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속하는 부정경쟁 :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 조에서 규정하는 권리가 소멸한 후에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해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p> <p>8. 제2조 제1항 제11호 내지 제16호에 속하는 부정경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행위</p> <p>가. 거래에 의하여 한정제공 데이터를 취득한 자(그 취득 시에 그 한정제공 데이터에 관하여 한정제공 데이터 부정공개 행위인 것 또는 그 한정제공 데이터 부정취득 행위 또는 한정제공 데이터 부정공개 행위가 개재한 것을 모르는 자에 한한다.)가 그 거래에 의해서 취득한 권원의 범위 내에서 그 한정제공 데이터를 개시하는 행위</p> <p>나. 그 상당량 축적되어 있는 정보가 무상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정보와 동일한 한정 제공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한정 제공 데이터를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p> <p>9. 제2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에 속하는 부정경쟁 : 기술적</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制限手段の試験又は研究のために用いられる同項第十七号及び第十八号に規定する装置、これらの号に規定するプログラム若しくは指令符号を記録した記録媒体若しくは記憶した機器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若しくは輸入し、若しくは当該プログラム若しくは指令符号を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行為又は技術的制限手段の試験又は研究のために行われるこれらの号に規定する役務を提供する行為</p> <p>2 前項第二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行為によって営業上の利益を侵害され、又は侵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の区分に応じて当該各号に定める者に対し、自己の商品又は営業との混同を防ぐのに適当な表示を付すべきこ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p> <p>一 前項第二号に掲げる行為 自己の氏名を使用する者(自己の氏名を使用した商品を自ら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者を含む。)</p> <p>二 前項第三号に掲げる行為 他人の商品等表示と同一又は類似の商品等表示を使用する者及びその商品等表示に係る業務を承継した者(その商品等表示を使用した商品を自ら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する者を含む。)</p>	<p>제한수단의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동 항 제17호 및 제18호에서 규정하는 장치, 이들 호에서 규정하는 프로그램 또는 지령부호를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기억한 기기를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또는 해당 프로그램 또는 지령부호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또는 기술적 제한수단의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이들 호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p> <p>② 전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속하는 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행위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대해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표시를 부착해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1. 전 항 제2호에 속하는 행위 : 자기 또는 성명을 사용한 자(자기의 성명을 사용한 상품을 스스로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해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p> <p>2. 전 항 제3호에 속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 등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자 및 그 상품 등 표시에 관한 업무를 승계한 자(그 상품 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스스로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p>
<p>第十九条の二 (政令等への委任)</p> <p>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没収保全と滞納処分との手続の調整について必要な事項で、滞納処分に関するものは、政令で定める。</p> <p>2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三十二条の規定による第三者の参加及び裁判に関する手続、第八章に規定する没収保全及び追徴保全に関する手続並びに第九章に規定する国際共助手続について必要な事項(前項に規定する事項を除く。)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p>	<p>제19조의2 (정령등에의 위임)</p> <p>①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의 절차의 조정 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추납처분에 관한 것은 정령으로 정한다.</p> <p>② 이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참가 및 재판에 관한 절차, 제8장에 규정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에 관한 절차 및 제9장에 규정한 국제공조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전 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p>
<p>第二十条 (経過措置)</p> <p>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政令又は経済産業省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政令又は経済産業省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p>	<p>제20조 (경과조치)</p> <p>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정령 또는 경제산업성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정령 또는 경제산업성령에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른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 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p>
<p>第五章 罰則</p>	<p>제5장 벌칙</p>
<p>第二十一条 (罰則)</p> <p>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十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二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p> <p>一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詐欺等行為(人を欺き、人に暴行を加え、又は人を脅迫する行為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管理侵害行為(財物の窃取、施設への侵入、不正アクセス行為(不正アクセス行為の禁止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二百二十八号)第二条第四項に規定する不正アクセス行為をいう。)その他の営業秘密保有者の管理を害する行為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により、営業秘密を取得した者</p> <p>二 詐欺等行為又は管理侵害行為により取得した営業秘密を、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使用し、又は開示した者</p> <p>三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者から示された者であっ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き、次のいずれかに掲げる方法でその営業秘密を領得した者</p> <p>イ 営業秘密記録媒体等(営業秘密が記載され、又は記録された文書、図画又は記録媒体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又は営業</p>	<p>제21조 (벌칙)</p> <p>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p> <p>1. 부정한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기 등 행위(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동 조에서는 같다) 또는 관리침해행위(재물의 절취, 시설에의 침입, 부정액세스행위(부정액세스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28호)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정액세스행위를 말한다). 기타 보유자의 관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동 조에서는 같다)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p> <p>2. 사기 등 행위 또는 관리침해행위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음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p> <p>3.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어긋나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p> <p>가.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영업비밀이 기재되거나 기록된 문서, 도면 또는 기록매체를 말한다. 이하 동 호에서 같다.) 또는 영업비밀이</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秘密が化体された物件を横領すること。</p> <p>ロ 営業秘密記録媒体等の記載若しくは記録について、又は営業秘密が化体された物件について、その複製を作成すること。</p> <p>ハ 営業秘密記録媒体等の記載又は記録であって、消去すべきものを消去せず、かつ、当該記載又は記録を消去したように仮装すること。</p> <p>四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者から示された者であって、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いて前号イからハまでに掲げる方法により領得した営業秘密を、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き、使用し、又は開示した者</p> <p>五 営業秘密を営業秘密保有者から示されたその役員(理事、取締役、執行役、業務を執行する社員、監事若しくは監査役又はこれらに準ずる者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又は従業者であっ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営業秘密の管理に係る任務に背いてその営業秘密の開示の申込みをし、又はその営業秘密の使用若しくは開示について請託を受けて、その営業秘密をその職を退いた後に使用し、又は開示した者(第四号に掲げる者を除く。)</p> <p>七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第二号若しくは前三号の罪又は第三項第二号の罪(第二号及び前三号の罪に当たる開示に係る部分に限る。)に当たる開示によって営業秘密を取得して、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した者</p> <p>八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第二号若しくは第四号から前号までの罪又は第三項第二号の罪(第二号及び第四号から前号までの罪に当たる開示に係る部分に限る。)に当たる開示が介在したことを知って営業秘密を取得して、その営業秘密を使用し、又は開示した者</p> <p>九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その営業秘密保有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自己又は他人の第二号若しくは第四号から前号まで又は第三項第三号の罪に当たる行為(技術上の秘密を使用する行為に限る。以下この号及び次条第一項第二号において「違法使用行為」という。)により生じた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た者(当該物が違法使用行為により生じた物であることの情を知らないで譲り受け、当該物を譲渡し、引き渡し、譲渡若しくは引渡しのために展示し、輸出し、輸入し、又は電気通信回線を通じて提供した者を除く。)</p> <p>2 次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五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五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p> <p>一 不正の目的をもって第二条第一項第一号又は第二十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p> <p>二 他人の著名な商品等表示に係る信用若しくは名声を利用して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当該信用若しくは名声を害する目的で第二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p> <p>三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第二条第一項第三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p> <p>四 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で、又は営業上技術的制限手段を用いている者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第二条第一項第十七号又は第十八号に掲げる不正競争を行った者</p> <p>五 商品若しくは役務若しくはその広告若しくは取引に用いる書類</p>	<p>화체된 물건을 횡령한 것</p> <p>나.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또는 기록에 대해서 또는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에 대해서 그 복제를 한 것</p> <p>다. 영업비밀기록매체 등의 기재 또는 기록에 있어서 소거해야 할 것을 소거하지 않고 동시에 해당 기재 또는 기록을 소거한 것처럼 가장한 것</p> <p>4.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자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반하여 전 호 a에서 c까지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p> <p>5.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그 임원(이사, 이사, 집행역,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감사 또는 감사역 또는 이들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또는 종업원이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반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전 호의 자를 제외한다)</p> <p>6. 영업비밀을 보유자로부터 제시받은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에 있어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재직 중에 그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에 반하여 그 영업비밀의 개시 신청을 하거나 그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개시에 대하여 청탁을 받고, 그 영업비밀을 그 직에서 물러난 후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p> <p>7.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2호 또는 전 3호의 죄 또는 제3항 제2호의 죄(제2호 및 전 3호의 죄에 해당되는 개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개시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p> <p>8.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전 호까지의 죄 또는 제3항 제2호의 죄(제2호 및 제4호부터 전 호까지의 죄에 해당한 개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개시가 개재한 것을 알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한 자</p> <p>9. 부정한 목적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제3호 또는 제4호부터 전 호까지 또는 제3항 제3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기술상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한다. 이하 동 호 및 차호 제1항 제2호에서 '위법사용행위'라 한다)에 의해 생긴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개시,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자(해당 물건이 위법사용행위에 의해 생긴 물건인 것을 모르고 양수, 해당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개시,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한 자를 제외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p> <p>1. 부정한 목적으로 제2호 제1항 제1호 또는 제20호에 열거된 부정경쟁을 행한 자</p> <p>2.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에 관한 신용 또는 명성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해당 신용 또는 명성을 해할 목적으로 제2조 제1항 제2호의 부정경쟁을 행한 자</p> <p>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2조 제1항 제3호의 부정경쟁을 행한 자</p> <p>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영업상 기술적 제한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2호 제1항 제17호 또는 제18호에 열거된 부정경쟁을 행한 자</p> <p>5.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그 광고 또는 거래에 이용한 서류 또는</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若しくは通信にその商品の原産地、品質、内容、製造方法、用途若しくは数量又はその役務の質、内容、用途若しくは数量について誤認させるような虚偽の表示をした者（第一号に掲げる者を除く。）</p> <p>六 秘密保持命令に違反した者</p> <p>七 第十六条、第十七条又は第十八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た者</p> <p>三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十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三千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これを併科する。</p> <p>一 日本国外において使用する目的で、第一項第一号又は第三号の罪を犯した者</p> <p>二 相手方に日本国外において第一項第二号又は第四号から第八号までの罪に当たる使用をする目的があることの情を知って、これらの罪に当たる開示をした者</p> <p>三 日本国内において事業を行う営業秘密保有者の営業秘密について、日本国外において第一項第二号又は第四号から第八号までの罪に当たる使用をした者</p> <p>四 第一項（第三号を除く。）並びに前項第一号（第一項第三号に係る部分を除く.）、第二号及び第三号の罪の未遂は、罰する。</p> <p>五 第二項第六号の罪は、告訴がなければ公訴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ない。</p> <p>六 第一項各号（第九号を除く.）、第三項第一号若しくは第二号又は第四項（第一項第九号に係る部分を除く.）の罪は、日本国内において事業を行う営業秘密保有者の営業秘密について、日本国外においてこれら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る。</p> <p>七 第二項第六号の罪は、日本国外において同号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る。</p> <p>八 第二項第七号（第十八条第一項に係る部分に限る.）の罪は、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第三条の例に従う。</p> <p>九 第一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は、刑法その他の罰則の適用を妨げない。</p> <p>10 次に掲げる財産は、これ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p> <p>一 第一項、第三項及び第四項の罪の犯罪行為により生じ、若しくは当該犯罪行為により得た財産又は当該犯罪行為の報酬として得た財産</p> <p>二 前号に掲げる財産の果実として得た財産、同号に掲げる財産の対価として得た財産、これらの財産の対価として得た財産その他同号に掲げる財産の保有又は処分に基づき得た財産</p> <p>11 組織的な犯罪の処罰及び犯罪収益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三十六号。以下「組織的犯罪処罰法」という。）第十四条及び第十五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没収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組織的犯罪処罰法第十四条中「前条第一項各号又は第四項各号」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一条第十項各号」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p> <p>12 第十項各号に掲げる財産を没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当該財産の性質、その使用の状況、当該財産に関する犯人以外の者の権利の有無その他の事情からこれを没収することが相当で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は、その価額を犯人から追徴することができる。</p>	<p>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 또는 그 서비스의 질, 내용, 용도 또는 수량에 대해서 오인시키는 허위 표시한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p> <p>6.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p> <p>7.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p> <p>1. 일본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죄를 저지른 자</p> <p>2. 상대방에 일본 국외에서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죄에 해당되는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알고 이들의 죄에 해당하는 개시를 한 자</p> <p>3.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일본 국외에서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죄에 해당되는 사용을 한 자</p> <p>④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전 항 제1호(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2호 및 제3호의 죄의 미수는 처벌한다.</p> <p>⑤ 제2항 제6호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p> <p>⑥ 제1항 각호(제9호를 제외한다),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또는 제4항(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는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일본 국외에서 이들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적용한다.</p> <p>⑦ 제2항 제6호의 죄는 일본 국내에서 동 호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적용한다.</p> <p>⑧ 제2항 제7호(제18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3조의 예에 따른다.</p> <p>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형법 그 밖의 벌칙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p> <p>⑩ 다음에서 정하는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p> <p>1.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생기거나 해당 범죄행위에 의해 얻은 재산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p> <p>2. 전 호의 재산의 과실로 얻은 재산, 동 호의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이들의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동 호의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근거하여 얻은 재산</p> <p>⑪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36호. 이하 '조직적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4조 중 '전조 제1항 각호 또는 제4항 각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 제10항 각호'로 대체한다.</p> <p>⑫ 제10항 각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재산의 성질, 그 사용 상황, 해당 재산에 관한 법인 이외의 자의 권리의 유무 그 외 사정으로 이것을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에게 추징할 수 있다.</p>
<p>第二十二條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に関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に対して当該各号に定める罰金刑を、その人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科する。</p> <p>一 前条第三項第一号（同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二号（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若しくは第三号（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又は第四項（同条第三項第一号（同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p>	<p>제22조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 해당 각호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 각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1. 전조 제3항 제1호(동 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호(동 조 제1항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3호(동 조 제1항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4항(동 조 제3항 제1호(동 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部分に限る。) 第二号 (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 及び第三号 (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 に係る部分に限る。) 十億円以下の罰金刑</p> <p>二 前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七号、第八号若しくは第九号 (同項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又は同条第三項第三号 (同条第一項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に係る部分に限る。)) の罪に係る違法使用行為 (以下この号及び第三項において「特定違法使用行為」という。) をした者が該当する場合を除く。) 又は第四項 (同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七号、第八号及び第九号 (特定違法使用行為をした者が該当する場合を除く。)) に係る部分に限る。) 五億円以下の罰金刑</p> <p>三 前条第二項 三億円以下の罰金刑</p> <p>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者に対してした前条第二項第六号の罪に係る同条第五項の告訴は、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も効力を生じ、その法人又は人に対してした告訴は、当該行為者に対しても効力を生ずるものとする。</p> <p>3 第一項の規定により前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七号、第八号若しくは第九号 (特定違法使用行為をした者が該当する場合を除く。)、第二項、第三項第一号 (同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二号 (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 若しくは第三号 (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 又は第四項 (同条第一項第一号、第二号、第七号、第八号及び第九号 (特定違法使用行為をした者が該当する場合を除く。)) 並びに同条第三項第一号 (同条第一項第一号に係る部分に限る。)、第二号 (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 及び第三号 (同条第一項第二号、第七号及び第八号に係る部分に限る。)) に係る部分に限る。) の違反行為につき法人又は人に罰金刑を科する場合における時効の期間は、これらの規定の罪についての時効の期間による。</p>	<p>분에 한한다), 제2호(동 조 제1항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호(동 조 제1항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 10억 엔 이하의 벌금형</p> <p>2. 전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또는 제9호(동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동 조 제3항 제3호(동 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죄에 관한 위법사용행위(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특정위법사용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4항(동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특정위법사용행위를 한 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 5억 엔 이하의 벌금형</p> <p>3. 전조 제2항 : 3억 엔 이하의 벌금형</p> <p>② 전 항의 경우,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한 전조 제2항 제6호의 죄에 관한 동 조 제5항의 고소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 한 고소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또는 제9호(특정위법사용행위를 한 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항, 제3항 제1호(동 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호(동 조 제1항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3호(동 조 제1항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4항(동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특정위법사용행위를 한 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 조 제3항 제1호(동 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2호(동 조 제1항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호(동 조 제1항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한 경우 시효의 기간은 이들 규정의 죄에 대한 시효의 기간에 의한다.</p>
<p>第六章 刑事訴訟手続の特例</p>	<p>제6장 형사소송절차의 특례</p>
<p>第二十三条 (営業秘密の秘匿決定等)</p> <p>裁判所は、第二十一条第一項、第三項若しくは第四項の罪又は前条第一項 (第三号を除く。) の罪に係る事件を取り扱う場合において、当該事件の被害者若しくは当該被害者の法定代理人又はこれらの者から委託を受けた弁護士から、当該事件に係る営業秘密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たくない旨の申出があるときは、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範囲を定めて、当該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旨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2 前項の申出は、あらかじめ、検察官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検察官は、意見を付して、これを裁判所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p> <p>3 裁判所は、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を取り扱う場合において、検察官又は被告人若しくは弁護士から、被告人その他の者の保有する営業秘密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たくない旨の申出があるときは、相手方の意見を聴き、当該事項が犯罪の証明又は被告人の防衛のために不可欠であり、かつ、当該事項が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被告人その他の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場合であっ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範囲を定めて、当該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旨の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4 裁判所は、第一項又は前項の決定 (以下「秘匿決定」という。) をした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決定で、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 (秘匿決</p>	<p>제23조 (영업비밀의 은닉결정 등)</p> <p>① 법원은 제21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 또는 전조 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죄에 관한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는 해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에 관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시키는 것으로 되는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p> <p>② 전 항의 신청은 미리 검찰관에게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경우, 검찰관은 의견을 붙여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p> <p>③ 법원은 제1항에 규정한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 검찰관 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서, 피고인 그 밖의 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시키는 것으로 되는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사항이 범죄의 증명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 불가결하고, 또 해당 사항이 공개 법정에서 밝혀짐으로 인해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한 피고인 그 밖의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해당 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p> <p>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전 항의 결정(이하 '은닉결정'이라 한다)을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으로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은닉결정에</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定により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こととされた営業秘密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をいう。以下同じ。)に係る名称その他の表現に代わる呼称その他の表現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p> <p>5 裁判所は、秘匿決定をした事件について、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を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しないことが相当でないことと認められるに至ったとき、又は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三十号)第三百十二条の規定により罰条が撤回若しくは変更されたため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該当しなくなったときは、決定で、秘匿決定の全部又は一部及び当該秘匿決定に係る前項の決定(以下「呼称等の決定」という。)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p>	<p>의해 공개법정에서 밝히지 않는 것으로 된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시키는 것으로 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명칭 그 밖의 표현에 대신하는 호칭 그 밖의 표현을 정할 수 있다.</p> <p>⑤ 법원은 은닉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공개 법정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기에 이를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1948년 법률 제31호) 제312조의 규정에 의해 벌조가 철회 또는 변경되기 위해 제1항에 규정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은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및 해당 은닉결정에 관한 전 항의 결정(이하 '호칭 등의 결정'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第二十四条(起訴狀の朗読方法の特例) 秘匿決定があったときは、刑事訴訟法第二百九十一条第一項の起訴狀の朗読は、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方法でこれを行う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検察官は、被告人に起訴狀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p>	<p>제24조(기소장의 낭독방법의 특례) 은닉결정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91조 제1항의 기소장의 낭독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기소장을 보여주어야 한다.</p>
<p>第二十五条(尋問等の制限) 裁判長は、秘匿決定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訴訟関係人のする尋問又は陳述が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にわたるときは、これを制限することにより、犯罪の証明に重大な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又は被告人の防御に実質的な不利益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除き、当該尋問又は陳述を制限することができる。訴訟関係人の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p> <p>2 刑事訴訟法第二百九十五条第五項及び第六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を受けた検察官又は弁護士である弁護士がこれに従わなかっ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p>	<p>제25조(심문 등의 제한) ① 법원은 은닉결정이 있었을 경우, 소송관계인의 심문 또는 진술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것을 제한함으로써 범죄의 증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심문 또는 진술을 제한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의 피고인에 대한 공술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②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찰관 또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p>
<p>第二十六条(公判期日外の証人尋問等) 裁判所は、秘匿決定をした場合において、証人、鑑定人、通訳人若しくは翻訳人を尋問するとき、又は被告人が任意に供述をす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の意見を聴き、証人、鑑定人、通訳人若しくは翻訳人の尋問若しくは供述又は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若しくは被告人の供述が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にわたり、かつ、これが公開の法廷で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被害者、被告人その他の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り、これを防止するためやむを得ないと認めるときは、公判期日外において当該尋問又は刑事訴訟法第三百十一条第二項及び第三項に規定す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2 刑事訴訟法第一百五十七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一百五十八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一百五十九条第一項、第二百七十三条第二項、第二百七十四条並びに第三百三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一百五十七条第一項、第一百五十八条第三項及び第一百五十九条第一項中「被告人又は弁護士」とあるのは「弁護士、共同被告人又はその弁護士」と、同法第一百五十八条第二項中「被告人及び弁護士」とあるのは「弁護士、共同被告人及びその弁護士」と、同法第二百七十三条第二項中「公判期日」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の期日」と、同法第二百七十四条中「公判期日」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の日時及び場所」と、同法第三百三条中「証人その他の者の尋問、検証、押収及び捜索の結果を記載した書面並びに押収した物」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の結果を記載した書面」と、「証拠書類又は証拠物」とあるのは「証拠書類」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p>	<p>제26조(공판기일 외의 증인심문 등) ① 법원은 은닉결정을 한 경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심문할 때 또는 피고인이 임의로 공술을 한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심문 또는 공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공술을 구하는 행위 또는 피고인의 공술이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에 해당되고, 이것이 공개 법정에서 밝힘으로 인해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한 피해자, 피고인 그 밖의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판기일 외에 해당 심문 또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피고인의 공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157조 제1항 및 제2항, 제158조 제2항 및 제3항, 제159조 제1항, 제273조 제2항, 제274조 및 제303조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해 피고인의 공술을 요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57조 제1항, 제158조 제3항 및 제159조 제1항 중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변호인, 공동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 동법 제158조 제2항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호인, 공동피고인 및 그 변호인'으로, 동법 제273조 제2항 중 '공판기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공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기일'로, 동법 제274조 중 '공판기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공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일시 및 장소'로, 동법 제303조 중 '증인 그 밖의 자의 심문, 검증, 압수 및 수색 결과를 기재한 서면 및 압수한 물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공술을 요구하는 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으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은 '증거서류'로 대체한다.</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第二十七条 (尋問等に係る事項の要領を記載した書面の提示命令) 裁判所は、呼称等の決定をし、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尋問若しくは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を公判期日外においてする旨を定めるに当たり、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及び被告人又は弁護人に対し、訴訟関係人のすべき尋問若しくは陳述又は被告人に対する供述を求める行為に係る事項の要領を記載した書面の提示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p>	<p>제27조 (신문 등에 관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명령) 법원은 호칭 등의 결정을 하거나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문 또는 피고인의 공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고안기일 외에 하는 취지를 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해 소송관계인이 할 신문 또는 진술 또는 피고인에 대한 공술을 요구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p>
<p>第二十八条 (証拠書類の朗読方法の特例) 秘匿決定があったときは、刑事訴訟法第三百五條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証拠書類の朗読は、営業秘密構成情報特定事項を明らかにしない方法でこれを行うものとする。</p>	<p>제28조 (증거서류의 낭독방법의 특례) 은닉결정을 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0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의 낭독은 영업비밀구성정보특정사항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p>
<p>第二十九条 (公判前整理手続等における決定) 次に掲げる事項は、公判前整理手続及び期日間整理手続において行うことができる。 一 秘匿決定若しくは呼称等の決定又はこれらの決定を取り消す決定をすること。 二 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尋問又は被告人の供述を求める手続を公判期日外においてする旨を定めること。</p>	<p>제29조 (공판 전 정리절차 등에 있어서의 결정) 다음의 사항은 공판 전 정리절차 및 기일 간 정리절차에서 할 수 있다. 1. 은닉결정 또는 호칭 등의 결정 또는 이들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2.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문 또는 피고인의 공술을 요구하는 절차를 공판기일 외에 하는 취지를 정하는 것</p>
<p>第三十条 (証拠開示の際の営業秘密の秘匿要請) 検察官又は弁護人は、第二十三条第一項に規定する事件について、刑事訴訟法第二百九十九條第一項の規定により証拠書類又は証拠物を閲覧する機会を与えるに当たり、第二十三条第一項又は第三項に規定する営業秘密を構成する情報の全部又は一部を特定させることとなる事項が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当該営業秘密に基づく被害者、被告人その他の者の事業活動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相手方に対し、その旨を告げ、当該事項が、犯罪の証明若しくは犯罪の捜査又は被告人の防御に関し必要がある場合を除き、関係者(被告人を含む。)に知ら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被告人に知られ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については、当該事項のうち起訴状に記載された事項以外のものに限る。 2 前項の規定は、検察官又は弁護人が刑事訴訟法第二編第三章第二節第一款第二目(同法第三百十六條の二十八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る証拠の開示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p>	<p>제30조 (증거개시 시의 영업비밀의 은닉요청) ①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할 기회를 주면서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시키는 것으로 되는 사항이 밝혀짐으로 인해 해당 영업비밀에 근거한 피해자, 피고인 그 밖의 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해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사항이 범죄의 증명 또는 범죄의 수사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 관해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자(피고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중 기소장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것에 한한다. ② 전 항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제1관 제2목(동법 제316조의28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거개시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p>
<p>第三十一条 (最高裁判所規則への委任)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二十三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の実施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p>	<p>제31조 (대법원 규칙에의 위임)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 제23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p>
<p>第七章 没収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p>	<p>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p>
<p>第三十二条 (第三者の財産の没収手続等) 第二十一条第十項各号に掲げる財産である債権等(不動産及び動産以外の財産をいう。第三十四条において同じ。)が被告人以外の者(以下この条において「第三者」という。)に帰属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第三者が被告事件の手続への参加を許されていないときは、没収の裁判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第二十一条第十項の規定により、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第三者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を没収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当該第三者が被告事件の手続への参加を許されていない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組織的犯罪処罰法第十八条第三項から第五項までの規定は、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第三者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を没収する場合において、第二十一条第十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組織的犯罪処</p>	<p>제32조 (제3자의 재산 몰수절차 등) ① 제21조 제10항 각호에 제시하는 재산인 채권 등(부동산 및 동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제34조에서 동일하다)이 피고인 이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제3자'라 한다)에 귀속하는 경우에 해당 제3자가 피고사건의 절차에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을 때에는 몰수의 재판을 할 수 없다. ② 제2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권, 저당권 그 밖의 제3자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려는 경우, 해당 제3자가 피고사건의 절차에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을 때에도 전 항과 동일하다. ③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제3자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경우에 제21조 제11조에서 준용하는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5조</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罰法第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当該権利を存続させるべきときに ついて準用する。</p> <p>4 第一項及び第二項に規定する財産の没収に関する手続について 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もののほか、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 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昭和三十八年法律第百三 十八号)の規定を準用する。</p>	<p>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권리를 존속시킬 때에 대해서 준용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몰수에 관한 절차에 대해 서는 이 법률에 특별히 정하는 것 외에 형사사건에서 제3자 소유물 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1963년 법률 제13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p>
<p>第三十三条(没収された債権等の処分等) 組織的犯罪処罰法第十九条の規定は第二十一条第十項の規定によ る没収について、組織的犯罪処罰法第二十条の規定は権利の移転に ついて登記又は登録を要する財産を没収する裁判に基づき権利の移 転の登記又は登録を関係機関に囑託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 の場合において、同条中「次章第一節」とあるのは、「不正競争防止法第 八章」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p>	<p>제33조(몰수된 채권 등의 처분 등) 조직적범죄처벌법 제19조의 규정은 제2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에 대해서 조직적범죄처벌법 제20조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에 대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기초한 권리의 이전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동 조 중 '다음장 제1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8 장'으로 대체한다.</p>
<p>第三十四条(刑事補償の特例) 債権等の没収の執行に対する刑事補償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 一号)による補償の内容については、同法第四条第六項の規定を準 用する。</p>	<p>제34조(형사보상의 특례) 채권 등의 몰수의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법(1960년 법률 제1호)에 의 한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第八章 保全手続</p>	<p>제8장 보전절차</p>
<p>第三十五条(没収保全命令) 裁判所は、第二十一条第一項、第三項及び第四項の罪に係る被告事 件に関し、同条第十項の規定により没収することができる財産(以 下「没収対象財産」という。)に当た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 由があり、かつ、当該財産を没収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没収保全命令を発して、当該財産 につき、その処分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p> <p>2 裁判所は、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 について没収保全命令を発した場合又は発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 て、当該権利が没収により消滅す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 がある場合であって当該財産を没収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 き、又は当該権利が仮装のものであると思料するに足りる相当の理 由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又は職権で、附帯保 全命令を別に発して、当該権利の処分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p> <p>3 裁判官は、前二項に規定する理由及び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 は、公訴が提起される前であっても、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警察官 たる司法警察員については、国家公安委員会又は都道府県公安委員 会が指定する警部以上の者に限る。)の請求により、前二項に規定す 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4 前三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れらの規定による処分について は、組織的犯罪処罰法第四章第一節及び第三節の規定による没収保 全命令及び附帯保全命令による処分の禁止の例による。</p>	<p>제35조(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제2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죄에 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동 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 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 고, 해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하여 해당 재산에 대 해 그 처분을 금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 에 대해서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권리가 몰수에 의해 소멸한다고 사유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해당 권리가 가장의 것이라고 사유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부대보전명령을 별대로 발하여 해당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p> <p>③ 법원은 전2항에 규정하는 이유 및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경찰관인 사법경 찰관에 대해서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 지정하는 경위 이상의 자에 한한다)의 청구에 의해 전2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④ 전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이들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 조 직적범죄처벌법 제4장 제1절 및 제3절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의 예에 따른다.</p>
<p>第三十六条(追徴保全命令) 裁判所は、第二十一条第一項、第三項及び第四項の罪に係る被告事 件に関し、同条第十二項の規定により追徴すべき場合に当たると思 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場合において、追徴の裁判の執行を 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おそれがあり、又はその執行をするのに著し い困難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検察官の請求により、 又は職権で、追徴保全命令を発して、被告人に対し、その財産の処分 を禁止することができる。</p> <p>2 裁判官は、前項に規定する理由及び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 公訴が提起される前であっても、検察官の請求により、同項に規定す る処分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3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れらの規定による処分について</p>	<p>제36조(추징보전명령) ① 법원은 제2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죄에 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동 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해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고 사유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징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거나 그 집행을 하기에 현저한 곤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 대해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전 항에 규정하는 이유 및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동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③ 전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들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는</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は、組織的犯罪処罰法第四章第二節及び第三節の規定による追徴保全命令による処分の禁止の例による。</p>	<p>조직적범죄처벌법 제4장 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의 예에 따른다.</p>
<p>第九章 没収及び追徴の裁判の執行及び保全についての国際共助手続等</p>	<p>제9장 몰수 및 추징 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공조절차 등</p>
<p>第三十七条 (共助の実施) 外国の刑事事件(当該事件において犯されたとされている犯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が第二十一条第一項、第三項又は第四項の罪に当たる場合に限る。)に関して、当該外国から、没収若しくは追徴の確定裁判の執行又は没収若しくは追徴のための財産の保全の共助の要請があったとき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除き、当該要請に係る共助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共助犯罪(共助の要請において犯されたとされている犯罪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日本国の法令によればこれについて刑罰を科す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二 共助犯罪に係る事件が日本国の裁判所に係属するとき、又はその事件について日本国の裁判所において確定判決を経たとき。 三 没収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又は没収のための保全の共助については、共助犯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要請に係る財産が日本国の法令によれば共助犯罪について没収の裁判をし、又は没収保全をすることができる財産に当たるものでないとき。 四 追徴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又は追徴のための保全の共助については、共助犯罪に係る行為が日本国内において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日本国の法令によれば共助犯罪について追徴の裁判をし、又は追徴保全をすることができる場合に当たるものでないとき。 五 没収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については要請に係る財産を有し又はその財産の上に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権利を有すると認料するに足りる相当な理由のある者が、追徴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については当該裁判を受けた者が、自己の責めに帰することのできない理由により、当該裁判に係る手続において自己の権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認められるとき。 六 没収又は追徴のための保全の共助については、要請国の裁判所若しくは裁判官のした没収若しくは追徴のための保全の裁判に基づく要請である場合又は没収若しくは追徴の裁判の確定後の要請である場合を除き、共助犯罪に係る行為が行われた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ないとき、又は当該行為が日本国内で行われたとした場合において第三十五条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理由が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2 地上権、抵当権その他の権利がその上に存在する財産に係る没収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をするに際し、日本国の法令により当該財産を没収するとすれば当該権利を存続させるべき場合に当たるときは、これを存続させるものとする。</p>	<p>제37조 (공조의 실시) ① 외국의 형사사건(해당사건에서 자행된다고 알려진 범죄에 관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행해진 경우, 해당행위가 제21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해당 외국에서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 또는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한 재산 보전의 공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요청에 관한 공조를 할 수 있다. 1. 공조범죄(공조의 요청에 있어서 범해진 범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행해진 경우 일본국의 법령에 의해 형벌을 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조범죄에 관한 사건이 일본국의 법원에 귀속되는 경우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일본국의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거친 경우 3. 몰수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 또는 몰수하기 위한 보전의 공조에 대해서는 공조범죄에 관한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본국의 법령에 의하면 공조범죄에 대해서 몰수의 재판을 하거나 몰수보전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추징의 확정판결 집행의 공조 또는 추징하기 위한 보전의 공조에 대해서는 공조범죄에 관한 행위가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본국의 법령에 의하면 공조범죄에 대해서 추징을 재판을 하거나 추징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몰수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에 대해서는 요청에 관한 재판을 가지거나 그 재산 위에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를 갖는다고 사유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추징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을 받은 자가 자기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에 의해 해당 재판에 관한 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한 보전의 공조에 대해서는 요청국의 법원 또는 법관의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한 보전의 재판에 근거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 또는 추징재판의 확정 후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조범죄에 관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가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제35조 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상권, 저당권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관한 몰수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를 할 시에 일본국의 법령에 의해 해당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면 해당 권리를 존속시켜야 할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이것을 존속시키는 것으로 한다.</p>
<p>第三十八条 (追徴とみなす没収) 第二十一条第十項各号に掲げる財産に代えて、その価額が当該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財産であって当該裁判を受けた者が有するものを没収する確定裁判の執行に係る共助の要請にあっては、当該確定裁判は、この法律による共助の実施については、その者から当該財産の価額を追徴する確定裁判とみなす。 2 前項の規定は、第二十一条第十項各号に掲げる財産に代えて、その価額が当該財産の価額に相当する財産を没収するための保全に係る共助の要請について準用する。</p>	<p>제38조 (추징으로 보는 몰수) ① 제21조 제10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신하여 그 가액이 해당 재산의 가액에 상당한 재산으로서 해당 재판을 받은 자가 가지는 것을 몰수하는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의 요청에 있어서는 해당 확정재판이 이 법률에 의한 공조의 실시에 대해서는 그 자가 해당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확정재판으로 본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제21조 제10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신하여 그 가액이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상당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보전에 관한 공조의 요청에 대해서 준용한다.</p>

일본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2018년 5월 30일 개정 (2018년 법률 제33호)	번역
<p>第三十九条 (要請国への共助の実施に係る財産等の譲与) 第三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没収又は追徴の確定裁判の執行の共助の要請をした外国から、当該共助の実施に係る財産又はその価額に相当する金銭の譲与の要請があったときは、その全部又は一部を譲与することができる。</p>	<p>제39조 (요청국에의 공조실시에 관한 재산 등의 양여) 제37조 제1항에 규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 요청을 한 외국에서 해당 공조의 실시에 관한 재산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한 금전의 양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p>
<p>第四十条 (組織的犯罪処罰法による共助等の例) 前三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第三十七条の規定による共助及び前条の規定による譲与については、組織的犯罪処罰法第六章の規定による共助及び譲与の例による。</p>	<p>제40조 (조직적범죄처벌법에 의한 공조 등의 예) 전 3조에 정한 것 외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에 대해서는 조직적범죄처벌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공조 및 양여의 예에 따른다.</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11 장

중국

법령요약

● 상표법(2019. 4. 23. 4차 개정, 2019. 11. 1. 시행)

장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21조) 입법취지, 상표 등록요건,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사례, 상표 등록 거절사유
제2장 상표등록출원	(제22조~제27조) 상표 출원방법, 우선권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와 허가	(제28조~38조) 상표 등록절차, 이의신청, 거절불복심판, 무효심판,
제4장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 등록·변경·양도 및 사용허가	(제39조~제43조) 상표 존속기간, 존속기간 갱신, 상표 변경, 상표 양도, 사용 허가
제5장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제44조~제47조) 상표 무효사유 및 절차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48조~제55조) 상표 사용, 과태료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56조~제71조) 상표 침해행위, 저명상표, 구제절차, 손해배상, 잠정조치, 형사책임, 상표대리기관의 책임, 관련 공무원의 책임
제8장 부칙	(제72조~제73조) 수수료, 법적 효력

●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 1993. 9. 2. 제정, 2017. 11. 4. 개정, 2019. 4. 23. 개정

장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목적, 정의, 경영자·지방정부·국무원·국가·산업조직의 의무
제2장 부정경쟁행위	(제6조~제12조) 부정경쟁행위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인터넷상에서의 부정 경쟁행위 유형
제3장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13조~제16조) 감독검사부서의 권한 및 의무
제4장 법률책임	(제17조~제32조) 민사책임, 형사처벌, 행정제재, 증거입증,
제5장 부칙	(제33조) 시행일

주요내용

● 상표법 일반

- (상표법 4차 개정 주요내용) ① 악의적 상표출원의 등록거절 조항 신설 및 악의적 출원에 대응한 각종 조치 규정, ②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 ; 상표법과 반부당경쟁법을 함께 개정하면서 영업비밀 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지식재산과 관련한 주요 사법, 행정환경의 개선을 도모

-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나 미등록 저명상표를 기업명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여 부당경쟁행위가 성립된 경우 부당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리함을 규정(\$58), 이 외에 상표사용금지 및 등록거절사유 등에서 상표의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음
 - ① (상표사용금지) (i) 상표에 상품의 지리표지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상품이 해당표지에 표기된 지역의 특산물이나 아니어서 대중을 오도한 경우 등록 및 사용금지, (ii) 사기성이 있으며 대중이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이나 생산지에 대해 쉽게 오인할 수 있는 경우, (iii)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기, 마크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 ② (상표등록금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 등록 출원
- (행정조치) 상표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조치로서, 잠정조치, 금지청구,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자료제출 명령, 조사, 형사조치 등이 규정
- (영업비밀) 상표법에서 영업비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표대리인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특이조문이 있음(제19조)
- (악의적 상표등록) 중국 상표법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 출원은 거절해야 한다고 명시, 또한,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해 상황에 따라 경고, 벌금 등의 행정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유명상표) 상표법 제68조 제4항은 타인의 등록상표 및 미등록된 유명상표(저명상표)를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인하게 하고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규정

● 영업비밀 관련 사항

-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상업비밀)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상업적 가치가 있고 관리자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의미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주체) 경영자,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 ① 절도, 뇌물, 사기, 협박, 전자적 침투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②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 ③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유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 ④ 교사, 유인, 방조로 타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 유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는 행위,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 (민사책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악의적이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확정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 (형사처벌) 위법행위 중지 및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입증책임) 영업비밀 관리자가 초보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고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입증책임은 침해자로 전환되며, 침해자는 해당영업비밀이 반 부정당경쟁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 중 시장경쟁질서를 교란시키고,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하나로 '혼동행위를 하여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연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행위'를 규정함
- 혼동행위의 예시로 이하의 행위를 열거함
 - ①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②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 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의 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③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웹 사이트 명칭, 홈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④ 타인의 상품인 것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타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 권한

- 동 법은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구체적이고 폭넓은 조사 권한을 다음과 같이 부여함
 - ① 부정경쟁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진입하여 검사 진행
 - ② 조사대상 사업자, 이해관계인 및 기타 유관 단위, 개인에 대해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조사대상 행위와 관련된 기타 자료 제공 요청
 - ③ 부정경쟁행위 혐의와 관련 있는 계약서, 장부, 영수증, 문건, 기록, 업무서한 및 기타자료의 조사 및 복사
 - ④ 부정경쟁행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재물의 봉인, 압류
 - ⑤ 부정경쟁행위 혐의가 있는 경영자의 은행계좌 조회

● 민사책임

- 경영자가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액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입은 권리침해에 의해 발생한 실제 손실액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 정하며, 손실액 또는 이익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500만 위안 이하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 경영자가 타인의 상품 명칭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는 등의 혼동행위를 한 경우, 위법행위 정지 및 위법상품 몰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법 관련 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만 위안 미만일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법령비교표

● 상표법 4차 개정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번역본)

중국 상표법(2019년도 4차 개정) 번역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품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은 거절해야 한다.

제10조 아래 열거한 표지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장, 훈장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 중앙국가기관의 명칭, 표지, 소재지 특정지역의 명칭 또는 대표성을 띠는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지
- (2) 외국국가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정부 간의 국제기구의 명칭, 기, 마크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해당 기구가 동의하거나 쉽게 대중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규제의 실시를 알리고 보증하는 관영표지 및 검증마크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위탁수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적십자회', '홍신월' '국제연합회'의 명칭과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
- (6) 민족적 차별성을 띠는 표지
- (7) 사기성이 있으며 대중이 상품의 품질 등 특성이나 생산지에 대하여 쉽게 오인 할 수 있는 경우
- (8) 사회주의 도덕적 기풍을 해치거나 기타 불리한 영향을 주는 표지

현금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대중에게 익숙한 외국지명은 상표가 될 수 없다. 단, 그 지명이 기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단체상표와 증명상표의 구성 부분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명을 사용한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16조 상표에 상품의 지리표지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상품이 해당 표지에 표기된 지역의 특산물인 아니어서 대중을 오도한 경우 등록할 수 없고 사용을 금한다. 단, 선의로 이미 등록 취득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전 항에서 언급한 지리표지는 모 상품의 원산지를 가리키며,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은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적 요인과 인문 환경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표지이다

제19조 상표대리기관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이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보호 의무가 있다.

제58조 타인의 등록상표나 미등록한 저명상표를 기업 명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부당경쟁행위가 성립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부당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62조 현금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미 취득한 범법 혐의 증거나 제보에 근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때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관련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2) 당사자의 상표전용권침해 관련 계약서, 영수증, 회계장부,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 (3)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활동에 종사한 장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 권리침해활동 관련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증거 및 증명이 되는 물품에 대해 압류하거나 차압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앞 조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고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상표전용권 침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상표전용권이 분쟁이 있고 동시에 권리가 인민법원에 권리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원인이 소멸된 후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를 회복하거나 종결한다.

중국 상표법(2019년도 4차 개정) 번역

제63조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나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허가권의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전용권의 침해와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술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수의 1배에서 5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사용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제65조 상표등록인이나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이를 즉각 제지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 중지 및 재산보전 조치 명령을 내릴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소멸되거나 앞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표등록인이나 이해관계자는 법에 의거하여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 상표대리기관 행위가 아래 중 1개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경고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실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간 생략)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경위에 근거하여 경고, 벌금부과 등 행정처벌 한다. 악의적 상표소송 제기 에 대해서, 인민법원은 법의 의거하여 처벌한다.

● 반부정당경쟁법

중국 개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번역
第一章 总 则	제1장 총 칙
第一条 为了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健康发展,鼓励和保护公平竞争,制止不正当竞争行为,保护经营者和消费者的合法权益,制定本法。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보호하며,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규제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第二条 经营者在生产经营活动中,应当遵循自愿、平等、公平、诚信的原则,遵守法律和商业道德。 本法所称的不正当竞争行为,是指经营者在生产经营活动中,违反本法规定,扰乱市场竞争秩序,损害其他经营者或者消费者的合法权益的行为。 本法所称的经营者,是指从事商品生产、经营或者提供服务(以下所称商品包括服务)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	제2조 경영자는 생산경영활동에 있어서 자율(自願)·평등·공평·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는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 중 이 법을 위반하여 시장경쟁질서를 교란시키고,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는 상품의 생산 및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이하 상품은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과 비법인사단을 의미한다.
第三条 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制止不正当竞争行为,为公平竞争创造良好的环境和条件。 国务院建立反不正当竞争工作协调机制,研究决定反不正当竞争重大政策,协调处理维护市场竞争秩序的重大问题。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부정경쟁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한 양호한 환경 및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국무원은 부정경쟁 방지 업무조율체제를 확립하고 부정경쟁 방지 중대정책을 연구·결정하며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율·처리한다.
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履行工商行政管理职责的部门对不正当竞争行为进行查处;法律、行政法规规定由其他部门查处的,依照其规定。	제4조 현급(县级)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기타 부서가 조사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第五条 国家鼓励、支持和保护一切组织和个人对不正当竞争行为进行社会监督。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不得支持、包庇不正当竞争行为。 行业组织应当加强行业自律,引导、规范会员依法竞争,维护市场竞争秩序。	제5조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사회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보호한다.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은 부정경쟁행위를 지지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 조직은 해당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법에 의거한 경쟁을 규범화하고 유도하며,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第二章 不正当竞争行为	제2장 부정경쟁행위
第六条 经营者不得实施下列混淆行为,引人误认为是他人商品或者与他人存在特定联系 (一)擅自使用与他人有一定影响的商品名称、包装、装潢等相同或者	제6조 경영자는 아래 열거한 혼동행위를 하여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과 같

중국 개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번역
<p>近似的标识； (二) 擅自使用他人有一定影响的企业名称(包括简称、字号等)、社会组织名称(包括简称等)、姓名(包括笔名、艺名、译名等)； (三) 擅自使用他人有一定影响的域名主体部分、网站名称、网页等； (四) 其他足以引人误认为是他人商品或者与他人存在特定联系的混淆行为。</p>	<p>거나 유사한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2)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명칭(약칭, 핵심명칭 등 포함), 사회조직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 주요부분, 웹 사이트 명칭, 웹 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4) 기타 타인의 상품인 것으로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오인하게 하는 행위.</p>
<p>第七条 经营者不得采用财物或者其他手段贿赂下列单位或者个人，以谋取交易机会或者竞争优势： (一) 交易相对方的工作人员； (二) 受交易相对方委托办理相关事务的单位或者个人； (三) 利用职权或者影响力影响交易的单位或者个人。 经营者在交易活动中，可以以明示方式向交易相对方支付折扣，或者向中间人支付佣金。经营者向交易相对方支付折扣，向中间人支付佣金的，应当如实入账。接受折扣、佣金的经营者也应当如实入账。</p> <p>经营者的工作人员进行贿赂的，应当认定为经营者的行为；但是，经营者有证据证明该工作人员的行为与为经营者谋取交易机会或者竞争优势无关的除外。</p>	<p>제7조 경영자는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 상대방의 직원; (2) 거래 상대방의 위탁을 받아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단위 또는 개인; (3) 직권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단위 또는 개인 경영자는 거래활동 중, 명시적인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에 할인대금을 지불하거나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경영자는 거래상대방에 지불한 할인대금과 중개인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할인을 받거나 수수료를 받은 경영자도 성실히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경영자의 직원이 뇌물을 제공한 경우 경영자의 행위로 간주한다. 단, 경영자가 해당 직원의 행위임을 증명하는 증거 및 해당 직원의 행위가 경영자의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 도모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八条 经营者不得对其商品的性能、功能、质量、销售状况、用户评价、曾获荣誉等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欺骗、误导消费者。 经营者不得通过组织虚假交易等方式，帮助其他经营者进行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p>	<p>제8조 경영자는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상황, 사용자 평가, 명예 등에 대해 허위 선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업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영자는 허위거래를 조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들의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상업적 광고를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p>
<p>第九条 经营者不得实施下列侵犯商业秘密的行为： (一) 以盗窃、贿赂、欺诈、胁迫、电子侵入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权利人的商业秘密； (二) 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以前项手段获取的权利人的商业秘密； (三) 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其所掌握的商业秘密； (四) 教唆、引诱、帮助他人违反保密义务或者违反权利人有关保守商业秘密的要求，获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权利人的商业秘密。 经营者以外的其他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实施前款所列违法行为的，视为侵犯商业秘密。 第三人明知或者应知商业秘密权利人的员工、前员工或者其他单位、个人实施本条第一款所列违法行为，仍获取、披露、使用或者允许他人使用该商业秘密的，视为侵犯商业秘密。</p> <p>本法所称的商业秘密，是指不为公众所知悉、具有商业价值并经权利人采取相应保密措施的技术信息、经营信息等商业信息。</p>	<p>제9조 ① 경영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도, 뇌물, 사기, 협박, 전자적 침투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항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인의 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3)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4) 교사, 유인, 방조로 타인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하거나 권리인의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된 요구를 위반하는 행위, 권리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경영자 이외의 다른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이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자가 전 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로 영업비밀 권리인의 직원, 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나 개인이 전 영업비밀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서 칭하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 가치가 있고 권리자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말한다.</p>
<p>第十条 经营者进行有奖销售不得存在下列情形： (一) 所设奖的种类、兑奖条件、奖金金额或者奖品等有奖销售信息不明确，影响兑奖；</p>	<p>제10조 경영자가 경품판매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상황이 존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품의 종류, 당첨 조건, 상금의 금액 또는 경품으로 제공되는 제품 등 경품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당첨에 영향을</p>

중국 개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번역
<p>(二) 采用谎称有奖或者故意让内定人员中奖的欺骗方式进行有奖销售；</p> <p>(三) 抽奖式的有奖销售，最高奖的金额超过五万元。</p>	<p>주는 경우;</p> <p>(2) 거짓의 상품추첨 또는 고의로 내정자를 당첨시키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경품판매를 하는 경우;</p> <p>(3) 추첨식 경품판매에서 최고경품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p>
<p>第十一条 经营者不得编造、传播虚假信息或者误导性信息，损害竞争对手的商业信誉、商品声誉。</p>	<p>제11조 경영자는 허위정보, 오도성 정보를 날조·유포하여 경쟁상대의 상업적인 신용·명예와 상품의 명성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p>
<p>第十二条 经营者利用网络从事生产经营活动，应当遵守本法的各项规定。</p> <p>经营者不得利用技术手段，通过影响用户选择或者其他方式，实施下列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行为：</p> <p>(一) 未经其他经营者同意，在其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中，插入链接、强制进行目标跳转；</p> <p>(二) 误导、欺骗、强迫用户修改、关闭、卸载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p> <p>(三) 恶意对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实施不兼容；</p> <p>(四) 其他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行为。</p>	<p>제12조 경영자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이 법의 각 조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p> <p>경영자는 인터넷 기술수단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기타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 및 파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그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연결시키는 행위;</p> <p>(2)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를 오도, 기만하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수정할 것을 강요하거나, 닫거나, 삭제하게 하는 행위;</p> <p>(3)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호환되지 않게 하는 행위;</p> <p>(4) 기타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 및 파괴하는 경우;</p>
<p>第三章 对涉嫌不正当竞争行为的调查</p>	<p>제3장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p>
<p>第十三条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争行为，可以采取下列措施：</p> <p>(一) 进入涉嫌不正当竞争行为的经营场所进行检查；</p> <p>(二) 询问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及其他有关单位、个人，要求其说明有关情况或者提供与被调查行为有关的其他资料；</p> <p>(三) 查询、复制与涉嫌不正当竞争行为有关的协议、账簿、单据、文件、记录、业务函电和其他资料；</p> <p>(四) 查封、扣押与涉嫌不正当竞争行为有关的财物；</p> <p>(五) 查询涉嫌不正当竞争行为的经营者的银行账户。</p> <p>采取前款规定的措施，应当向监督检查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经批准。采取前款第四项、第五项规定的措施，应当向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监督检查部门主要负责人书面报告，并经批准。</p> <p>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争行为，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行政强制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并应当将查处结果及时向社会公开。</p>	<p>제13조 감독검사부서가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부정경쟁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장에 진입하여 검사를 진행;</p> <p>(2) 조사대상 사업자, 이해관계인 및 기타 유관 단위, 개인에 대해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조사대상 행위와 관련된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p> <p>(3) 부정경쟁행위 혐의와 관련 있는 계약서, 장부, 영수증, 문건, 기록, 업무서한 및 기타자료의 조사 및 복사;</p> <p>(4) 부정경쟁행위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재물의 봉인, 압류;</p> <p>(5) 부정경쟁행위 혐의가 있는 경영자의 은행계좌 조회</p> <p>전 항 규정의 조치를 취할 경우, 감독검사부서의 주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 항의 제4호, 제5호 규정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구역 내 시급(市级)이상 인민정부 감독검사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허가를 받아야 한다.</p> <p>감독검사부서는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즉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p>
<p>第十四条 监督检查部门调查涉嫌不正当竞争行为，被调查的经营者、利害关系人及其他有关单位、个人应当如实提供有关资料或者情况。</p>	<p>제14조 감독검사부서가 부정경쟁행위 혐의를 조사할 경우, 조사받는 경영자나 이해관계인, 기타 유관 단위 및 개인은 관련 자료 및 정황을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p>
<p>第十五条 监督检查部门及其工作人员对调查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p>	<p>제15조 감독검사부서 및 그 직원은 조사과정 중 알게 된 상업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p>
<p>第十六条 对涉嫌不正当竞争行为，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监督检查部门举报，监督检查部门接到举报后应当依法及时处理。</p> <p>监督检查部门应当向社会公开受理举报的电话、信箱或者电子邮件地址，并为举报人保密。对实名举报并提供相关事实和证据的，监督检查部门应当将处理结果告知举报人。</p>	<p>제16조 부정경쟁행위 혐의에 대하여 어떤 단위나 개인은 감독검사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고, 감독검사부서는 신고 접수 후 반드시 법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p> <p>감독검사부서는 신고접수 전화, 사서함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사회에 공개해야 하고 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실명의 제보자가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중국 개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번역
<p>第四章 法律责任</p>	<p>제4장</p>
<p>第十七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经营者的合法权益受到不正当竞争行为损害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因不正当竞争行为受到损害的经营者的赔偿数额,按照其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确定;实际损失难以计算的,按照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经营者恶意实施侵犯商业秘密行为,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赔偿数额。赔偿数额还应当包括经营者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p> <p>经营者违反本法第六条、第九条规定,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权利人五百万元以下的赔偿。</p>	<p>제17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권리침해에 의해 발생한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한다; 실제 손실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 확정한다. 경영자가 악의적으로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 상술한 방법을 확정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에는 경영자가 권리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된다. 경영자가 이 법의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자가 권리 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p>
<p>第十八条 经营者违反本法第六条规定实施混淆行为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商品。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可以并处违法经营额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或者违法经营额不足五万元的,可以并处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p> <p>经营者登记的企业名称违反本法第六条规定的,应当及时办理名称变更登记;名称变更前,由原企业登记机关以统一社会信用代码代替其名称。</p>	<p>제18조 경영자가 이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혼동행위를 한 경우, 감독검사부서에서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위법상품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또는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경영자가 등록한 기업명칭이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즉시 명칭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명칭 변경 전, 기존에 기업등록을 한 기관은 통일사회신용코드로 기업명칭을 대체한다.</p>
<p>第十九条 经营者违反本法第七条规定贿赂他人的,由监督检查部门没收违法所得,处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p>	<p>제19조 경영자가 이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p>
<p>第二十条 经营者违反本法第八条规定对其商品作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或者通过组织虚假交易等方式帮助其他经营者进行虚假或者引人误解的商业宣传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一百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可以吊销营业执照。</p> <p>经营者违反本法第八条规定,属于发布虚假广告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处罚。</p>	<p>제20조 경영자가 이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상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상업광고를 하거나, 허위 거래 등의 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의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상업광고를 방조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경영자가 이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허위광고 게재에 해당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p>
<p>第二十一条 经营者以及其他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违反本法第九条规定侵犯商业秘密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p>	<p>제21조 경영자 및 기타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이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第二十二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条规定进行有奖销售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p>	<p>제22조 경영자가 이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판매를 한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第二十三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一条规定损害竞争对手商业信誉、商品声誉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消除影响,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p>	<p>제23조 경영자가 이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쟁 상대의 상업적 신용과 상품의 명성을 손상시킨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제거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중국 개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번역
<p>第二十四条 经营者违反本法第十二条规定妨碍、破坏其他经营者合法提供的网络产品或者服务正常运行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三百万元以下的罚款。</p>	<p>제24조 경영자가 이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 및 파괴할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第二十五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从事不正当竞争，有主动消除或者减轻违法行为危害后果等法定情形的，依法从轻或者减轻行政处罚；违法行为轻微并及时纠正，没有造成危害后果的，不予行政处罚。</p>	<p>제25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거 또는 감경할 수 있는 등 법적 상황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하여 위법상황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p>
<p>第二十六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从事不正当竞争，受到行政处罚的，由监督检查部门记入信用记录，并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公示。</p>	<p>제26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해야 한다.</p>
<p>第二十七条 经营者违反本法规定，应当承担民事责任、行政责任和刑事责任，其财产不足以支付的，优先用于承担民事责任。</p>	<p>제27조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민사책임,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재산으로 지불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우선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p>
<p>第二十八条 妨害监督检查部门依照本法履行职责，拒绝、阻碍调查的，由监督检查部门责令改正，对个人可以处五千元以下的罚款，对单位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p>	<p>제28조 감독검사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시정할 것을 명하고, 해당 개인에게는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위에게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공안 기관에서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p>
<p>第二十九条 当事人对监督检查部门作出的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p>	<p>제29조 당사자가 감독검사기관이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第三十条 监督检查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泄露调查过程中知悉的商业秘密的，依法给予处分。</p>	<p>제30조 감독검사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p>
<p>第三十一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p>	<p>제3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p>
<p>第三十二条 在侵犯商业秘密的民事审判程序中，商业秘密权利人提供初步证据，证明其已经对所主张的商业秘密采取保密措施，且合理表明商业秘密被侵犯，涉嫌侵权人应当证明权利人所主张的商业秘密不属于本法规定的商业秘密。</p>	<p>제32조 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업비밀 권리자는 초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된 상업비밀에 대해 이미 보호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상업비밀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표명해야 하고, 권리침해 혐의자는 반드시 권리지인이 주장한 상업비밀이 이 법 규정의 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p>
<p>商业秘密权利人提供初步证据合理表明商业秘密被侵犯，且提供以下证据之一的，涉嫌侵权人应当证明其不存在侵犯商业秘密的行为：</p>	<p>상업비밀 권리자는 다음 중 하나의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상업비밀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밝히는 초보적 증거를 제출하고, 침해 혐의자는 상업비밀 침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p>
<p>(一) 有证据表明涉嫌侵权人有渠道或者机会获取商业秘密，且其使用的信息与该商业秘密实质上相同； (二) 有证据表明商业秘密已经被涉嫌侵权人披露、使用或者有被披露、使用的风险； (三) 有其他证据表明商业秘密被涉嫌侵权人侵犯。</p>	<p>(1) 권리침해 혐의자가 상업적 비밀을 입수할 기회나 경로가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그 사용정보와 해당 상업비밀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2) 상업비밀이 권리침해 혐의자에 의해 이미 누설, 사용되었거나 그러한 위험을 밝히는 증거가 있을 것 (3) 상업비밀이 권리침해 혐의자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기타의 다른 증거가 있을 것</p>
<p>第五章·附·则</p>	<p>제5장 부칙</p>
<p>第三十三条 本法自2018年1月1日起施行。</p>	<p>제33조 이 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12 장

칠레

법령요약

● 칠레의 지식재산법 체계

- 지식재산법(Ley 17336 PROPIEDAD INTELECTUAL, 2017. 11. 3. 개정ver) : 저작권의 경제적, 인격적 권리 보호
- 산업재산권법(ley 20569, Ley de Propiedad Industrial. 2012. 2. 6. 개정 ver) : 상표, 발명특허, 실용신안, 산업도면 및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디자인, 지리적 표시, 원산지 명칭 및 기타 소유권의 보호

● 칠레의 지식재산법 개정 동향

- 칠레의 산업재산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률 no. 19,039 및 산업재산권 절차에 관한 법률 no. 20524의 일부개정 법안이 2021. 4. 21.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행정부의 검토 후 6개월 후 관보에 게재된 후 발효
-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칠레의 산업재산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상표, 영업비밀 부분 발췌)]

구분	주요내용
상표	(보호대상인 상표의 유형) 범새상표, 3차원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새롭게 고려 (식별력이 상실된 상표등록의 말소) 최소 5년간 사용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식별력을 잃은 상표의 경우 부분적/전체적으로 취소하는 규정 도입 검토 (상표의 갱신) 상표권의 갱신을 위한 절차 및 수수료 조항 개선 (상표침해 범죄 신설) i)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미 등록된 상표를 위조하는 경우, ii)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위조한 물건을 제조, 수입, 상업화 또는 상업화하여 영리 및 상업적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벌금과 함께 61일에서 3년 1일 사이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손해배상의 예정) 상표권 침해가 사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표권자 1인당 USD 140,000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영업비밀	현행법 기준 영업비밀의 개념은 제품 또는 산업공정과 관련된 지식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자신의 통제 하에 있고, 일부 산업 또는 상업적 생산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논의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

- 산업재산권법 내의 '상표'의 장에서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일부를 규정 : 악의적·상업적 목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시, 관련된 제품,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칠§28, 韓부경§2-바, 타인사칭), 권한없이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표시를 사용하는 행위(칠§95. 韓

부경§2-바, 원산지표시위반

- 상표침해(부정경쟁 포함)에 특정하여 민·형사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법 일반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민사적·예비적 조치도 포함
- 상표에 관한 위반이 있는 경우(부정경쟁행위 포함) 손해배상 및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우리법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칠레의 경우 예비적 조치와 관할법원에 의한 직권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자료제출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칠레의 경우 이와 동일한 조항은 없음. 다만, 침해제품의 생산, 정교화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보, 상품의 유통경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색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음

● 영업비밀

- 산업재산권법 내의 ‘영업비밀 등’의 장에서 영업비밀의 정의와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영업비밀의 경우 현행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현재 칠레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¹⁵⁾
- 영업비밀에 특정하여 민사·행정·형사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산업재산권법 일반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민사적·예비적 조치가 포함됨 (제10장 산업재산권 집행)이 적용됨을 규정
- 우리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자료제출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칠레의 경우 이와 동일한 조항은 없음. 다만, 침해제품의 생산, 정교화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보, 상품의 유통경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색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음, 해당 규정은 일반규정으로 영업비밀의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생성한 제품으로 해석할 수 있음

15) <https://www.carey.cl/en/project-that-modifies-the-industrial-property-law-in-chile-is-approved-by-congress/>

법령비교표

칠레 산업재산권법(2012. 2. 6. 개정법률)	번역
<p>TITULO II De las marcas comerciales</p>	<p>제2장 상표</p>
<p>Artículo 19 bis.- En el caso que se solicite el registro de una marca a favor de dos o más titulares, éstos, actuando de consuno, podrán requerir que se registre también un reglamento de uso y control de la misma, que será obligatorio para los titulares e inoponible para terceros. En este caso, los comuneros podrán renunciar al derecho a pedir la partición de la comunidad por un período determinado o indefinidamente.</p> <p>El Departamento podrá objetar el registro del reglamento, en caso que contenga disposiciones ilegales o que induzcan a error o confusión al público consumidor. El reglamento de uso y control deberá presentarse junto a la solicitud de marca y se resolverá conjuntamente. El Departamento podrá hacer observaciones, hasta antes de dictar la resolución definitiva, las que deberán ser corregidas en un plazo máximo de sesenta días.</p> <p>El incumplimiento por parte de alguno de los comuneros de las normas previstas en el reglamento de uso y control, dará acción a cualquiera de los demás comuneros para solicitar el cumplimiento forzoso y/o la indemnización de perjuicios conforme a las normas del Título X de esta ley.</p> <p>Con igual procedimiento y efectos podrá registrarse una marca para ser usada colectivamente, con la finalidad de garantizar la naturaleza o cualidad de determinados productos o servicios. En este caso, la marca no podrá ser cedida a terceras personas.</p>	<p>제19bis조 둘 이상의 소유자를 위해 상표 등록이 요청되는 경우, 이들은 함께 행동하여 해당 소유자의 사용 및 통제 규정도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필수 사항이다. 제3자에게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된 기간 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상표의 분할을 요청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p> <p>당국은 상표에 불법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소비하는 대중을 오도하거나 혼동시키는 경우 규정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사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은 상표 출원과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공동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부서는 최종 등록여부 발표하기 전에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60일 이내에 수정되어야 한다. 상표권자 중 1인이 사용 및 제어 규정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공동상표권자가 Title X의 규정에 따라 강제 준수 및/또는 손해 배상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일한 절차와 효과로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상표를 집합적으로 사용하도록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p>
<p>Artículo 20.- No podrán registrarse como marcas: a) Los escudos, las banderas u otros emblemas, las denominaciones o siglas de cualquier Estado, de las organizaciones internacionales y de los servicios públicos estatales.</p>	<p>제20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a) 국가, 국제기구 및 국가 공공 서비스의 문장, 깃발 또는 기타 상징, 이름 또는 약어 (이하 생략)</p>
<p>Artículo 27.- La acción de nulidad del registro de una marca prescribirá en el término de 5 años, contado desde la fecha del registro. La referida acción de nulidad no prescribirá respecto de los registros obtenidos de mala fe.</p>	<p>제27조 상표무효소송은 등록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p> <p>단, 앞의 무효소송은 악의로 등록된 상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Artículo 28.- Serán condenados a pagar una multa a beneficio fiscal de 25 a 1.000 unidades tributarias mensuales: a) Los que maliciosamente usen, con fines comerciales, una marca igual o semejante a otra ya inscrita para los mismos productos, servicios o establecimientos o respecto de productos, servicios o establecimientos relacionados con aquellos que comprende la marca registrada. Lo anterior se entenderá sin perjuicio de lo dispuesto en el artículo 19 bis E. b) Los que usen, con fines comerciales, una marca no inscrita, caducada o anulada, con las indicaciones</p>	<p>제28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5~1,000 과세 단위의 벌금에 처한다.</p> <p>a) 제19bisE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악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시설에 대해 이미 등록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등록된 상표와 관련된 제품, 서비스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자</p> <p>b) 상업적 목적으로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미등록, 소멸, 무효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p>

칠레 산업재산권법(2012. 2. 6. 개정법률)	번역
<p>correspondientes a una marca registrada o simulando aquéllas. c) Los que, con fines comerciales, hagan uso de envases o embalajes que lleven una marca registrada, sin tener derecho a usarla y sin que ésta haya sido previamente borrada, salvo que el embalaje marcado se destine a envasar productos diferentes y no relacionados con los que protege la marca. Al que reincida dentro de los cinco años siguientes a la aplicación de una multa, se le aplicará otra que no podrá ser inferior al doble de la anterior y cuyo monto máximo podrá llegar a 2.000 unidades tributarias mensuales.</p>	<p>c) 상업적 목적으로 이전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 제품 또는 포장을 사용하는 자, 단, 해당 표시된 포장 등이 상표로 보호되는 다른 유형의 제품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적용 후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이전 벌금의 2배 이상 또는 월 2,000 과세단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Artículo 29.- Los condenados de acuerdo al artículo anterior serán obligados al pago de las costas y de los daños y perjuicios causados al dueño de la marca. Los utensilios y los elementos directamente empleados para la falsificación o imitación y los objetos con marcas falsificadas caerán en comiso. Tratándose de objetos con marca falsificada, se procederá a su destrucción. En el caso de los utensilios o elementos utilizados, será facultad del juez competente decidir sobre su destino, pudiendo ordenar su destrucción o distribución benéfica.</p>	<p>제29조 전 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상표권자에게 발생한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조 또는 모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 위조상품은 몰수한다. 위조상표가 있는 물건은 폐기한다. 사용된 기구 또는 물품의 경우, 관할법원에서 폐기 또는 자선을 위한 배급을 명령할 수 있다.</p>
<p>TITULO VIII De los secretos empresariales y de la información presentada a la autoridad para la obtención de registros o autorizaciones sanitarios</p>	<p>제8장 영업비밀 및 위생등록 허가를 얻기 위해 기관에 공개되는 정보</p>
<p>De los secretos empresariales</p>	<p>영업비밀</p>
<p>Artículo 86.- Se entiende por secreto empresarial todo conocimiento sobre productos o procedimientos industriales, cuyo mantenimiento en reserva proporciona a su poseedor una mejora, avance o ventaja competitiva.</p>	<p>제86조 영업비밀이란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그 소유주에게 경쟁의 우위, 개선 또는 발전을 제공하는 공산품 또는 절차에 관한 모든 지식으로 이해된다.</p>
<p>Artículo 87.- Constituirá violación del secreto empresarial la adquisición ilegítima del mismo, su divulgación o explotación sin autorización de su titular y la divulgación o explotación de secretos empresariales a los que se haya tenido acceso legítimamente pero con deber de reserva, a condición de que la violación del secreto haya sido efectuada con ánimo de obtener provecho, propio o de un tercero, o de perjudicar a su titular.</p>	<p>제87조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소유자로부터의 허가없는 공개 또는 이용, 합법적인 접근이었다 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의 공개 또는 이용은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거나 소유자를 해칠 의도로 수행된 경우 영업비밀침해로 간주된다.</p>
<p>Artículo 88.- Sin perjuicio de la responsabilidad penal que corresponda, serán aplicables a la violación del secreto empresarial las normas del Título X, relativas a la observancia de los derechos de propiedad industrial.</p>	<p>제88조 상당하는 형사상 의무에 대한 침해 없이, 영업비밀의 침해는 제10장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p>
<p>Artículo 95.- No podrán reconocerse como indicaciones geográficas o denominaciones de origen los signos o expresiones d) Que sean indicaciones comunes o genéricas para distinguir el producto de que se trate, entendiéndose por ello las consideradas como tales por los conocedores de la materia o por el público en general, salvo que hayan sido reconocidas como Indicaciones Geográficas o Denominaciones de Origen en virtud de tratados internacionales ratificados por Chile.iones:</p>	<p>제95조 다음 각 항의 표장 또는 표시는 원산지의 지리적 표시 또는 명칭으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d) 칠레에 의해 비준된 국제 조약 하에서 원산지의 지리적 표시 또는 명칭으로서 승인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공중 또는 관련 지식이 있는 자에 의해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당해의 물건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의 공통적 또는 일반적 표시</p>

칠레 산업재산권법(2012. 2. 6. 개정법률)	번역
<p>Artículo 105.- Serán condenados a pagar una multa a beneficio fiscal de 25 a 1.000 unidades tributarias mensuales:</p> <p>a) Los que maliciosamente designen un producto del mismo tipo de los protegidos por una indicación geográfica o denominación de origen registrada, sin tener derecho a hacerlo.</p> <p>b) Los que, con fines comerciales, usen las indicaciones correspondientes a una indicación geográfica o denominación de origen no inscrita, caducada o anulada, o las simulen.</p> <p>c) Los que, con fines comerciales, hagan uso de envases o embalajes que lleven una indicación geográfica o denominación de origen registrada, sin tener derecho a usarla y sin que ésta haya sido previamente borrada, salvo que el embalaje marcado se destine a envasar productos diferentes y no relacionados con los que protege la indicación geográfica o denominación de origen.</p> <p>Los condenados de acuerdo a este artículo serán obligados al pago de las costas, daños y perjuicios causados a los legítimos usuarios de la indicación geográfica o denominación de origen. Los utensilios y los elementos directamente empleados para la comisión de cualquiera de los delitos mencionados en este artículo y los objetos con indicaciones geográficas o denominaciones de origen falsificadas caerán en comiso. Tratándose de los objetos con indicación geográfica o denominación de origen falsificada se procederá a su destrucción. En el caso de los utensilios o elementos utilizados, será facultad del juez competente decidir sobre su destino, pudiendo ordenar su destrucción o su distribución benéfica. Al que reincida dentro de los cinco años siguientes a la aplicación de una multa, se le aplicará otra que no podrá ser inferior al doble de la anterior y cuyo monto máximo podrá llegar a 2.000 unidades tributarias mensuales.</p>	<p>제105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25~1,000월 과세단위의 벌금을 부과한다.</p> <p>a) 권한없이 등록된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에 의해 보호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의 물건을 부당하게 지칭하는 자</p> <p>b) 등록, 만료 또는 취소되지 않은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에 해당하는 표시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자</p> <p>c) 권한이 없는 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가 된 용기 또는 포장용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표시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p> <p>이 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의 적법한 사용자에게 발생한 비용, 손해 및 손실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 조에서 언급된 범죄의 수행에 직접 사용된 기구 및 요소,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이 위조된 물건은 몰수된다. 위조된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을 갖는 물건은 파기된다. 관할법원은 해당 기구나 요소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자선 기부하거나 파기를 명령할 수 있다. 벌금 적용 후 5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이전 벌금의 2배 이상 또는 월 2,000 과세단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TITULO X De la observancia de los Derechos de Propiedad Industrial</p>	<p>제10장 산업재산권 집행</p>
<p>Párrafo 1º De las acciones civiles</p>	<p>제1절 민사구제</p>
<p>Artículo 108.- La indemnización de perjuicios podrá determinarse, a elección del demandante, de conformidad con las reglas generales o de acuerdo con una de las siguientes reglas:</p> <p>a) Las utilidades que el titular hubiera dejado de percibir como consecuencia de la infracción;</p> <p>b) Las utilidades que haya obtenido el infractor como consecuencia de la infracción, o</p> <p>c) El precio que el infractor hubiera debido pagar al titular del derecho por el otorgamiento de una licencia, teniendo en cuenta el valor comercial del derecho infringido y las licencias contractuales que ya se hubieran concedido.</p>	<p>제108조 손해배상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일반원칙 또는 다음 각항 중 하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p> <p>a) 권리자가 침해의 결과로 더 이상 받지 못한 이익</p> <p>b) 침해의 결과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p> <p>c) 침해된 권리의 상업적 가치와 이미 부여된 계약의 라이선스를 고려하여 침해자가 라이선스 부여에 대하여 권리보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p>
<p>Artículo 110.- El juez de la causa estará facultado para</p>	<p>제110조 관할법원은 침해자에게 판결의 대상이 되는 제품 또는 절</p>

칠레 산업재산권법(2012. 2. 6. 개정법률)	번역
<p>ordenar, en la sentencia, que el infractor proporcione las informaciones que posea sobre las personas que hubiesen participado en la producción o elaboración de los productos o procedimientos materia de la infracción, y respecto de los circuitos de distribución de estos productos.</p>	<p>차의 생산 또는 정교화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 결정 및 해당 상품의 유통경로 공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p>
<p>Párrafo 2º De las medidas precautorias</p>	<p>제2절 예비적 조치</p>
<p>Artículo 112.- Las medidas precautorias procederán en todos los asuntos que digan relación con infracciones a los derechos de propiedad industrial.Sin perjuicio de otras medidas precautorias, el Tribunal podrá decretar las siguientes:</p> <p>a) La cesación inmediata de los actos que constituyan la presunta infracción;</p> <p>b) El secuestro de los productos objeto de la presunta infracción y de los materiales y medios que sirvieran principalmente para cometerla. Tratándose de signos distintivos, podrá además decretarse el secuestro de los envases, embalaje, etiquetas, material impreso o de publicidad que posean el signo motivo de la presunta infracción;</p> <p>c) El nombramiento de uno o más interventores;</p> <p>d) La prohibición de publicitar o promover, de cualquier manera, los productos motivo de la presunta infracción, y</p> <p>e) La retención, en poder de un establecimiento de crédito o de un tercero, de los bienes, dineros o valores que provengan de la venta o comercialización de dichos productos, en cualquier forma.</p>	<p>제112조 산업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예비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예비적 조치를 침해하지 않고 법원은 다음 각 항을 명령할 수 있다.</p> <p>a) 주장된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p> <p>b) 침해혐의의 대상이 되는 제품 및 침해행위에 주로 사용된 재료 및 수단의 압수, 식별가능한 표지의 경우 침해 주장의 원인이 되는 표지가 있는 용기, 포장, 라벨, 인쇄 또는 광고자료의 압수도 선고될 수 있음</p> <p>c) 1인 이상의 감사인의 임명</p> <p>d) 침해 주장의 원인이 되는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든 광고 또는 판촉하는 행위의 금지</p> <p>e) 신용기관 또는 제3자의 권한으로 해당제품의 판매 또는 상업화에서 비롯된 제품, 돈 또는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유하는 것</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13 장

캄보디아

법령요약

● 표장, 상호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Law Concerning Marks, Trade Names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2002. 2. 20. 시행)

- 캄보디아 표장, 상호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은 2002년 2월 7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2월 20일부터 시행

캄보디아 표장, 상호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내용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제4조) 정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
제2장 등록 및 등록에 의한 권리	(제5조~제12조) 상표 등록절차, 등록에 따른 상표권자의 권리
제3장 무효 및 취소	(제13조~제15조) 상표 무효 및 취소 절차
제4장 단체표장	(제16조~제18조) 단체표장
제5장 상표 라이선스	(제19조) 상표 라이선스 계약
제6장 상호	(제20조~제21조) 상호로 사용할 수 없는 명칭
제7장 부정경쟁행위	(제22조~제23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제8장 침해 및 구제조치	(제24조~제28조) 유명상표 침해행위, 민사 구제절차
제9장 잠정조치	(제29조~제34조) 잠정조치 명령이 가능한 상황, 가처분명령의 취소
제10장 국경조치	(제35조~제47조) 국경조치 신청 요건 및 절차
제11장 소유권 변경	(제48조~제52조) 상표 소유권 변경 절차 및 효력
제12장 상표 등록 관리	(제53조~제57조) 상표 등록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상무부의 권한 및 의무
제13장 대리인	(제58조~제59조) 대리인의 자격 요건
제14장 국제조약의 적용 및 해석	(제60조~제61조) 용어 정의, 국제조약의 적용
제15장 벌칙	(제62조~제70조) 징역, 벌금
제16장 종결 규정	(제71조~제72조) 등록상표의 갱신, 법률 적용

주요내용

● 유명상표 관련 내용

- 등록된 유명상표에 대해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되게 사용하는 경우, 상표 침해에 해당(제25조)
- 미등록 유명상표에 대해 해당 상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명상표와 동일한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도 침해로 간주함(제26조)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산업, 상업, 서비스 분야에서 정직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제22조)
- ① 경쟁사의 설립, 상품 또는 산업, 상업 또는 서비스 활동에 대해 어떤 수단으로든 혼동을 일으키는 성격의 모든 행위, ② 경쟁사의 설립, 상품 또는 산업, 상업 또는 서비스 활동에 대해 신용을 훼손하는 성격의 거래 과정에서의 허위 주장, ③ 거래과정에서 사용하여 상품의 성격, 제조 공정, 특성, 목적의 적합성, 또는 상품의 수량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징조 또는 혐의(제23조)

● 구제조치

- 법원은 상표 소유자, 실시권자의 요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처분,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일반 법에 규정된 기타 구제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제27조)
- 주무관청, 이해당사자, 협회, 신디케이트(Syndicate), 생산자, 제조자, 거래자 등의 요청에 따라 부정 경쟁행위에 대한 동일한 구제조치 명령 가능(제28조)
-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침해 방지 및 증거 보전을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인은 권리자로서 자신의 권리 침해 또는 침해위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제29조~제30조)¹⁶⁾

● 형사처벌

- 대중으로 하여금 다른 기업의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또는 상호라고 믿도록 오도하기 위해 타인이 캄보디아에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또는 상호를 모방하는 자는 5백만 이상 1천만 이하 리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음(제65조)

● 영업비밀 관련 내용

- 캄보디아는 아직 영업비밀에 관한 특정 법률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단 관련 법안(Law on Undisclosed Data Submitted to Obtain Marketing Approval of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and Trade Secrets)이 현재 국회 계류 중¹⁷⁾
- 캄보디아가 관련 법령을 채택할 때까지 영업비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고용 또는 기타 계약관계에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한 「1998년의 계약법」에 따라 비공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할 수 있음¹⁸⁾

16) 본 조항의 잠정조치는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하여 동법에 따른 모든 침해행위에 적용됨.
 17) 캄보디아 영업비밀법 초안 2019. 9. 10. 상무부에서 자문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초안은 국왕이 법률로 서명하기 전 각료회의와 국회의 승인이 필요, <<https://www.abacus-ip.com/post/cambodian-trade-secret-law-advances-towards-adoption>> 참조(2021. 7. 26. 최종 방문)
 18) <https://www.southeastasia-iphelpdesk.eu/en/country-guides/cambodia/30-there-any-protection-trade-secrets-cambodia> (20221. 7. 26 최종방문)

- 영업비밀 관련 참조할 수 있는 법령¹⁹⁾

대상법률	내용	처벌, 손해배상 등
계약법(1988) Contract Law (1988)	직원이나 계약자와 공유해야 하는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	
영리기업에 관한 법률(2005) The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2005)	회사의 재무제표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 회사의 대부분의 문서에 대한 기밀 유지의무 부여	
감사에 관한 법률(2000) The Law on Audit (2000)	정부 감사인에게 기밀유지 의무 부여	
은행 및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1999) The Law o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1999)	특정사람들이 회계 또는 관리 문서에서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60,000의 벌금
형법(2010) promulgated Penal Code (2010)	직위, 직업, 기능 또는 사명을 이유로 기밀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행위로 메일탈취, 전화도청, 컴퓨터 네트워크 해킹을 범죄로 규정	

법령비교표

캄보디아 표장, 상호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Law Concerning Marks, Trade Names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번역
Chapter 7 Acts of Unfair Competition	제7장 부정경쟁행위
Article 22 Any act of competition contrary to honest practices in industrial, commercial, service matters shall be considered as act of unfair competition.	제22조 산업, 상업, 서비스 분야에서 정직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한다.
Article 23 The following acts, in particular,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cts of unfair competition : (a)-all acts of such a nature as to create confusion by any means whatever with the establishment, the goods, or the industrial, commercial or service activities of a competitor; (b)-false allegations in the course of trade of such a nature as to discredit the establishment, the goods, or the industrial, commercial or service activities of a competitor. (c)-indications or allegations the use of which in the course of trade is liable to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nature,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characteristics, the suitability for their purpose, or the quantity of the goods.	제23조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a) 경쟁사의 설립, 상품 또는 산업, 상업 또는 서비스 활동에 대해 어떤 수단으로든 혼동을 일으키는 성격의 모든 행위 (b) 경쟁사의 설립, 상품 또는 산업, 상업 또는 서비스 활동에 대해 신용을 훼손하는 성격의 거래 과정에서의 허위 주장 (c) 거래과정에서 사용하여 상품의 성격, 제조 공정, 특성, 목적의 적합성, 또는 상품의 수량에 대해 대중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정조 또는 혐의
Chapter 8 Infringement and Remedies	제8장 침해 및 구제조치
Article 24 Subject to Article 12, an infringement of a registered mark shall consist of the performance of any act referred to in Article 11 in Cambodia by a person other than the owner of the mark an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latter.	제24조 동법 제12조에 따라, 등록 상표의 침해는 상표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동의 없이 캄보디아에서 제11조에 언급된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19) <https://www.hg.org/legal-articles/intellectual-property-in-cambodia-18263> (2021. 7. 26. 최종방문)

<p>캄보디아 표장, 상호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Law Concerning Marks, Trade Names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p>	<p>번역</p>
<p>Article 25 An infringement of a registered well-known Mark shall consist of the use of a sign identical with or confusingly similar to the well-known mark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owner of the well-known mark provided that the sign is used :</p> <p>(a)-in relation to goods and service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goods and services for which the well-known mark has been registered, or</p> <p>(b)-in relation to goods and services which are not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ose in respect of which the well-known mark has been registered and the use of the sign in relation to these goods or services would indicate a connection between those goods and services and the owner of the well-known mark and that th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well known mark are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use.</p>	<p>제25조 등록된 유명상표의 침해는 유명상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되게 사용하는 것으로 구성된다.</p> <p>(a) 유명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p> <p>(b) 유명상표가 등록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 해당 상품 및 서비스와 유명상표 소유자와의 관계를 암시하며, 이러한 사용으로 인해 유명상표 소유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Article 26 An infringement of an unregistered well-known mark shall consist of the use of a sign identical with or confusingly similar to the well-known mark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owner of the well-known mark provided that the sign is used in relation to goods or service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mark is well-known.</p>	<p>제26조 미등록 유명상표의 침해는 유명상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명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되게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구성된다.</p>
<p>Article 27 On the request of the owner of the mark or of a licensee if he has requested the owner of the mark to institute court proceedings for specific relief and the owner of the mark has refused or failed to do so, the court may grant an injunction to prevent infringement, an imminent infringement, or an unlawful act referred to Articles 21, 22, 23, award damages and grant any other remedy provided for in the general law.</p>	<p>제27조 상표의 소유주 또는 실시권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구제를 위해 법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표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침해, 임박한 침해 또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손해배상과 일반법에 규정된 기타 구제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p>
<p>Article 28 On the request of any competent authority or any interested person, association or syndicate, in particular of producers, manufacturers or traders, the court may grant the same relief in case of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referred to in Articles 22 and 23.</p>	<p>제28조 주무관청 또는 이해당사자, 협회 또는 신디케이트, 특히 생산자, 제조자 또는 거래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도 동일한 구제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p>
<p>Chapter 9 Provisional Measures</p>	<p>제9장 잠정조치</p>
<p>Article 29 On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the Court shall order prompt and effective provisional measures to prevent an infringement, an imminent infringement or to preserve relevant evidence in regard to the alleged infringement.</p>	<p>제29조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침해를 방지하고 임박한 침해 또는 침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p>
<p>Article 30 Where appropriate, in particular where any delay is likely to cause irreparable harm to the right holder or where there is a demonstrable risk or evidence being destroyed, the Court may order provisional measures provided that the applicant has furnished:</p> <p>(a)-any reasonably available evidence satisfying the Court with a sufficient degree that the applicant is the right holder and that the applicant's rights are being infringed or that such infringement is imminent, and</p>	<p>제30조 적절한 경우, 특히 어떠한 지연이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입증 가능한 위험 또는 파괴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이하를 제공한 경우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p> <p>(a) 청구인이 권리자이며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임박했다는 것에 대해 법원을 충분히 만족시킬만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p>

캄보디아 표장, 상호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Law Concerning Marks, Trade Names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	번역
(b)-the required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sufficient to protect the defendant and to prevent abuse. This required security should be under the determination of the court.	(b) 피고인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담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 이러한 필수적인 보장은 법원의 결정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Article 31 Where a provisional measure has been ordered, the defendant shall be given notice of the decision at the time of the execution of the measures.	제31조 잠정조치가 내려진 후, 피고는 조치가 실행되는 시점에 해당 결정에 대해 통지 받아야 한다.
Article 32 Where provisional measures have been ordered under Article 30 and 31, the defendant may file a request for review with the Court within 15 working days from the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In the review proceedings, the Court shall give the parties concerned an opportunity of being heard and shall review and confirm, modify or revoke its decis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as specified by the law.	제32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잠정조치가 내려진 후, 피고는 결정 통지 후 15 영업일 이내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심리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적정 기간 내에 그 결정을 검토·확인·수정·취소하여야 한다.
Article 33 Where the applicant does not initiate proceedings leading to a decision on the merits of the case within 20 working days, from the notification of the decision ordering provisional measures or within any other reasonable period determined by the Court in its decision, the Court shall revoke the provisional measures upon the request of the defendant.	제33조 청구인이 잠정조치 결정 통지로부터 20 영업일 이내 또는 법원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Article 34 Where the provisional measures are revoked or where the Court decides on the merits of the case in proceedings under Article 33 initiated by the applicant that there has been no infringement or threat of an infringement, the Court shall order the applicant upon the request of the defendant, to provide the defendan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any injury caused by the execution of the provisional measures.	제34조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법원이 제33조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절차에서 사건의 본안에 대해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임시조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Chapter 15 Penalties	제15장 벌칙
Article 62 Any decision taken by the Ministry of Commerce may be the subject of an appeal by any interested party before the Courts and such appeal shall be filed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e decision.	제62조 상무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이해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항소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Article 63 Whoever makes a false statement to the Registrar in an application, opposition or other document filed concern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mendment of a registration, renewal of a registration or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 mark, trade name or a license pertaining to a mark shall be liable to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million riels, or to an imprisonment from one to six months, or both.	제63조 상표 및 상호 대한 등록 출원·수정·연장, 상표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 이의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는 500만 리엘 이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한다.
Article 64 Whoever counterfeits a trademark, service mark, collective mark or trade name registered under Article 11.(b), in the Kingdom of Cambodia by another enterprise shall be liable to a fine of from one to twenty million riels, or to imprisonment from one to five years, or both.	제64조 제11조(b)에 의거하여 캄보디아에서 다른 회사에 의해 등록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상호를 침해하는 자는 1백만 리엘 이상 2천만 리엘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한다.
Article 65 Whoever imitates a trademark, service mark,	제65조 제23조에 따라 대중으로 하여금 다른 기업의 상표, 서비스

<p>캄보디아 표장, 상호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Law Concerning Marks, Trade Names and Acts of Unfair Competition)</p>	<p>번역</p>
<p>collective mark or trade name registered in the Kingdom of Cambodia by another person in order to mislead the public into believing that it is the trademark, service mark, collective mark or trade name of such other enterprise as under Article 23, shall be liable to a fine of from five to ten million riels, or to imprisonment from one month to one year, or both.</p>	<p>표, 단체표장 또는 상호라고 믿도록 오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캄보디아에 등록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또는 상호를 모방하는 자는 5백만 이상 1천만 이하 리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한다.</p>
<p>Article 66 Whoever willfully imports, sells, offers for sale or has for the purpose of sale goods bearing a counterfeit mark, under Article 64, shall be liable to the penalties provided in that Article. Whoever willfully import, sells, offers for sale or has for the purpose of sale goods bearing an imitated mark under Article 65, shall be liable to the penalties provided in that Article.</p>	<p>제66조 제64조에 의거하여 위조 상표 관련 상품을 고의로 수입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처벌을 받는다. 제65조에 의거하여 모방 상표 관련 상품을 고의로 수입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처벌을 받는다.</p>
<p>Article 67 The maximum penalty for a repeated offense under Articles 64 and 65 of this Law, shall be doubled in both of fine and imprisonment as stipulated in those Articles respectively.</p>	<p>제67조 본 법률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재범에 대한 최고형벌은 각각 해당 조항에 규정된 벌금과 금고형의 2배로 한다.</p>
<p>Article 68 In the event an offender liable under this Law is a juristic person, the managing director, manager or representative of such juristic person shall also be liable to the penalty prescribed for such offence unless he can prove that he had neither knowledge or nor consented to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by the juristic person.</p>	<p>제68조 본 법률에 따른 책임이 있는 범의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관리 이사, 관리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동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범죄에 관해 규정된 처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p>
<p>Article 69 All goods which are imported, sold, offered for sale or had for the purpose of sale in violation of this Law, as stipulated in Article 66, shall be confiscated or/and destroy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urt, whether or not anyone has been convicted of the offence.</p>	<p>제69조 본 법률을 위반하여 수입, 판매, 판매 제안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된 모든 물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범죄의 유죄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몰수 또는/그리고 파기되어야 한다.</p>
<p>Article 70 Any person extorted or accepted any object or money by using the power of his/her office shall be considered committing offences and punished under law in force.</p>	<p>제70조 직권을 사용하여 물건 또는 금전을 갈취하거나 이를 수수한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고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14 장

캐나다

법령요약

- 캐나다 상표법(Trademarks Act) (2021. 6. 28. 개정법률)
 - 캐나다는 별도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의 일부를 상표법의 내에서의 금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 R.S.C., 1985, c. C-46)(2021. 5. 6. 개정법률)
 - 캐나다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영업비밀에 침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
 - 타인의 상품 서비스의 신용을 저하시킬 수 있는 거짓진술,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 상표와 관련한 불공정경쟁행위의 일반론적인 내용을 규정(제7조)
 - 저명상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의 상표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등을 상표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
 - 상표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역,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등록상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는 점이 독특함
- 영업비밀
 -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캐나다의 지식재산 법체계 내에서 찾아볼 수 없음
 - 캐나다의 경우 연방 영업비밀법이나 이에 상응하는 법령이 없으며, 관습법(common law), 기타 법령(연방형법, 퀘벡의 경우 민법 등)에 기반하며, 신뢰위반과 같은 불법행위를 포함한 민사소송 절차 등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관련 내용들이 도출되고 있음
 - (캐나다 형법)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IP 관점의 공식적인 절차는 없으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이 필요함을 언급²⁰⁾
 - ① 정보가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 ② 해당 정보가 비밀일 것

20) <https://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wr03987.html>

- ③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도록 영업상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 영업비밀 남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영업비밀 남용에 대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 요소를 살펴본다고 언급²¹⁾
- 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 ② 정보의 가치
 - ③ 정보를 생성하거나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 또는 시간
 - ④ 다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용이성
 - ⑤ 소유자가 정보를 기밀로 간주하고 취급하는 정도
 - ⑥ 수신자가 정보를 기밀로 간주하고 취급하는 정도
 - ⑦ 수신자가 정보가 기밀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지 여부
 - ⑧ 정보의 오용으로 인해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21) <https://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wr03987.html>

법령비교표

● 캐나다 상표법

캐나다 상표법(2021. 6. 28 개정법률)	번역
<p>Unfair Competition and Prohibited Signs</p> <p>Prohibitions 7 No person shall</p> <p>(a) make a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tending to discredit the business, goods or services of a competitor; (b) direct public attention to his goods, services or business in such a way as to cause or be likely to cause confusion in Canada, at the time he commenced so to direct attention to them, between his goods, services or business and the goods, services or business of another; (c) pass off other goods or services as and for those ordered or requested; or (d) make use, in association with goods or services, of any description that is false in a material respect and likely to mislead the public as to (i) the character, quality, quantity or composition, (ii) the geographical origin, or (iii) the mode of the manufacture, production or performance of the goods or services. (e) [Repealed, 2014, c. 32, s. 10]</p>	<p>불공정경쟁과 금지</p> <p>제7조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자의 사업,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신용을 떨어트릴 경향이 있는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캐나다 내에서 타인의 상품, 서비스, 사업과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품, 서비스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중의 주의를 끌거나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 주문 또는 요청된 것과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양도하는 행위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대한 면에서 거짓이 있고, 다음과 같이 일반공중에게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설명을 사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성격, 질, 양 또는 구성 (ii) 지리적 기원 (iii)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 생산 또는 실행방식 <p>(5) [삭제] (2014년 폐지)</p>
<p>Warranty of lawful use 8 Every person who in the course of trade transfers the property in or the possession of any goods bearing, or in packages bearing, any trademark or trade name shall, unless before the transfer he otherwise expressly states in writing, be deemed to warrant, to the person to whom the property or possession is transferred, that the trademark or trade name has been and may be lawfully used in connection with the goods</p>	<p>제8조 (적법한 사용에 대한 보증) 거래과정 중에 재산을 양도하는 모든 자는 서면으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상표, 상표를 부착한 상품, 포장에 있는 상품 또는 상표를 양도하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하였고,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Prohibited marks 9 (1) No person shall adopt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as a trademark or otherwise, any mark consisting of, or so nearly resembling as to be likely to be mistaken for, (a) the Royal Arms, Crest or Standard; (b) the arms or crest of any member of the Royal Family; (c) the standard, arms or crest of His Excellency the Governor General; (d) any word or symbol likely to lead to the belief that he goods or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which it is used have received, or are produced, sold or performed under, royal, vice-regal or governmental patronage, approval or authority; (e) the arms, crest or flag adopted and used at any time by Canada or by any province or municipal corporation in Canada in respect of which the Registrar has,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of Canada or of the province</p>	<p>제9조 (금지)</p> <p>① 누구든지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장, 문장 또는 규격 왕실 구성원의 국장 또는 문장 총독의 국장, 문장, 규격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왕실, 부왕 또는 정부의 후원 및 승인, 권위를 받았거나 생산·판매 또는 수행되었다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어 또는 기호 캐나다 정부 또는 관련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등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및 캐나다 모든 지방, 지역단체가 채택하고 사용하는 문장, 깃발, 휘장 등에 대한 채택 및 사용

캐나다 상표법(2021. 6. 28 개정법률)	번역
<p>or municipal corporation concerned, given public notice of its adoption and use;</p> <p>(f) the emblem of the Red Cross on a white ground, formed by reversing the federal colours of Switzerland and retained by the Genev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War Victims of 1949 as the emblem and distinctive sign of the Medical Service of armed forces and used by the Canadian Red Cross Society, or the expression "Red Cross" or "Geneva Cross";</p> <p>(g) the emblem of the Red Crescent on a white ground adopted for the same purpose as specified in paragraph (f);</p> <p>(g.1) the third Protocol emblem — commonly known as the "Red Crystal" — referred to in Article 2, paragraph 2 of Schedule VII to the Geneva Conventions Act and composed of a red frame in the shape of a square on edge on a white ground, adopted for the same purpose as specified in paragraph (f);</p> <p>(h) the equivalent sign of the Red Lion and Sun used by Iran for the same purpose as specified in paragraph (f);</p> <p>(h.1) the international distinctive sign of civil defence (equilateral blue triangle on an orange ground) referred to in Article 66, paragraph 4 of Schedule V to the Geneva Conventions Act;</p> <p>(i) any territorial or civic flag or any national, territorial or civic arms, crest or emblem, of a country of the Union, if the flag, arms, crest or emblem is on a list communicated under article 6ter of the Convention or pursuant to the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t out in Annex 1C to the WTO Agreement stemming from that article, and the Registrar gives public notice of the communication;</p> <p>(i.1) any official sign or hallmark indicating control or warranty adopted by a country of the Union, if the sign or hallmark is on a list communicated under article 6ter of the Convention or pursuant to the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t out in Annex 1C to the WTO Agreement stemming from that article, and the Registrar gives public notice of the communication;</p> <p>(i.2) any national flag of a country of the Union;</p> <p>(i.3) any armorial bearing, flag or other emblem, or the name or any abbreviation of the name, of an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f the armorial bearing, flag, emblem, name or abbreviation is on a list communicated under article 6ter of the Convention or pursuant to the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t out in Annex 1C to the WTO Agreement stemming from that article, and the Registrar gives public notice of the communication;</p> <p>(j) any scandalous, obscene or immoral word or device;</p> <p>(k) any matter that may falsely suggest a connection with any living individual;</p> <p>(l) the portrait or signature of any individual who is living</p>	<p>6. 1949년 전쟁의 희생자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스위스 연방 색상을 반대로 하여 형성된 흰색 바탕의 적십자 상징, 캐나다 적십자사에서 사용하거나 '적십자' 또는 '제네바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p> <p>7. 제6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채택된 흰색 바탕에 붉은 초승달(이슬람교가의 적십자 기구)의 상징</p> <p>7-1. 제네바협약 제7장 제2조 제2항에 언급되고 동 조 제6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채택된 흰색 바탕 가장자리에 정사각형 모양의 빨간색 프레임으로 구성된 제3의정서 상징(일반적으로 적수정(Red Crystal)로 알려져 있음)</p> <p>8. 동 조 제6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붉은 사자 및 태양과 같은 상징</p> <p>8-1. 제네바협약 제5장 제66조에 제4항에 언급되는 민방위와 관련된 국제식별표지(오렌지색 바탕에 파란색 정삼각형)</p> <p>9. 협정 제6조 또는 WTO 부속문서 1C에 명시된 지식재산권의 무역관련 협약의 의무에 따른 특정지역의 시민깃발 또는 연합의 깃발, 휘장, 문장 또는 엠블럼</p> <p>9-1. 협정 제6조 또는 WTO 부속서 1C에 명시된 지식재산권의 무역관련 협약의 의무에 따른, 연합국가가 채택한 통제 또는 보증을 나타내는 등록된 공식서명 또는 품질보증마크(hallmark)</p> <p>9-2. 동맹국의 국기</p> <p>9-3. 협정 제6조 또는 WTO 부속서 1C에 명시된 지식재산권의 무역관련 협약의 의무에 따른, 국제정부간 기구의 깃발, 휘장, 문장, 이름 또는 이름의 약어 등</p> <p>10. 모든 외설적, 부도덕한 말 또는 장치</p> <p>11. 살아있는 개인의 관계를 거짓으로 암시할 수 있는 모든 사항</p> <p>12. 지난 30년 이내에 살아있었거나, 사망한 개인의 초상 또는 서명</p>

캐나다 상표법(2021. 6. 28 개정법률)	번역
<p>or has died within the preceding thirty years;</p> <p>(m) the words "United Nations" or the official seal or emblem of the United Nations;</p> <p>(n) any badge, crest, emblem or mark</p> <p>(i) adopted or used by any of Her Majesty's Forces as defined in the National Defence Act,</p> <p>(ii) of any university, or</p> <p>(iii) adopted and used by any public authority, in Canada as an official mark for goods or services, in respect of which the Registrar has, at the request of Her Majesty or of the university or public authority, as the case may be, given public notice of its adoption and use;</p> <p>(n.1) any armorial bearings granted, recorded or approved for use by a recipient pursuant to the prerogative powers of Her Majesty as exercised by the Governor General in respect of the granting of armorial bearings, if the Registrar has, at the request of the Governor General, given public notice of the grant, recording or approval; or</p> <p>(o) the nam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or "R.C.M.P." or any other combination of letters relating to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or any pictorial representation of a uniformed member thereof.</p> <p>Marginal note: Excepted uses</p> <p>(2) Nothing in this section prevents the adoption, use or registration as a trademark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of any mark</p> <p>(a) described in subsection (1) with the consent of Her Majesty or such other person, society, authority or organization as may be considered to have been intended to be protected by this section; or</p> <p>(b) consisting of, or so nearly resembling as to be likely to be mistaken for</p> <p>(i) an official sign or hallmark mentioned in paragraph (1)(i.1), except in respect of goods that are the same or similar to the goods in respect of which the official sign or hallmark has been adopted, or</p> <p>(ii) an armorial bearing, flag, emblem, name or abbreviation mentioned in paragraph (1)(i.3), unless the use of the mark is likely to mislead the public as to a connection between the user and the organization.</p>	<p>13. UN이라는 단어 또는 국제연합의 공식 인장 또는 휘장</p> <p>14. 다음 각 목의 모든 배지, 문장, 엠블럼 또는 마크</p> <p>(i) 국방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군대가 채택하거나 사용하는 것</p> <p>(ii) 모든 대학 또는</p> <p>(iii) 캐나다의 공공기관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식마크로 채택 및 사용하는 것</p> <p>14-1. 총독이 행사하는 권한에 따라 수령인에 의해 허가, 기록 또는 사용을 허가, 승인받은 모든 문장</p> <p>15.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또는 "RCMP"라는 이름 또는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와 관련된 기타 문자 조합, 또는 제복을 입은 구성원의 그림 표현</p> <p>② (예외적 용도)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어떠한 내용도 상표로 채택, 사용 또는 등록을 금지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p> <p>1. 이 조에 의해 보호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국가 또는 기타 개인, 사회, 조직, 사회의 동의하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p> <p>2. 다음 각 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구성 또는 거의 유사한 것</p> <p>(i) 제1항 제9-1호에 언급된 공식표지 또는 상징(공식기호 또는 특징이 채택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경우는 제외)</p> <p>(ii) 포장의 사용이 사용자 조직간에 연결에 대하여 일반공중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제9-3호에 언급된 문장, 깃발, 상징, 이름 또는 약어</p>
<p>Prohibited adoption of indication for wines</p> <p>11.14 (1) No person shall adopt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as a trademark or otherwise,</p> <p>(a) 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a wine in respect of a wine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indicated by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or</p> <p>(b) a translation in any language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respect of that wine.</p> <p>Prohibited use</p> <p>(2) No person shall use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as a trademark or otherwise,</p> <p>(a) 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a wine in respect of a wine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indicated by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or adopted contrary to subsection (1); or</p>	<p>11.14조 (와인에 대한 표시의 금지)</p> <p>① 누구든지 영업과 관련하여 상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에 의해 표시된 영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와인과 관련하여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p> <p>2. 해당 와인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모든 언어로 된 번역을 사용하는 행위</p> <p>② (금지) 누구든지 영업과 관련하여 상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에 의해 표시되거나 제1항에 반하여 채택된 영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와인과 관련하여 와인을 식별하는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또는</p>

캐나다 상표법(2021. 6. 28 개정법률)	번역
<p>(b) a translation in any language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respect of that wine. Prohibited use</p> <p>(3) No person shall use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as a trademark or otherwise, (a) 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a wine in respect of a wine that originates in the territory indicated by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f that wine was not produced or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pplicable to that territory; or (b) a translation in any language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respect of that wine. Prohibited adoption of indication for spirits</p> <p>(4) No person shall adopt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as a trademark or otherwise, (a) 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a spirit in respect of a spirit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indicated by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or (b) a translation in any language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respect of that spirit. Prohibited use</p> <p>(5) No person shall use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as a trademark or otherwise, (a) 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a spirit in respect of a spirit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indicated by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or adopted contrary to subsection (4); or (b) a translation in any language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respect of that spirit. Prohibited use</p> <p>6) No person shall use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as a trademark or otherwise, (a) 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a spirit in respect of a spirit that originates in the territory indicated by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f that spirit was not produced or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pplicable to that territory; or (b) a translation in any language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respect of that spirit.</p>	<p>2. 해당 와인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모든 언어로 된 번역을 사용하는 행위</p> <p>③ (금지) 누구든지 영업과 관련하여 상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와인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생산 또는 제조되지 않은 경우,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에 의해 표시된 영역에서 생산된 와인과 관련하여 와인을 식별하는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또는</p> <p>2. 해당 와인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모든 언어로 된 번역을 사용하는 행위</p> <p>④ (주류표시의 채택금지) 누구든지 영업과 관련하여 상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을 채택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에 의해 표시된 영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류와 주류를 식별하는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 또는</p> <p>2. 그 주류와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의 모든 언어로 된 번역을 사용하는 행위</p> <p>⑤ (금지) 누구든지 영업과 관련하여 상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에 의해 표시되거나 제4항에 반하여 채택된 영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주류와 관련하여 주류를 식별하는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 또는</p> <p>2. 그 주류와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의 모든 언어로 된 번역을 사용하는 행위</p> <p>⑥ (금지) 누구든지 영업과 관련하여 상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생산 또는 제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주류를 식별하는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 또는</p> <p>2. 그 주류와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의 모든 언어로 된 번역을 사용하는 행위</p>
<p>Prohibited adoption of indic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or food</p> <p>11.15 (1) No person shall adopt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as a trademark or otherwise, (a) 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 of a category set out in the schedule in respect of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 belonging to the same category that does not originate in the territory indicated by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or (b) a translation on the list kept under subsection 11.12(1) of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n respect of that agricultural product or food. Prohibited use</p> <p>(2) No person shall use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as a trademark or otherwise, (a) 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an</p>	<p>11.15조 (농산물 또는 식품에 대한 표시도용 금지) ① 누구든지 영업과 관련하여 상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에 의해 표시되는 영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 또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식품과 관련하여 목록에 명시된 범주의 농산물 또는 식품을 식별하는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또는</p> <p>2.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과 관련하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제 11.12조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목록의 번역을 사용하는 행위</p> <p>② (금지) 누구든지 영업과 관련하여 상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식품과 관련하여</p>

캐나다 상표법(2021. 6. 28 개정법률)	번역
<p>agricultural product or food of a category set out in the schedule in respect of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 belonging to the same category that does not originate in the territory indicated by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or adopted contrary to subsection (1); or</p> <p>(b) a translation on the list kept under subsection 11.12(1) of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n respect of that agricultural product or food.</p> <p>Prohibited use</p> <p>(3) No person shall use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as a trademark or otherwise,</p> <p>(a) 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 of a category set out in the schedule in respect of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 belonging to the same category that originates in the territory indicated by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f that agricultural product or food was not produced or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pplicable to that territory; or</p> <p>(b) a translation on the list kept under subsection 11.12(1) of the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in respect of that agricultural product or food.</p>	<p>별표에 명시된 범주의 식품을 식별하는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에 의해 표시되거나 반대로 채택된 영역에서 유래하지 않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식품 또는</p> <p>2.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과 관련하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동법 제11.12조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별표 목록의 번역을 사용하는 행위</p> <p>③ (금지) 누구든지 영업과 관련하여 상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농산물 또는 농산물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식품과 관련하여 별표에 명시된 범주의 식품을 식별하는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가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생산 제조되지 않은 경우 또는</p> <p>2. 해당 농산물 또는 식품과 관련하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동법 제11.12조 제1항에 따라 보관된 별표 목록의 번역을 사용하는 행위</p>
<p>CETA indications</p> <p>11.22 Paragraph 11.18(2)(a) and section 11.21 do not apply with respect to 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that is listed in Part A of Annex 20-A,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of Chapter Twenty of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done at Brussels on October 30, 2016.</p>	<p>제11.22조(CETA에 대한 예외) 동법 제11.18조 제2항 a호 및 제 11.21조는 2016년 10월 30일 브뤼셀에서 이루어진 캐나다와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제20장 부록20-A의 파트 A에 나열되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p>
<p>Canada — Korea indications</p> <p>11.23 Paragraphs 11.18(2)(a) and (c) and section 11.21 do not apply with respect to an indication that is a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and that is included in the following list:</p> <p>(a) GoryeoHongsam;</p> <p>(b) GoryeoBaeksam;</p> <p>(c) GoryeoSusam;</p> <p>(d) IcheonSsal;</p> <p>(e) ginseng rouge de Corée;</p> <p>(f) ginseng blanc de Corée;</p> <p>(g) ginseng frais de Corée;</p> <p>(h) riz Icheon;</p> <p>(i) Korean Red Ginseng;</p> <p>(j) Korean White Ginseng;</p> <p>(k) Korean Fresh Ginseng;</p> <p>(l) Icheon Rice.</p>	<p>제11.23조(한-캐나다 FTA에 대한 예외) 동법 제11.18조 제2항 a호 및 c호와 제11.21조에 따라 다음 목록에 포함된 표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a. 고려홍삼 (GoryeoHongsam)</p> <p>b. 고려백삼 (GoryeoBaeksam)</p> <p>c. 고려수삼 (GoryeoSusam)</p> <p>d. 이천쌀 (IcheonSsal)</p> <p>e. 인삼 루즈 드 코레</p> <p>f. 인삼 블랑 드 코레</p> <p>g. 인삼 프raise 드 코레</p> <p>h. 리즈 이천</p> <p>i. 고려홍삼 (Korea red ginseng)</p> <p>j. 고려백삼 (Korea white ginseng)</p> <p>k. 고려수삼 (Korea Fresh ginsion)</p> <p>l. 이천쌀 (Icheon Rice)</p>
<p>When registration invalid</p> <p>18 (1)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is invalid if</p> <p>(e)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as filed in bad faith.</p>	<p>제18조 (등록무효)</p> <p>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 (생략)</p> <p>5. 상표등록 신청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p>
<p>Infringement</p> <p>20 (1) The right of the owner of a registered trademark</p>	<p>제20조(위반) ① 등록상표 소유자의 독점적 사용 권리는 본 법에 따라 상표의 사용을 허가 받지 않은 자 및 등록상표의 소유자에 의</p>

캐나다 상표법(2021. 6. 28 개정법률)	번역
<p>to its exclusive use is deemed to be infringed by any person who is not entitled to its use under this Act and who</p> <p>(a) sells, distributes or advertises any goods or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a confusing trademark or trade name;</p> <p>(b) manufactures, causes to be manufactured, possesses, imports, exports or attempts to export any goods in association with a confusing trademark or trade name, for the purpose of their sale or distribution;</p> <p>(c) sells, offers for sale or distributes any label or packaging, in any form, bearing a trademark or trade name, if</p> <p>(i) the person knows or ought to know that the label or packaging is intended to be associated with goods or services that are not those of the owner of the registered trademark, and</p> <p>(ii) the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ement of the goods or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the label or packaging would be a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ement in association with a confusing trademark or trade name; or</p> <p>(d) manufactures, causes to be manufactured, possesses, imports, exports or attempts to export any label or packaging, in any form, bearing a trademark or trade name, for the purpose of its sale or distribution or for the purpose of the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ement of goods or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it, if</p> <p>(i) the person knows or ought to know that the label or packaging is intended to be associated with goods or services that are not those of the owner of the registered trademark, and</p> <p>(ii) the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ement of the goods or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the label or packaging would be a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ement in association with a confusing trademark or trade name.</p> <p>Deemed infringement under paragraph (1)(b)</p> <p>(1.01) An infringement under paragraph (1)(b) is presumed, unless the contrary is proven, if a person who is not entitled to use a registered trademark imports goods on a commercial scale that bear a trademark that is identical to, or cannot be distinguished in its essential aspects from, the trademark registered for such goods.</p> <p>Exception — bona fide use</p> <p>(1.1)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does not prevent a person from making, in a manner that is not likely to have the effect of depreciating the value of the goodwill attaching to the trademark,</p> <p>(a) any bona fide use of his or her personal name as a trade name; or</p> <p>(b) any bona fide use, other than as a trademark, of the geographical name of his or her place of business or of any accurate description of the character or quality of his or her goods or services.</p> <p>Exception — utilitarian feature</p> <p>(1.2)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does not prevent a person from using any utilitarian feature embodied in the</p>	<p>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배포 또는 광고하는 행위 2.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또는 상호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 제조, 소유, 수입, 수출 또는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표 또는 상호가 포함된 라벨 또는 포장물을 판매, 청약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라벨이나 포장이 등록상표 소유자의 것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와 연관되는 것처럼 의도하려는 목적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ii) 라벨이나 포장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청약, 배포 또는 광고가 다른 상표 또는 상호와 관련하여 혼동을 일으키려는 경우 4.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등록상표 또는 상품명에 포함된 라벨 또는 포장,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배포 또는 광고, 제조, 소지, 수입, 수출 또는 수출의 청약을 시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행위자가 라벨이나 포장이 등록상표 소유자의 것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와 연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ii) 라벨 또는 포장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배포 또는 광고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 또는 상호와 관련된 판매, 배포 또는 광고인 경우 <p>동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p> <p>(1.01) 등록상표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해당 상품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구분할 수 없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반대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제 1항 제b호에 따른 침해로 가정된다.</p> <p>예외 - 선의의 사용</p> <p>(1.1) 상표를 등록한다고 해서 상표에 부가되는 영업권의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로서 자신의 개인 이름을 진실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2. 상표권 이외의 사업장의 지리적 이름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이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설명 <p>예외 - 실용적 기능</p> <p>(1.2) 상표등록은 개인이 상표에 구현된 실용적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p>

캐나다 상표법(2021. 6. 28 개정법률)	번역
trademark. Exception (2)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does not prevent a person from making any use of any of the indications mentioned in subsection 11.18(3) in association with a wine, any of the indications mentioned in subsection 11.18(4) in association with a spirit or any of the indications mentioned in subsection 11.18(4.1) in association with an agricultural product or food.	예외 (2) 상표의 등록은 개인이 와인과 관련하여 제11.18조 제2항에 언급된 표시, 주류와 관련하여 제11.18조 제4항에 언급된 표시 또는 농산물과 관련하여 제11.18조 4.1항에 언급된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Depreciation of goodwill 22 (1) No person shall use a trademark registered by another person in a manner that is likely to have the effect of depreciating the value of the goodwill attaching thereto.	제22조 (영업권의 가치하락) ① 누구도 타인이 등록된 상표를 권리자에게 부여한 영업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Offences and Punishment	범죄와 처벌
Sale, etc., of goods 51.01 (1) Every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sells or offers for sale, or distributes on a commercial scale, any goods in association with a trademark, if that sale or distribution is or would be contrary to section 19 or 20 and the person knows that (a) the trademark is identical to, or cannot be distinguished in its essential aspects from, a trademark registered for such goods; and (b) the owner of that registered trademark has not consented to the sale, offering for sale, or distribution of the goods in association with the trademark. (c) [Deleted] Manufacture, etc., of goods (2) Every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manufactures, causes to be manufactured, possesses, imports, exports or attempts to export any goods, for the purpose of their sale or of their distribution on a commercial scale, if that sale or distribution would be contrary to section 19 or 20 and the person knows that (a) the goods bear a trademark that is identical to, or that cannot be distinguished in its essential aspects from, a trademark registered for such goods; and (b) the owner of that registered trademark has not consented to having the goods bear the trademark. (c) [Deleted] Services (3) Every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sells or advertises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a trademark, if that sale or advertisement is contrary to section 19 or 20 and the person knows that (a) the trademark is identical to, or cannot be distinguished in its essential aspects from, a registered trademark registered for such services; and (b) the owner of the registered trademark has not consented to the sale or advertisement in association with the trademark. (c) [Deleted] Labels or packaging (4) Every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manufactures,	51.01 ① (상품의 판매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상품의 판매 또는 유통이 동법 제19조 또는 20조에 반하는 경우 및 상표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 판매의 청약, 상업적 규모의 유통은 범죄에 해당한다. (a) 상표가 해당 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구별될 수 없는 경우 (b) 해당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상표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판매의 청약, 배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c) [삭제] ② (상품의 제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판매나 유통이 동법 제19조 또는 20조에 반하는 경우 및 판매나 상업적 규모의 상품의 제조, 생산, 소유, 수입, 수출 또는 수출의 청약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a) 해당 상품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 구분할 수 없는 상표가 상품에 존재하는 경우 (b) 해당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상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c) [삭제] ③ (서비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상표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광고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판매 또는 광고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반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 a) 해당 상품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 구분할 수 없는 상표가 상품에 존재하는 경우 (b) 해당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상표와 관련된 판매 또는 광고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c) [삭제] ④ (포장 또는 라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상업적 규모의 라벨

캐나다 상표법(2021. 6. 28 개정법률)	번역
<p>causes to be manufactured, possesses, imports, exports or attempts to export any label or packaging, in any form, for the purpose of its sale or of its distribution on a commercial scale or for the purpose of the sale, distribution on a commercial scale or advertisement of goods or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it, if that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ement would be contrary to section 19 or 20 and the person knows that</p> <p>(a) the label or packaging bears a trademark that is identical to, or that cannot be distinguished in its essential aspects from, a registered trademark;</p> <p>(b) the label or packaging is intended to be associated with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at registered trademark is registered; and</p> <p>(c) the owner of that registered trademark has not consented to having the label or packaging bear the trademark.</p> <p>(d) [Deleted]</p> <p>Trafficking in labels or packaging</p> <p>(5) Every person commits an offence who sells or offers for sale, or distributes on a commercial scale, any label or packaging, in any form, if the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ement of goods or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the label or packaging would be contrary to section 19 or 20 and the person knows that</p> <p>(a) the label or packaging bears a trademark that is identical to, or that cannot be distinguished in its essential aspects from, a registered trademark;</p> <p>(b) the label or packaging is intended to be associated with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at registered trademark is registered;</p> <p>(c) the owner of that registered trademark has not consented to having the label or packaging bear the trademark.</p> <p>Registration of trademark</p> <p>(5.1) In a prosecution for an offence under any of subsections (1) to (5), it is not necessary for the prosecutor to prove that the accused knew that the trademark was registered.</p> <p>Punishment</p> <p>(6) Every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under any of subsections (1) to (5) is liable</p> <p>(a)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five years or to both; or</p> <p>(b)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of not more than \$25,000 or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six months or to both.</p> <p>Limitation Period</p> <p>(7) Proceedings by way of summary conviction for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may be instituted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the day on which the subject-matter of the proceedings arose.</p> <p>Disposition order</p> <p>(8) The court before which any proceedings for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are taken may, on a finding of</p>	<p>또는 포장을 제조, 생산, 소유, 수입, 수출 또는 수출의 청약을 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 규모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된 광고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판매 또는 광고가 동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반하는 경우는 범죄에 해당한다.</p> <p>(a) 라벨 또는 포장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 구분할 수 없는 상표가 상품에 존재하는 경우</p> <p>(b) 라벨 또는 포장이 등록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되도록 의도된 경우</p> <p>(c) 해당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포장 또는 라벨에 상표가 부착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p> <p>(d) [삭제]</p> <p>⑤ (라벨 또는 포장의 불법거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라벨 또는 포장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배포 또는 광고가 동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반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 규모로 라벨 또는 포장을 판매 또는 판매의 청약, 배포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p> <p>(a) 라벨 또는 포장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 구분할 수 없는 상표가 상품에 존재하는 경우</p> <p>(b) 라벨 또는 포장이 등록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 되도록 의도된 경우</p> <p>(c) 해당 등록상표의 소유자가 포장 또는 라벨에 상표가 부착되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p> <p>⑤-1. (상표의 등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상표등록여부를 알았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p> <p>⑥ (처벌) 제1항에서 제5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p> <p>(a) 기소 또는 유죄판결 시 \$1,0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p> <p>(b) 즉결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25,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⑦ (제한기간) 이 조에 따른 범죄에 대한 약식유죄판결을 통한 절차는 행위가 발생한날로부터 늦어도 2년 안에 제기되어야 한다.</p> <p>⑧ (처분명령) 이 조에 의한 범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와 관련한 상품, 라벨 또는 포장, 해당 상품</p>

캐나다 상표법(2021. 6. 28 개정법률)	번역
<p>guilt, order that any goods, labels, or packaging in respect of which the offence was committed, any advertising materials relating to those goods and any equipment used to manufacture those goods, labels or packaging be destroyed or otherwise disposed of.</p> <p>Notice</p> <p>(9) Before making an order for the destruction or other disposition of equipment under subsection (8), the court shall require that notice be given to the owner of the equipment and to any other person who, in the opinion of the court, appears to have a right or interest in the equipment, unless the court is of the opinion that the interests of justice do not require that the notice be given.</p>	<p>과 관련한 광고자료의 파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상품, 라벨 또는 포장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비는 파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한다.</p> <p>⑨ (주의) 제8항에 따라 장비의 파기 또는 기타 처분을 명령하기 전에 법원은 장비의 소유자 및 정의관념에 따라 장비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위해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 R.S.C., 1985, c. C-46)

캐나다 형법(2021. 5. 6. 개정법률)	번역
<p>Trade secret</p> <p>391 (1) Everyone commits an offence who, by deceit, falsehood or other fraudulent means, knowingly obtains a trade secret or communicates or makes available a trade secret.</p> <p>Marginal note:Trade secret — prior knowledge</p> <p>(2) Everyone commits an offence who knowingly obtains a trade secret or communicates or makes available a trade secret knowing that it was obtained by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under subsection (1).</p> <p>Marginal note:Punishment</p> <p>(3) Everyone who commits an offence referred to in subsection (1) or (2) is guilty</p> <p>(a)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is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14 years; or</p> <p>(b) of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p> <p>Marginal note:For greater certainty</p> <p>(4) For greater certainty, no person commits an offence under subsection (1) or (2) if the trade secret was obtained by independent development or by reason only of reverse engineering.</p> <p>Marginal note: Definition of trade secret</p> <p>(5) For the purpose of this section, trade secret means any information that</p> <p>(a) is not generally known in the trade or business that uses or may use that information;</p> <p>(b) has economic value from not being generally known; and</p> <p>(c) is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p>	<p>영업비밀</p> <p>제391조 (1) 기만, 허위 또는 기타 사기적 수단을 통해 고의로 영업비밀을 획득하거나 영업비밀을 전달, 제공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p> <p>영업비밀에 대한 사전 인식</p> <p>(2) 누구든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에 의해 획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영업비밀을 획득하거나 전달, 제공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p> <p>처벌</p> <p>(3) 제1항 또는 제2항에 언급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은 유죄이다.</p> <p>(a) 해당 행위는 기소가능한 범죄로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p> <p>(b) 해당 행위는 약식판결로 처리될 수 있다.</p> <p>예외</p> <p>(4)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되는 것이 독립적인 개발이나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 획득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p> <p>영업비밀의 정의</p> <p>(5) 이 조의 목적 상 영업비밀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한다.</p> <p>(a)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거래 또는 비즈니스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p> <p>(b)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p> <p>(c)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취해진 경우</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15 장

태국

법령요약

● 상표법(Trademark Act B.E.2534) (2016. 시행)

태국 상표법	내용
	(제1조~제5조) 법률명, 연혁, 정의, 기초사실
제1장 상표	(제6조~제79조) 상표출원, 등록, 우선권, 출원공고, 심사, 상표등록의 변경, 상표등록의 갱신, 라이선스
제2장 서비스표 및 증명표장	(제80조~제93조) 서비스표, 증명표장의 등록 등
제3장 단체표장	(제94조) 단체표장의 준용
제4장 상표권	(제95조~제102조) 상표위원회, 권한과 의무, 이사회 등
제5장 기타	(제103조~제106quarter조)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
제6장 벌칙	(제107조~제116조) 벌칙, 양벌규정, 금지청구, 몰수 등
	수수료

●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2015. 2. 6. 시행)

- 태국의 영업비밀보호법은 2002년에 제정(Trade Secrets Act B.E. 2545)되어 2015년 2월 6일에 개정함(Trade Secrets Act (No. 2) B.E. 2558)
- 개정법은 영업비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공무원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패널티를 축소함

태국 영업비밀보호법	내용
	(제1조~제3조) 법률명, 시행일, 정의
제1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5조~제10조) 영업비밀 소유자의 권리, 침해행위, 중재 및 조정
제2장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절차	(제11조~제14조) 금지명령, 파기 및 몰수 명령, 입증책임, 손해배상
제3장 국가기관에 의한 영업비밀의 관리	(제15조) 영업비밀의 비밀 관리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
제4장 영업비밀 위원회	(제16조~제26조) 영업비밀 위원회의 구성, 임기, 임기 종료사유, 권한 및 의무
제5장 소관 담당자	(제27조~제30조) 소관 담당자의 권한 및 직무

주요내용

● 상표법상 부정경쟁행위

- 태국은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으며, 따라서 등록상표에 대응하여 금지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와 유사한 조항을 발견할 수 있을 뿐임
-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소유자 또는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유발하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됨
- 등록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 등을 사용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단 이는 등록상표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엄격히 말하면 부정경쟁행위(우리법 2조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 등록상표 침해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별도의 손해배상 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이 특이함

● 영업비밀의 정의 및 보호

-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그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자가 아직 접근할 수 없는 거래 정보를 의미하며, 상업적 가치는 그 비밀성에서 비롯되고, 이는 영업비밀의 관리자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의미(제3조)
- 영업비밀 소유자는 영업비밀의 공개, 박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인에 이를 위한 허가를 부여할 수 있음(제5조)

● 영업비밀 침해행위

- 영업비밀의 침해는 정직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소유주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공개, 박탈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침해자가 해당 행위가 정직한 거래 관행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했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침해행위가 성립(제6조 제1항)
- 정직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행위는 계약의 위반, 기밀의 침해 또는 침해 유인, 뇌물, 강압, 사기, 절도, 장물 수수, 전자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간첩 행위를 포함(제6조 제2항)
- 단, 거래를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자가 거래상대자의 영업비밀 침해를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한 경우와 국가기관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공개한 경우, 연구자의 발명 또는 개발 방법에 의한 독자적인 발견,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의 경우는 침해로 보지 않음(제7조)

● 민사 구제절차

- (잠정조치 및 금지청구)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영구적 금지명령 청구 가능(제8조)
- (징벌적 손해배상) 법원은 영업비밀 소유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추가하여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으며,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2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제13조)

● 형사처벌

- 영업비밀 소관 담당자의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하며, 소관 담당자에게 합당한 협조를 하지 않는 자는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음(제31조~제32조)
- 타인의 영업에 손해를 끼칠 악의적인 목적으로 문서, 오디오, 비디오 방송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함(제34조)
- 통상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동 법에 따른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조사·소송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음(제35조)

● 입증책임의 전환

-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에서 영업비밀 관리자(원고)가 피고의 제조 제품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함(제12조)

● 영업비밀 위원회

- (구성) 상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식재산청 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농림부 장관 및 식품의약청 청장과 관련 분야의 민간 부문 전문가 등으로 구성(제16조)
- (기능) 영업비밀 관련 정책 및 조치에 대한 의견 제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자문 제공, 영업비밀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수행 등(제21조)
- (권한) 직무 수행을 위해 심문, 문서 제출,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하여 개인을 소환할 수 있음(제23조)

법령비교표

● 상표법(Trademark Act B.E.2534) (2016. 시행)

태국 상표법(Trademark Act 2016)	번역
<p>Section 8 Trademarks having or consisting of any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shall not be registrable:—</p> <p>(6) national emblems and flags of foreign states, emblems and flag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mblems of head of foreign states, official emblems and quality control and certification of foreign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ames and monograms of foreign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less permission is given by the competent officer of the foreign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p> <p>(10) a mark registered or not, which is identical with a well-known mark as prescribed by the Ministerial Notifications, or so similar thereto that the public might be confused as to the owner or origin of the goods;</p>	<p>제 8조 다음 특성을 갖거나 구성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p> <p>(6) 외국의 국가휘장 또는 깃발, 국제기구의 휘장 또는 깃발, 외국 원수의 휘장, 국제조직의 공식 휘장 및 품질관리 인증, 외국 및 국제조직의 이름, 모노그램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담당자가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p> <p>(중략)</p> <p>(10) 각료 통지에 의해 규정된 등록된 유명상표 또는 등록되지 않은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여 일반 대중이 상품의 소유자 또는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경우 (이하 생략)</p>
<p>Section 106bis In performing his duties under this Act, the Registrar or competent officer shall have the following powers:</p> <p>(1) To enter the place of business, place of production, place of distribution, place of purchasing and place of storage of any business operator or person, or any place in which he has a reasonable ground for suspecting that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is likely to occur, or to enter a vehicle of any person, or order the owner or operator of a vehicle to stop or park to make inspection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or to make a search or seizure of evidence or property forfeitable under this Act, or to arres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p> <p>(a) where a flagrant offence is being committed in a place or vehicle;</p> <p>(b) a person having committed a flagrant offence has, while being pursued, taken refuge or there is a serious ground for suspecting that such person is concealing in the place or vehicle;</p> <p>(c) where there is a reasonable ground for suspecting that evidence or property forfeitable under this Act is kept in the place or vehicle, having a legitimate reason to believe that by reason of the delay in obtaining a warrant of search the evidence or property is likely to be removed, concealed, destroyed or altered from its original conditions;</p> <p>(d) when a person to be arrested is the owner of the place or vehicle and the arrest is made with a warrant of arrest or can be made without such a warrant. (이하 생략)</p>	<p>제106bis조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등록관 또는 관할 공무원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p> <p>(1) 이 법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법의 위반이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장소(사업장, 생산지, 유통지, 구매 및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검사 또는 증거, 재산의 수색 또는 압수하는 행위,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거나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정지 또는 주차를 명령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 :</p> <p>(a) 해당 장소나 차량에서 명백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경우</p> <p>(b) 명백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추적 중에 피신했거나 그러한 사람이 해당 장소 또는 차량에 은폐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심각한 근거가 있는 경우</p> <p>(c) 이 법에 따라 몰수할 증거나 재산이 그 장소나 차량에 보관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원래 상태에서 제거, 은폐, 파괴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d) 체포될 사람이 장소 또는 차량의 소유자이고 그 체포가 체포영장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영장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이하 생략)</p>
<p>Section 109 Any person who imitates a trademark, service mark, certification mark or collective mark registered in the Kingdom by another person in order to</p>	<p>제109조 다른 사람이 왕국에 등록된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또는 단체표장을 모방하여 대중이 해당 타인의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단체표장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p>

태국 상표법(Trademark Act 2016)	번역
mislead the public into believing that it is the trademark, service mark, certification mark or collective mark of such other person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two years or a fine of not exceeding two hundred thousand baht or both.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Section 116 If there is clear evidence someone is committing or is about to commit an act under Section 108, 109 or 110, the owner of the trademark, service mark, certification mark or collective mark may apply to the court to stop or refrain from such act.	제116조 누군가가 이 법 제108조,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행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단체표장의 소유자는 법원에 그러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자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2015. 2. 6. 시행)

태국 개정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2015) ²²⁾	번역
His Majesty King Bhumibol Adulyadej is graciously pleased to proclaim that: Whereas it is expedient to enact the law on trade secrets: Being aware that this Act contains certain provisions restricting the rights and liberties of persons, in respect of which Section 29, in conjunction with Section 31 Section 35 Section 48 and Section 50 of 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so permit by virtue of law; Be it, therefore, enacted by His Majesty the King,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s follows: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편리하다. 동 법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태국 왕국 헌법 제31조, 제48조, 제50조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허용된다. 따라서 국왕은 국회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Section 1 This Act shall be called the "Trade Secrets Act B.E. 2545".	제1조 이 법은 '영업비밀보호법 B.E 2545'라고 부른다.
Section 2 This Act shall come into force after the expiry of ninety days from the date of its publication in the Government Gazette.	제2조 이 법은 관보에 공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Section 3 Under this Act: "Trade Secrets" means trade information not yet publicly known or not yet accessible by persons who are normally connected with the information. The commercial values of which derive from its secrecy and that the controller of the trade secrets has taken appropriate measures to maintain the secrecy. "Trade information" means any medium that conveys the meaning of a statement, facts, or other information irrespective of its method and forms. It shall also include formulas, patterns, compilations or assembled works, programs, methods, techniques, or processes. "Manufacture" means making, mixing, compounding or transforming. It shall also include the changing of form or division for packaging. "Sale" means disposing, distributing, giving or exchanging for commercial purposes. It shall also include possession with the intent to sell. "Drug" means any drug under the law governing drugs.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 means any chemical	제3조 '영업비밀'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그 정보와 연결되어 있는 자가 아직 접근할 수 없는 거래 정보를 의미한다. 상업적 가치는 그 비밀성에서 비롯되며, 이는 영업비밀의 관리자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의미한다. '영업 정보(Trade information)'란 방법 및 형태에 관계없이 진술, 사실 또는 기타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는 모든 매체를 의미한다. 이는 또한 공식, 패턴, 편집 또는 조합된 작품, 프로그램, 방법, 기술 또는 과정을 포함한다. '생산'은 제조, 혼합, 합성 또는 변환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포장 을 위한 형태의 변형 또는 분할을 포함한다. '판매'는 상업적 목적으로 처분, 배포, 제공 또는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판매할 의도로 소유하는 것도 포함한다.

태국 개정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2015) ²²⁾	번역
<p>product used for agricultural purposes including chemical products used in sterilizing or repelling of insects animals or plants that may cause damage to agriculture.</p> <p>“Owner of Trade Secrets” means the person who discovered, invented, compiled or created the trade information that is a trade secret without infringing someone else’s trade secrets or infringing the rightful holder of the testing result or trade information that is a trade secret. It shall also include the transferee under this Act.</p> <p>“Controller of Trade Secrets” means the owner of trade secrets. It shall also include the possessor, controller, or caretaker of the trade secrets.</p> <p>“Court” means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under the legislation gov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and its procedure.</p> <p>“Board” means the Trade Secrets Board.</p> <p>“Member” means member of the Trade Secrets Board.</p> <p>“Competent Officer” means any person appointed by the Minister to perform the duties under this Act.</p> <p>“Director General” mean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t shall also include any person assign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p> <p>“Minister” means the Minister who is in charge of this Act.</p>	<p>“약물”은 마약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약물을 의미한다.</p> <p>“농화학제품”은 농업에 피해를 주는 곤충 또는 식물의 방역 또는 퇴치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포함하여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화학제품을 의미한다.</p> <p>“영업비밀 소유자”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시험 결과 또는 영업비밀인 영업 정보의 적법한 소유자를 침해하지 않고, 영업비밀인 영업 정보를 발견, 발명, 편집, 창조한 자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는 이 법에서의 양수자를 포함한다.</p> <p>“영업비밀 관리자”는 영업비밀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영업비밀의 소유자, 통제자, 관리자가 포함된다.</p> <p>“법원”은 지식재산 및 국제무역 법원의 설립과 그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재산 및 국제무역 법원을 의미한다.</p> <p>“위원회”는 영업비밀위원회를 의미한다.</p> <p>“구성원”은 영업비밀위원회의 구성원을 의미한다.</p> <p>“소관 담당자”는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관이 임명한 자를 의미한다.</p> <p>“청장”은 지식재산청 청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식재산청 청장이 임명한 사람도 포함된다.</p> <p>“장관”은 이 법을 담당하는 장관을 의미한다.</p>
<p>Section 4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 the Minister of Commerce and the Minister Public Health shall take charge of this Act and have the power to appoint officers, issue Ministerial Regulations and Rules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in relation to their responsibilities.</p> <p>The said Ministerial Regulations and Rules shall take effect after the publication in the Government Gazette.</p>	<p>제4조 농업협동조합부 장관, 상무부 장관, 보건부 장관이 이 법을 관장하며, 책임과 관련하여 이 법의 이행을 위한 담당자를 임명하고 장관 규정 및 규칙을 공포할 권한을 가진다.</p> <p>위의 장관 규정 및 규칙은 관보에 게재된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p>
<p>Chapter I Protection of Trade Secrets</p>	<p>제1장 영업비밀의 보호</p>
<p>Section 5 Trade secrets are transferable. The trade secrets owner is entitled to disclose, deprive of, or use the trade secrets, or license someone else to disclose, deprive of, or use the trade secrets. He may also stipulate any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secrecy. The transfer of trade secrets under paragraph one, except by way of inheritance, shall be made in writing signed by the transferor and transferee. If no time period is specified in the contract, it shall be deemed to cover a period of ten years.</p>	<p>제5조 영업비밀은 양도가 가능하다. 영업비밀 소유자는 영업비밀의 공개, 박탈,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영업비밀을 공개, 박탈,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비밀 유지에 관한 모든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양도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면으로 한다. 계약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Section 6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 rights under this Act are the act of disclosure, deprivation or usage of trade secre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in a manner contrary to honest trade practices. In so doing, the infringer must be aware of or has reasonable cause to be aware that such act is contrary to honest trade practices.</p> <p>Acts contrary to honest trade practices under paragraph</p>	<p>제6조 이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침해는 정직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소유주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공개, 박탈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침해자는 그러한 행위가 정직한 거래 관행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p> <p>제1항의 정직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행위는 계약의 위반, 기밀의</p>

태국 개정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2015) ²²⁾	번역
<p>one shall include breach of contract, infringement or inducement to infringe confidentiality, bribery, coercion, fraud, theft, receiving of stolen property or espionage through electronics or other means.</p>	<p>침해 또는 침해 유인, 뇌물, 강압, 사기, 절도, 장물 수수, 전자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간첩 행위가 포함된다.</p>
<p>Section 7 Any of the following acts against trade secrets shall not be considered an infringement: (1) Disclosure or use of trade secrets by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trade secrets through a transaction without knowing or having reasonable cause to know that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obtained the trade secrets through the infringement thereof. (2) Disclosure or use of trade secrets by state agenc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ir maintenance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When it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safety; or, (b) When it is necessary for the benefit of other public interests with no commercial purpose. In such case, the state agenc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trade secrets, or other state agency or person concerned who has access to the trade secrets has taken reasonable steps for the protection of the trade secrets from being used in unfair trading activities. (3) Independent discovery i.e. discovery of a trade secret belonging to others by the researcher's own method of invention or development through his own expertise; or, (4) Reverse engineering i.e. discovery of a trade secret belonging to others by means of evaluation and analysis of a widely-known product with the intention to discover the method by which such product is invented, manufactured or developed, provided that the product was obtained in good faith by the person who conducted the evaluation and analysis. The act under (4) cannot be raised as a justification if the person who conducted reverse engineering expressly agreed otherwise with the owner of trade secrets or seller of the product.</p>	<p>제7조 영업비밀에 대한 이하의 행위는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p> <p>(1) 거래를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거래 상대방이 그 침해를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p> <p>(2) 다음의 상황에서 유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영업비밀의 공개 또는 사용: (a) 공중 보건 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b) 상업적 목적이 없고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 영업비밀 유지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국가기관 또는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당사자는 불공정거래 활동에 영업비밀이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p> <p>(3) 독자적인 발견, 즉 연구자 자신의 발명 또는 개발 방법에 의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발견한 경우</p> <p>(4) 리버스 엔지니어링(Remove Engineering), 즉 널리 알려진 제품의 발명, 제조 또는 개발 방법을 발견할 의도로,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한 사람이 선의로 획득한 제품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발견한 경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사람이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와 달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제4항에 따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p>
<p>Section 8 Where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an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has been committed or is imminent, the affected or imminently to be affected controller of trade secrets has the following remedies: (1) Petition the court for an interim injunction, temporarily to stop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d, (2) File an action in the court for a permanent injunction, permanently to stop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d claim damages from the wrongdoer. The petition under (1) may be filed prior to the action under (2).</p>	<p>제8조 영업비밀 침해가 행해졌거나 예정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 관리자는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경우에 이하의 조치를 취한다.</p> <p>(1) 영업비밀 침해의 일시적인 중지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명령을 청구한다. 또한, (2) 영업비밀 침해를 중지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영구적 금지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p> <p>(1)에 따른 청구는 (2)에 따른 조치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p>
<p>Section 9 Before taking any action under Section 8, the controller of trade secrets who is affected or imminently to be affected by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d the other party may agree to submit the dispute concerning trade secrets to the Board for conciliation or mediation. However, such submission shall not prejudice the right of either party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p>	<p>제9조 제8조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영업비밀 관리자와 상대방은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해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 단, 조정이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관할 법원에서 중재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p>

태국 개정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2015) ²²⁾	번역
<p>arbitration or litigation in the competent court should the conciliation or mediation fail to settle the dispute. The filing of request and procedure for conciliation or mediation of the Board under paragraph one shall be governed by the rules and methods prescribed in the Ministerial Regulation.</p>	<p>제1항에서 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한 요청 및 절차는 장관 규칙에 규정된 규칙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p>
<p>Section 10 No cases of trade secrets infringement shall be brought after three years from the date where the controller of trade secrets knows of the infringement and of the infringer, however, the period shall not exceed ten years from the date of infringement.</p>	<p>제10조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영업비밀 관리자가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침해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Chapter II Procedure for Trade Secrets Infringement</p>	<p>제2장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절차</p>
<p>Section 11 Where the controller of trade secrets files an action for injunction under Section 8(2), and the court finds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bu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where injunction should not be granted, the court may order the infringer to pay appropriate compensation to the controller of trade secrets and set appropriate time period for the use. In case where the court grants an injunction under Section 8(2) stopping further infringement of the trade secrets, and if at a later stage, the trade secrets have been disclosed to the public or have ceased to be trade secrets, the person enjoined by the court can file a petition to have the order rescinded. In an action for injunction under Section 8(2), the controller of trade secret may request the court to order the destruction or confiscation of materials, apparatus, tools or other equipments used in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The products that are manufactured by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and are still vested in the ownership of the infringer shall be vested with the State or with the controller of trade secrets as so ordered by the court. In case where the possession of such product is illegal, the court may order its destruction.</p>	<p>제11조 영업비밀 관리자가 제8조 제2항에 따른 금지명령을 청구한 후,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발견하였으나 금지명령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 법원은 침해자로 하여금 영업비밀 관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사용을 위한 적정 기간을 설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p> <p>법원이 제8조 제2항에 따라 영업비밀의 추가적인 침해를 중지하는 금지명령하고, 추후 영업비밀이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영업비밀이 중단된 경우 청구인은 법원에 해당 명령을 철회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p> <p>제8조 제2항에 따른 금지명령 청구에서 영업비밀 관리자는 영업비밀 침해에 사용된 재료, 장비, 도구 또는 기타 장비의 파기 또는 몰수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p> <p>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제조되고 침해자에게 귀속된 제품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가 또는 영업비밀 관리자에게 귀속된다. 해당 제품의 소지가 불법인 경우, 법원은 파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p>
<p>Section 12 In a civil suit filed by the controller of trade secrets for an infringement of manufacturing process that is a trade secret, unless the contrary can be proved by the defendant,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 defendant infringes the alleged trade secrets in manufacturing the product, if the controller can prove that the product manufactured by the defendant is the same as the product produced by using the controller's trade secrets.</p>	<p>제12조 영업비밀인 제조 공정의 침해로 인해 영업비밀 관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영업비밀 관리자가 피고가 제조한 제품이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피고가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가 제조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p>
<p>Section 13 In determining the measure of damages where an action under Section 8 (2) has been filed, the court is empowered to apply the following rules: (1) In addition to the damages for the actual damage suffered, the court may include in the damages for the plaintiff, account of profits accrued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fringement by the infringer. (2) In case where the court is unable to measure the damages under (1), it may order such amount of</p>	<p>제13조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어 손해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의 규칙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p> <p>(1) 법원은 실제로 입은 손해에 추가하여 침해자의 침해 또는 침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을 포함할 수 있다.</p> <p>(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비밀 관리자에게 그 손해액을</p>

태국 개정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2015) ²²⁾	번역
<p>damages to the controller of trade secrets, as it deems appropriate.</p> <p>(3) In case where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is conducted willfully or maliciously causing the trade secrets to cease the quality of secrecy, the court is empowered to order the infringer to pay punitive damages in addition to the amount of damages granted under (1) and (2). However, the punitive damages shall not exceed two times the amount of damages under (1) or (2).</p>	<p>명할 수 있다.</p> <p>(3)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기밀성을 저하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손해배상액 외에 침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단,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Section 14. In addition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enforcement of rights through court for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the procedure for trade secret litig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egislation establish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and its procedure.</p>	<p>제14조 이 법률의 규정에 더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원의 권리 집행 및 소송 절차는 지식재산 및 국제무역 법원 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절차를 따른다.</p>
<p>Chapter III Maintenance of Trade Secrets by State Agencies</p>	<p>제3장 국가기관에 의한 영업비밀의 관리</p>
<p>Section 15 In cases where the law requires the applicant for a permit to manufacture, import, export or sale of drugs or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with new chemical substance to file information supporting the permit; and if such information, either wholly or in part is trade secrets in the form of testing result, or other information regarding its preparation, discovery or creation which has involved in a great deal of effort, and the applicant has requested the state agencies to maintain the trade secrets, the state agencies concerned shall have the duties to maintain the trade secrets from being disclosed, deprived of or used in unfair trading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Minister.</p> <p>The regulations under paragraph one shall, as minimum requirements, contain the following provisions:</p> <p>(1) Conditions of request submitted to state agencies for maintenance of trade secrets;</p> <p>(2) Details of testing result and information that is qualified as trade secrets;</p> <p>(3) Period of time for which trade secrets are to be maintained;</p> <p>(4) Method for maintenance of the trade secret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ype of technology and testing result or confidential information; and,</p> <p>(5) Duties and liabilities of state officials in the maintenance of trade secrets.</p>	<p>제15조 법률에 따라 신규 화학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또는 농약 제품의 제조, 수입, 수출 또는 판매 허가를 위해 신청인에게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 제출을 요구할 때, 그러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험결과 형태의 영업비밀이거나 많은 노력을 요하는 준비, 발견 또는 창조에 관한 기타 정보이고 신청자가 국가기관에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관련 국가기관은 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활동에 의해 영업비밀이 공개, 박탈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p> <p>제1항에 따른 규정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에 제출한 요청 조건</p> <p>(2) 실험 결과의 세부내용 및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정보</p> <p>(3) 영업비밀의 보호 기간</p> <p>(4) 기술의 유형 및 실험 결과 또는 비밀 정보를 고려한 영업비밀의 유지 방법, 또한</p> <p>(5)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국가기관의 의무 및 책임</p>
<p>Chapter IV The Trade Secrets Board</p>	<p>제4장 영업비밀 위원회</p>
<p>Section 16. There shall be a board called "Trade Secrets Board" comprising of</p> <p>(1) the Permanent Secretary of the Ministry of Commerce as the Chairperson;</p> <p>(2)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s the Deputy Chairperson;</p> <p>(3) the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p>	<p>제16조 다음과 같이 '영업비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1) 위원장으로 상무부 차관</p> <p>(2) 부위원장으로 지식재산청 청장</p> <p>(3) 위원으로 농림부 장관 및 식품의약품청 청장</p>

태국 개정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2015) ²²⁾	번역
<p>an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s members;</p> <p>(4) Qualified members appointed by the Cabinet from persons having knowledge, capability, expertise and experience in agriculture,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law, commerce, medicine, pharmacology, science, engineering, economics, industry or other fields useful for the execution of this Act, at least six of whom shall come from the private sector.</p> <p>The Board shall appoint government officials of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s the Secretary and the Assistant Secretary.</p>	<p>(4) 농업, 정보기술 및 통신, 법률, 상업, 의학, 약학, 과학, 공학, 경제, 산업 또는 이 법의 시행에 유용한 기타 분야의 지식, 능력,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내각이 임명하는 자를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하며, 그 중 최소 6인은 민간 부문 출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p> <p>위원회는 지식재산청의 공무원을 서기관 및 서기관보로 임명하여야 한다.</p>
Section 17 (Repealed)	제17조 (삭제)
<p>Section 18 A qualified member shall hold office for a term of four years.</p> <p>Where a qualified member vacates offic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erm, or where the Cabinet appoints an additional member during the term of the previously appointed members, the replacement member or the additional member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ing term of the previously appointed members.</p> <p>At the expiration of the term under paragraph one, if a new qualified member has not been appointed, the qualified member whose term of office has expired shall continue to hold office to further perform until a newly appointed qualified member performs duties.</p> <p>A qualified member who vacates office upon the expiration of the term may be re-appointed but may not hold office for more than two terms</p>	<p>제18조 자격을 갖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한다.</p> <p>자격을 갖춘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내각이 임기 중에 추가적으로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교체된 위원 또는 추가된 위원은 먼저 임명된 위원의 잔여 임기동안 수행한다.</p> <p>제1항의 임기 만료 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기존 임원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p> <p>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퇴임하는 위원은 재임명될 수 있으나 2회를 초과하여 재임할 수는 없다.</p>
<p>Section 19 Apart from vacating office at the expiration of the term, a qualified member shall vacate office upon</p> <p>(1) death;</p> <p>(2) resignation;</p> <p>(3) dismissal by the Cabinet;</p> <p>(4) malfeasance or dishonesty or incapability;</p> <p>(5) being bankrupt;</p> <p>(6) being incompetent or quasi-incompetent;</p> <p>(7) imprisonment under a final imprisonment sentence unless for an offence of negligence or for a petty offence.</p>	<p>제19조 자격을 갖춘 위원은 임기 만료 외에도 이하의 사유에 따라 임기가 종료된다.</p> <p>(1) 사망</p> <p>(2) 사임</p> <p>(3) 내각에 의한 해임</p> <p>(4) 불법행위나 불성실 또는 무능력</p> <p>(5) 파산</p> <p>(6)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7) 과실 또는 경범죄가 아닌 징역형 선고에 따른 징역</p>
<p>Section 20 At a meeting of the Board, the presence of not less than one-half of the total number of the members is required to constitute a quorum.</p> <p>The Chairperson shall preside over the meeting. Where the Chairperson does not attend the meeting or is unable to perform duties, the Deputy Chairperson shall preside over the meeting. If the Chairperson and the Deputy Chairperson do not attend the meeting or are unable to perform duties, the members present shall select one of them to preside over the meeting.</p> <p>Decisions at a board meeting shall be by a majority of votes. Each member shall have one vote. In case of a tied vote, the presiding Chairperson shall have an additional casting vote.</p> <p>Any member having an interest in the matter being</p>	<p>제20조 위원회 회의에서 정족수 채우기 위해서는 총 인원의 1/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p> <p>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의장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한 위원들은 한 명을 선택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위원회에서의 결정은 과반수 득표로 한다. 각 위원은 1표씩 행사한다. 거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 위원장은 추가적인 결정권을 갖는다.</p> <p>심의 중인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p>

태국 개정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2015) ²²⁾	번역
considered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meeting in such matter.	
<p>Section 21 The Board shall have the following powers and duties:</p> <p>(1) Present its views on policies and measures for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s well as policies on trade secrets aspects of transfer of technology to the Minister of Commerce for submission to the Cabinet.</p> <p>(2) Give advice and consultation to the Minister in relation to the issuance of Ministerial Regulations and other regulations under this Act.</p> <p>(3) Conduct conciliation or mediation involving trade secret disputes as requested by the parties.</p> <p>(4) Perform other functions within the scope of its duties as prescribed by law.</p>	<p>제21조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p> <p>(1) 내각에 제출하기 위하여 상무부 장관에게 기술이전의 영업비밀 관련 정책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p> <p>(2) 이 법에 따라 장관 규정 및 기타 규정의 제정과 관련하여 장관에게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한다.</p> <p>(3)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영업비밀 분쟁과 관련된 조정 또는 중재를 수행한다.</p> <p>(4) 법률이 정하는 직무 범위 내에서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p>
<p>Section 22 The Board may appoint a sub-committee to consider, make decision, or perform any duty, as it shall assign. The provisions of Section 2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eting of the sub-committee.</p>	<p>제22조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임명하여 심의, 결정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위원회 회의는 제20조 규정을 준용한다.</p>
<p>Section 23 Except in the case of Section 21(3), in performing the duties under this Act, the Board has the power to subpoena any person for questioning, submitting of documents or any materials necessary for its consideration.</p> <p>The order under paragraph one shall state clearly the matter under consideration for which the Board requires the information, documents or materials requested.</p>	<p>제23조 제21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심문, 문서 제출 또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 개인을 소환할 권한이 있다.</p> <p>제1항에 따른 명령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 문서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고려중인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p>
<p>Section 24 Any subpoena, notifications or communications in writing, sent under this Act shall be effected by registered mail with receipt addressed to the domicile, place of residence or business of the recipient, or by any other means to be determined by the Board.</p> <p>If the delivery cannot be effec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one, or the recipient has left the Kingdom, the delivery shall be effected by posting the same at a clearly visible site at the domicile, place of residence or business, or at the house where the recipient's name last appears in the house registration under the law governing civil registration, or by publication in the newspaper in that locality.</p> <p>When the above-mentioned means of delivery has been effected, it shall be deemed that the recipient has received the message.</p> <p>The method of service of subpoenas, notifications, or communications and the right of objection of any interested person shall be governed by the regulations to be determined by the Board and published in the Government Gazette.</p>	<p>제24조 이 법에 따라 발송되는 모든 소환장, 통지, 또는 통신은 수취인의 주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가 있는 등기우편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p>제1항에 따른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취인이 왕국을 떠난 경우, 배송은 수취인의 이름이 시민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등록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주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기록되거나 해당 지역 신문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p> <p>상기 전달수단이 성립한 때에는 수취인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p> <p>소환장, 통지, 통신의 서비스 방법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은 위원회가 결정하고 관보에 공포된 규정에 따른다.</p>
<p>Section 25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the general powers and duties to perform concerning trade secrets under this Act, and in particular to be responsible for administration, meetings, research, and other activities of the Board. It shall also have the</p>	<p>제25조 지식재산청은 이 법에 따라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수행할 일반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특히 위원회의 관리, 회의, 연구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위원회의 결정을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이 법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 조정하고, 위원회가 부여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p>

태국 개정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2015) ²²⁾	번역
powers and duties to execute the Board's resolutions, to coordinate with other relevant entities concerning the performance of duties under this Act and to perform other functions assigned by the Board.	
Section 26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under this Act, the Board members shall be the competent officers under the Penal Code.	제26조 이 법에 따른 직무 수행 시, 위원회 위원은 형법에 따른 소관 담당자가 된다.
Chapter V Competent Officer	제5장 소관 담당자
<p>Section 27 In performing his duty concerning a criminal case under this Act, a competent officer shall have the following powers:</p> <p>(1) Enter a building, place of business, place of manufacture, place of storage, or any vehicle for search or inspection during sunrise and sunset or its business hours, where there is reasonable doubt that certain objects were obtained or produced by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or were used in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under this Act, and there is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the documents or objects relating to the offence shall be removed or destroyed as a result of delay in obtaining a search warrant.</p> <p>(2) Seize or attach any documents or objects relating to an offence for no longer than three months, for the purpose of a legal action in case where there is reasonable suspicion that an offence under this Act has been committed.</p>	<p>제27조 이 법에 따라 형사 사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p> <p>(1) 특정 물건이 범죄에 의해 획득 또는 생산되었거나 이 법에 따른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또한 수색영장 획득이 지연됨에 따라 범죄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이 제거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일출 및 일몰 또는 영업시간 내에 수색 또는 검사를 위해 건물, 사업장, 제조 장소, 보관 장소 또는 차량에 진입한다.</p> <p>(2) 이 법에 따른 범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목적으로 3개월 이내의 범죄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압류하거나 첨부한다.</p>
Section 28 In carrying out its duties, the competent officer shall be accorded with reasonable cooperation from the persons involved.	제28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관 담당자는 관련자의 합당한 협조를 받아야 한다.
<p>Section 29 In carrying out its duties under Section 27, the competent officer shall present his identity card to the persons involved.</p> <p>The identity card under paragraph one shall be in the form prescribed by the Minister as published in the Government Gazette.</p>	<p>제29조 제27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관 담당자는 신분증을 관련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제1항의 신분증은 관보에 공표된 바와 같이 장관이 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p>
Section 30 In carrying out its duties under this Act, the competent officer shall be considered an official under the Criminal Code.	제30조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관 담당자는 형법상의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Chapter VI Penalties	제6장 벌칙
Section 31 Whosoever obstructs the action of a competent officer under Section 27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or fine not exceeding twenty thousand baht, or both.	제31조 제27조에 따른 소관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한다.
Section 32 Whosoever not giving reasonable cooperation to the competent officer in carrying out its duties under Section 28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month, or fine not exceeding two thousand baht, or both.	제32조 제2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관 담당자에게 합당한 협조를 하지 않는 자는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한다.
Section 33 Whosoever discloses a trade secret of other person to the public in the manner which causes the	제33조 문서, 오디오, 비디오 방송을 통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여 영업비밀 관리자의 영업에 손해를 끼칠 악의적인 의도로 영업

태국 개정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2015) ²²⁾	번역
<p>trade secret to cease as a secret, with malicious intent to cause damage to the business of the controller of trade secrets, whether by publication through documents, audio or video broadcasting, or disclosure by any other means,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or fine not exceeding two hundred thousand baht, or both.</p>	<p>비밀을 중지시키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한다.</p>
<p>Section 34 Any person, by his or her position to maintain trade secret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prescribed under Section 15 paragraph one, unlawfully disclosing or using such trade secrets for his or her or other persons' benefits,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wo hundred thousand baht, or both.</p>	<p>제34조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한다.</p>
<p>Section 35 Any person disclosing certain facts concerning the business of the controller of trade secrets which should normally be kept confidential and which he or she has obtained or known in the course of the performance of duties under this Act, shall be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one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thousand baht, or both, except for disclosure in the course of an official duty or for the purpose of an investigation or legal proceedings. Any person obtaining or knowing certain facts from the person under paragraph one in the course of an official duty or investigation or legal proceedings, discloses such facts shall be similarly liable. Whosoever discloses facts, which have been obtained or aware of as a result of his engagement in official duty, investigation or legal proceedings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liability.</p>	<p>제35조 통상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알게 된 영업비밀 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특정 사실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한다. 단, 공무 중에 공개하거나 조사 또는 법적 절차를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공무, 조사 또는 소송 과정에서 제1항의 자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취득하거나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책임을 진다.</p> <p>공무·수사·소송절차에 관여하여 취득하거나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는 자도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p>
<p>Section 36 If the offender is a legal entity and the offence is committed through the instruction, act, non-instruction or omission that is the duty of the director, manager, or any person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legal entity, such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iability prescribed for such offence.</p>	<p>제36조 범죄자가 법인이고 이사, 관리자 또는 법인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의무인 지시, 작위, 비지시 또는 부작위를 통해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 규정된 책임을 진다.</p>
<p>Section 37 The offence under Section 33 and Section 36 is a compoundable offence.</p>	<p>제37조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른 범죄는 합의가 가능한 범죄(compoundable offence)이다.</p>
<p>Section 38 The Board has the authority to settle the offence under Section 33 and Section 36 by imposing a fine on the offender. In this respect the Board shall have the power to assign a sub-board, the Director-General, an inquiry official, or a competent officer to settle the offence by stipulating settlement rules or conditions for the assignee, as it deems appropriate. Subject to paragraph one, if the inquiry official in an investigation finds that a person commits an offence under this Act and such person consents to settle the offence, the inquiry official shall forward the matter to the Board or the person assigned by the Board for settlement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that such person expresses his consent to settle.</p>	<p>제38조 위원회는 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른 범죄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수인(assignee)에 대한 합의 규칙이나 조건을 규정하여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원회, 조정관, 문의 담당자, 소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p> <p>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그 범죄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경우, 조사 담당자는 동의를 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태국 개정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s Act 2015) ²²⁾	번역
<p>Upon payment of a fine in the amount stipulated in the settlement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the case shall be considered closed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Code.</p> <p>If the offender does not consent to the settlement, or after the consent, he fails to pay the fine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the case shall proceed.</p>	<p>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의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p> <p>범죄자가 합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을 진행하여야 한다.</p>
Transitional Provision	경과 규정
<p>Section 39 This Act shall not apply to the disclosure, deprivation or use of trade secrets prior to the coming into effect of this Act.</p> <p>The proprietor of goods, which were manufactured, imported or exported prior to the coming into effect of this Act and are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dispose of or export those goods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ct.</p>	<p>제39조 이 법은 이 법의 시행 전에 발생한 영업비밀의 공개, 박탈 또는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이 법의 시행 전에 제조, 수입 또는 수출되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물품의 소유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을 처분하거나 수출하여야 한다.</p>

22) 동 법률의 영문본은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의 비공식 번역본으로 정확한 내용은 공식 버전(태국어본)을 참조.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16 장

페루

법령요약

-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동체제를 수립하는 안데스공동체위원회의 결정 제486호에 대한 보완조항을 승인하는 입법령 제1075호 (Decreto Legislativo que aprueba Disposiciones Complementarias a la Decisión 486 de la Comisión de la Comunidad Andina que establece el Régimen Común sobre Propiedad Industrial, DECRETO LEGISLATIVO N° 1075)(2018)
 - 특허(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상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경쟁, 미공개 정보(영업비밀), 저작권 및 관련권리, IP 관련법률의 시행, 기술이전, IP 규제에 관한 내용을 망라
-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동체제를 수립하는 안데스공동체위원회의 결정 제486호 (Decision 486 – Common Regime on Industrial Property of The Andean Community Commission)
- 불공정경쟁 관한 입법령 제1044호 (Legislative Decree N° 1044 – Repression of Unfair Competition Law)
 - 경쟁 프로세스의 적절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는 실제 또는 잠재적 효과가 있는 불공정경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함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유사
 - 해당 법률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한 일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주요내용

- 영업비밀
 - (정의) 결정 제486호에서 영업비밀을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생산, 산업 또는 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는 비공개 정보는 ① 일반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집단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비밀일 것, ②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③ 합법적 소유자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 영업비밀 정보는 제품의 성격, 특성 또는 목적과 관련될 수 있으며, 생산방법, 공정, 제품의 배포, 마케팅, 서비스의 제공 수단의 형태 등을 망라함
 - 입법령 제1075호의 경우 제3조에서 영업비밀이 산업재산권의 요소를 구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입법령 1044호 제40조에서는 상업, 산업, 기술 또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
 - ※ 입법령 1044호에서의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조건

- ① 특정 객체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비공개 예정인 지식
- ② 해당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보호되며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보를 보존할 의지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
- ③ 상업적, 효과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을 것
- (양도) 결정 제486호 제264조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양도와 사용허가가 가능 (결정 제486호 제264조 :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소유한 자는 누구든지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승인된 제3자는 해당 비밀을 전송하거나 사용을 승인한 사람과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영업비밀 소유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가 영업비밀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 불공정 경쟁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벌금 등을 규정
 - ① 침해가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고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침해가 경미한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 최대 50 세금단위 (약 USD 63,236)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③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류되면 최대 250 세금단위 (약 USD 316,177)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④ 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류되면 최대 700 세금단위 (약 USD 885,29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영업비밀의 공동소유) 결정 제486호, 결정 제1075호, 결정 제1044호는 영업비밀의 공동소유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공동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
- (영업비밀 침해행위) (결정 제486호) a) 계약 또는 고용관계로 인한 의무에 따라 접근한 영업비밀을 정당한 소유자의 승인없이 착취하는 행위, b) 합법적인 소유자의 승인없이 개인적인 이익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상기 a)의 영업비밀을 전달, 또는 공개하는 행위, c) 불법적이거나 정직한 상업적 사용에 반하는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d) 앞서 c)에서 언급된 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의 재착취, 전달, 또는 공개, e)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의 착취, f) 개인적 이익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영업비밀의 정당한 소유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e)에 따라 획득한 영업비밀을 통신 또는 공개하는 행위 / (결정 제1044호) a) 소유자의 승인없이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접근한 기타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악용하는 행위, b) 간첩행위를 통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비밀준수의무 위반 또는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
- (영업비밀 침해 증거의 수집, 보존 조치) 영업비밀 소유자는 임시조치를 요청하여, 의심되는 범죄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잠정조치 및 구제조치) 페루의 법 등에서 주장된 침해를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 해당 법령에서 금지명령 및 기타 조치를 대신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손해배상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사법부에 요청하여야 함
- (비밀유지 의무) 결정 제1075호에 따르면 특허청 등이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받거나 입수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

법령비교표

●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동체제를 수립하는 안데스공동체위원회의 결정 제486호에 대한 보완조항을 승인하는 입법령 제1075호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동체제를 수립하는 안데스공동체위원회의 결정 제486호에 대한 보완조항을 승인하는 입법령 제1075호	번역
<p>Artículo 3.-Elementos constitutivos de la propiedad industrial Para efectos de el presente Decreto Legislativo, constituyen elementos de la propiedad industrial:</p> <p>a) Las patentes de invención;</p> <p>b) Los certificados de protección;</p> <p>c) Las patentes de modelos de utilidad;</p> <p>d) Los diseños industriales;</p> <p>e) Los secretos empresariales;</p> <p>f) Los esquemas de trazado de circuitos integrados;</p> <p>g) Las marcas de productos y de servicios;</p> <p>h) Las marcas colectivas;</p> <p>i) Las marcas de certificación;</p> <p>j) Los nombres comerciales;</p> <p>k) Los lemas comerciales; y</p> <p>l) Las denominaciones de origen</p> <p>m) Las indicaciones geográficas;</p> <p>n) Las especialidades tradicionales garantizadas (2018. 9. 7. 공포된 법령 1397호에 의해 수정)</p>	<p>제3조 (산업재산권의 구성요소) 이 법령의 목적상 산업재산권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p> <p>a) 발명 특허</p> <p>b) 보호 인증</p> <p>c) 실용신안 특허</p> <p>d) 산업 디자인</p> <p>e) 영업비밀</p> <p>f)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p> <p>g) 상표 및 서비스표</p> <p>h) 단체 상표</p> <p>i) 인증 마크;</p> <p>j) 상호</p> <p>k) 상업적 명칭</p> <p>l) 원산지 명칭</p> <p>m) 지리적 표시</p> <p>n) 전통특산물</p>
<p>Artículo 11.-Reserva y confidencialidad En caso de que la autoridad nacional competente reciba u obtenga información considerada confidencial, deberá, a solicitud del interesado, garantizar su reserva y confidencialidad de acuerdo con las normas de la materia.</p>	<p>제11조 (유보 및 기밀 유지) 권한있는 국가기관이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수신하거나 획득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요청 및 해당 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정보의 보유 및 기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p>
<p>TITULO X DISPOSICIONES RELATIVAS A DENOMINACIONES DE ORIGEN</p>	<p>제10장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조항</p>
<p>Artículo 88.-Denominaciones de origen El Estado Peruano es el titular de las denominaciones de origen peruanas y sobre ellas se concederán autorizaciones de uso.</p>	<p>제88조 (원산지 명칭) 페루는 페루 원산지표시의 소유자이며, 사용허가를 부여한다.</p>
<p>Artículo 89.-Impedimento Adicionalmente a lo establecido en el artículo 202 de la Decisión 486, no podrán ser declaradas como denominaciones de origen, aquellas que:</p> <p>a) Sean susceptibles de generar confusión con una marca solicitada a registro de buena fe, o registrada con anterioridad de buena fe.</p> <p>b) Constituyan una reproducción, imitación, traducción, transliteración o transcripción, total o parcial, de una marca notoriamente conocida cuyo titular sea un tercero, cualesquiera que sean los productos o servicios a los que se aplique el signo, cuando su uso fuese susceptible de causar un riesgo de confusión o de asociación con ese tercero o con sus productos o servicios; un aprovechamiento injusto del prestigio de la marca; o la dilución de su fuerza distintiva o de su valor comercial o</p>	<p>제89조 (결격사유) 안데스결정 제486호 제20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의 경우 원산지 표시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p> <p>a) 선의로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b) 제3자의 잘 알려진 상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모방, 번역, 음차 또는 전사하는 것으로 표시가 적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 해당 제3자 또는 그 제품 및 서비스와 혼동 또는 연관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제3자 브랜드 명성에 부당한 사용 또는 식별력의 희석, 상업적 또는 광고적 가치의 희석과 관련된 경우</p>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동체제를 수립하는 안데스공동위원회의 결정 제486호에 대한 보완조항을 승인하는 입법령 제1075호	번역
<p>publicitario riesgo de confusión o de asociación con ese tercero o con sus productos o servicios; un aprovechamiento injusto del prestigio de la marca; o la dilución de su fuerza distintiva o de su valor comercial o publicitario.</p>	
<p>Artículo 95.-Tramitación de acciones por infracción. Para la tramitación de las acciones por infracción, los órganos competentes gozarán de las siguientes facultades: a) efectuar investigaciones preliminares; b) iniciar un procedimiento de infracción de oficio o a pedido de parte; c) realizar visitas de inspección y actuar otros medios probatorios; d) dictar medidas cautelares dentro y fuera del procedimiento con la finalidad de garantizar la eficacia de las resoluciones; e) citar a las partes a audiencia de conciliación; f) dictar sanciones para proteger los derechos de propiedad industrial; y g) otras que les asignen las disposiciones normativas vigentes</p>	<p>제95조 침해소송의 처리 침해에 대한 조치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 예비조사의 수행 b)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실시 c) 수색 및 기타 증거확보 수행 d) 예방조치의 시행 e) 소송에 당사자 소환 f)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조치 및 g) 현행 규제조항을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p>
<p>TITULO XI DISPOSICIONES RELATIVAS A LAS ACCIONES POR INFRACCIÓN DE DERECHOS</p>	<p>제11장 권리침해에 관한 조항</p>
<p>CAPITULO II Actos que constituyen Infracción</p>	<p>제2절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p>
<p>Artículo 98.-Competencia desleal. Las denuncias sobre actos de competencia desleal, en las modalidades de confusión y explotación de la reputación ajena, que estén referidos a algún elemento de la propiedad industrial inscrito, o a signos distintivos notoriamente conocidos o nombres comerciales, estén o no inscritos, serán de exclusiva competencia de la autoridad nacional competente en materia de propiedad industrial, según corresponda, siempre que las referidas denuncias sean presentadas por el titular del respectivo derecho. Serán igualmente de competencia de los órganos de propiedad industrial, las denuncias sobre actos de competencia desleal, en las modalidades de confusión y explotación de la reputación ajena, que comprendan elementos de propiedad industrial y elementos, que sin constituir derechos de propiedad industrial, estén relacionados con el uso de un elemento de propiedad industrial. En los supuestos contemplados en el presente artículo la responsabilidad administrativa es objetiva.</p>	<p>제98조 불공정경쟁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일부 요소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잘 알려진 식별기호 또는 상호를 언급하여 다른 사람의 평판을 착취하고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 권리보유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산업재산권 문제에 관하여 권한있는 당국이 독점적 권한으로 처리한다. 산업재산권을 구성하는 요소와 산업재산권을 포함하지 않는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타인의 평판 착취나 혼동 초래행위 역시 산업재산권 문제에 관하여 권한있는 당국의 책임이다. 이 조항에서 고려된 관리책임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p>
<p>CAPÍTULO VI Sanciones, Medidas Definitivas y Multas Coercitivas</p>	<p>제4절 제재, 최종조치 및 벌금</p>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동체제를 수립하는 안데스공동위원회의 결정 제486호에 대한 보완조항을 승인하는 입법령 제1075호	번역
<p>Artículo 120.-Sanciones Sin perjuicio de las medidas que se dicten a fin de que cesen los actos de infracción o para evitar que éstos se produzcan, se podrán imponer las siguientes sanciones: a) Amonestación b) Multa. Las multas que la autoridad nacional competente podrá establecer por infracciones a derechos de propiedad industrial serán de hasta ciento cincuenta (150) UIT. En los casos en los cuales el provecho ilícito real obtenido de la actividad infractora, sea superior al equivalente a setenta y cinco (75) UIT, la multa podrá ser del 20 % de las ventas o ingresos brutos percibidos por la actividad infractora. (이하 생략)</p>	<p>제120조 제재 침해행위를 중지하거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a) 경고 b) 과태료 관할 기관이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는 벌금의 최대금액은 150UIT이다. 침해활동으로 얻은 실제 불법이익이 75UIT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벌금은 침해활동으로 얻은 총 매출 또는 수입의 20%가 될 수 있다.</p>
<p>Artículo 129.-Indemnización por daños y perjuicios Agotada la vía administrativa, se podrá solicitar en la vía civil la indemnización de los daños y perjuicios a que hubiera lugar. La acción civil prescribe a los dos (2) años de concluido el proceso administrativo.</p>	<p>제129조 손해배상 행정절차가 종료되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행정절차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p>
<p>DISPOSICIONES COMPLEMENTARIAS FINALES</p>	<p>최종 추가조항</p>
<p>SEGUNDA.-Uso de otros signos Queda prohibido el uso de la denominación "marca registrada", "M.R." u otra equivalente junto con signos que no cuenten con registro ante la Dirección competente del Perú. Asimismo, queda prohibido el uso en el comercio de la expresión "denominación de origen", "D.O." u otra equivalente, en productos que no cuenten con denominación de origen o para los cuales no se haya obtenido la correspondiente autorización de uso ante el órgano competente. En los casos previstos en la presente disposición, el procedimiento se inicia de oficio y se sujeta a las disposiciones establecidas en el Título XI, sobre "Disposiciones relativas a las acciones por infracción de derechos" del presente Decreto Legislativo, en lo que corresponda."</p>	<p>추가조항 2. 기타 표지의 사용 "등록상표", "M.R"이라는 이름을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사용하는 행위 마찬가지로 "원산지명", "D.O"라는 표현을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또는 기타 동등물에 사용하는 경우 이 조에서 제시된 절차는 직권으로 시행되며, 필요한 경우 제11장의 "권리침해 소송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p>

●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동체제를 수립하는 안데스공동체위원회의 결정 제486호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동체제를 수립하는 안데스공동체위원회의 결정 제486호 (2000)	번역
<p>Article 135. – Signs may not be registered as trademarks when they:</p> <p>m) reproduce or imitate, as trademarks or elements of those tradema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ncerned, heraldic elements, such as coats of arms, flags, and emblems, and the official signs and stamps used for the purposes of government control and guarantee and the coat of arms, flags and other emblems, initials or designations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p>	<p>제135조 다음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p> <p>m) 관련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 없이 문장요소, 예를 들어 문장, 깃발, 엠블럼, 사용된 공식기호, 정부가 통제하는 보증기호, 국제기구의 문장, 깃발 및 기타 상징, 이니셜 또는 명칭의 상표 또는 이러한 상표의 요소를 복제하거나 모방한 경우</p>
<p>Article 136 .– Those signs the use of which in commerce may constitute an impediment to the rights of third parties, may likewise not be registered as trademarks, in particular where:</p> <p>h) consist of a total or partial reproduction, imitation, translation, transliteration, or transcription of a well-known sign belonging to a third party without regard to the type of product or service to which it shall be applied, the use of which would lead to a likelihood of confusion or mistaken association with that party,; taking unfair advantage of the prestige of the sign; or weakening its distinctive force or its use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p>	<p>제136조 상업적 사용이 제3자의 권리를 방해할 수 있는 표시, 특히 다음의 경우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p> <p>h) 적용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과 관계없이 제3자의 잘 알려진 기호의 전체 또는 부분복제, 모방, 번역, 음차, 복제로 구성되며, 이것이 해당 당사자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간판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경우</p>
<p>Article 137 .– The competent national office may, when it has sufficient reason to believe that the registration was applied for in order to engage in, contribute to, or strengthen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may refuse to register that trademark.</p>	<p>제137조 관할국 사무소는 부정경쟁행위에 가담, 기여 또는 강화하기 위해 등록이 신청되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p>
<p>Article 155. – The owner of a registered trademark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prevent all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engaging in the following acts:</p> <p>d)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identical or similar signs to the trademark for goods or services, where such use would result in a likelihood of confusion or mistaken association with the registration owner. In the case of the use of an identical sign for identical goods or services, a likelihood of confusion shall be presumed;</p> <p>e) using in the course of trade identical or similar signs to a well-known trademark with respect to any goods or services, where such use, by weakening the distinctive force or the value of that trademark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or by taking unfair advantage of the prestige of the trademark or of its owner, could unjustly damage the registration owner’s economic or commercial interests;</p> <p>f) making public use of identical or similar signs to a well-known trademark, even for purposes that are non-commercial, where such use could weaken the distinctive force or value of that trademark for commercial or advertising purposes or take unfair advantage of its prestige.</p>	<p>제155조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p> <p>d) 거래 과정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 등록 소유자와 혼동,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때 동일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p> <p>e) 거래 과정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가치를 약화시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해당 상표 및 소유자의 명성을 이용하여 등록된 소유자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p> <p>f) 상업적 또는 광고의 목적으로 상표의 식별력이나 가치를 약화시키는 등 상표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또한 비상업적 목적이더라도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p>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동체제를 수립하는 안데스공동위원회의 결정 제486호 (2000)	번역
<p>Article 243. – The following criteria shall be used, among others, to calcul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be paid for damages:</p> <p>a) the consequential damage and lost profits suffered by the right holder as a result of the infringement;</p> <p>b) the amount of profit obtained by the infringer as a result of the acts of infringement; or,</p> <p>c) based on the commercial value of the infringed right and such contractual licenses as may have already been granted, the price the infringer would have paid for a contractual license.</p>	<p>제243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p> <p>a) 침해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결과적 손해 및 이익 손실</p> <p>b) 침해행위의 결과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금액</p> <p>c) 침해된 권리의 상업적 가치와 이미 부여되었을 수 있는 그러한 계약적 라이선스에 기초하여, 침해자가 계약적 라이선스에 지불했을 가격</p>
<p>Article 245. – Any party initiating or who shall initiate an action for infringement may request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to order immediate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 infringement from occurring, avoiding its consequences, obtaining or preserving evidence, 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ction or compensation for damages.</p>	<p>제245조 침해에 대한 조치를 개시하거나 개시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침해가 발생하는 것 및 침해의 결과를 방지하고, 증거를 획득 또는 보존하거나 침해의 효과를 보장할 목적으로 권한있는 국가기관에 즉각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Article 246. – The following provisional measures may be ordered, among others:</p> <p>a) immediate cessation of all acts constituting the alleged infringement;</p> <p>b) withdrawal from commercial channels of all products resulting from the alleged infringement, including packaging, wrappings, labels, printed material or advertising, or other materials, together with the materials and implements the predominant use of which has been the commission of the infringement;</p> <p>c) suspension of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the goods or materials or implements referred to under the previous paragraph;</p> <p>d) establishment by the alleged infringer of an adequate guarantee; and,</p> <p>e) temporary closure of the business belonging to the defendant or accused, if necessary, to avoid continuation or repetition of the alleged infringement.</p> <p>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may, if permitted by the domestic law of the Member Country concerned, order the appl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ex officio.</p>	<p>제246조 특히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가 명령될 수 있다.</p> <p>a) 주장된 침해를 구성하는 모든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p> <p>b) 침해혐의를 받은 재료, 도구와 함께 포장, 라벨, 인쇄물, 광고, 기타 침해혐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제품을 상업적 채널에서 철수</p> <p>c) b)항에서 언급된 상품, 재료 또는 도구의 수입 또는 수출 중단</p> <p>d) 침해 혐의자의 적절한 보증 설정</p> <p>e) 필요한 경우 침해 혐의의 지속 또는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또는 피고인이 속한 사업의 일시적 폐쇄</p> <p>권한 있는 당국은 관련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직권으로 잠정조치의 적용을 명령할 수 있다.</p>
<p>Article 247. – A provisional measure shall be ordered only where the persons requesting it accredit their lawful right to act and the existence of the infringed right, and provide evidence allowing for a reasonable presumption of infringement or that infringement is imminent.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may require persons requesting the measure to post a hand or sufficient equivalent assurance before ordering such a measure.</p>	<p>제247조 잠정조치는 요청자가 자신의 적법한 행위권과 침해된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침해의 합리적인 추정을 허용하거나 침해가 임박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명령되어야 한다. 권한있는 국가 당국은 그러한 조치를 명령하기 전에 조치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동등한 보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Article 222. – An indication of origin may not be used in the course of trade for a good or service where that indication is false or misleading or where its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in the public as to the origin, source, quality, or any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or service in question.</p>	<p>제222조 지리적 표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해당 표시가 원산지의 출처, 품질 또는 기타 특성에 대하여 대중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p>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동체제를 수립하는 안데스공동위원회의 결정 제486호 (2000)	번역
<p>Article 258. – Any act carried out in re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course of trade that is contrary to honest commercial practices shall be considered unfair.</p>	<p>제258조 거래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직한 상업관행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것으로 간주된다.</p>
<p>Article 259. – The following, among others, constitute intellectual property-linked unfair trade practices: a) any act which, by any means whatsoever, is capable of causing confusion with respect to the business, goods, or industrial activity of a competitor; b) false affirmations made in the course of trade that are capable of discrediting a competitor's business, goods, or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y; or, c) indications or affirmations whose use in the course of trade may mislead the public with regard to the nature, method of manufacture, characteristics, usefulness, or quantity of the goods in question</p>	<p>제259조 지식재산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어떠한 방법으로든 경쟁자의 사업, 상품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행위 b) 경쟁자의 사업, 상품, 상업, 산업활동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짓행위 또는, c) 거래과정에서 사용하는 표시가 상품의 특성, 제조방법, 유용성, 수량에 관하여 대중에게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p>
<p>Article 260. – An industrial secret shall be considered to be any undisclosed information within the lawful control of an individual person or legal entity that may be used for any productive,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y and that is capable of being transmitted to a third party, so long as that information: a) is secret in the sense that it is not, as a body or in the precise configuration and assembly of its components, generally known among or readily accessible to persons within the circles that normally deal with the kind of information in question; b) has commercial value because it is secret; and c) has been the subject of reasonable step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The information constituting an industrial secret may be related to the nature, characteristics, or purpose of the products, production methods or processes, or the means or forms of distribution or marketing of goods or rendering of services.</p>	<p>제260조 산업비밀은 생산적, 산업적, 상업적 활동에서 사용될 수 있고,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합법적 통제 범위 내에 있는 정보로 간주되며, 단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a) 일반적으로 해당정보의 종류를 다루는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밀로 유지는 것 b)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있는 것일 것 c) 정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일 것 산업비밀을 구성하는 정보는 제품의 성격, 특성, 목적, 생산방법 또는 공정, 재화의 유통 또는 마케팅, 서비스의 제공수단 또는 형태와 관련될 수 있다.</p>
<p>Article 261. – For purposes of this Decision, information whose disclosure is the result of a legal provision or court order shall not be considered an industrial secret. Information provided to any authority or disclosed by legal provision by the person in lawful possession of it shall not be considered public property if that person supplies th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licenses, permits, authorizations, registrations, or any other legal acts.</p>	<p>제261조 이 결정의 목적상 공개가 법적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의 결과인 정보는 산업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기관에 제공되거나 법적 규정에 의해 공개된 정보는 합법적인 소유자가 라이선스,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기타 법적 행위를 획득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재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p>
<p>Article 262. – Persons shall have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an industrial secret lawfully within their control from being disclosed to, acquired by, or used by third parties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trade practices. Performance of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respect of an industrial secret shall be considered unfair competition: a) using,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at information, an industrial secret to which the third party had access under a confidentiality</p>	<p>제262조 개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산업비밀이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 취득 또는 사용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산업비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a) 해당 정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의 승인없이 계약 또는 노동 거래 관행으로 인한 기밀유지의무에 따라 제3자가 접근할 수 있었던 산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p>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동체제를 수립하는 안데스공동위원회의 결정 제486호 (2000)	번역
<p>obligation resulting from a contractual or labor trade practice;</p> <p>b) communicating or disclosing, without the consent of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at information, the industrial secret referred in subsection a) with the intent of obtaining advantages for oneself or another party or of causing injury to the person in control of that information;</p> <p>c) acquiring an industrial secret by means that are unlawful or contrary to fair practice practices;</p> <p>d) using, communicating, or disclosing an industrial secret acquired in the way described in subsection c);</p> <p>e) using an industrial secret obtained from another person, while knowing, or negligently failing to know, that the party who communicated the secret had acquired it by use of the means cited under subsection c), or did not have consent to communicate it from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at information;</p> <p>f) communicating or disclosing an industrial secret obtained in the way described under subsection e), for the benefit of oneself or a third party or to injure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at industrial secret.</p> <p>An industrial secret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acquired by means contrary to fair trade practices where such acquisition is the result of industrial espionage, breach of contract or other obligations, breach of trust, breach of a duty of secrecy, or inducement to breach.</p>	<p>b) 해당 정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개인의 동의없이 자신 또는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얻거나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a)항에서 언급된 산업비밀을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p>c) 불법적이거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수단으로 산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p> <p>d) c)항에 기술된 방식으로 획득한 산업비밀을 사용, 전달 또는 공개하는 행위</p> <p>e) 비밀을 제공한 당사자가 c)항에 언급된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를 획득하였거나 정보전달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부주의하게 알지 못한채 다른 사람에게 얻은 산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p> <p>f)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해당 산업비밀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e)항에 설명된 방식으로 얻은 산업비밀을 전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p>산업비밀은 산업스파이, 계약 또는 기타 의무 위반, 비밀의무 위반 또는 위반초래행위의 결과인 경우,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수단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p>
<p>Article 263. - Protection of an industrial secret shall last so long as the conditions set out in article 260 exist</p>	<p>제263조 산업비밀의 보호는 제260조에 규정된 조건이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p>
<p>Article 264. - Any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a trade secret may transfer it to a third party or authorize its use by a third party. That authorized user shall be under the obligation not to disclose the industrial secret by any means, unless otherwise agreed with the person having transferred or authorized use of that secret.</p> <p>Agreements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ical know-how, technical assistance, or the provision of basic or detailed engineering may include confidentiality clauses to protect the trade secrets contained therein, provided that such clauses are not contrary to antitrust provisions on free competition.</p>	<p>제264조 산업비밀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자는 산업비밀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승인된 사용자는 산업비밀을 양도하거나 사용을 승인한 사람과 달리 함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산업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p> <p>기술 노하우의 이전, 기술 지원 또는 기본 또는 세부 엔지니어링 제공에 대한 계약에는 그 안에 포함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밀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항은 자유경쟁에 관한 독점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p>
<p>Article 265. - Persons with access to an industrial secret by reason of their work, employment, job, professional performance, or business relationship and warned of the confidentiality thereof, shall refrain from making use of it or disclosing it without just cause and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or authorized user of that secret.</p>	<p>제265조 업무, 고용, 직업 등의 수행 또는 사업관계를 이유로 해당 비밀의 소유자 또는 승인된 사용자의 동의 하에 산업비밀에 접근하고 이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한 경고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p>
<p>Article 266. - Member Countries, when requiring, as a condition for approving the marketing of pharmaceutical or of agricultural chemical products which utilize new chemical entities, the submission of undisclosed test or other data, the origination of which involves a considerable effort, shall protect such data against unfair commercial use. In addition, Member Countries shall</p>	<p>제266조 회원국은 의약품 또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농약의 판매를 승인하기 위한 조건으로 상당한 노력을 요하는 비공개 시험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보호해야 한다. 그러한 데이터는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원국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러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p>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동체제를 수립하는 안데스공동위원회의 결정 제486호 (2000)	번역
<p>protect such data against disclosure, except where necessary to protect the public or unless steps are taken to ensure that the data is protected against unfair commercial use. Member Countries may take steps to guarantee the protection provided for under this article</p>	<p>회원국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Article 267. -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 of action, parties interested may request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to rule on the lawfulness of any commercial act or practice pursuant to the stipulations set out under this Title.</p>	<p>제267조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이해 당사자는 관할 국가 당국에 대하여 이 편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상업행위 또는 관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Article 268. - The right of action for unfair competition pursuant to this Title shall lapse two years following the last practice of the unfair act, unless domestic law stipulates a different time-limit.</p>	<p>제268조 본 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효는 국내법에 별도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부정경쟁행위가 마지막으로 행해진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p>
<p>Article 269. -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may initiate ex officio the proceedings for unfair competition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of the Member Country concerned, if that legislation allows for it.</p>	<p>제269조 권한있는 당국은 해당 회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직권으로 회원국 법률에서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p>

● 불공정경쟁 관한 입법령 제1044호 (Legislative Decree N° 1044 – Repression of Unfair Competition Law)

불공정 경쟁에 관한 입법령 제1044호	번역
<p>Article 9. Acts of confusion 9.1 These shall consist of the performance of acts, the real or potential effect of which is to mislead other agents in the market concerning the entrepreneurial origin of the activity, establishment, specific services or goods, such that these are considered to have an entrepreneurial origin different to that which they actually possess. 9.2 Acts of confusion may occur through the misuse of goods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ules.</p>	<p>제9조 혼동행위 9.1. 활동, 시설,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로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다른 참여자와 오인시킬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효과의 수행으로 구성된다. 9.2. 지식재산권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오남용을 통한 혼동 행위</p>
<p>Article 10. Acts of undue exploitation of another person's reputation 10.1 These shall consist of the performance of acts which, while they do not constitute acts of confusion, may lead, in real or potential terms, to undue advantage being taken of the image, credit, fame, prestige or entrepreneurial or professional reputation that corresponds to another economic agent, including acts capable of generating a risk of association with a third party. 10.2 Acts of undue exploitation of another person's reputation may occur through the use of goods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ules.</p>	<p>제10조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10.1 혼동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측면에서 다른 경제적 대리인에 해당하는 이미지, 신용, 명예, 위신 또는 직업적 명성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관계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구성된다. 10.2 지식재산권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사용을 통하여 타인의 명성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p>
<p>Article 13. Acts violating entrepreneurial secrecy These shall consist of the performance of acts, the real or potential effect of which is to:</p>	<p>제13조 기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의 구행으로 구성되며 그 실제적 또는 잠재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p>

불공정 경쟁에 관한 입법령 제1044호	번역
<p>(a) disclose or exploit, without authorization of their owner, entrepreneurial secrets of another person, to which access has been gained lawfully with duty of reserve or unlawfully;</p> <p>(b) acquire entrepreneurial secrets of another person by means of spying, instigation of failure to fulfill a duty of reserve or similar procedure.</p>	<p>(a) 비밀유지의무를 가진 자가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업비밀에 접근하여, 이를 소유자의 승인없이 공개하거나 악용하는 행위</p> <p>(b) 엿담, 비밀 유지의무 불이행, 선동 또는 유사한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의 기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p>
<p>Article 25. The Commission</p> <p>25.2 The Commission's duties shall include:</p> <p>(a) ordering the Technical Secretariat to undertake sanction investigation proceedings and to sanction acts of unfair competition;</p> <p>(b) declaring the existence of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and imposing the corresponding sanction;</p> <p>(c) deciding the continuation ex officio of the proceedings, in case of concili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f the analysis of the facts denounced warns of the possible effects on the public interest;</p> <p>(d) issuing precautionary measures;</p> <p>(e) issuing corrective measures for acts of unfair competition;</p> <p>(f) issuing guidelines for market agents on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rules contained in this Law;</p> <p>(g) in their procedures, issuing an opinion, urging or recommending the legislative, political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guaranteeing fair competition; and,</p> <p>(h) others assigned to it by the legal provisions in force.</p>	<p>제25조 위원회</p> <p>25.2 위원회의 임무</p> <p>(a) 기술 사무국에 제재 조사 절차를 수행하고 불공정경쟁행위를 제재하도록 명령</p> <p>(b) 불공정경쟁행위의 존재를 선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행위</p> <p>(c) 당사자간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안이 공익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직권으로 절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p> <p>(d) 예방조치의 발표</p> <p>(e)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발표</p> <p>(f) 이 법에 포함된 규칙의 올바른 해석에 대해 시장 대리인을 위한 지침을 발행</p> <p>(g)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절차, 의견발표, 입법, 정치 또는 행정당국의 촉구 또는 권고</p> <p>(h) 시행 중인 법적 규정에 의해 할당된 다른 사항</p>
<p>Article 26. The Technical Secretariat</p> <p>26.2 The duties of the Technical Secretariat shall be to:</p> <p>(a) carry out preliminary investigations;</p> <p>(b) instigate ex officio proceedings for investigation and sanction of acts of unfair competition;</p> <p>(c) in case of a denunciation by a party, take a decision on admission of proceedings of investigation and sanction of acts of unfair competition, whereby the denunciation may be declared unacceptable or inappropriate, as applicable;</p> <p>(d) institute sanction proceedings, by carrying out investigations and producing evidential means, exercising for the purpose the powers and competences which the laws have given to the INDECOPI Commissions;</p> <p>26.3 In order to develop its investigations, the Technical Secretariat shall be authorized to</p> <p>(c) Carry out inspections, with or without prior notification, on the premises of natural persons or legal entities, unlawful companies and autonomous economic bodies, and examine the books, registers, documentation and property, and may verify the conduct of production processes and accept declarations from the persons located on such premises. In the act of inspection, a copy of physical, magnetic or electronic archives may be taken, as well as of any document considered relevant, or photographs may be taken or films recorded, as deemed necessary.</p>	<p>기술사무국</p> <p>26.2 기술사무국의 임무</p> <p>(a) 예비조사의 수행</p> <p>(b)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위한 직권 절차의 실시</p> <p>(c) 당사자가 고발하는 경우 조사절차의 승인 및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 결정</p> <p>(d) 법이 INEDCOPI위원회에 부여한 권한과 목적을 위해 조사수행, 증거제시 등 (이하 생략)</p> <p>26.3 조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사무국의 권한</p> <p>(c) 사전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연인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생산공정 및 해당 건물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리적, 자기적 또는 전자적 서류의 사본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가져오거나 사진을 찍거나 필름을 녹화할 수 있다.</p>

불공정 경쟁에 관한 입법령 제1044호	번역
<p>Entry may be undertaken by requesting the support of the law-enforcement authorities. The Technical Secretariat shall obtain prior judicial authorization in order to gain forced entry where it is not possible to enter premises or where they are locked, as well as for copying private correspondence which may be held in physical or electronic archive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process described below: (이하생략)</p>	<p>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색할 수 있다. 기술사무국은 특별 규정에 따라 물리적 또는 전자적 기록 보관소에 보관될 수 있는 사적 서신을 복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잠겨 있는 곳 등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p>
<p>Article 30. Acts prior to admission for processing by denunciation of a party Once a denunciation by a party has been submitted and prior to the decision to institute proceedings to identify and sanction acts of unfair competition, the Technical Secretariat may perform prior acts for the purposes of gathering information and/or identifying reasonable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acts of unfair competition. These prior acts shall be carried out within a period of not more than thirty (30) working days, beginning from the time the denunciation is submitted.</p>	<p>제30조 당사자의 거부에 의한 처리를 위한 행위 당사자의 고발이 제출되고 불공정 경쟁행위를 식별하고 제재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기술사무국은 정보 수집 및 행위 존재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식별을 위해 사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조치는 영업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한다.</p>
<p>Article 32. Term for submission of evidence The person charged may defend himself on the charges made through the decision to institute proceedings within a maximum period of ten (10) working days, and shall submit the arguments and considerations he considers appropriate and offer the corresponding proof. This term may be extended by the Technical Secretariat once only and for a maximum period of five (5) working days, only if the need for such an extension has been proven.</p>	<p>제32조 증거제출 기간 기소된 사람은 최대 10일 이내에 소송 제기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혐의에 대해 자신을 변호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주장과 고려사항을 제출하고 해당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연장의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기술사무국에 의해 최대 5일 이내에 서 1회만 연장될 수 있다.</p>
<p>Article 33. Precautionary measures 33.2 The Commission may adopt the precautionary measure, innovative or non-innovative, generic or specific, which it considers relevant, especially the order of termination of an act or the prohibition thereof if it has not yet been put into practice, the imposition of conditions, the confiscation, deposit or immobilization of the products, labels, packaging and advertising material subject to denunciation, the adoption of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customs authorities to prevent the entry into the country of the products which are the subject of denunciation, which shall be coordinated with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in force, the temporary closur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arty denounced, the adoption of positive behaviors and any others which help to preserve the fair competition affected and to avoid the damage that may be caused by the acts which are the subject of proceedings.</p>	<p>제33조 예방조치 33.2 위원회는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혁신적, 비혁신적 일반적인 모든 특정 예방조치 및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경우 행위의 종료, 금지명령, 조건부과 폐기대상 제품의 몰수, 폐기 대상제품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 당국의 필요한 조치의 채택 등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야기될 수 있으며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모든 행위 등을 채택할 수 있다.</p>
<p>Article 40. Confidential information 40.1 At the request of a party or third party with legitimate interest, including a public body, the Commission shall declare the reservation of such information which is of a confidential nature, either in relation to business secrets, information which affects personal or family privacy, that whose disclosure could harm its owner and, in general, that provided for as such in the Law on Transparency and Access to Public Information.</p>	<p>제40조 기밀정보 40.1 공공기관을 포함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정보의 투명성 및 접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가족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일반적으로 소유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의 공개유보를 선언하여야 한다.</p>

불공정 경쟁에 관한 입법령 제1044호	번역
<p>40.2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Transparency and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the application for declaration of a reservation concerning a commercial, industrial, technological or, in general, business secret shall be granted by the Commission or the Tribunal, provided that such information:</p> <p>(a) relates to knowledge of a reserved or private nature regarding a specific subject;</p> <p>(b) that those who have access to said knowledge have the will and informed awareness in keeping it reserved, adopting the necessary measures to maintain said information as such; and</p> <p>(c) the information has commercial, actual or potential value.</p> <p>40.3 Access to the information declared subject to reservation may only be gained by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and of the Tribunal, their Technical Secretaries and the persons duly authorized therefor who work or mainta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INDECOPI.</p> <p>40.4 In the cases in which the Commission or Tribunal grant the request for a reservation made, they shall take all the measures that are necessary in order to guarantee the reservation and confidentiality of the information.</p>	<p>40.2 공공정보의 투명성 및 접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 산업, 기술 또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공개유보 선언 신청은 위원회 또는 재판소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단 그러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p> <p>(a)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관련되어 있는 경우</p> <p>(b) 상기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정보를 보존할 의지 및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p> <p>(c) 정보에 상업적,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을 것</p> <p>40.3 공개유보 대상으로 선언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INDECOPI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위원회 및 재판소의 위원, 기술비서 및 이에 대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얻을 수 있다.</p> <p>40.4 위원회 또는 재판소가 공개유보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정보의 유보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이하 생략)</p>
<p>Article 52. Sanction parameters</p> <p>52.1 The performance of acts of unfair competition shall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and shall be sanctioned by the Commission subject to the following parameters:</p> <p>(a) if the infringement is characterized as slight and there has been no real effect on the market, with a warning;</p> <p>(b) if the infringement is characterized as slight, with a fine up to fifty (50) Tax Units (UIT) and which does not exceed ten per cent (10 per cent) of the gross income received by the infringer, relative to all its economic activities, corresponding to the financial year immediately prior to that during which the Commission issues its decision;</p> <p>(c) if the infringement is characterized as serious, a fine of up to two hundred and fifty (250) UIT and which does not exceed ten per cent (10 per cent) of the gross income obtained by the infringer, relative to all its economic activities, corresponding to the financial year immediately prior to that during which the Commission issues its decision; and,</p> <p>(d) if the infringement is characterized as very serious, a fine of up to seven hundred (700) UIT and which does not exceed ten per cent (10 per cent) of the gross income obtained by the infringer, relative to all its economic activities, corresponding to the financial year immediately prior to that during which the Commission issues its decision.</p>	<p>제52조 제재</p> <p>52.1 불공정 경쟁행위의 수행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에 따른 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p> <p>(a) 침해가 경미하고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 경고</p> <p>(b) 침해가 경미한 것으로 특정되는 경우, 최대 50 단위의 벌금, 이는 위원회가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하여 침해자가 받은 총 수익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c)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특정되는 경우, 최대 250 단위의 벌금, 이는 위원회가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하여 침해자가 받은 총 수익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d) 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특정되는 경우, 최대 700 단위의 벌금, 이는 위원회가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하여 침해자가 받은 총 수익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p>
<p>Article 58. Compensation for damages</p> <p>58.1 Any person harmed by acts of unfair competition declared by the Commission or, where appropriate, the Tribunal, may make to the Judicial Authority a civil claim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those responsible identified by INDECOPI.</p>	<p>제58조 손해배상</p> <p>58.1 위원회 또는 재판소가 선언한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INDECOPI에 의해 확인된 책임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p>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17 장

필리핀

법령요약

● 필리핀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Republic Act no.8293))(2015 개정)

- (영업비밀) 정의 규정에서 지식재산권의 유형으로 ‘미공개 정보의 보호(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를 명시
- (부정경쟁) 부정경쟁행위 유형,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조치,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을 규정

필리핀 지식재산법(no.8293) (2015 ver)	내용
제1부 특허청	(제1조~제19조) 제목, 국가정책, 국제협약, 정의, 특허청의 조직구조, 특허청의 기능 등
제2부 특허	(제20조~제120조) 일반조항, 특허요건, 특허권, 특허출원, 특허등록절차, 특허취소, 특허권자의 구제, 특허권 침해, 통상실시권, 강제실시권, 권리 양도 및 이전, 실용신안의 등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제3부 상표, 서비스표, 상호	(제121조~제170조) 정의, 상표등록요건, 등록가능성, 등록신청요건, 제출일, 본인확인수단, 우선권, 조사 및 공개, 포기한 신청, 최종 결정, 토잇 및 청문, 인증서의 발급 및 발행, 등록증명서, 등록의 정정, 기간, 갱신, 부여된 권리, 양도 및 이전, 라이선스 계약, 취소, 침해에 대한 조치, 손해배상 등
제4부 저작권	(제171조~제229조) 정의, 원작품, 파생물, 보호되지 않는 작품, 저작권 또는 경제적 권리, 저작권자, 양도, 저작권에 대한 제한, 보증 및 통지, 저작인격권, 후속 양도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음원 제작자, 방송단체, 보호제한, 보호기간, 위반, 적용범위, 행동기관, 기타조항
제5부 최종규정	(제230조~제241조)

● 필리핀 경쟁법(Philippine Competition Act(Republic Act no.10667))

- 제4조(e)에서 ‘영업비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을 정의
- 제34조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규정함

필리핀 경쟁법(no.10667)	내용
제1장 일반규정	(제1조~제4조) 정의, 범위 등
제2장 필리핀 경쟁위원회	(제5조~제13조) 필리핀 경쟁위원회, 조직 구성, 금지 및 해촉, 위원 등
제3장 금지행위	(제14조~제15조) 반경쟁계약, 지배적 지위의 남용
제4장 인수합병	(제16조~제23조) 합병 및 인수검토, 강제통지, 통지의 효력, 금지, 금지대상의 면제 등
제5장 사건의 처리	(제24조~제28조) 관련시장, 법인의 통제, 반경쟁적 동의 또는 행위의 결정, 시장지배적 위치
제6장 벌금 및 과태료	(제29조~제30조) 행정적 처벌, 형사처벌
제7장 집행	(제31조~제45조) 집행권한, 관용, 등
제8장 기타규정	(제46조~제49조)
제9장 최종규정	(제50조~제56조)

주요내용

● 영업비밀 관련 사항²³⁾

- 필리핀에는 영업비밀을 규율하는 특정 법률이 없으나, 비공개 정보를 독립적인 IP 권리로 인정하며, 영업비밀 및 기타 기밀 정보의 경우 계약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
- 필리핀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

대상법령	주요내용
형법	개인이나 공무원이 비밀이 나 기밀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포함
식품의약품법	판매를 위해 제출된 혁신 의약품의 등록파일에서 유효성분, 제형, 용량, 임상데이터 등으로 구성된 기밀데이터를 포함하여 기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포함
데이터개인정보보호법	개인데이터(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와 관련된 기밀정보의 수집, 처리 및 전송을 보호하고 규제

● 경쟁법 중 영업비밀 관련 사항

- 필리핀의 경쟁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상응하는 내용으로서, IP 관점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은 아님
- 영업비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은 운영, 생산, 판매, 선적, 구매, 이전, 고객 식별, 재고 또는 수입·이익·손실·지출의 금액 또는 출처 관련 정보를 의미(경쟁법 제4조(e))
- 심리 또는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한 영업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며, 필리핀경쟁위원회(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의 업무에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경쟁법 제34조)

● 부정경쟁 관련 사항

- (주지상표의 보호) 등록 상표의 실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품, 사업 또는 서비스가 대중에게 인식되어 있다면, 해당 상품, 사업 또는 서비스의 영업권에 대한 재산권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다른 재산권과 동일하게 취급함(지식재산법 제168.1조)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① 다른 사람의 상품과 유사한 외관을 부여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인 것으로 믿도록 하는 혼동 행위, ② 식별력 있는 타인의 서비스를 본인의 서비스인 것으로 믿도록 하는 행위, ③ 허위 또는 선의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 타인의 상품, 서비스 등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지식재산법 제168.3조)
- (구제조치)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대중을 기망하거나 원고를 갈취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액의 2배까지 선고 가능하고,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포장지, 라벨

23)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18-1440?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18-1440?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 <2021. 7. 26 최종방문>

- 등 위조상품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를 파기할 수 있음(지식재산법 제156.1조~제157.1조)
- (형사처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페소 이하의 벌금형 부과 가능(지식재산법 제170조)

법령비교표

● 필리핀 지식재산법

필리핀 지식재산법	번역
<p>SEC. 4. Definitions. -</p> <p>4.1.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ists of:</p> <p>(a) Copyright and Related Rights;</p> <p>(b) Trademarks and Service Marks;</p> <p>(c) Geographic Indications;</p> <p>(d) Industrial Designs;</p> <p>(e) Patents;</p> <p>(f) Layout-Designs (Topographies) of Integrated Circuits; and</p> <p>(g)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n, TRIPS).</p>	<p>제4조 정의</p> <p>제4.1조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는 다음으로 구성된다.</p> <p>(a)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p> <p>(b) 상표권 및 서비스권</p> <p>(c) 지리적 표시</p> <p>(d) 산업디자인</p> <p>(e) 특허</p> <p>(f) 집적회로 배치설계(토포그래피)</p> <p>(g) 미공개 정보의 보호</p>
<p>SECTION 123. Registrability. -</p> <p>123.1. A mark cannot be registered if it:</p> <p>(b) Consists of the flag or coat of arms or other insignia of the Philippines or any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of any foreign nation, or any simulation thereof;</p> <p>(e) Is identical with, or confusingly similar to, or constitutes a translation of a mark which is consider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hilippines to be well-known internationally and in the Philippines, whether or not it is registered here, as being already the mark of a person other than the applicant for registration, and used for identical or similar goods or services: Provided, That in determining whether a mark is well-known,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knowledge of the relevant sector of the public, rather than of the public at large, including knowledge in the Philippines which has been obtained as a result of the promotion of the mark;</p> <p>(f) Is identical with, or confusingly similar to, or constitutes a translation of a mark considered well-known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paragraph, which is registered in the Philippines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which are not similar to those with respect to which registration is applied for: Provided, That use of the mark in relation to those goods or services would indicate a connection between those goods or services, and the owner of the registered mark: Provided, further, That the interests of the owner of the registered mark are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use</p>	<p>제123조 등록가능성</p> <p>제123.1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p> <p>(b) 필리핀 또는 필리핀 지방자치조직, 외국의 국기, 문장 또는 기타 휘장 및 이에 대한 구성</p> <p>(e) 필리핀 내 또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이나 그의 번역(유명상표의 경우 등록되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상표로 표시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되는 등록 신청</p> <p>(f) 전항에 따라 잘 알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 또는 그의 번역이 유명상표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러한 상표사용으로 유명상표의 식별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p>
<p>155.2. Reproduce, counterfeit, copy or colorably imitate a registered mark or a dominant feature thereof and apply</p>	<p>제155.2조 등록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의 지배적인 특징을 복제, 위조, 복사 또는 유색 모방하고 이러한 복제, 위조, 복사 또는 유색</p>

필리핀 지식재산법	번역
<p>such reproduction, counterfeit, copy or colorable imitation to labels, signs, prints, packages, wrappers, receptacles or advertisements intended to be used in commerce upon or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or advertising of goods or services on or in connection with which such use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shall be liable in a civil action for infringement by the registrant for the remedies hereinafter set forth: Provided, That the infringement takes place at the moment any of the acts stated in Subsection 155.1 or this subsection are committed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ctual sale of goods or services using the infringing material. (Sec. 22, R.A. No. 166a)</p>	<p>모조를 상표, 표지, 인쇄물, 포장, 포장지, 용기 또는 상거래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광고에 적용한다. 혼동을 일으키거나, 착오를 일으키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판매 제안, 배포 또는 광고와 관련하여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 책임이 있다.</p>
<p>SEC. 156. Actions, and Damages and Injunction for Infringement. \-</p>	<p>제156조 조치, 침해에 대한 손해 및 금지 명령</p>
<p>156.1. The owner of a registered mark may recover damages from any person who infringes his rights, and the measure of the damages suffered shall be either the reasonable profit which the complaining party would have made, had the defendant not infringed his rights, or the profit which the defendant actually made out of the infringement, or in the event such measure of damages cannot be readily ascertained with reasonable certainty, then the court may award as damages a reasonable percentage based upon the amount of gross sales of the defendant or the value of the services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mark or trade name was used i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the complaining party. (Sec. 23, first par., R.A. No. 166a)</p>	<p>제156.1조 등록 상표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손해액은 피고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합리적 이익 또는 피고가 실제로 그 침해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한다.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총 매출액 또는 불만 당사자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포장 또는 상호와 관련한 서비스의 가치에 근거하여 합당한 비율의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p>
<p>156.2. On application of the complainant, the court may impound during the pendency of the action, sales invoices and other documents evidencing sales. (n)</p>	<p>제156.2조 원고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조치의 계류기간 동안 판매 송장 및 기타 판매 증빙서류를 압류할 수 있다.</p>
<p>156.3. In cases where actual intent to mislead the public or to defraud the complainant is shown,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he damages may be doubled. (Sec. 23, first par., R.A. No. 166)</p>	<p>제156.3조 대중을 기망하거나 원고를 갈취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액을 2배로 책정할 수 있다.</p>
<p>156.4. The complainant, upon proper showing, may also be granted injunction. (Sec. 23, second par., R.A. No. 166a)</p>	<p>제156.4조 원고의 적절한 입증에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p>
<p>SEC. 157. Power of Court to Order Infringing Material Destroyed. -</p>	<p>제157조 침해 자료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p>
<p>157.1. In any action arising under this Act, in which a violation of any right of the owner of the registered mark is established, the court may order that goods found to be infringing be, without compensation of any sort, disposed of outside the channels of commerce in such a manner as to avoid any harm caused to the right holder, or destroyed; and all labels, signs, prints, packages, wrappers, receptacles and advertisements in the possession of the defendant, bearing the registered mark or trade name or any reproduction, counterfeit, copy or</p>	<p>제157.1조 등록 상표 소유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는 이 법에 따른 모든 소송에서 법원은 침해로 판명된 상품에 대해 어떠한 보상 없이 권리 보유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상업적 경로 밖에서 처분하거나 파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 또는 상호 관련 모든 라벨, 표지, 인쇄물, 포장물, 포장지, 용기, 광고 또는 복제, 위조, 모조품, 모든 판금형, 몰드, 매트릭스 및 기타 동일한 제조 수단은 제출 및 파괴되어야 한다.</p>

필리핀 지식재산법	번역
colorable imitation thereof, all plates, molds, matrices and other means of making the same, shall be delivered up and destroyed.	
157.2. In regard to counterfeit goods, the simple removal of the trademark affixed shall not be sufficient other than in exceptional cases which shall be determined by the Regulations, to permit the release of the goods into the channels of commerce. (Sec. 24, R.A. No. 166a)	제157.2조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부착된 상표의 단순한 제거는 규정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품의 상업 경로에 대한 출시를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SEC. 161. Authority to Determine Right to Registration. - In any action involving a registered mark, the court may determine the right to registration, order the cancellation of a registration, in whole or in part, and otherwise rectify the register with respect to the registration of any party to the action in the exercise of this. Judgment and orders shall be certified by the court to the Director, who shall make appropriate entry upon the records of the Bureau, and shall be controlled thereby. (Sec. 25, R.A. No. 166a)	제161조 등록에 대한 결정 권한 - 등록 상표와 관련한 모든 조치에 대해 법원은 등록에 대한 권리를 결정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인 등록 취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등록에 대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판결과 명령은 법원에 의해 사무국장에게 인증되어야 하며,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기록에 적절하게 기록하고, 이에 따라 관리한다.
SECTION 162. Action for False or Fraudulent Declaration. - Any person who shall procure registration in the Office of a mark by a false or fraudulent declaration or representation, whether oral or in writing, or by any false means, shall be liable in a civil action by any person injured thereby for any damages sustained in consequence thereof (Sec. 26, R.A. No. 166)	제162조 구두 서면 또는 그 수단을 불문하고 거짓 또는 사기성 발언이나 표현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획득한 사람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책임이 있다.
165.2. (a) Notwithstanding any laws or regulations providing for any obligation to register trade names, such names shall be protected, even prior to or without registration, against any unlawful act committed by third parties. (b) In particular, any subsequent use of the trade name by a third party, whether as a trade name or a mark or collective mark, or any such use of a similar trade name or mark, likely to mislead the public, shall be deemed unlawful.	제165.2조 (a) 상호를 등록할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름은 등록 이전이든 아니든 제3자의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b) 특히 상표명, 표장 또는 단체표장으로서 제3자가 상표명을 차후 사용하거나 대중의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상표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SEC. 168. Unfair Competition, Rights, Regulation and Remedies. - 168.1. A person who has identified in the mind of the public the goods he manufactures or deals in, his business or services from those of others, whether or not a registered mark is employed, has a property right in the goodwill of the said goods, business or services so identified, which will be protected in the same manner as other property rights.	제168조 부정경쟁, 권리, 규칙 및 구제조치 제168.1조 등록 상표의 실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제조하는 물품 또는 취급하는 사업 또는 서비스가 대중에게 인식되어 있다면, 해당 물품, 사업 또는 서비스의 영업권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하며, 이는 다른 재산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된다.
168.2. Any person who shall employ deception or any other means contrary to good faith by which he shall pass off the goods manufactured by him or in which he deals, or his business, or services for those of the one having established such goodwill, or who shall commit any acts calculated to produce said result, shall be guilty of unfair competition, and shall be subject to an action therefor.	제168.2조 제조한 물품을 유통하기 위하여 또는 제조한 물품 유통의 영업권을 설정한 자와 거래하거나 사업 또는 비즈니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망 또는 기타 선의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도록 계산된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는다.

필리핀 지식재산법	번역
<p>168.3. In particular, and without in any way limiting the scope of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the following shall be deemed guilty of unfair competition:</p> <p>(a) appearance of goods of another manufacturer or dealer, either as to the goods themselves or in the wrapping of the packages in which they are contained, or the devices or words thereon, or in any other feature of their appearance, which would be likely to influence purchasers to believe that the goods offered are those of a manufacturer or dealer, other than the actual manufacturer or dealer, or who otherwise clothes the goods with such appearance as shall deceive the public and defraud another of his legitimate trade, or any subsequent vendor of such goods or any agent of any vendor engaged in selling such goods with a like purpose;</p> <p>(b) Any person who by any artifice, or device, or who employs any other means calculated to induce the false belief that such person is offering the services of another who has identified such services in the mind of the public; or</p> <p>(c) Any person who shall make any false statement in the course of trade or who shall commit any other act contrary to good faith of a nature calculated to discredit the goods, business or services of another.</p>	<p>제168.3조 특히,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는 부정경쟁행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p> <p>(a) 판매하는 상품이나 상품의 외관, 상품에 부착된 장치나 어구, 기타 어떤 형태든 다른 제조업자 또는 다른 판매자 제품의 일반적인 외관을 부여하고 그 결과 구매자들이 그 물품들이 실제 제조업자나 판매자자가 아닌 다른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것으로 믿도록 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또는 대중을 기만하고 그와 유사한 목적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거래 상대방 혹은 그러한 상품의 후속 판매자 또는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판매자의 대리인을 기망한 자</p> <p>(b) 대중의 인식 속에 식별성이 각인된 다른 자의 서비스를 본인이 제공한다고 믿도록 하기 위해 계산된 책략이나 계획 등의 수단을 사용한 자</p> <p>(c) 거래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선의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 사업 또는 서비스의 신용을 훼손하기 위해 계산된 기타 행위를 한 자</p>
<p>168.4. The remedies provided by Sections 156, 157 and 16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Sec. 29, R.A. No. 166a)</p>	<p>제168.4조 제156조, 제157조, 제161조에 따른 구제조치를 적용한다.</p>
<p>SEC. 169. False Designations of Origin;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p>	<p>제169조 원산지의 잘못된 표시: 잘못된 설명 또는 표현</p>
<p>169.1. Any person who,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goods or services, or any container for goods, uses in commerce any word, term,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or any false designation of origin, 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 of fact, or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of fact, which:</p> <p>(a)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or to cause mistake, or to deceive as to the affiliation, connection, or association of such person with another person, or as to the origin, sponsorship, or approval of his or her goods, services, or commercial activities by another person; or</p> <p>(b) In commercial advertising or promotion, misrepresents the nature, characteristics, qualities, or geographic origin of his or her or another person's goods, services, or commercial activities, shall be liable to a civil action for damages and injunction provided in Sections 156 and 157 of this Act by any person who believes that he or she is or likely to be damaged by such act.</p>	<p>제169.1조 상품과 서비스 또는 상품 컨테이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단어, 용어, 이름, 기호 또는 이들의 조합을 상업에 사용하거나, 원산지의 잘못된 표시, 사실에 대한 거짓 또는 오인을 야기하는 설명, 또는 사실에 대한 거짓 또는 오인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p> <p>(a)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연결 또는 연관성, 또는 다른 사람의 상품, 서비스 또는 상업활동에 대한 출처, 후원 또는 승인에 대해 혼란 또는 실수를 야기하거나 기망할 가능성이 있다.</p> <p>(b) 상업 광고 또는 홍보에서 자신 또는 타인의 상품, 서비스 또는 상업 활동의 성격, 특성, 품질 또는 원산지를 잘못 표기하는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의해 본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금지명령에 관한 민사소송의 책임을 진다.</p>
<p>169.2. Any goods marked or labeled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not be imported into the Philippines or admitted entry at any customhouse of the Philippines. The owner, importer, or consignee of goods refused entry at any customhouse under this section may have any recourse under the customs</p>	<p>제169.2조 본 조항에 위반되는 표시 또는 라벨이 부착된 상품은 필리핀으로 수입하거나 필리핀의 어느 세관에서든지 반입이 허가될 수 없다. 본 조에 따라 관세청에서 반입이 거부된 상품의 소유자, 수입자 또는 위탁자는 관세수입법에 따라 법에 호소할 수 있으며 상품의 반입이 거부되거나 압류된 경우 이 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p>

필리핀 지식재산법	번역
revenue laws or may have the remedy given by this Act in cases involving goods refused entry or seized. (Sec. 30, R.A. No. 166a)	
SEC. 170. Penalties. -Independent of the civi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imposed by law, a criminal penalty of imprisonment from two (2) years to five (5) years and a fine ranging from Fifty thousand pesos (P50,000) to Two hundred thousand pesos (P200,000), shall be imposed on any person who is found guilty of committing any of the acts mentioned in Section 155, Section 168 and Subsection 169.1. (Arts. 188 and 189, Revised Penal Code)	제170조 벌칙 -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민사 및 행정 조치와는 별개로, 제155조, 제168조, 제169.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5만 페소 이상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 필리핀 경쟁법

필리핀 경쟁법	번역
Sec. 4. Definition of Terms. - As used in this Act: (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refers to information which concerns or relates to the operations, production, sales, shipments, purchases, transfers, identification of customers, inventories, or amount or source of any income, profits, losses, expenditures;	제4조.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된 용어 (e) 기밀영업정보는 운영, 생산, 판매, 선적, 구매, 이전, 고객 식별, 재고 또는 수입·이익·손실·지출의 금액 또는 출처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
Sec. 34.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submitted by entities, relevant to any inquiry or investigation being conducted pursuant to this Act as well as any deliberation in relation thereto, shall not, in any manner, be directly or indirectly disclosed, published, transferred, copied, or disseminated. Likewise, the Commission shall, to the extent possible, subject such information to the confidentiality rule provided under this section when it issues notices, bulletins, rulings and other documents: Provided, That the confidentiality rule shall not apply if the notifying entity consents to the disclosure, or the document or information is mandatorily required to be disclosed by law or by a valid order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or of a government or regulatory agency, including an exchange. The identity of the persons who provide information to the Commission under condition of anonymity, shall remain confidential, unless such confidentiality is expressly waived by these persons. Any violation of this provision shall be imposed a fine of not less than one million pesos (P1,000,000.00) but not more than five million pesos (P5,000,000.00).	제34조 정보의 기밀성 - 이 법에 따라 수행 중인 심리 또는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심의와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기밀영업정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간접적으로 공개, 출판, 전송, 복사 또는 배포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통지, 게시판, 판결 및 기타 문서의 발행 시에 가능한 한 이러한 정보를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된 기밀 유지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단, 통보 주체가 공개에 동의하거나 법률 또는 관할 법원, 정부 또는 규제기관의 유효한 명령에 따라 문서 또는 정보의 공개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밀 유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익명의 조건으로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신원은 이러한 사람에게 의해 명시적으로 기밀이 면제되지 않는 한 기밀로 유지된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 페소 이상, 500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래전략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제 18 장

호주

법령요약

- 호주 거래관행법(Trade Practices Act 1974)
 - 상품(원산지) 오인 야기 등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항을 규정
- 호주 상표법(Trade Marks Act 1995)
 - 악의적 상표 출원, 유명상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호주 상표법(2021 일부개정)	주요내용
제1장 예비조항	(제1조~제5조) 법의 적용, 목적 등
제2장 해석	(제6조~제16조) 정의, 상표의 사용, 우선일, 유사상품의 정의, 원산지의 정의 등
제3장 상표 및 상표권	(제17조~제26조) 상표의 의미, 재산으로 등록된 상표의 성격, 소유자의 권한 등
제4장 상표등록	(제27조~제51조) 일반조항, 신청승인, 항소, 신청거절이유등
제5장 등록거절	(제52조~제62A조) 일반조항, 등록거절사유 등
제6장 상표등록신청서의 수정	(제63조~제67조) 상표등록출원의 보정, 기타 문서의 수정 등
제7장 상표등록	(제68조~제80H조) 등록의무, 등록통지, 면책조항, 갱신요청, 미갱신상표, 등록만료 등
제8장 등록수정, 취소	(제81조~제91조) 등록취소, 등록취소의 효력,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제9장 미사용상표	(제92조~제105조) 신청통지, 반대통지, 상표의 취소 등
제10장 상표의 양도	(제106조~제110조) 상표의 양도, 상표양도의 기록 신청, 등록상표의 등록 신청 등
제11장 상표에 대한 이익 및 권리주장	(제112조~제119조)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 이해관계 등록신청,
제12장 상표권 침해	(제120조~제130A조) 등록상표의 침해, 침해가 아닌 경우, 소제기 법원, 구제, 반소
제13장 상표권 침해 물품의 수입	(제131조~제144조) 수입반대 통지서, 압수통지, 압수물품의 몰수, 상표권 침해소송 등
제14장 범죄	(제145조~제160조) 거짓상표가 있는 상품, 등록상표의 위조,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도면, 허위진술 등
제15장 단체표장	(제161조~제167조) 단체표장, 등록신청, 권리의 제한, 양도
제16장 증명표장	(제168조~제183조) 증명표장,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규칙, 위원회 인정, 증명표장의 양도
제17장 방어적 상표	(제184조~제189조) 방어적 상표, 등록, 등록신청 거절, 등록취소
제17A장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라 보호되는 국제상표	(제189A조) 마드리드의정서 이행 규정
제18장 법원의 관할권과 권한	(제190조~제198조) 지정법원, 관할권, 관할권 행사, 이전, 항소
제19장 행정	(제199조~제206조) 상표사무소, 특허청, 특허청의 권한, 상표등록관 등
제20장 등록부 및 공식문서	(제207조~제211조) 등록부, 문서의 사본, 기타
제21장 부칙	(제212조~제231A조) 신청서의 작성 및 서명, 문서제출, 등록상표에 대한 설명, 수수료 등
제22장 폐지 및 경과조항	(제232조~제260조)

주요내용

● 상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오인 야기 행위

- 상품이 특정한 표준, 품질, 가치, 스타일, 모델 등에 해당한다고 허위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호주 거래관행법 제52조~제53조)
-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허위 또는 오인을 야기하는 표현 금지(호주 거래관행법 제52조~제53조)

● 악의적 상표 출원

-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해 등록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상표법 제62A조)

● 영업비밀²⁴⁾

- 호주의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단독법이 없으며, 단 국제협약에서의 근거, 타 법에서의 규정, 관습법(common law), 비공개 계약(Non-Disclosure Agreements, NDA) 등을 토대로 영업비밀과 관련한 조항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의) 영업비밀을 단순한 기밀정보의 한 형태로 간주하나 명확한 법 적용어로 존재하지 아니함, 단 호주가 가입한 TRIPS 협정에 의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를 해석할 수 있음
 - ※ TRIPS협약 제39조 제2항에서의 비공개 정보
 - 가.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정밀한 배열 및 조합의 형태로서 당해 정보의 종류를 통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인 것
 - 나.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갖는 것, 그리고
 - 다. 적법하게 동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그 상황 하에서 합리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
- (영업비밀의 공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단독 법률은 없으나, 특성별 기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밀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는 다양한 법규가 존재

24) Rohit Dighe·Lynne Lewis, An overview and update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Australia, 2020. 9. <<https://www.twobirds.com/en/news/articles/2020/australia/an-overview-and-update-on-the-protection-of-trade-secrets-in-australia>> (2021. 7. 28. 최종방문)

[호주의 영업비밀 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률]

법령	주요내용
법인법 2001 The Corporations Act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이사 또는 기타 임원, 직원의 지위를 통하여 정보를 얻은 자는 a)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얻거나, b) 회사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 • 상기 조항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가 종료되어도 계속적으로 의무가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1988 The Privacy Act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조직 및 영연방기관에 적용되는 법률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보안, 사용 및 공개와 같은 광범위한 개인정보문제와 관련된 원칙을 설정 •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조사 후 보고서에 기밀상업정보의 부당한 공개를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보유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익을 제기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상 또는 접근금지 명령을 구하는 이익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의 자유에 관한 법률 1982, (FOI법)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밀 위반에 대한 조치가 발견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가 금지됨 • 법령에서 기밀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 바, 기밀사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호주연방법원 및 항소법원에 의해 이루어짐 • FOI법에 따라 경쟁업체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음

- (기밀정보의 계약적 보호) 상업적 관계의 당사자는 정보가 당사자간의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계약조건을 통해 기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밀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기밀 유지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통상 고용계약에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뢰의무를 부가

- (기밀위반에 대한 조치) 기밀정보에 대한 보호자 전혀없거나 기밀정보를 보호하려는 계약이 불명확한 경우, 기밀정보의 보호 조건의 부적절하게 좁은 범위를 규정한 경우, 기밀 위반에 대하여 공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 공평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판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Smith Kline and French Laboratories (Aust) Ltd v Secretary,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and Health

① 원고는 사건에서 기밀정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전체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② 기밀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들어 일반 또는 대중의 지식이 아닐 것)

③ 기밀정보라고 해석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침해자)가 받은 정보가 무엇인지 식별하여야 한다.

④ 원고의 동의없이 해당 정보의 실제적 또는 위협적인 오용이 있어야 한다.

- (기타) 관습법(common law)은 영업비밀의 침해, 기밀 유지 계약 위반 및 상표위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습법에 따라 기밀유지 위반을 입증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며, 등록된 권리를 방어하는 것보다 잠재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²⁵⁾

25) <https://www.ipaustralia.gov.au/understanding-ip/getting-started-ip/types-of-ip#trade%20secret>

법령비교표

● 호주 거래관행법

호주 거래관행법(Trade Practices Act 1974)	번역
<p>Section 52 Misleading or deceptive conduct (1) A corporation shall not, in trade or commerce, engage in conduct that is misleading or deceptive or is likely to mislead or deceive. (2) Nothing in the succeeding provisions of this Division shall be taken as limiting by implication the generality of subsection (1).</p> <p>Note: For rules relating to representations as to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see Division 1AA (sections 65AA to 65AN).</p>	<p>제52조 오인 또는 기만적인 행위 (1) 기업은 거래 또는 상거래에서 오인 또는 기만적이거나 오인 또는 기만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본 중분류(Division)의 후속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항의 일반성을 함축함으로써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p> <p>참고: 상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규칙은 Division 1AA(제65AA조 - 65AN조)를 참조한다.</p>
<p>Section 53.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s A corporation shall not, in trade or commerce, in connexion with the supply or possibl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or in connexion with the promotion by any means of the supply or use of goods or services: (a) falsely represent that goods are of a particular standard, quality, value, grade, composition, style or model or have had a particular history or particular previous use; (aa) falsely represent that services are of a particular standard, quality, value or grade; (b) falsely represent that goods are new; (bb) falsely represent that a particular person has agreed to acquire goods or services; (c) represent that goods or services have sponsorship, approval,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ccessories, uses or benefits they do not have; (d) represent that the corporation has a sponsorship, approval or affiliation it does not have; (e) make a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with respect to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ea) make a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concerning the availability of facilities for the repair of goods or of spare parts for goods; (eb) make a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concerning the place of origin of goods; (f) make a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concerning the need for any goods or services; or (g) make a false or misleading representation concerning the existence, exclusion or effect of any condition, warranty, guarantee, right or remedy.</p> <p>Note: For rules relating to representations as to the country of origin of goods, see Division 1AA (sections 65AA to 65AN).</p>	<p>제53조 허위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 기업은 거래 또는 상거래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그 가능성 또는 그 판촉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p> <p>(a) 상품이 특정 표준, 품질, 가치, 등급, 구성, 스타일, 모델에 속하거나 특정 역사 또는 이전의 용도를 가졌다고 허위로 표시(표현)</p> <p>(aa) 서비스가 특정 표준, 품질, 가치 또는 등급에 해당한다고 허위로 표시 (b) 상품이 새 상품이라고 허위로 표시 (bb) 특정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획득하기로 동의했다고 허위로 표시 (c) 상품 또는 서비스에 후원, 승인, 특성, 약세서리, 사용 또는 혜택이 있다고 허위로 표시 (d) 회사에 후원, 승인 또는 제휴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 (e)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오인하도록 표시 (ea) 상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 또는 예비 부품의 가용성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오인하도록 표시 (eb)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오인하도록 표시 (f) 상품 또는 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해 허위 또는 오인하도록 표시 (g) 조건, 보증, 권리 또는 구제책의 존재, 배제 또는 효과에 대해 허위 또는 오인하도록 표시</p> <p>참고: 상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규칙은 Division 1AA(제65AA조 - 65AN조)를 참조한다.</p>

● 호주 상표법

호주 상표법(Trade Marks Act 1995)	번역
<p>20 Rights given by registration of trade mark (2) The registered owner of a trade mark has also the right to obtain relief under this Act if the trade mark has been infringed.</p>	<p>제20조 상표등록에 대한 권리 (2) 등록된 상표 소유자는 상표가 침해된 경우 이 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p>
<p>42 Trade mark scandalous or its use contrary to law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must be rejected if: (a) the trade mark contains or consists of scandalous matter; or (b) its use would be contrary to law.</p>	<p>제42조 상표스캔들 또는 법률에 반하는 사용 상표등록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거부되어야 한다. (a) 상표가 스캔들 문제를 포함하거나 구성하는 경우 (b) 그 사용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p>
<p>43 Trade mark likely to deceive or cause confusion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in respect of particular goods or services must be rejected if, because of some connotation that the trade mark or a sign contained in the trade mark has, the use of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those goods or services would be likely to deceive or cause confusion.</p>	<p>제43조 기만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등록신청은 상표 또는 상표에 포함된 표시가 갖는 어떠한 의미 때문에 기만이나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거부되어야 한다.</p>
<p>59 Applicant not intending to use trade mark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may be opposed on the ground that the applicant does not intend: (a) to use, or authorise the use of, the trade mark in Australia; or (b) to assign the trade mark to a body corporate for use by the body corporate in Australia; in relation to the goods and/or services specified in the application.</p>	<p>제59조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는 출원 상표등록은 신청서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출원인이 다음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 호주에서 상표의 사용하거나 사용을 승인하기 위한 목적 (b) 호주의 법인이 사용하기 위해 상표를 법인에 양도하기 위한 목적</p>
<p>60 Trade mark similar to trade mark that has acquired a reputation in Australia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in respect of particular goods or services may be opposed on the ground that: (a) another trade mark had, before the priority date for the registration of the first-mentioned trade mark in respect of those goods or services, acquired a reputation in Australia; and (b) because of the reputation of that other trade mark, the use of the first-mentioned trade mark would be likely to deceive or cause confusion.</p>	<p>제60조 호주에서 명성을 얻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등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 다른 상표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언급된 상표의 등록우선일 이전에 호주에서 명성을 얻은 경우, (b) 다른 상표의 명성 때문에 제a항에 언급된 상표의 사용이 대중을 속이거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61 Trade mark containing or consisting of a false geographical indication (1)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in respect of particular goods (relevant goods) may be opposed on the ground that the trade mark contains or consists of a sign that is a geographical indication for goods (designated goods) originating in: (a) a country, or in a region or locality in a country, other than the country in which the relevant goods originated; or (b) a region or locality in the country in which the relevant goods originated other than the region or locality in which the relevant goods originated; if the relevant goods are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or the use of a trade mark in respect of the relevant goods would be likely to deceive or cause confusion.</p>	<p>제61조 잘못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구성하는 상표 (1) 특정 상품(관련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상표가 다음에서 유래하는 상품(지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기호를 포함하거나 구성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 관련상품이 원산지인 국가가 아닌 국가 또는 국가의 지역, 지방 또는 (b) 관련상품이 생산된 지역 또는 지역이 아닌 관련 상품이 생산된 국가의 지방 또는 지역; 해당 상품이 지정상품과 유사하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혼동이나 기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p>

호주 상표법(Trade Marks Act 1995)	번역
<p>Part 5 Opposition to registration 62A Application made in bad faith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may be opposed on the ground that the application was made in bad faith.</p>	<p>제5장 등록 거절 제62A조 악의적인 출원 상표의 등록은 악의적 출원을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p>
<p>Part 12—Infringement of trade marks 120 When is a registered trade mark infringed?</p> <p>(3) A person infringes a registered trade mark if: (a) the trade mark is well known in Australia; and (b) the person uses as a trade mark a sign that is substantially identical with, or deceptively similar to, the trade mark in relation to: (c) because the trade mark is well known, the sign would be likely to be taken as indicating a connection between the unrelated goods or services and the registered owner of the trade mark; and (d) for that reason, the interests of the registered owner are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p>	<p>제12장 상표의 침해 제120조 등록 상표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생략) (3) 만약 등록상표가 (a) 호주에서 잘 알려진 상표인 경우; 그리고 (b) 다음과 관련하여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기호를 기만적으로 사용하는 자 (생략) (c) 상표가 잘 알려져 있어 상표의 등록된 소유자와 관계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연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d) 그러한 이유로 등록상표의 권리자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121 Infringement of trade mark by breach of certain restrictions (2) Each of the following is a prohibited act: (e) if the trade mark has been applied to registered goods or used in physical relation to them—using on the goods, or on the packaging or container of the goods, any matter that is likely to injure the reputation of the trade mark.</p>	<p>제121조 특정한 제한을 위반한 상표 침해 (2) 다음 각 호는 금지되는 행위이다. (e) 상표가 등록된 상품에 적용되었거나 상품과 물리적인 관계로 사용된 경우, 상품,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상표를 사용하여 등록상표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행위</p>
<p>126 What relief can be obtained from court (1) The relief that a court may grant in an action for an infringement of a registered trade mark includes: (a) an injunction, which may be granted subject to any condition that the court thinks fit; and (b) at the option of the plaintiff but subject to section 127, damages or an account of profits.</p>	<p>제126조 법원의 구제 (1) 법원이 등록상표침해소송에서 부여할 수 있는 구제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다. (a)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금지 명령 (b) 원고의 선택으로 제127조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이익배상</p>
<p>148 Goods with false trade marks Indictable offence (1)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a) the person: (i) sells goods; or (ii) exposes goods for sale; or (iii) possesses goods for the purpose of trade or manufacture; or (iv) imports goods into Australia for the purpose of trade or manufacture; and (b)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i) there is a registered trade mark on the goods; (ii) there is a mark or sign on the goods that is substantially identical to a registered trade mark; (iii) a registered trade mark on the goods has been altered, defaced, added to, wholly or partly removed, erased or obliterated; and (중간 생략) Penalty: Imprisonment for 5 years or 550 penalty units, or both. (이하 생략)</p>	<p>제148조 허위의 상표표시가 있는 물품 기소가능한 범죄 (1) 다음과 같은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 (a) 사람 : (i)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ii) 판매를 위해 상품을 노출하는 행위 (iii) 무역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상품을 소유하는 행위 (iv) 무역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호주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i) 상품에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ii) 등록된 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iii) 상품의 등록상표가 변경, 훼손, 추가, 전체 또는 일부제거, 삭제 또는 말소된 경우 (중간 생략) 형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50단위의 페널티 (이하 생략)</p>

미래전략 -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최근 정책 동향의 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구분	TRIPS	RCEP	한국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말라	캐나다	특류	
보호대상	상표(상표권) 행위	X	O (82-1-7)	O (B183)	O (A82)	X	X	X	X	O (A.8106.3)	X	X	X	X	X	O (8386)	O (829)	X	X	
	이디언, 탈식량위탁인의 상업적행위* *노사 및 시정관고 명칭 표시	X	O (82-1-7)	X	X	X	X	X	X	X	X	X	X	O (A834) 가목	X	X	X	X	X	
	국가·국명 등의 사용금지 (관리번호)	O	O (83)	O (A8103) *상표사용 불가사유	O (87, 850)	O (856)	X	X	O (A878, A179)	O (B813)	O (A8123.1)	O (A859-A859)	O (A889)	X	O (A828-830)	X	O (8173, 8366)	O (A889)	O (B8135)	
	FTA등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표시의 사용금지 등	O (822, 24)	O (811.29)	O (8335942)	X	O (856)	X	X	O (823, 850)	O (A818)	X	O (884)	X	X	X	X	O (8386)	O (889)	O (A811.23, A811.24)	X
	이러한 상표등록	X	O (811.27)	O (A843, 888)	O (884-19)	O (86)	X	X	X	X	O (A87, 88)	O (A87, 88)	X	X	O (A817)	O (A822, 859)*사명/사 명칭-출판	O (8173)	O (8190h, 827, 828)	O (A8189)	O (B8137) *등록가점
	장점표지	O (850)	O (811.64)	O (A866) *상표법 일반표지	O (A843, 888)	O (853)	X	O (829-834)	O (8144-8147)	O (B879, 880)	X	O (888)	X	O (A8159, A8206, A8207, A8215)	X	O (B8126) *상표법 일반표지	O (8344) *지재법 일반표지	O (8112)	X	O (B8245-B1247, C833)
	국가장구	O (844)	O (811.65)	O (A865) *상표법 일반표지	O (A83)	O (819)	O (827-28)	O (A884) *상표법 일반표지	O (8140)	X	O (A.8156.4)	O (A8155, B85)	O*	O (A8159, A8202)	X	X	O (8344) *지재법 일반표지	X	O (B8246)	
	순색배상	O (845)	O (811.68)	O (85)	O (844)	O (816)	O (827-28)	O (A869, A883)*상표법 일반표지	O (858, 880, 8140, 8141, 8162, 8166)	O (A81, A811, B88, B881)	O (A8156.1)	O (A831*, B19) *상표법 일반표지	X	O (A8159, A8202, B8110)	O (A8106)	O (B8209) *상표법 일반표지	O (8203) *지재법 일반표지	X	O (A8172, B8245, C869)	
	정렬의 순색배상	X	O (8143942)	O (817)	O (A863, B817)	X	X	X	X	X	O (A.8156.3)	X	X	X	X	X	X	X	X	X
	부정당행위																			
보호대상	신용행위	X	O (86)	O (823)	O (823)	X	X	O (A8142) *무사조항	X	X	X	X	X	X	X	X	X	X	X	
	자료개출행위	O (842)	O (811.59)	O (8115)	O (8115)	X	X	O (8150) *상표법 일반표지	O (883)	X	X	X	O (A8203)	X	X	X	O (8110)	X	O*	
	임종(정)교환	X	X	X	X	X	X	O (82, 854)	X	X	X	X	O (A8203)	X	X	X	X	X	X	
	비밀유지명령	O (842)	O (811.59)	O (815)	O (815)	X	X	O (82, 854)	X	X	X	X	O (A8128)	X	X	X	X	X	X	
	비밀유지명령 위반지	X	O (811.63)	O (813394)	O (A821)	X	X	X	O (82, 854)	X	X	X	O (A8203)	X	X	X	X	X	X	
	행위표지	X	X	O (87)	X	X	X	O (A859) *상표법 일반표지	O (A88, 812)	O (A88, 812)	X	X	O (A100h5) *상표법 일반표지	X	O (A8134) *상표법 일반표지	X	O (8354-8365) *지재법 일반표지	X	O (C825, C828)	
	시정관고	X	X	O (88)	X	X	X	X	X	X	X	X	O (B8110)	X	X	X	X	X	X	
	징액·벌금	X	O (81803)	O (81803)	O (A877)*상표법 일반표지	O (855, 894)	O (855, 894)	O (A8101)*지재법 표시	O (8162, 8165, 8167)	O (A841, A842, B884, B889)	O (A8170)	O (A847)*상표법 일반표지	O (A8109) *상표법 일반표지	O (A8212, A8214, B8110)	O (A8125)	O (B8148)	O (8398, 8399, 8402) *지재법 일반표지	O (828, 8105)	O (A8120, C852)	
	행위표지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수사(수사권 (제자 불요))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구분	TRIPS	RCEP	한국	중국	일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리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일본	캐나다	한국	
보조대상	영양비밀 공유	○ (8392)	○ (82-2) (811.56)	○ (8196)	○ (A82)	X	○ (81)	○ (820)	○ (A8115, B839)	X	○ (854)	★/ *영식/ 본문참조	○ (83)	○ (A84)	○ (B8230)	★/ *영식/ 본문참조	○ (8153)	○ (886)	○ (83391)	△ (A83) ○ (B1260, C13, C147.2)	
	취득-시행-공개	○ (8392)	○ (82-3)	○ (8189)	○ (A82)	X	X	○ (861)	○ (A8115, B839)	○ (A819)	X	X	○ (85)	○ (A8124, A8127)	X	★/ *영식/ 본문참조	○ (8163, 164)	○ (887)	○ (83391)	○ (83262, C13)	
	권리의 침입	X	○ (8433)	○ (8193)	○ (A82)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강제조치	○ (850)	○ (811.64)	○ (810)	○ (A83)	X	X	○ (814, 8147)	X	X	X	X	X	○ (88)	○ (A8198, A8202, A8207, A8215)	X	X	○ (8112)	X	○ (83245, C332.2)	
영양비밀보호 대상조치	금지상구	○ (844)	○ (810.85)	○ (810)	○ (A83)	X	○ (811)	○ (8140)	X	X	X	★/ *영식/ 본문참조	○ (88)	○ (A8198, A8202)	X	X	X	X	X	○ (83245, C332.2)	
	근해해상	○ (845)	○ (811.60)	○ (811)	○ (A84)	X	○ (8140, 8141, 8142, 8169)	○ (8140, 8147)	★/ *영식/ 본문참조	○ (A851)	X	★/ *영식/ 본문참조	○ (88)	○ (A8198, A8202, A8205)	X	★/ *영식/ 본문참조	○ (8396)	○ (8108)	★/ *영식/ 본문참조	○ (C138)	
	강박과 손해배상	X	X	○ (821)	X	X	X	X	X	X	X	X	○ (813)	X	X	X	X	X	X	X	
	신용해복	X	X	○ (812)	○ (A814)	X	X	△ (8142) *무시조항	X	X	X	X	X	X	X	X	X	X	X	X	X
	자료제공명령	○ (842)	○ (811.59)	○ (83)	○ (A87)	X	X	○ (8138)	★/ *영식/ 본문참조	X	X	X	X	○ (823)	○ (A8203)	X	X	X	△ (8110)	○ (C132) *영량보다 원래가 관리번호 거번	
	임용책임회한	X	X	○ (832)	X	X	X	○ (8139) *임용책임 회한	X	X	X	X	★/ *영식/ 본문참조	○ (813)	○ (A8203)	X	X	X	X	X	X
	비밀유지명령	○ (842)	○ (811.59)	○ (815)	○ (A810)	X	X	○ (8154)	★/ *영식/ 본문참조	X	X	○ (B824) *영량치 규정	X	○ (815)	○ (A8128)	X	X	○ (8166)	X	X	○ (A811, C140)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X	○ (811.63)	○ (8152.94)	○ (A821)	X	X	○ (8164)	○ (8164)	X	X	○ (8164)	X	○ (84, 39)	X	X	X	○ (8402)	X	X	X
	영역-발급	X	X	○ (8183)	○ (821)	○ (A821)	X	○ (8162, 8165, 8167)	○ (A8115, B859) + 영량 등 규정	○ (A8115, B859) + 영량 등 규정	○ (A841, 842)	X	X	○ (831-35)	○ (A812, 8214)	X	○ (8398, 8300, 8402)	X	○ (83391)	○ (C162)	
	영역구경	X	X	○ (819)	○ (A822)	X	X	X	○ (A8138)	○ (A849)	X	X	X	○ (836)	X	X	X	X	X	X	X
법인-가중처벌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수사유지조항 (영식-필요)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참고문헌

- 김찬중, [기고] 멕시코의 지적재산권 개요, KOTRA 해외시장 뉴스-외부전문가 기고, 2021. 5. 20.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8653>>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멕시코 특허청, 비전형 상표 보호를 위한 개정 지식재산권법 시행 발표, 「지식재산동향」 2018-3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7955>
- Brunei IP factsheet, <<https://www.southeastasia-iprhelpdesk.eu/en/country-factsheets/brunei-ip-factsheet>>
- Cambodian Trade Secret Law Advances Towards Adoption, 2019. 9. 11. <<https://www.abacus-ip.com/post/cambodian-trade-secret-law-advances-towards-adoption>>
- Intellectual Property in Cambodia, <<https://www.hg.org/legal-articles/intellectual-property-in-cambodia-18263>>
-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in The Philippines: Overview, 2020. 11. 1.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18-1440?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w-018-1440?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
- Project that modifies the Industrial Property Law in Chile is approved by Congress, 2021. 4. 4. <<https://www.carey.cl/en/project-that-modifies-the-industrial-property-law-in-chile-is-approved-by-congress/>>
- Rohit Dighe·Lynne Lewis, An overview and update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Australia, 2020. 9. <<https://www.twobirds.com/en/news/articles/2020/australia/an-overview-and-update-on-the-protection-of-trade-secrets-in-australia>>
- Trade Secrets 2021, 2021. 4. 28.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trade-secrets-2021/malaysia>>
- Trade Secret Protection, <<https://en.uhthoff.com.mx/articles/trade-secret-protection/>>

Trade Secret Protection in Malaysia, 2021. 5. 18. <<https://www.qualityoracle.com/trade-secret-protection-in-malaysia/>>

Types of IP, <<https://www.ipaustralia.gov.au/understanding-ip/getting-started-ip/types-of-ip#trade%20secret>>

What is a trade secret?, 2021. 3. 19. <<https://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wr03987.html>>

30. Is there any protection for trade secrets in Cambodia?, <<https://www.southeastasia-iprhelpdesk.eu/en/country-guides/cambodia/30-there-any-protection-trade-secrets-cambodia>>

기초연구과제 미래전략 - 국가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정책 수립지원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손승우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1
전화 (02) 2189-2600
팩스 (02) 2189-269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미래전략

**국제분야 지식재산 정책 수립지원
- 주요국의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관련
법제도 분석(RCEP, CPTPP 협정국 대상)**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1544-8080 Fax.042)489-0194 www.kipo.g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02)2189-2600 Fax.02)2189-2694 www.kiip.re.kr

ISBN : 979-11-6884-002-7 13500
DOI : 10.8080/P9791168840027